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총 5권중 제3권

2000.11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국회 도서관



00853990



농업의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시에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요소이다.

새벽의 희망을 통하여 무한히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과 친환경 농업을 표현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청색원은 인터넷 E-mail주소의 @행상을 활용하여 산지식·정보화된 농업과 서로 조화되고 상생(相生)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전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농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청·녹·황·적의 '색동'을 표현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청색과 적색의 변화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였다.



한국농업의 마스코트인 '새농이'는 '새로운 농업'이라는 의미로 발전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열매 맺는 기본요소인 푸른색을 의인화하여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친근한 농업을 나타내는 어린이의 이미지로 앞으로 발전할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규에 따른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
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1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669
18. 고품질 우량종자개발(공공)	671
II. 사육기반확충	681
19.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확충사업(자율)	683
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②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③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	
2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자율)	723
21.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751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22.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공공)	775
23. 가축개량사업(공공)	839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887
24.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889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농산물 규격출하	
25.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935
① 산지농협유통활성화 ②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	
③ 공동규격출하촉진 ④ 인삼생산장려	
26.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97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지원	
③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지원	
27.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010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② 농산물공판장건설	
③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④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28.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사업(공공)	1052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③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 ④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차금 지원	
2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1099
30.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1108
3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115
32.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1119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③ 농산물 물류센터건설	
33.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	1165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1185
34.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공공)	1187
35. 축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사업(공공)	1195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종별 자율사업	
36.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	1283
① 축산물 안전성강화 ② 가축공제	
37.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공공)	1295
① 축산물검사 ② 가축방역	
38.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321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주요변경사항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4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5장 보칙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주요골자	30
3. 주요 변경사항	34
4. 해설	38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50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7
※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231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239
1. 영농규모화(쌀전업농육성)사업(자율)	241
2. 토양개량사업(자율)	297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317
4. 밭기반정비사업(공공)	327
5. 경지정리사업(공공)	356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공)	399
7. 배수개선사업(공공)	415
8.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공공)	438
① 수리시설개보수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9. 농촌용수개발사업(공공)	473
① 대·중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공공)	515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 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1.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공공)	570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2. 지역특화사업(공공)	605
II. 농업기계화	631
13. 농기계구입지원(자율)	633
14.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635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봉사 지원	
15. 농기계생산지원(공공)	637
III. 생산및유통개선	639
16.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지원(자율)	641
17.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65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31
39.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자율)	1333
①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② 친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40.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1386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산물가공산업 경영지도 ③ 특산단지육성	
41.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자율)	1477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505
42. 농업기술개발사업(공공)	1507
43.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516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44. 기술보급사업*(공공)	1535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4-H회원과제활동지원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575
45. 후계농업인육성지원(자율)	1577
46.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21
47.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4
IV. 소득보전	1675
48.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677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③ 논농업 직접지불제	
49.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1738
50.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740
V. 소득원 개발	1753
5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자율)	1755
52. 농공단지육성사업(공공)	1803
53. 한계농지정비사업(공공)	1820
54.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834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I. 생활환경개선	1845
55.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공공)	1847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 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6. 농촌 생활우수개발사업(공공)	1926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 확충	1957
57.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959
58. 영림계획(자율)	1968
59.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73
60.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1978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89
61. 임산소득증대(자율)	1991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경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2. 임산물이용가공 및 합판보드류시설지원(자율)	2017
① 임산물 이용·가공시설지원 ② 합판·보드류시설지원	
63. 산림조합육성(공공)	2034
64.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3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III. 인력육성	2083
65.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85
66.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 기술지도(공공)	2090
IV. 산림복지 기능증진	2102
6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103
68. 산촌종합개발(공공)	2110
V. 산림자원조성	2119
69. 해외조림사업(자율)	2121
70. 산림조성(공공)	2128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산림생태보전	

I. 생산기반확충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과(과장 이덕로, 농업 사무관 양주필)입니다

1. 목적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보급에 필요한 육채종시설 및 육종소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자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채소, 화훼, 과수, 버섯 부문 등의 종자개발
-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 중심으로 품종개발을 지원하여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체 및 개인육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도모
- 종자사고 예방과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자 품질관리 및 품종육종기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2004	
사업량	436품종 (100,331평)	86	60 (1,580평)	80 (미정)	미정	미정	
사업비	계	백만원 29,007	4,286	3,486	4,150	9,286	25,714
	보 조	-	-	-	-	-	-
	용 자	20,135	3,000	2,440	2,905	6,500	18,000
	지방비 자부담	- 8,872	- 1,286	- 1,046	- 1,245	- 2,786	- 7,714

주) 사업량의 ()내서는 육채종시설자금 지원규모임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자금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육종가

(2) 지원단가

- 육채종시설 : 신청시설별로 기준단가 적용
 - 저온저장고 2,000천원/평, 일반창고 700천원/평, 실험실 1,600천원/평, 온실 1,300천원/평, 망실 및 비닐하우스 50천원/평, 첨단유전공학기자재 및 종자품질관리 기자재 시가 적용
- 신품종육종 : 품종당 50백만원이내에서 실제단가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4) 지원내용

사업구분	사 업 내 용	지 원 기 준
○ 육채종 시설· 기자재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 시설 온실, 실험실, 망실 및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 첨단유전공학 기자재 고속원심분리기, 식물배양기, 전기영동기 등 ○ 종자품질관리 기자재 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업체의 신청 시설·기자재 별로 기준단가 및 시가적용 용자지원
○ 신품종 육종	○ 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품종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용자지원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4,150	2,905	-	2,905	-	1,245
육채중시설 · 기자재	미정	150	105	-	105	-	45
신품중육종	80품종	4,000	2,800	-	2,800	-	1,200

주)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과(02-503-728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정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주시설 소재지 시·군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 대상자는 제한 또는 제외
- 최근 1년간 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사업도중 사업을 포기한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미시행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불용시킨 사업대상자, 사업도중 사업계획 변경이 많은 사업대상자는 제한 또는 제외
- ※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3조에 따른 신용조사 결과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는 제외

(2) 우선순위

- 종자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소종자 업체별로 지정된 전문작물의 신품종 개발
- 육채종 시설사업은 저온저장고, 실험실, 온실 시설 우선
- 최근 3년간 종자수출액이 많은 사업대상자
-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개인 육종가
- 조생양파, 방울토마토, 당근, 시금치의 채소종자와 화훼종자 신품종개발
- 기타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농림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3)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자체 경영계획에 맞게 품종의 연차별 개발 계획, 시설·기자재의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종자산업관련협회장의 추천을 받아(개인 육종가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음)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별로 당해 품종의 연차별 개발 계획, 시설·기자재의 용도, 융자담보 능력유무 등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 사업대상자를 확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가 자체 경영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대상자 선정후 사업변경 등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지원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사업(첨단유전공학기자재등)을 신청할 경우는 기자재공급업자 등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발생시 당해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시·도지사는 변경승인 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 조달 및 투입내역 등 사업의 실적(금융거래자료,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 등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자부담 비율제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부담 미사용, 사업계획의 부당변경 및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 사업자는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목적의 사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 2000.12월말까지[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2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주 시설 소재지의 해당 시·군

나.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
육종가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2001.1.20)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서식 준용을 준용하되 세부사
업계획서는 농산51142-10341(2000.11.29)호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거(필요시)등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절차 : 5 <추진체계> 다항 내용과 동일. 다만,
종자산업관련협회장의 추천서(개인육종가의 경우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사업도 신청할 수 있음
- 2002년이후 융자금 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업체· 농가수 ()
				계	용자	자부담	
합 계							

- 주) 가. 세부사업은 “육채종 시설”, “육채종 기자재”, “신품종 육종”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의 단위사업명(시설명, 기자재명, 품종명)별로 기재
-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종, 평, 대 등으로 기재
- 다.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사업별, 시군별, 사업자별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라. 업체 수, 농가 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 업체·농가수를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추진상황 보고

- 1. 사업지역 :
- 2. 사업자 :
-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사업진도		계		읍자		자담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읍자	자담	계	읍자	자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과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종, 평, 대 등으로 기재
- 다. “세부사업별”란은 “육채종 시설”, “육채종 기자재”, “신품종 육종”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의 단위사업명(시설명, 기자재명, 품종명)별로 기재
-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공사착수, 발주, 기기 설치, 교배, 채종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 마. “사업비집행”는 계획대비 보고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사업별, 시군별, 사업자별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4. 금후 사업추진일정
-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3호서식)

총공통-9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업체명 또는 농가명	대표 ()의 농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세부 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 A)	계획				집행실적(정산)						착공 일	준공 일		
						계	국고 보조 (C)	융자	지방 비보조	자부담	계	국고 보조 (D)	융자	지방 비보조	자부담			대비 (D/ C)	차년 이월액
합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과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종, 평, 대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육채종 시설", "육채종 기자재", "신품종 육종"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사업의 단위사업명(시설명, 기자재명, 품종명)별로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시설, 기자재, 품종명)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세부사업별, 시군별, 사업주체별(업체, 개인 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적성, 첨부

여 백

Ⅱ. 사육기 반확충

여 백

19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 확충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정동홍, 사무관 권동태, 최준열, 조병임)입니다.

I. 조사료생산기반시설

1. 목 적

-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 시행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한우·젓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유희지 및 벼짚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공급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2004	
사업량(개소)	66,630	75,838	82,916	60,057	71,470	214,410	
사 보 조 업 자 비 지 방 비 자 부 담	총사업비	52,191	51,086	54,376	42,250	46,350	139,050
	보 조	15,256	16,192	17,128	13,868	14,800	64,500
	업 자	16,397	14,178	15,374	10,970	14,900	24,600
	비 방 비	6,225	5,524	3,185	1,693	-	-
	자 부 담	14,313	15,192	18,689	15,719	16,650	49,95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조성에 필요한 목로·진입로개설, 용수 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비료대, 벧짚 등 암모니아처리사업
- 기계·장비 기타 : 곤포silage제조사업, silo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등
- ※ 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1> 참조

나. 지원대상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벧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 제주도마을공동목장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경쟁력강화사업,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별표 2> 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
 - └ 융자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 금 리 : 연 5%

라.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사업신청서·우선순위 심사·심의 및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마.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

바. 2001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800	14,900	29,700	-	16,650	46,3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시행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사업비지원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3)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라. 기타사항

- 지방 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
-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비료·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은 <별표 3>에 의하여 추진

- 농촌지도기관 및 관련단체
 -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은 『농가유형별·경영규모별 조사료확보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시·군단위 행정 및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 보급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월 소요액을 시·도로 신청하고 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에서는 월별 소요액을 용자기관 및 시·도에 배정하고 용자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여 지원자금 집행
- 시·도 및 농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자금에 대하여는 정산시 자금회수 또는 집행 제외
 -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별첨[서식2]에 의거 정산실시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하에 사후 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 준용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사후관리기간중 전용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나. 보고

○ 사업계획·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비고
- 사업계획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매년 3. 10한	< 서식 1 >
- 사업추진실적	시·도	매분기 익월 20일한	< 서식 1 >
- 사업추진완료	시·도	이월사업 익년 1.20한	< 서식 1 >

- 1)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추진완료 보고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총괄하여 보고

6. 2002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의 쌀 전업농(생벚짚등 끈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라.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마.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을 규모화·단지화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벚짚등 끈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협업체 · 영농조합법인 · 축협조합 >

-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 · 사료포동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농업회사법인(생벚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공동구매 · 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바. 선정절차

- 시 · 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 · 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 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 도에 보고
- 시 · 군에서는 시 · 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다. 기타사항

- 2001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세부사업내용

1.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
- 진입로(목로)개설 : 목장·초지의 진입로·목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한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영구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생산 이용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 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하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

- 시·군은 농촌지도소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

< 종자공급 >

- [별첨3]의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 비료공급 >

-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수요량을 조사하여 농협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다만, 비료를 공급코자 하는 농협은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를 공급)
 - 보조금은 농협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보조
 - 농가에서 구입한 비료에 대하여 현금지원은 불가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농사용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
 - 종자대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농촌지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주요 사료작물의 파종량 및 시비량(예시)

(단위 : kg/ha)

작 물 명	파종량	기준 시비량 (질소-인산-加里)	가축분 퇴비 사용기준		
			가축분 퇴 비	보충시비소요량	
				질 소	가 리
호 맥	180	150-100-100	4,000	80	54
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	200-150-150	10,000	140	155
수수, 수단그라스	50	200-150-100	7,500	125	101
연 맥	180	150-150-100	4,000	80	74
유 채	20	150-150-100	4,000	110	54
옥 수 수	30	200-200-150	7,500	125	101

- 시장·군수는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가급적 가축분퇴비를 사용토록 권장·지도

라. 벧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매년 수립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벧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결정(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과 축협조합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

3. 기계·장비 기타

가. 지원내역 : [별표4] 참조

- 사료작물, 생벧짚 등 곤포silage제조
 - 대상자조건
 - 대상작물 이용면적이 전체 20ha이상의 집단화된 생산지역을 확보
 - 재정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외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확보
 - ※ 대상자조건에 미달되거나 확보계획인 사업신청자는 시·군에서 판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조사료 저장용 silo 설치
 - silo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silo 등
 - silo 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칩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 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 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나.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A/S기간이 1년이상인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 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 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별표 2>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	-	80	20	km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km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1km당 9백만원 km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로개설					
조 사 료 생 산	초지조성	-	50	50	50	별도시달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	-	50	-	50	종자·비료대 실소요액
	- 종 자 - 비 료					
볏짚등암모니아처리					암모니아gas·주입비 실소요액 * 비닐구입은 자담	
장 비 기 타	곤포silage	-	-	80	20	<별표 4>참고 1기(50톤)당 5백만원 <별표 4>참고 50평이내(평당30만원)
	silo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보관창고					

주) 세부항목별 단가는 지역실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 단, 초지조성·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조성비용이하로, 종자·비료 및 볏짚등암모니아처리는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

종자공급원칙

종자신청 · 보조사업자가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직접 신청

종자공급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직접공급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축협조합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정산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작물재배)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한국낙농육우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TEL : 02-588-7055·6, FAX : 584-5144)

○ 종자신청지도

- 사업대상자가 직접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 (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대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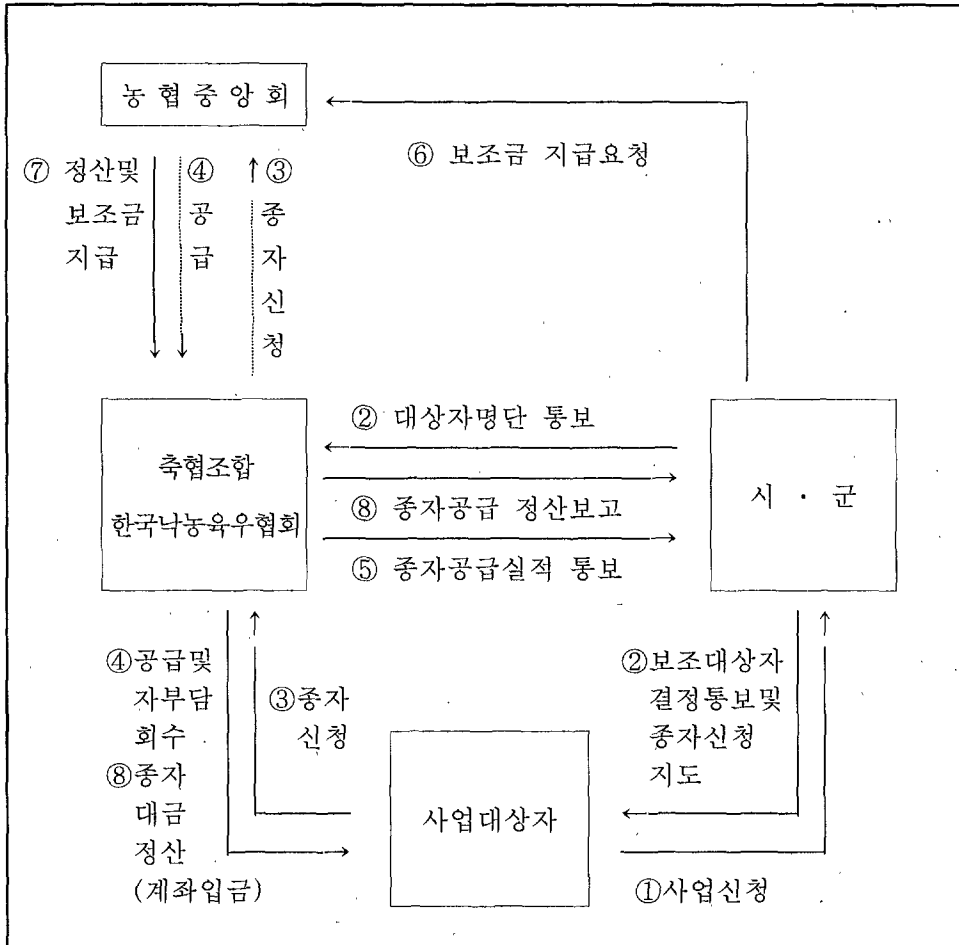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축협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 공급실적을 확인 (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 요청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시장·군수가 통보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단,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 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종자공급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 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종자 공급 체계도



- 주) 1. ----->은 축협조합만 해당됨
 2.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별표 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예시)

작업명	농기계명	규격	예시가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70HP내외	34,000천원	벼농사용 농기계사용 (자력확보)	
경운	플라우	4연	2,200	"	
정지	로타베이터리	200cm	3,300	"	
시비	퇴비살포기	4톤	8,700	"	
파종	파종기	320kg	7,400	"	
방제	동력분무기 (주행형)	400ℓ	2,800	"	
운반	트레일러	4톤	2,600	"	
예취	모우어	2.1m	7,600	"	
집초	레이크	3.0m	3,800	곤포장비로 지원가능	
곤포 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	드럼폭 174cm내외	27,000	
	랩피복기	랩피복기		13,000	
	적재기	적재기		4,500	
합계			116,900		

- 주) 1. 생볏짚 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은 곤포장비만 지원가능
 2. 세부항목별 가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서식 1>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추진실적

○○시·도

(단위 : 호, 천원)

세부사업내용	농가수	물 량	축 발 기 금			자 담	합 계
			보 조	용 자	소 계		
기 반 시 설	목로개설	km					
	용수개발	공					
	전기시설	km					
	부지정리	ha					
	목책시설	km					
	진입로개설	km					
	소 계						
조 사 료 생 산	신규초지조성	ha					
	기성초지보완	ha					
	종 자 대	kg					
	비 료 대	kg					
	암모니아처리	기					
	소 계						
기 계 · 장 비 기 타	곤포Silage	개소					
	사 일 로	기					
	조사료장비	대					
	기 타	개소					
	소 계						
합 계							

주) 농가수 소계는 중복농가에 관계 없이 각 사업별 총 농가수를 기재하되
합계는 중복농가를 제외한 실제 농가수 만을 기재

<서식 2>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고			지방비보조	자부담
		보조	용자	소계		
	(100%)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합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II.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1. 목적

- 사료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사료비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영개선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사료원료 수입자금을 지원하여 국제 사료원료 가격불안에 따른 수급안정과 사료제조업체의 경영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료 수입자금 지원
-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 농림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와 사료자원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2004
사 업 량		56	102	70	130	
사 업 비	계	197,375	58,294	62,566	38,327	
	보 조	-	-	325	-	
	용 자	184,424	53,407	57,107	38,327	
	지 방 비	220	-	195	-	
	자 부 담	12,731	4,887	4,939	-	

※ 섬유질사료제조시설 + 사료원료 수입자금 + 자가배합사료 제조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정상발육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지원대상자

- 축협·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450백만원(사업계획에 따라 1,000백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 지원기준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비 및 시설비 지원

(2) 사료원료 수입자금

○ 지원배경

- 환율 및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불안정에 대응,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
- 배합사료 산업과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자 : 배합사료제조업체

- 농림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를 제한할수 있음

○ 지원조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 자금을 수입사료 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함

(3) 자가 배합사료제조

○ 지원배경

- 대부분 농가에서는 배합사료공장에서 제조한 고가사료를 급여하고 있어 축산물의 경쟁력 저하
 -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비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가축의 생산비중에서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자가배합사료 생산·이용이 필요
 - ※ 배합사료제조업체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옥수수등 수입사료 원료를 '98. 4월부터 농가의 자가배합사료 원료로도 공급가능토록 조정함

○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제조시설 : 430백만원 이내
- 제조장비 : 23백만원(사업계획에 따라 10~40백만원 범위내 신청가능)

○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을 타당성 검토하여 용자 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제조시설 : 건물(창고포함), 기계 및 부대 시설비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제조장비 : 분쇄기, 배합기, 발효기, 교반기, 급이배관, 원료탱크, 콘베어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건축비는 제외)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130	백만원 38,327	38,327	-	38,327		
○ 자가배합사료제조	123	4,457	4,457		4,457		
- 제조시설	4	1,720	1,720	-	1,720	-	
- 제조장비	119	2,737	2,737		2,737		
○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	7	3,150	3,150	-	3,150	-	
○ 사료원료 수입자금	-	30,720	30,720	-	30,720	-	-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사료원료 수입자금 : 연리 8%, 1년 거치 일시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시·도지사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섬유질사료제조시설사업, 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산업)과

- 사료원료 수입자금
 - 농 립 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
 - 농협 중앙 회 : 사료분사
 - 한국사료협회 : 업무부

다. 사업시행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사업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생산자단체, 협업체중 제조기술확보 및 참여농가가 많은 경우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는 자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의 효율성 여부 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를 추천

-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추천자의 사업계획서 및 시·도지사의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신축에서 개축등 주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완료한 경우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2) 사료원료 수입자금

○ 사업비 지원방법(사업비 배정)

① 농 립 부

- 사료협회와 농협(지역조합 포함)의 최근 2년간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로 배정

② 농협중앙회

- 농협 및 계열화 업체의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③ 한국사료협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배정비율은 50:50으로 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에서의 업체별 배정은 각각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비율에 따라 배정

○ 추진일정

- 농림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2001.1.31)
- 농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월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장(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게 통보(2001.2.15)하고, 1부를 농림부에 제출
- ※ 농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희망시기 및 금액을 사전 파악·조정

(3) 자가배합사료제조사업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 자가배합사료 이용능력, 사업의 효율성 여부등을 실제조사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 남은음식물사료제조를 할 경우에는 남은음식물 공급자와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시·군에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 1일 3톤이상 남은음식물 확보가 가능한 자

※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조합원 수, 가축사육두수)
- 사업계획(사업비 조달 및 투자계획, 자가배합사료 생산능력, 원료 확보방법, 자가배합사료제조방법, 사업수지 분석, 담보능력 등)
- 시·도지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남은음식물사료제조 대상은 동일 기초자치단체내에 기 선정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료확보차원에서 신규 추천을 지양할 것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 검토내용을 종합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별 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우선순위 >

- ① 원료의 자체확보 및 계약등으로 원료확보가 가능한 자
- ② 사업자 부지확보 및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자
- ③ 사업대상자중 영농조합법인·협업체를 우선 지원

○ 대상자 확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상황과 사업추진여건, 시·도별 가축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점검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조정, 신축에서 개축, 제조장비 및 시설의 변경등 주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주관기관에서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월별로 소요자금을 요구받아 월별로 자금 배정
- 기술지도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 명단을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하고 기술지도 협조요청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업대상자를 통보
 - 축산기술연구소는 남은음식물사료의 제조공정, 사양관리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 및 시·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시·도에서 기술지도 요청시에 현지기술지도 협조

< 행정사항 >

(1) 사료제조시설(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사업대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장비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시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시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 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등으로 구분입찰할 경우에는 시·군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함

나.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태를 분기별 1회이상 점검
- 농가자가배합사료제조사업중에서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은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하여 합동 실시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

다. 보고(가26-60)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서식 1>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시·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식 2> :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시·도)
 - 사업대상자는 정산보고시 촉발기금운영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나. 보고(가26-60)

- 농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 자금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에게 이 규정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도록 함
- 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 등은 촉발기금 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999호, '99.9.8)에 따르되,
 - 이 규정에 의한 대출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 가능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1)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사업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

나. 신청자격

- 축협,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우선순위>

- ① 영농조합법인(협업체 포함), 생산자단체, 농가
- ② 섬유질사료의 원료 확보여부 및 용이성
- ③ 사업장 부지 확보유무
- ④ 자부담을 많이 투자하는 자

○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사업비 조달능력·기대효과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대상자 추천
- 농림부장관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와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라.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사료원료 수입자금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 립 부

나. 신청자격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계열화 업체 포함)
- 한국사료협회 회원사

다. 신청절차

- 농협중앙회장 및 한국사료협회장은 사료원료 수입자금의 계속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2001.3.31까지 목적 및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2002년 예산 요구액 및 산출내역, 기타 국제곡물가격 및 수급전망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축산경영과)에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료관리법에 의한 양축용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자
 - 용자후 1년이상 사료제조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자
-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이 농협중앙회장 및 사료협회장에게 지원금액 배정
 - 농협 및 사료협회장은 업체별로 지원규모를 확정·통보

마.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자 신청을 할 수 있음

(3) 자가배합사료제조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농정)과(시·군 경유)

나. 신청자격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협업체, 양축농가

다. 신청절차

- 2001.3.31까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희망자사업 신청(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시·군)
 - 사업대상자별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상자 신청(시·도지사)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절차
 - 시·도지사는 가축의 사육규모, 자가배합사료의 이용능력, 자가배합용 사료 원료 구입 가능성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사업신청 상황과 사업추진 여건, 시·도별 가축사육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부여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 확정

<서식 1>

○○○○ 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사업추진실적(분기)

분 기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실적	공 정 도(%)
1/4			
2/4			
3/4			
4/4			

※ 사업추진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추진 실적란에 기재

<서식 2>

○ ○ ○ ○ 사업완료 및 정산서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계	응자 (축발기금)	자담	계	응자 (축발기금)	자담	
백만원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 시설명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합계									

Ⅲ.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정동홍, 사무관 권동태)입니다.

1. 목적

- 축산시설의 자동화 촉진 및 국내여건에 적합한 기자재의 국산화 개발·공급
- 양질의 저렴한 기자재 공급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쟁력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중심의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축산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추진
- 축산시설 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자재업체의 콘소시엄 구축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97까지	'98	'99	2000	2001	2002-04
사업량		36개소	15	7	4	5	
사업비	계	백만원 7,657	3,021	1,250	686	1,143	
	용자	5,161	2,115	875	480	800	
	자담	2,496	906	375	206	343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 처리기 등)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공장시설 자금지원

(2) 지원대상 : 축산기자재 생산업체

(3) 사업기간 : 2001년

나. 2001 사업비 내용(예산안)

(단위 : 백만원)

년 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축발기금융자	자 부 담
2001	5개소	1,143	800	343

- 업체당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

다. 사업신청

(1) 신청자격

- 기자재 생산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문화된 특정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자
- 연구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술축적이 가능하고 제품의 규격화 및 A/S가 양호한 자

(2)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를 2001.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사업희망자) → 검토후 농협중앙회에 신용조사 의뢰 및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2월15일까지 심사요청(시·도) → 2월말까지 심사(축산기술연구소) → 3월20일까지 사업예산신청(시·도) → 예산배정(농림부)
- 사업희망자는 [별표 1]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한다.
- 시·도지사는 농협중앙회에 사업희망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업계획의 심사를 의뢰한다.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한다.
- 축산기술연구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로서의 지원적합여부를 해당 시·도와 농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사업예산을 농림부에 신청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추진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 점검[별표 2]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전·유용될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규모를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의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여부 확인

나. 자금집행 및 정산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다. 보고(시·도→농림부) : [별표 2]서식

- 사업추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추진 결과보고(사업완료 익년 1월말까지)

6. 2002사업신청 안내

- 사업희망자는 사업시행전년 8월말까지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별표 1]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전화) :
- 사업자 등록증 번호 :
- 주생산품목 :
- 시설규모 : 부지면적 _____ 평, 공장면적 _____ 평
- 설치한 기계·기구명 :

2. 사업 계획

구 분	사업비(천원)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 시설내역별 - 기계·기구별 - 건축공사등			

[별표 2]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정산

1. 일반현황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전화) :
- 사업자 등록증 번호 :
- 주생산품목 :
- 시설규모 : 부지면적 _____ 평, 공장면적 _____ 평

2. 사업 추진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 시설내역별 - 기계·기구별 - 건축공사등						

※ 정책사업 추진결과 사진첨부

※ 이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이상길, 서기관 이재용)입니다.

1. 목 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확대로 오염원 삭감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 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이라한다)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해야할 대상농가에 지원
- '95년말 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 해야할 농가에 지원

※ 汚糞法 제4조의3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은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汚糞法 제2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농림어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1992~1998	1999	2000	2001	2002~2004	
사 업 량	56,582	4,686	3,000	2,500	9,000	
사 업 비	계	789,933	107,250	56,200	36,360	294,240
	보 조	339,197	56,625	18,780	12,108	87,092
	용 자	326,756	30,375	37,420	24,252	207,148
	자부담	123,980	20,250	-	-	-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기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축산분뇨 액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회원 (단,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수거 계약을 체결후 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나) 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등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툽밥제조시설은 산림조합 포함),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액비전문처리업체(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공동시설은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지방자치단체
 - 법인체·한성협동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 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액비저장조(경종농가 포함), 건조장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툽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압률박스), 스키드로드,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축산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공동시설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저장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액비저장조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바큇카, 압률카, 축분·액비살포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압률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드,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 액비전문처리업체는 바큇카, 압률카, 액비살포차량, 압률박스, 액비살포장비, 이동식액비저장조 지원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 정착촌안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생활오수·빗물과 분리된 “축산폐수전용차집관로”와 “축분비료보관창고”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혼합하수관로는 제외)

(라) 톱밥제조시설등 : 공동시설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마)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m²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m²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m²당 사업비단가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젖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

-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평사, 말·시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오리·산양·말 이외 기타가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m²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 ⑤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노후기계설비 보안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건물은 제외)
- ⑥ 나환자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농가중 시설운영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독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툰밥제조시설등 (왕겨팽연화시설)						120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고,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② 나환자 정착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④ 닭 케이지의 경우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무창계사 포함)

⑤ 돼지 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 전체 돈사가 무창돈사일 경우에만 1.4배를 가산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용

⑥ 노후기계설비 보완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건물의 개·보수비는 자부담

3)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툰밥제조시설

- 지원비율 : 보조 30%, 용자 70%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 : 연 4.0%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용자 30%

4)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 10백만원이내(스키드로다는 20백만원 이내)
- 축산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 축분퇴비유통센터(RPC포함)의 왕겨팽연화시설·장비 : 120백만원 이내

(4) 2001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농특회계)		
		보조	용자	계
단독·공동시설	2,480	9,828	22,932	32,760
정착촌구조개선	15	2,100	900	3,000
톱밥제조시설 또는 왕겨팽연화시설	5	180	420	600
합계	2,500	12,108	24,252	36,36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가) 단독시설·톱밥제조시설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나)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 : 시·도지사

※ 사업주관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금집행, 사업지행과 그 지도·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등 본 사업추진상의 제반업무 수행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3)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기간 : 2001.1.1부터 2001.12.31까지(1년)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사업대상자(농가) → 보조사업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시·군 경우 시·도) → 보조사업 교부결정(시·군, 시·도가 시·군 경우 → 사업대상자) → 축산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사업완료(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보조금집행(시·군, 시·도) → 사업실적·정산보고(사업대상자 → 시·군→ 시·도 → 농림부)

(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하여 2001.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1.1.31한 선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 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보조사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에 축산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 기술 연구소·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정착촌은 한성협동회 포함)에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평가의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사육 규모, 축산분뇨(세정수포함) 발생량, 처리시설능력, 운영비 부담등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교부 조건**을 반드시 붙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 신청 및 융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등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 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합리성 있게 검토하여 확정 통지한 보조금교부결정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부득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변경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변경 승인내용을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7)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汚糞法 제24조2의 규정등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이행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은 汚糞法 제26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를 한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8) 축산분뇨처리장비등의 정보자료 제공

- 농협중앙회는 汚糞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의 등록자와 농협중앙회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업체”로 선정한 업체의 각 현황을 시·도, 시·군 및 지역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각각 배부하여 안내

-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는 협회자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기제품질보증 업무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축산기술 연구소 및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 등의 종류별 시공 또는 제조·판매업체, 장비의 제원(처리능력·규격·용량 등), 거래가격,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시·도, 시·군, 지역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배부하여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및 자금계획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기계·장비에 관한 시세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이를 활용하거나 사업대상자에게 알선

(9)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공동시설과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단독시설을 발주하거나 부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농협중앙회의 선정업체,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 및 관련전문기관에서 안내하는 우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법령에 의하는 경우 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체결)
- 본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시에도 이를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의 축산분뇨처리 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위의 우량 유자격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

(10)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 '99.8) 및 “축산폐수정화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자재 및 기계·장비의 규격화·국산화 촉진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규격기준품을 사용하고, 기자재는 지역축협조합 등을 통해 공동구매 장려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나환자 정착촌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성협동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검사시 각각 확인)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검사·정산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11)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사항

- 시·도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설치대상 조합으로부터 축분퇴비를 비료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축산분뇨운반차량, 압플카, 바큇카, 축분퇴비 적재용 파렛트, 운반탱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01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관리방법 등 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및 지역축협·업종조합의 축분 처리기술상담실을 활용
- 농협중앙회는 2001년도 본 사업대상자 교육계획을 2001.2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 이전에 실시
- 시·도는 가급적 汚糞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 시설의 설치 권장(신규 정화처리방류시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
 -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도지사는 축산농가와 작목별 경종농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액비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세부추진사항은 별도시달)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환경부 고시제1999-110호, '99.7.8)

구 분	초 지	농 경 지	
		논	밭
소	520m ² /두이상	990m ² /두이상	640m ² /두이상
젓 소	1,610m ² /두이상	3,080m ² /두이상	1,990m ² /두이상
돼 지	340m ² /두이상	640m ² /두이상	420m ² /두이상

-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톱밥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톱밥 대체 수분조절재 사용의 공법 권장
 - 수분조절재로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는 경우 발효된 수분조절재를 건조시켜 수분조절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기술연구소는 기술지도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
- 표준설계도서 이외의 방법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의 (11)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의하여 汚糞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시공토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후관리 및 사후봉사(A/S)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 정화방류시설과 저장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설치대상자 에게는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저장조를 설치하는 농가의 경우 汚糞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지도·감독 철저
- 스킨드로나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농가에 지원하되 구입기준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트랙타 부착용 스킨드로나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톱밥제조기,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타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99.8)
 - 종류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저장액비화, 통풍식·교반식 축분발효시설)
 - 열람처 : 시·도 및 시·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 환경부('95.11)
 - 종류 :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툽밥도양여과상, 회분식활성오니법 산화구법)
 - 열람처 : 시·도 환경보호과에 비치분 열람

※ 시·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을 매 반기별로 집계보고

다.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1) 적용 원칙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2001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규정과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2)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3)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말 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용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5일까지 농림부(축산정책과)에 자금을 배정요구
 - 보조금 및 용자금 구분 기재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를 종합하여 농림부(축산정책과)에 보조금 및 용자한도액을 매월 배정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용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요구
 - 다만, 사업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요구 가능
- 보조금과 용자한도액은 매달 25일까지 농림부에 도착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4)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3·4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3·4>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및 한국가축분뇨자원화협회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 2개이상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의 가격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세조사결과등을 근거로 하여 축산분뇨처리의 시설 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보조·융자사업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내역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국고 보조 30%이내, 융자 70%(정착촌구조개선은 국고보조 70%, 융자 30%)의 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만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단가와 개소당 사업비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을 지켜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 단가가 낮을 경우는 낮은 가격의 공사단가를 적용)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검정 및 정산(자부담분 포함) 임무가 있으므로, 특히 융자금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농협조합이 대출을 취급했다고 하여 검정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유용·전용하거나 허위, 과도 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융자금을 지급받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단,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정착촌구조개선사업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지방비를 50%이상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지원이 가능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자부담분 포함)에 충족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조치
 -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2001.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동상태 등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회수 등 적절히 조치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계·장비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 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2)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2001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중간실적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실적보고 ○ 2000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01.3.31한 2001.6.30한 2001.12.31한 2002.1.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 " "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 별지 <서식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반기) 	2001.6.30한 및 12.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별지 <서식 6>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그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1) 단독(개별)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할 축산농가
- 축산분뇨시설을 1996.12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 축산분뇨 액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회원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
 - 공동시설은 1996.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액비전문처리업체 (축산폐수 수거 축산농가와 액비저장조 설치 경종농가가 확보되어야 함)

(3) 정착촌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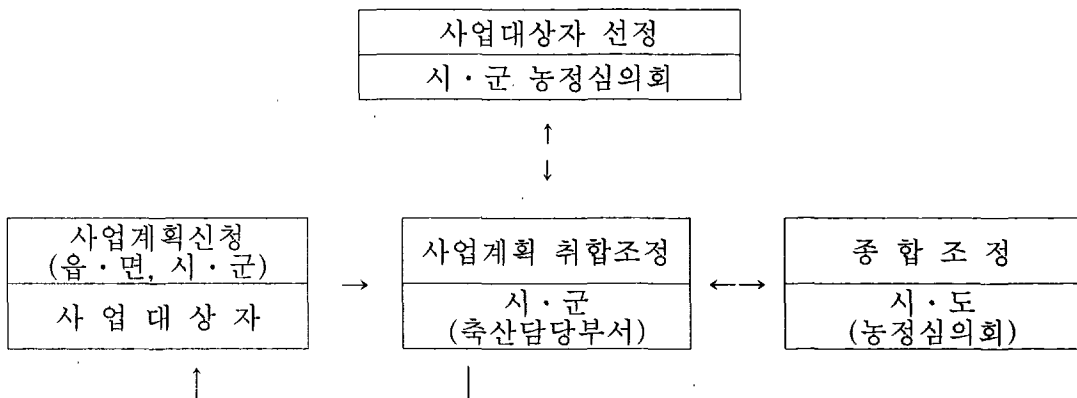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또는 축산농가

다. 신청절차

(1) 단독시설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01.1.20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2001.2.28까지 제출
- 시·도는 2001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1.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확정된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2001.12월말까지 시·도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순위에 따라 2002.1.1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2)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 등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2001.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1.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단독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2001. 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2002.1.1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 : 보조 30%, 융자 7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4.0%

마.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과 첨부서류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본 사업지침에 의함

사. 기타사항

- 2001년도 본 사업지침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신고기관
 - 중 양 : 환경부 생활오수과(02-504-9255, 500-4296)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시·군 : 환경담당부서

7. 2001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단독·공동시설				정착촌·통합제조시설				합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보조	유자	계		국비보조	유자	계		국비보조	유자	계
부산	1	3	7	10	-	-	-	-	1	3	7	10
대구	5	53	123	176	-	-	-	-	5	53	123	176
인천	4	47	111	158	-	-	-	-	4	47	111	158
광주	3	7	15	22	-	-	-	-	3	7	15	22
대전	1	2	5	7	-	-	-	-	1	2	5	7
울산	3	5	13	18	-	-	-	-	3	5	13	18
경기	507 (10)	1,860 (90)	4,340 (210)	6,200 (300)	-	-	-	-	507 (10)	1,860 (90)	4,340 (210)	6,200 (300)
강원	151 (10)	579 (90)	1,351 (210)	1,930 (300)	-	-	-	-	151 (10)	579 (90)	1,351 (210)	1,930 (300)
충북	118 (10)	462 (90)	1,078 (210)	1,540 (300)	-	-	-	-	118 (10)	462 (90)	1,078 (210)	1,540 (300)
충남	463 (10)	1,701 (90)	3,969 (210)	5,670 (300)	-	-	-	-	463 (10)	1,701 (90)	3,969 (210)	5,670 (300)
전북	266 (10)	993 (90)	2,317 (210)	3,310 (300)	-	-	-	-	266 (10)	993 (90)	2,317 (210)	3,310 (300)
전남	381 (10)	1,407 (90)	3,283 (210)	4,690 (300)	-	-	-	-	381 (10)	1,407 (90)	3,283 (210)	4,690 (300)
경북	210 (10)	792 (90)	1,848 (210)	2,640 (300)	-	-	-	-	210 (10)	792 (90)	1,848 (210)	2,640 (300)
경남	279 (10)	1,041 (90)	2,429 (210)	3,470 (300)	-	-	-	-	279 (10)	1,041 (90)	2,429 (210)	3,470 (300)
제주	78 (5)	276 (45)	643 (105)	919 (150)	-	-	-	-	78 (5)	276 (45)	643 (105)	919 (150)
미통지	10	600	1,400	2,000	20	2,280	1,320	3,600	30	2,880	2,720	5,600
합 계	2,480 (85)	9,828 (765)	22,932 (1,785)	32,760 (2,550)	20	2,280	1,320	3,600	2,500 (85)	12,108 (765)	24,252 (1,785)	36,360 (2,550)

※ ① 단독·공동시설의 사업량은 잠정 계획이며, 사업량은 개소당 평균 15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② ()내서는 액비화사업의 배정액임

<서식3>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 적용 여부(0,X)	비 고
						계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 조	자부담		
						(100%)	()	()	()	()		
						(100%)	()	()	()	()		
						(100%)	()	()	()	()		
						(100%)	()	()	()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 톱밥제조시설(시장·군수), 공동 시설·정착촌구조개선 등(시·도지사)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 구입대상 신품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4>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보조	응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단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합 계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시장·군수) :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톱밥제조시설(시장·군수) :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 공동시설(시·도지사)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정착촌구조개선(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공동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등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용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용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5>

2001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중간·완료 및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비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용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용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용자	국비 보조	용자				
단 독 시 설	자원화 시설																
		계															
	정방 시 화 류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 동 시 설	자원화 시설																
		계															
	정방 시 화 류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비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자담	계	국비 보조	융자	국비 보조	융자			
정 착 촌 구 조 개 선	자원화 시 설																	
		계																
		화 류 설																
	정 방 시	계																
		부 대 기 계 · 장 비																
	소 계																	
툰 밥 제 조 시 설 이 동 식 툰 밥 제 조 기																		
합 계																		

※ ① 1. 한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②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개별·공동시설 구분표시) 및 툰밥제조시설·이동식툰밥 제조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6>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반기)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광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I. 가축계열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한종현), 축산경영과(과장 정동홍, 사무관김동훈)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므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 계열사업체의 신규지정을 지양하고 기존계열사업체의 경영개선 방향으로 추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를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	'99	'00	2001예산안	2002~2004
돼지	사업량	16	6	3(1)	2(1)	
	금액	60,777	15,161	3,398	1,241	
닭	사업량	21	2	-	-	
	금액	64,562	3,497			

※ ()내는 신규선정 업체수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사업기간 : 2001~2002년(신규사업은 2년차로 추진)
-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 자금지원대상자 :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나. 자금지원방법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양돈계열화 사업의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할 경우에 우선 지원
- 민원발생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단 재신청시 대상지이외 사업계획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 계열주체에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요액의 50% 범위내에서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

-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

- 지원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에서 소요되는 종돈입식 또는 자돈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 수수료
- 작성내용 :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두수, 월간 및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연간 종돈입식비, 기타운영사항

- 지원조건 : [별표 1] 참조

다.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개소, 백만원)

	신규사업		계속사업		보완사업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돼지	1	588	-	-	1	653	2	1,241

※ 업체별 지원내역은 별도 통보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02-504-9436)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 (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확보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이며,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경영 및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2)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등을 지도
-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육두수 조절 및 수매·비축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계열주체가 운영하는 종돈장의 관리자와 계열농가는 「양돈전문기술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농가경영기술을 향상시켜야 함.

< 행정사항 >

가. 지원집행 세부요령(사업주관기관)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기술직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기계, 장비구입비 및 사업비 집행시는 관련 증빙자료 비치(축발기금운영 규정 제14조 제7항에 의함)
- 계열주체가 계열회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우)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토목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나. 사업계획변경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계획변경시에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 유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는 '91년 이후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로 하며 자금 상황이 완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별표3)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 대한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년2회이상 계열화사업자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시정지시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라. 보 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계획서	시·도	3. 31까지	별표3
○가축계열화 평가 운영 실태(추진실적)보고 - 미완료된 업체포함	시·도	매분기 익월5일까지	별표3, 별표4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월말까지)→시·도→농협중앙회
사전심사(2월말까지)→시·도(적합 또는 보완된 사업계획)→예산신청
(3월말까지)

다. 대상자선정

(1) 신청자격

- 축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등록된 부화업, 종축업 및 도축업, 축산물종합처리장(육가공업 포함),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업종) 및 중앙회
 - 축산관련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 사업장 건설대상토지가 확보된 자
 -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돼지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육계 :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축장(닭), 육가공장사업중 2종 이상 보유자
 - 기 타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
 - 육계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50만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 생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 계열사업자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격요건 및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협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신청기한 엄수)

(4) 사업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심사위원회 설치.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학계, 농협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협중앙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농협중앙회의 사전심사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가축계열화 사업계획서 사전심사요령”에 의거 실시하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지역주민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농협중앙회장은 심사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합”,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경우 “적합”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완 요청
- 시·도지사는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
 -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보완하게 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동 사유가 충족되기 이전에는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없음.
-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자축구입비 및 사료비 등 계열화사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 신청자격 : 수출업체와 연계한 계열주체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한 계열주체
 - 지원대상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양돈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신청범위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이내
 - 신청방법 : 계열주체는 사업주관기관(시·군 경우)에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사육두수,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등을 제출

(5) 계열화사업자 지정(별표2)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계열화사업 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

라. 기타사항

- 대상축종 : 돼지, 육계(산란계는 제외)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춘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돼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1.5천두×2회×15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 이상(종계 40천수×100수) 농가확보 : 25호 이상
-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돼지 :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
 - 닭(육계) :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 종돈장 시설 ○ 종계장과 부화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 8%(농·축협등 생산자단체 5%)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계열주체사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주체직영 비육돈·육계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가축을 도축 및 가공하여 수출하는 계열주체만 지원
3.계열농가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5%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종합자금 사업과 동일
4.가공시설(육가공공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장시설 및 부대시설 (오폐수처리시설포함) 	“	
5.유통·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판매장 및 부대시설 ○ 냉장·냉동·물류등 유통·판매시설 	“	부지·건물 구입비 및 임차료는 제외
6.계열화사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 자돈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액 50%이내 - 연리8%, 2년이내 상환 	

- ※ 1.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2. 닭계열화사육비는 2002년부터 지원계획임(수출용 닭을 생산하는 계열주체를 우선지원)

[별표2]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사업장소재지			
주사업내용			

위 업체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2001. . .

사업주관기관의 장 (인)

[별표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원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년도				()년도			
			합계	유자	자담	합계	유자	자담	진척도 (%)	합계	유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 완료분은 실적으로 하여 계열주체별로 작성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추가지원분 공란에 추가 기재
 ○ 생산기반시설,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 완료분은 실적으로 기재하여 계열
주체별로 작성

○ 양돈의 계열농가호수는 번식 또는 비육농가로 비고란에 구분하고, 자축공
급란에 번식농가에는 종돈공급두수, 비육농가에는 자돈공급두수를 기재

[별표4]

계열화사업추진실적보고(추진실태점검)

1. 현 황

- 지정 년 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실적(기간 : -)

사업명	사업량	완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당 기 실 적				누 계 실 적				비고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 주) ○ 미완료 사업분은 계획으로, 기지정완료분은 실적으로 하여 계열주체별로 작성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추가 지원분 공란에 추가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실적(기간 : -)

구 분		()년도 계획		당기실적			누계실적			비 고
		사업량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사업량	비율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가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II. 경주마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이상길 사무관 이흥철) 입니다.

1. 목 적

-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경주마 자급도 제고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 경주마 생산농가의 역할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7	'98	'99	2000년	2001	2002-2004
사 업 량		721두	67	77	183	212	522
사업비	계	19,763	5,621	2,995	7,179	6,988	24,075
	용 자	13,833	3,935	2,365	4,941	4,967	14,325
	보조(국고)	-	-	-	300	221	600
	지 방 비	-	-	-	300	221	600
자 부 담		5,930	1,686	630	1,638	1,579	8,55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사업기간 : 1년

○지원대상

-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경주마 생산자협회

○지원내용

- 종빈마,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조련시설, 장비 및 기타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1] 참조),

○지원규모([별표 1] 참조)

- 개별농가 : 호당 3억원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등 : 자기자본의 200%이내
-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6억원이내(보조 3억원, 용자 3억원)
- 농·축협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지원조건([별표 1] 참조)

- 지원조건 : 용자 70%, 자담 30%. 단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은 보조 30%, 용자 30%, 지방비 30%, 자담 10%
-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후 10년 균분상환
(단, 종빈마도입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5%)

나. 2001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기금)	보조(국고)		
계	50호	6,988	5,188	4,967	221	221	1,579
종빈마 도입 (제주마 제외)	212두	2,138	1,883	1,883	-	-	255
사육시설등	49호	4,850	3,305	3,084	221	221	1,324

주 :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4-9431)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 한국마사회 : 마사과

다. 사업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가 공동육성조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검토를 받아 시장·군수 주관하에 추진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업양축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농가에게 소액 분산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월별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의함

○기 타

- 대구형 재경지정리 지역은 정책자금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받·산지등 보다 후위순위로 인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 회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공동육성 조련시설	2001년	2008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5조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2월말까지	
○사업추진실적	시·도	반기별	

6. 2002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나. 신청자격

- 종빈마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농·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 구성원의 2/3이상이 해당 축종 사육경력 3년이상이어야 하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 시·군·구 농발심의위원회 심의후 대상자 선정
- ※ 사업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조치
 - 한국마사회는 중부지원 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라. 구비서류

- 시행지침서에 의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통합신청서

마. 선정 우선순위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의 중부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 방목장(600평 이상)을 많이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별 표 1]

경주마 생산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융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제주마제외)	90	10	신규 5두이내 기존 10두이내	12,000 천원/두	○자금지원한도 : 11백만원 -도입단가가 120만원 이하일 경우 투자비율 준수
○기 반 · 시 설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70	30		100백만원/ km 45/km 30/1개공 5.5/km	○노폭 4m, 포장 3m ○노폭 4m ○한전산출실비 적용 가능
○사 육 시 설	○마 사	70	30	4.5평/두이내	900천원/평	○사육규모(확보계획두수포함) ×4.5평이내에서 지원가능
	○관리사	70	30	15평/호이내	1,500천원/평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15평이내만 지원
	○창 고	70	30	2평/두이내	600천원/평	○사육규모×두당 지원 규모 범위내에서 지원
	○폐 독	70	30	12평/두이내	100천원/평	○12평×마방수 범위내에서 지원
○육성조 련시설	○실내마장	70	30	300평/개소	1,000천원/평	○종빈마 보유두수의 50%규모내에서 지원 ○제주도만 지원 ○폭 15m
	○자동 보행기	70	30	0.17대/두	4,900천원/ 두	
	○약·목욕장	70	30		500천원/평	
	○주 로	70	30		70천원/평	
-공동육성조련시설		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10, 10억원/개소		
○장 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35,000천원/대	○2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료정지)	70	30	1대/호	1,300천원/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등 기타장비	70	30			

- ※ 조사료생산관련사업비(초지조성 및 장비포함)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원
- ※ 상기 지원기준 및 세부사업 이외에는 지원 불가
- ※ 신규참여농가의 경우 육성조련시설 및 장비지원은 2년차이후 지원
- ※ 지원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담 추진
- ※ 기 지원실적을 포함하여 호당 3억원 초과 지원 불가(공동육성조련목장은 제외)
- ※ 지방비 보조가 있는 경우 투자비율조정 가능(단 융자는 70%초과 못함)
-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실적 보고

1. 투자실적

구 분	사업 대상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종빈마도입									
기 반 시 설									
사 육 사 설									
조 련 시 설									
장 비									
합 계									

2. 사육실태

구 분	개별농가		축협, 법인등		합 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초지보유(ha)						
사육두수(두)						
자마생산(두)						
경주마공급(두)						
사업대상자수(명)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 및 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소계 ○○○ ○○○						거래처등 기타필요한 사항
○○○○	소계 ○○○ ○○○						
○○○○	소계 ○○○ ○○○						
합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정동홍, 서기관 노수현)입니다.

I.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 사업 목적

-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차별 예산 및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	'2000	2001	2002~4
사 업 량	-	112,150두	112,150	417,000	530,000	
사업비	-	백만원 490	11,736	62,739	77,220	
- 촉발	-	490	9,494	54,399	69,820	
- 지방비	-	-	1,121	4,170	3,700	
- 자부담	-	-	1,121	4,170	3,7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농협중앙회로 이관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세부시행요령은 별도시달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계약의 체결

○ 계약자격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 암소 사육자인 경우, 단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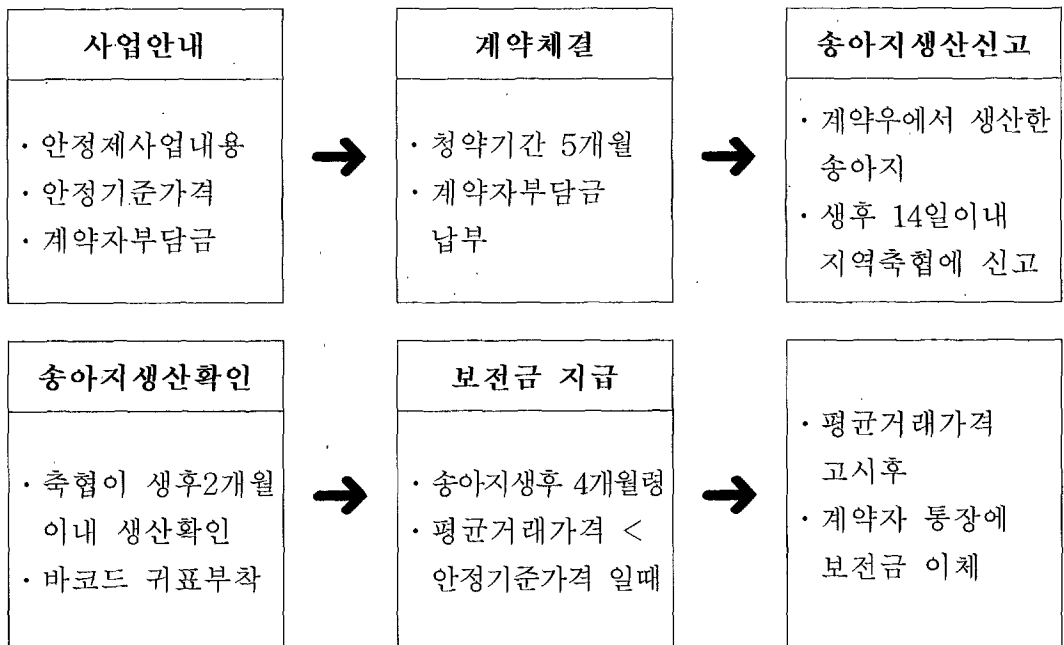
○ 계약기간 : 2001.1.1일(2001.1.1전 계약시)이후 또는 계약일로 부터 2001. 12월말까지

- 청약기간 : 2000. 11. 1 - 2001. 3. 31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

□ 안정기준가격과 보전금 지급한도액 등 결정·고시

- 2001년도 안정기준가격 : 1,000천원
 - 송아지의 생산 여건 및 수급사정, 송아지생산비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송아지의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가격을 설정
 - 안정제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고 시장·군수 및 지역축협장이 공고
- 2001년도 두당보전금 지급 한도액 : 250천원
- 계약자부담금
 - 계약생산송아지 1두당 1만원
 - 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부담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한우암소 사육자가 농협에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약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 납부

※ 업무추진절차



나. 2001년도 사업비 예산내용(안)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농가
			계	보전금	관리비		
계	530천두	77,220백만원	69,820	63,585	6,235	3,700	3,700
관리비	-	6,235	6,235	-	6,235	-	-
보전금	530	70,985	63,585	63,585	-	3,700	3,700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기관

-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농가계약, 계약암소 및 계약송아지 관리, 보전금 소요액 계산 등
- 협조기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전국한우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
- 시·도 : 축산담당과

다. 사업시행

□ 사업안내

- 농림부장관은 안정기준가격과 계약송아지 부담금(계약자 부담금)을 사업개시전까지 발표
- 시장·군수와 지역축협장은 청약기간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의 계약 내용 공고 및 홍보
 - 사업(계약)기간, 청약기간, 사업대상가축, 안정기준가격 및 계약자부담금 등을 공고하고 소사육농가에 대한 홍보실시

□ 계약체결 (사업개요의 “계약체결“참조)

□ 송아지생산 신고 및 바코드귀표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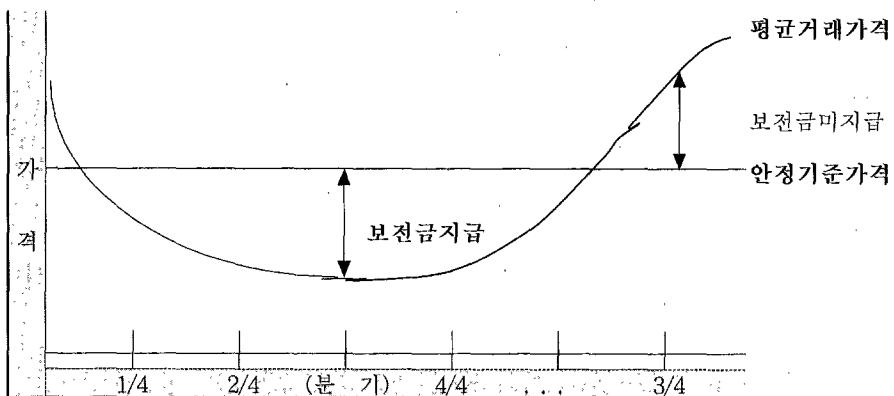
- 계약을 체결한 지역축협에 송아지 생후 14일이내에 신고(전화 또는 구두 신고 가능)
- 송아지 생후 2개월이내에 지역축협에서 확인
 - 송아지안정제 계약압소와 송아지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를 확인하고 바코드귀표 부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송아지의 시장 실제거래가격을 나타내는 지표가격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를 대상으로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산출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 조사지침에 의한 가축시장에서 해당분기내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이를 평균하여 산출
- 농림부에서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

□ 보전금 지급

-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압소로부터 계약기간내에 태어난 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송아지(4-5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보전금 지급한도(250천원)내에서 지급



- 축협조합장이 보전금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소요액을 확인한 후 정부부담금을 산정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급신청
 - 정부부담금 비율 : (보전금지급한도액 - 농가 및 지자체 부담금) ÷ 보전금지급한도액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지역축협에 보전금 지급을 통보하여 지역축협조합장이 계약농가의 통장에 보전금을 입금조치
-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회복시까지 지급 유보
 - 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시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압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 송아지에 바코드 귀표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압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압소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 사진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 세부사업 실시요령은 별도로 정하여 시달

가. 사후관리

- 안정제자금관리 : 지역축협조합장은 안정제자금 운영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제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나. 보 고

-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관련한 전산입력보고 등 세부요령은 추후 시달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담당부서

- 2001년과 동일

나. 사업시행기간 및 청약기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02. 12. 31
- 청약기간 : 2002. 1~ 3월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지역축협

다.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우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법인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 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 단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암소

라. 계약자 부담금

- 계약생산 송아지 1두당 1만원
 - ※ 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부담금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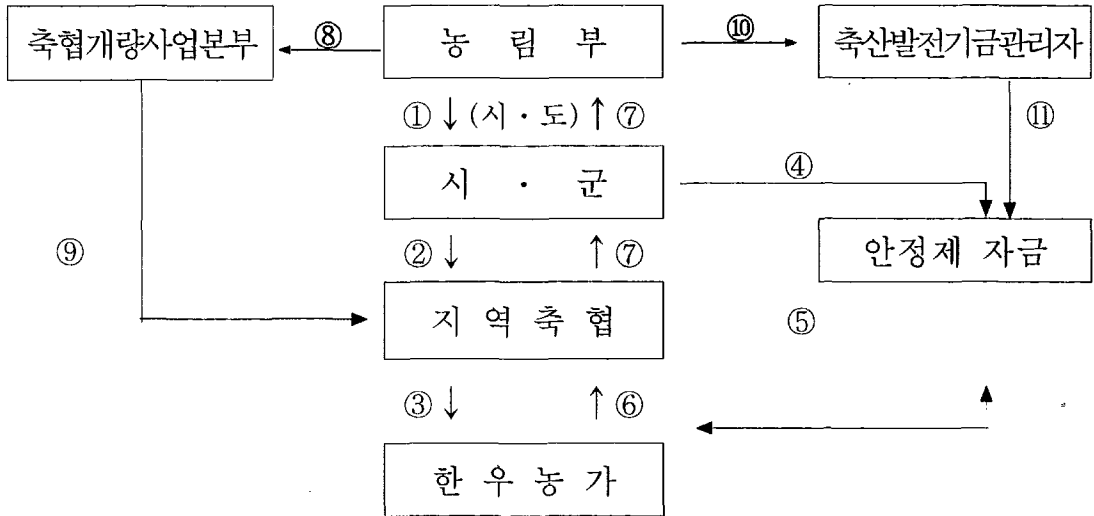
마. 2002년도 안정기준과 보전금 지급한도액

- 안정기준가격 : 별도알림
- 2002년도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 알림

아.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등 실시요령

- 2001년도 사업시행내용 참조

< 사업추진체계 >



- ① 사업시행지침시달, 안정기준가격통보, 보전금 및 관리 수수료 배정
- ② 보전금 지급액 확정 및 지급통보
- ③ 농가계약, 송아지생산신고확인, 귀표장착, 보전금지급등
- ④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입 및 관리
- ⑤ 농가납입금 적립 및 조성자금 운용
- ⑥ 사업참여 신청 및 송아지생산신고
- ⑦ 사업추진상황보고, 보전금 소요액 신청, 귀표신청, 관리수수료 신청
- ⑧ 귀표소요량 통보
- ⑨ 귀표구매 및 공급
- ⑩ 보전금 소요액 및 관리수수료 배정 통보
- ⑪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배정

II. 한우 다산장려금

1. 목적

- 한우암소의 비육출하를 억제하여 송아지생산을 유도
- 한우번식 사업을 권장하여 한우사육 기반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송아지 산차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지원으로 다산 유도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과 연계한 다산장려금 지급으로 소 증식 효과 거양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0	2001	2002-2004
한우다산장려금	4,000	32,3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및 시기

- 지급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제 (이하 “안정제“라한다)에 가입된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 쌍태송아지 생산시 송아지 1마리만 생산한 것으로 간주
- 지급 대상측 확인 방법
 - 소전산화사업조사표, 기초·혈통·고등등록증 및 기타 기록에 의하여 연령이 48개월령 이상인 경우는 치아감정없이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혈통등록우 및 고등등록우는 등록우관리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우 개체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산차를 확인하되 유산의 경우에는 산차에 포함되지 않음(사산의 경우는 산차로 인정)
- 기록에 의한 산차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암소의 우치가 유치(젓니)에서 영구치로 바뀌이후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 3산이상으로 간주

○ 지급시기

- 2001.1.1이후 3산이상 송아지 생산시 지급
 - 송아지생산시 안정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 불가, 다만 전년도 안정제사업 가입암소가 송아지 생산당시 2001년도 안정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청약기간내 추후 가입시에는 장려금 지급

나. 지급금액

- 3-4산 : 200천원
- 5산이상 : 300천원
 - 기록에 의하여 5산이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다.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한우다산 장려금	136천두	백만원 32,300	32,300	32,300	-	-	-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기관

- 사업주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 사업시행 : 지역축협
- 협조기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한국중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
- 시·도 : 축산담당과

다. 사업시행

송아지 생산 신고

- ①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송아지 생산후 14일 이내에 관할 축협에 송아지 생산신고
- ② 지역축협담당자는 송아지 생산농가로부터 송아지 생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송아지가 다산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농가에 문의하거나, 안정제사업 계약서상의 생년월일 등으로 잠정 확인
- ③ 농가 문의 또는 안정제사업 계약서의 연령등에 의해 다산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추정될 경우 서식1의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장」에 농가명, 안정제사업계약번호, 귀표번호, 분만일 등 개략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서식2의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서」에 농가현황 및 어미소귀표 번호 기재 작성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① 송아지생산 신고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지역축협에서는 관할시·군(읍·면)담당공무원과 함께 확인
 - 시장·군수는 시·군 또는 읍·면별 담당자 지정

- ② 지급산차·확인 :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가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혈통 등록우 또는 고등등록우일 경우에는 등록우관리 전산 프로그램에 송아지 생산내역을 입력하고 “등록우 개체 조회 결과”를 출력하여 확인
- 출력된 “등록우 개체조회 결과”는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확인서 뒷면에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소전산화사업조사표 등의 기록에 의해 확인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 사본을 첨부
- ③ 연령감정 :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가 일반암소(비등록우) 또는 기초등록우인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확인시 어미소에 대하여 연령감정을 실시하고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서식2의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확인서」정리
- 농가, 시·군(읍·면) 및 축협 담당자가 함께 기명·날인
- ④ 지역축협에서는 서식2의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식1의 접수대장 최종정리
- 산차, 송아지귀표번호, 지급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
- ⑤ 안정제사업 계약서에 해당 계약우현황란에 다산장려금 지급여부를 표시 (지급액 기재 및 날인)

□ 다산장려금 지급

- 지역축협에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다산장려금 소요액을 서식3의 「한우다산장려금 소요액 보고」에 의거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
 -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장(서식1) 사본 첨부
- 시장·군수는 지급내역을 점검한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자금요청(서식4)
- 농림부장관은 축산발전기금관리자에게 장려금 배정을 통보하고 배정내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축산발전기금관리자는 조합별로 자금배정
- 지역축협에서는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농가의 계좌에 자동이체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분기별 다산장려금 사업점검 계획수립
 - 시·도별로 관할 시·군 수의 1/4을 분기별로 점검
 - 점검대상 시·군이외의 시·군에서 관련공무원을 차출하여 점검반 구성 (1개시·군에 2인이상 점검반 구성)
 - 점검대상 시·군의 최근 3개월간 장려금 지급압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
 - 500두미만시 20두(10호)이상, 500~1,000두시 30두(13호)이상, 1,000두 이상시 40두(15호)이상
 - 점검결과 농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장려금을 부정지급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회수하고 향후 다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조치
 - 조합에 장려금 지급 제외농가 명부(서식 7) 비치
 - 부정지급 사례발생 시·군조합에 대해서는 다음분기에도 사후관리 점검실시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산장려금 지급내역의 적정성을 서식5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서식 6)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추진기관

- 사업주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 사업시행 : 지역축협
- 협조기관 : 농협중앙회(가축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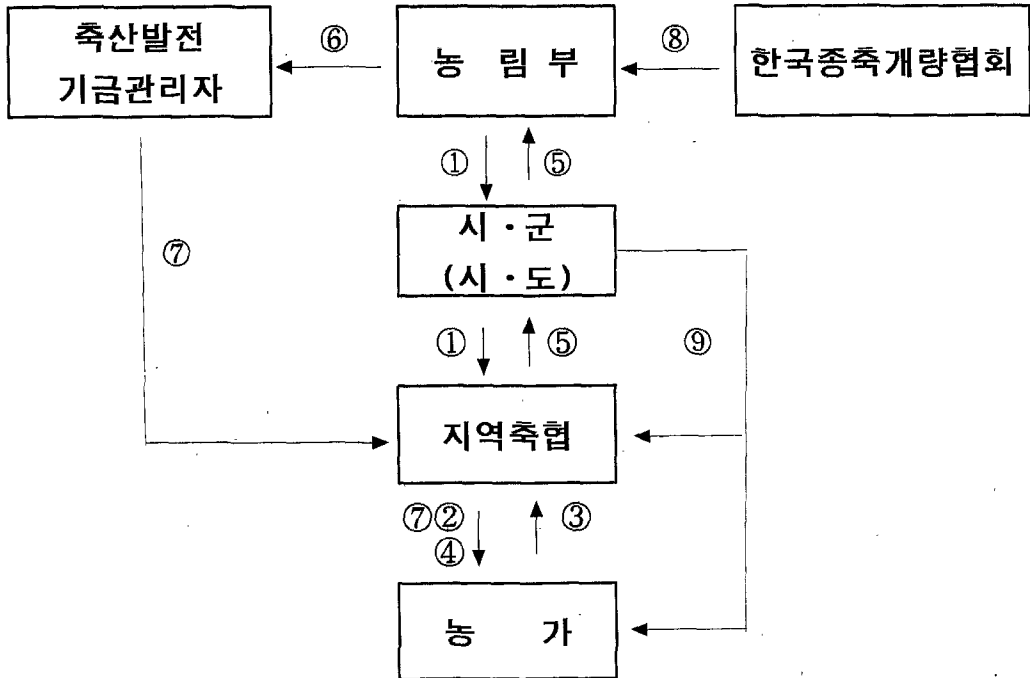
나. 다산장려금 지급대상 및 시기

- 지급대상 : 2001년 조건과 동일 (다만 송아지가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경우에만 지급)
 - 인공수정농가는 인공수정증명서를 보관토록 홍보
- 지급시기
 - 200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한우암소가 송아지 생산시
- 지급금액
 - 3-4산 : 200천원
 - 5산이상 : 300천원

다. 송아지생산 신고 및 장려금 지급절차 등

- 2001년도 사업시행내용 참조

< 사업추진체계도 >



- ① 사업실시 요청시달
- ② 안정제사업 참여계약
- ③ 송아지 생산 신고
- ④ 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 ⑤ 매월, 장려금 소요액 보고
- ⑥ 자금 배정통지
- ⑦ 장려금 지급
- ⑧ 연령감정기준 제정
- ⑨ 장려금 지급 사후관리

<서식2>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상 확인서

1. 농가현황




접수연월		접수연번	
농가명		안정제계약번호	
주소			

* 안정제 계약번호 : 읍·면·동코드 - 계약 일련번호만 기재

2. 송아지생산현황

어미소내역	귀표번호	등록여부	산차또는연령
송아지생산내역	귀표번호	분만일	장려금지급액

* 등록여부란에는 기초, 혈통, 고등 및 미등록 등으로 구분 기재, “산차 또는 연령”은 “()산차” 또는 “우치탈환” 정도는 다음 그림의 번호를 기재(①~③)

① 	② 	③ 
젓니는 빠졌으나 영구치가 아직 나오지 않음	젓니가 빠진자리에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	영구치가 모두 나왔음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장려금 부정수령시 수령액을 변상하고, 향후 다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지합니다.

2001년 월 일

농가명 : (인)

확인자 : 시·군(읍·면) (인)

축협 (인)

※ 첨부서류 : 등록우 개체조회결과

<서식3>

한우 다산장려금 소요액 보고(월)

수신 : 시장·군수

발신 : ○○축산업협동조합장

송아지 생산신고두수	장려금 지급대상 암소두수			장려금소요액
	3-4산	5산이상	계	

※ 첨부 : 한우다산장려금 지급대장(서식1)사본 1부.

<서식5>

한우 다산장려금 지급 사후관리점검표(분기)

○○시·군

○○조합

점검기간 :

농가명	주 소	어미소 귀표번호	송아지 귀표번호	적정 지급여부	비고	농가 날인

* “적정지급여부”란는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표시, 비고란은 부적정사유 기재,
“농가날인”는 부적정 지급 경우에만 실시

위의 점검내용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2001. . .

점검자 소속 성 명 (인)
소속 성 명 (인)

〈 암소 연령감정실무 요령〉

1. 소의 보정

연령감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소를 어떻게 잘보정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 일소로 사용하던 때는 코뚜레를 하고 고삐를 매어 소를 키웠으나 요사이는 번식에 쓰여지는 암소조차도 코뚜레를 하지 않고 여러 마리를 한우리에서 같이 키우는 것이 통상적인 사양관리 방법이다. 때문에 발정이나서 인공수정을 하거나 질병치료, 한우등록시에 소를 보정시키는 일이 가장 괴롭고 어려운 일이 되었다.

소를 보정할 때 질병치료용 또는 인공수정용으로 만들어 놓은 보정틀이나 유도책을 만들어 소를 보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대규모목장이나 공공목장등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놓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에는 한우를 기르는 양축가도 스탠존시설을 갖추고 사료를 주어 소가 사료를 섭취할 때 일제히 목을 거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는 인공수정, 질병치료, 등록시 체척에 사용되고 있으며 소 관리에 매우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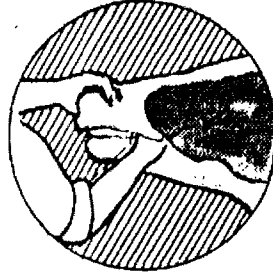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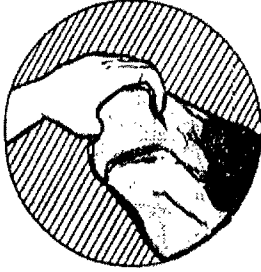
소를 간단히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기다란 장대(4~5m정도)와 밧줄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때에 장대의 끝은 "V"자형태로 만들어서 밧줄을 걸고 한쪽손에는 긴쪽의 밧줄을 잡고 장대와 밧줄을 같이 "V"자고리에 동그랗게 포획고리를 만들어서 소의 뺨에 감은 후에 축사기둥이나 목책에 밧줄을 걸고서 소를 몰아가면서 기둥등에 단단히 보정시킨다.

이때 밧줄은 장대크기보다 길게 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소의 이빨을 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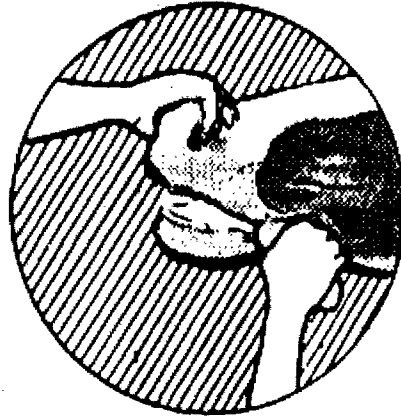
- 소를 단단히 보정시켰으면

① 좌측손으로 소의 코구멍을 잡고 보정시키거나 비압기로 코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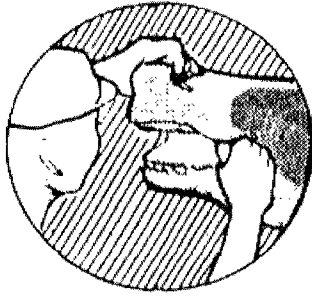


② 왼손이나 오른쪽손으로 혀를 잡고서 옆쪽으로 잡아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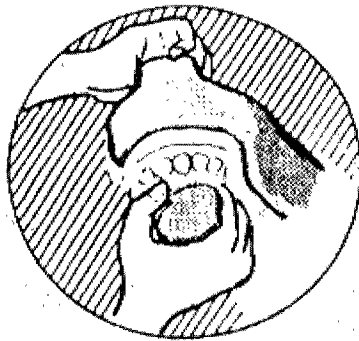
혀바닥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으니 목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편리하다.



③ 입안을 보고 이빨을 확인한다.



④ 한번에 소 입의 아랫입술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보는 방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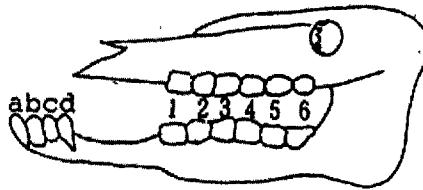


<그림1> 치식의 구조와 이빨에 의한 연령감정

치식 : 유 치 $\frac{0.0.3.0}{4.0.3.0} * 2 = 20$ 개

영구치 $\frac{0.0.3.3}{4.0.3.3} * 2 = 32$ 개

<그림7> 소의 이빨순서와 이름



a-d : 문치 (a:검치, b:내중간치, c:외중간치, d:우치)
 1-6 : 구치(어금니)(1-3:전구치(앞어금니), 4-6:후구치(뒤어금니))



0~2세
유 치



2~2.5세
검 치 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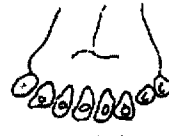
2.5세~3세
내 중간치 탈환



3~4세
외 중간치 탈환



4~5세
우치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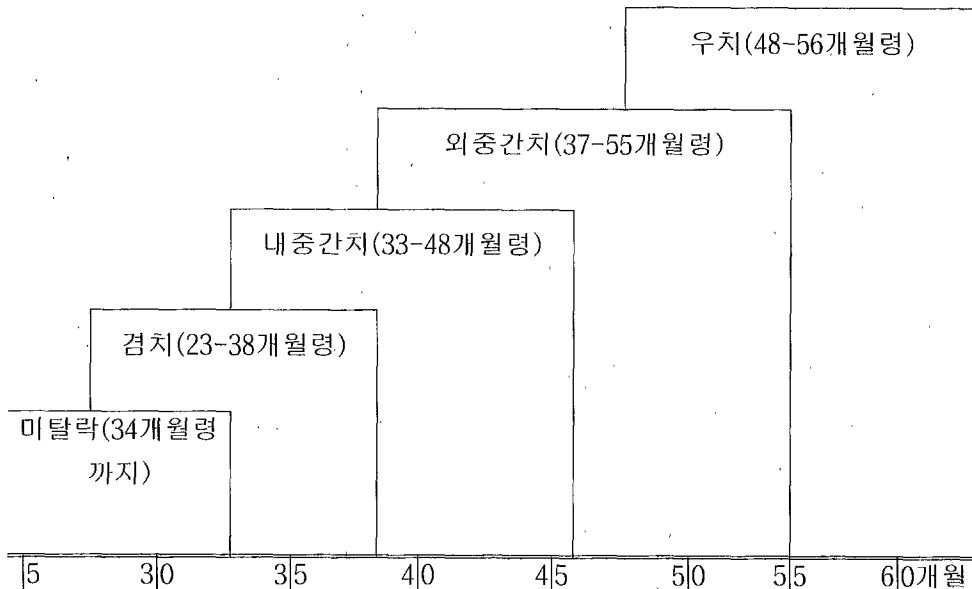


8세 이상
치아마멸 不正形

3. 연령감정방법

- ① 치아에 의한 연령감정은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만 사용하는 수단이며 혈통등록우이상의 등록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치식에 관계 없이 증명서상의 생년월일이 우선한다.
- ② 소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문치(소의 아래젓니 앞이빨 8개)가 안쪽으로부터 차례로 유치(젓니)에서 영구치로 바뀌게 되는데, 바뀐정도에 따라 암소의 연령을 추정하게 된다.
- ③ 문치가 유치에서 영구치로 변하는 가장 빠른 개월령은 23개월령부터 (검치)이며, 문치에서 가장늦게 탈환되는 우치는 48개월령 경에 바뀌기 시작하여 56개월령 사이에는 거의 모든 소의 이빨이 영구치로 바뀌게 되고, 이로서 이빨에 의한 연령감정은 끝나게 된다.

< 개월령에 따른 영구치 출현시기 >



④ 산차와 월령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한우의 초산월령과 번식간격은 24.95개월령 및 13.57개월령이었다. 따라서 제3산차는 $24.95 + (13.57 \times 2)$ 인 52개월령(만 4.34세)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개월령~14개월령 ⇒ 1산째 임신

+10개월 = 22개월령 ~ 24개월령 ⇒ 1산송아지 출산

+12개월 = 34개월령 ~ 36개월령 ⇒ 2산송아지 출산

+12개월 = 46개월령 ~ 48개월령 ⇒ 3산송아지 출산

따라서 대체로 모든 문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 즉 우치가 영구치로 바뀔 시기에 생산된 송아지를 3산이상 송아지로 볼 수 있다.

<표 1> 한우번식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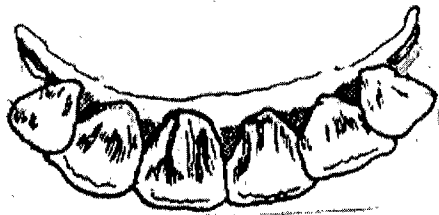
조사년도	조사두수	초산일령/월령	번식간격일/월 (경산우)	3산 추정나이
1986년도		809.36/26.53	383.46/12.67	4.32세
1991년도	4,258	746.00/24.45	373.29/12.23	4.07세
1992년도	14,432	746.81/24.48	389.60/12.77	4.16세
1993년도	10,740	735.52/24.11	386.73/12.67	4.12세
1996년도	27,279	742.06/24.33	363.63/11.92	4.01세
1997년도	76,910	761.10/24.95	413.90/13.57	4.34세

1)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단지 사업보고서

4. 우치의 탈환정도와 산차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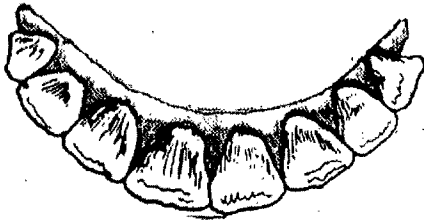
젖니가 2개남아있다 (3산미만) → 장려금 미지급



젖니는 빠졌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3산미만) → 장려금 미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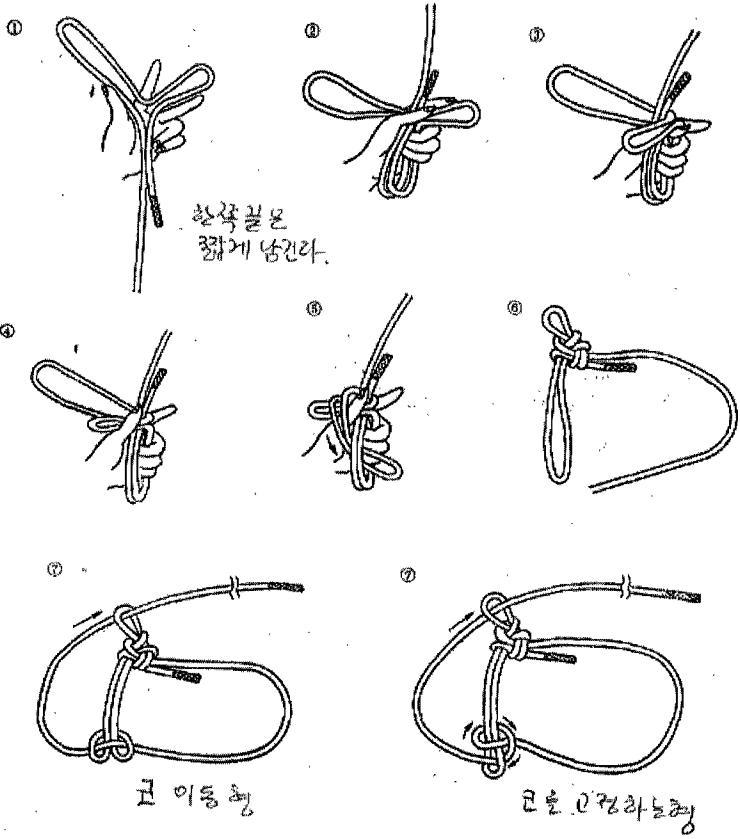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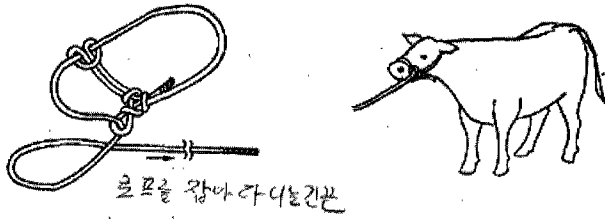
빠진자리에서 영구치가 나오고 있다(3산이상) → 장려금 지급



영구치가 모두나왔다 (3산이상) → 장려금 지급

[참고] 포획용 로프 만드는 법

포획용 로프 만드는 방법



Ⅲ. 한우 거세지원사업

1. 목적

- 한우수소 거세를 촉진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별로 자율적 한우사업추진체 구성을 유도하고 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 동시 추진
 -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공동조직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및 농가중심으로 지원
- 한우사업 추진의욕이 높은 지역 선별지원 및 경쟁환경 조성으로 한우산업 발전 촉진
 - 한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지원
 - 지역내 생산자단체중 우수단체 중심으로 거세사업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99	2000	2001	2002-2004까지
사업비(계)	-	3,600	7,811	
축발기금(보조)	-	3,600	5,475	
지방비	-	-	2,336	

※ 축발기금 70%, 지방비 30%

실제거세 실적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대상 시·군 :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구 한우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시·군

· 번식농가, 비육농가, 조합, 한우협회, 수정사, 수의사, 소비자, 식육판매업자, 기타 한우관련 종사자로 발전협의회 구성

· 한우거세사업,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등 한우관련 정책사업내용 심의

- 대상자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한우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한우송아지를 거세하는 자(조합, 법인체 포함)

※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산자단체 : 조합,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등 포함

○ 지원단가

- 거세우 두당 200천원(축산발전기금 70%, 지방비 30%)

나.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거세장려금	-	백만원 7,811	5,475	5,475	-	2,336	-

※ 실제거세 실적에 따라 사업비 증액가능

< 추진체계 >

가. 사업추진기관

- 사업주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 협조단체 : 한우관련 생산자 단체
 - 조합,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등이 시장·군수로 부터 한우 거세 사업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
- 시·도 : 축산담당과

다. 사업시행

□ 거세사업 협조단체 지정

- 거세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한우사업에 참여 희망농가들을 조직화하여 회원으로 관리
 -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를 지정(서식 2)
 - 번식농가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는 비육농가에게 우선 판매
 - 암송아지도 우수한 개체의 경우 회원농가에 우선 판매
 -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
- 생산자단체는 회원농가에서 생산된 비육우를 일관 판매 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 노력
 - 한우고기 브랜드 개발
 - 대형유통업체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 추진
- 생산자단체는 관할 시·군에 거세사업 협조단체 지정 신청
 -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 농가명단을 시·군에 제출(서식 1,2)
- 시장·군수는 한우거세사업협조단체(이하 “협조단체”라 한다)지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단체를 지정하며, 자조금사업 참여 계획이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
 - 시·군별 복수단체지정이 가능하나 우수한 1개단체 지정권장

□ 거세실시 및 확인

- 거세사업 참여농가는 거세희망시 협조단체에 거세신청
- 협조단체는 시·군과 협의하여 농가별 거세 일정계획을 수립
- 생산자단체는 지역사정에 적합토록 시기별로 거세일정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에 보고
 - 거세두수는 협조단체의 거세우 판매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세시 현장입회토록 조치
 - 업무부담형편을 고려하여 축산관련 공무원 이외 소속공무원을 함께 활용 (읍면, 농업기술센터 포함)
 - 서식6의 거세확인서에 농가, 생산자단체 및 입회공무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
- 거세소에 대해 소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귀 끝부분을 이각기로 절취하여 거세장려금 지급우임을 표시
 - 이각표시를 수용하는 농가에 한하여 거세실시
 - 양돈용 이각기 사용가능 (이각기 사용법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 가축개량 사업소에 문의)
 - 거세우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해 안정제 귀표부착가능 (시군 자율적으로 선택)
- 비육우를 출하단계에서 거세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협조단체는 거세확인대장(서식7)을 작성, 내용을 기록
- 생산자단체는 거세농가관리대장(서식8)을 비치하고 이에 따라 농가관리번호 부여 및 거세농가별 관리카드 작성(서식9)
- 시·군은 협조단체와 협의하여 거세시술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규정을 작성
 - 시행(거세시술시 입회확인)

□ 거세장려금 신청 및 지급

- 협조단체는 시장·군수에게 매월 거세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실적 보고(서식10)
- 사업시행 시·군은 매월 거세실적에 따라 거세장려금 지급소요액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에 신청(서식 11)
 - 거세장려금은 시장·군수가 협조단체를 확정 한 날로부터 거세를 실시하는 농가에 지급
- 농림부장관은 거세장려금을 시·군별로 관할 지역축협에 배정하고 그 내역을 시·도(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거세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 명단과 농가별 지급액 등을 지역축협에 통보(서식 7 활용)
 - 세부 지급절차 및 서식등은 시장·군수가 협조단체 및 지역축협과 협의·결정
 - 지역축협조합은 거세장려금 지급결과를 시·군에 보고

□ 기타사항

- 거세장려금은 변식·비육농가에 관계없이 거세 실시 농가에 지원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와 협조단체 및 지역축협이 협의하여 결정
- 시장·군수는 지역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한우산업 발전방향 심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협조단체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의 사업시행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
- 시·도지사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거세장려금 지급실적을 현지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 보고(서식12)
 - 1분기에 3개 시·군 이상 확인 (광역시 및 제주도는 1개시·군)
 - 1개 시·군당 50두이상, 20~50두, 20두미만 각 5농가 이상 확인(총 20농가 이상)

□ 농협중앙회장(농협 지역본부)은 시도지사의 점검예에 따라 매 분기별 1회 이상 한우거세사업 참여회원조합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식12)

□ 부정지급 사례 발생시 조치

- 농가의 귀책사유인 경우 해당 농가에 지급된 사고두수분의 거세장려금을 회수하고, 향후 거세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조단체는 지원대상 제외농가명부 작성(서식13)

- 생산자단체의 귀책사유인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는 사업협조단체 지정취소

□ 경과조치

- 서식9의 농가별 관리카드를 최초 거세시부터 소급하여 기재
- 거세우에 대한 이각표시는 시행지침을 통보받은 즉시 시행
 - 외관상 거세여부 식별이 어려운 무혈거세우에 대해서는 이미 거세한 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이각 실시

나. 보고

- 협조단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군은 지역 한우산업 발전협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를 통하여 농림부에 변경내용 보고(서식3,4,5)
- 협조단체는 참여농가 변동이 있는 경우 서식2를 참고하여 가입농가·탈퇴 농가를 시장·군수에게 월단위로 보고
- 협조단체는 매월 시장·군수에게 거세실적 등을 보고(서식 10)
-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매 분기별로 현지점검결과 보고(서식12)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회 개최실적을 반기별로 보고(서식14)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나. 협조단체

- 한우관련 생산자단체
 - 조합, 한우협회,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등이 시장·군수로 부터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 단체

다. 지원대상

- 대상 시·군 :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 시·군
 - 번식농가, 비육농가, 조합, 한우협회, 수정사, 수의사, 소비자, 식육판매업자, 기타 한우관련 종사자로 발전협의회 구성
- 대상농가 : 협조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한 계약암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를 거세하는 농가

※ 2002년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에 대하여 거세장려금을 지급하니 시·군 및 지역축협은 농가홍보 철저 바람

라. 지원내용 및 조건

- 거세우 두당 200천원(축산발전기금 70%, 지방비 30%)

마. 사업시행 등

- 2001년도 사업시행 내용 참조

<거세사업 추진계획서작성시 주요 포함내용>

참여농가 현황

- 번식농가수, 비육농가 및 번식·비육 병행농가 수
- 번식우 두수, 비육두수

농가 가입·탈퇴 절차

농가관리 및 지도방법

사업계획

번식우두수	연간송아지 생산두수	연 간 거세두수	연간 판매두수			
			거세수소	일반수소	암소	계

판매처 확보방법 등 판매계획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자조금사업 계획 등

<서식 2>

참여농가 명단

번식·비육 병행농가

농가명	주 소	사 육 두 수			서 명 (날인)	전 화
		번식우	비육우	계		
계						

번식농가

농가명	주 소	번식우두수	서 명	전 화
계				

비육농가

농가명	주 소	비육우두수	서 명	전 화
계				

※ 참여농가 변동이 있을 때 매월 변동사항 보고

※ 번식우 : 1.5세이상 암소, 비육우 : 판매할 송아지를 제외한 수소

<서식 3>

한우거세사업협조단체 지정현황

○○도

2001.

시·군명	생산자 단체명	참여농가수	참 여 두 수		
			번식우	비육우	계

<서식 4>

○○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현황

시·군	구성시기	개최실적(회,시기)	참여인원(명)	비 고

※ 첨부자료 :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현황(서식 5)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현황

○○도 ○○군

구성일시 :

주요참석자 :

(참석자 명단첨부)

협의회 개최실적(이미 구성되 있는 경우 최근 5회까지 기록)

- 개최일시, 참석인원수 및 개최장소 기재
-
-

협의회 운영방향

※ 지역의 한우산업발전방향, 협의회역의 역할 및 각 참여 주체별 기능,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 첨부자료 : 협의회 회의내용(시·도에서 확인·보관)

<서식6>

거 세 확 인 서

농가개요

농가명		관리번호		거세일	
주 소				전화	

사육현황 및 거세두수

사 육 두 수(현지확인 두수)			거세두수		
수 소	암 소	계	유 혈	무 혈	계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농 가 명 : (인)

생산자단체 : (인)

시 · 군 : (인)

<서식 10>

거세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실적 보고

년 월, ○○ 생산자단체

(단위 : 호, 두, 천원)

거세사업 추진현황				거 세 사 업 실 적					
참여 농가수	참여두수			거세농가수		거세두수			
	번식우	비육우	합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유혈	무혈	계	

※ 첨부 : 거세확인대장 사본(서식7), 거세확인서 사본(서식6),
신규사업참여농가 명단(서식2)

<서식 11>

거세사업 추진현황 및 소요액 보고

년 월, ○○ 시·도

(단위 : 호, 두, 천원)

시·군	생산자 단체	참여 농가수	참 여 두 수			거 세 두 수		소요액	관할지역 축협조합
			번식우	비육우	합 계	당월	누계		
		()	()	()	()				

※ 참여농가와 두수는 보고일 현재 총 참여농가 및 두수 기재,
()내는 당월변동 내역 기재, 관할 지역축협조합은 자금배정 받을 조합기재

<서식12>

한우거세장려사업 현지점검결과

보고자 : ○○ 시·도지사 또는 농협중앙회장

○ 보고일 : 년 월 일

현지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점검인원 :

○ 점검농가수 : , 점검두수 : , 사고두수:

점검결과

시·군명 (조합명)	점검농가수 (규모별로 기재)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50두이상: 20~50두: 20두미만:	

<서식14>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개최실적

(년도 반기)

○○ 시·도

시·군	개최실적	개최월일	참석자수	비고
	회			
합계				

※ 첨부자료 : 협의회 회의내용(시·도에서 확인 · 보관)

IV. 우수축생산포상금

1. 목 적

- 국내산 쇠고기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물등급제 정착을 유도하여 고급육생산 유도
- 한우수소 거세를 유도하여 고급육생산기반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축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및 축산물등급제 조기정착
- 계통출하 활성화
-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 구성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94~'98	'99	2000	2001	2002~2004
- 사업량(두)	50,450	27,984	34,200	30,700	
- 사업비 (축발기금보조)	4,368	2,747	4,104	3,853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급대상

- 거세한우를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여 A1⁺, A1, B1⁺, B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

※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생산자에서 제외

<계통출하 방법>

-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한우를 도매시장·공판장등에 출하하는 경우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로부터 우수축생산포상금제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한우를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

○ 생산자 단체

- 지역 농·축협
- 거세사업 참여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로서 시장·군수로부터 우수축생산포상금제협조단체로 지정받은 단체

나. 지급장소 및 금액

- 포상금지급장소 : 지역축협 및 농협
- 지급기간 : 우수축생산포상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금액(두당/천원) : A1⁺, A1등급 : 150, B1⁺, B1등급 : 100

다.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계	보조	용자			
우수축생산 포상금	-	백만원 3,853	3,853	3,853	-	-	-	

<추진체계>

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02-574-2541~3)

다. 사업시행

- 우수축생산포상금제협조단체(이하 “협조단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서식 6의 신청서와 서식 7·8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 1개시·군 관내 생산자단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 2개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생산자단체 : 시·도지사
 -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생산자단체 : 축산물등급판정소
 - ※ 지역 농·축협 및 한우거세사업참여 생산자단체는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

- 협조단체 지정신청을 받은 지정기관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협조단체를 지정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자조금 조성에 적극노력하는 생산자단체를 우선 고려

- 협조단체는 농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7을 참고하여 신규가입·탈퇴 농가를 지정기관에 월단위로 통보

- 협조단체를 통한 계통출하시 서식1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장으로부터 출하축의 거세여부와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을 받아 등급판정 신청시 제출토록함
 - 협조단체는 계통출하시 출하축의 거세 및 생산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서식2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 결과 우수축(A1⁺, A1, B1⁺, B1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서식3의 우수축생산포상금 지급 통보서를 출하자와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축협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

- 우수축생산포상금 대상자는 서식3의 통보서의 발급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우선 자체자금으로 신청 당일 지급
 -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10일 간격으로 1개월이내에 서식4에 의한 우수 축생산포상금신청서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요청
- 지역농협에서는 포상금을 가지급후 즉시 지역축협에 자금지급을 신청하고, 지역축협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포상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
-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으로부터 포상금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개월이내에 송금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시·군)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 각각 협조단체로 지정한 생산자단체를 수시점검하여 계통출하시 출하축의 거세 및 생산자 확인 등을 점검
 - ※ 계통출하시 거세 및 생산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한 생산자단체는 협조 단체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우수축생산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

나. 보고

- 시·도, 시·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우수축생산포상금제 시행협조 생산자단체 지정현황 및 변동사항 농림부에 매월 보고하되, 시·군은 시·도를 통하여 보고(서식 8)
- 포상금 지급결과 보고 :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월별지급 내역을 익월 1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 2002년 부터는 한우거세장려금제와 통합하여 운영

[서식1]

거세 및 생산자 확인 증명서

구분	생산자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출하 두수	품종	거세 방법	거세일	비고

상기인은 우수축생산포상금제 참여 농가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 생산자 단체장 (인)

[서식3]

우수축생산포상금 지급 통보서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출하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 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종 (성별)	지급 금액	포상금지 급조합명

[서식4]

우수축생산포상금 신청서

받음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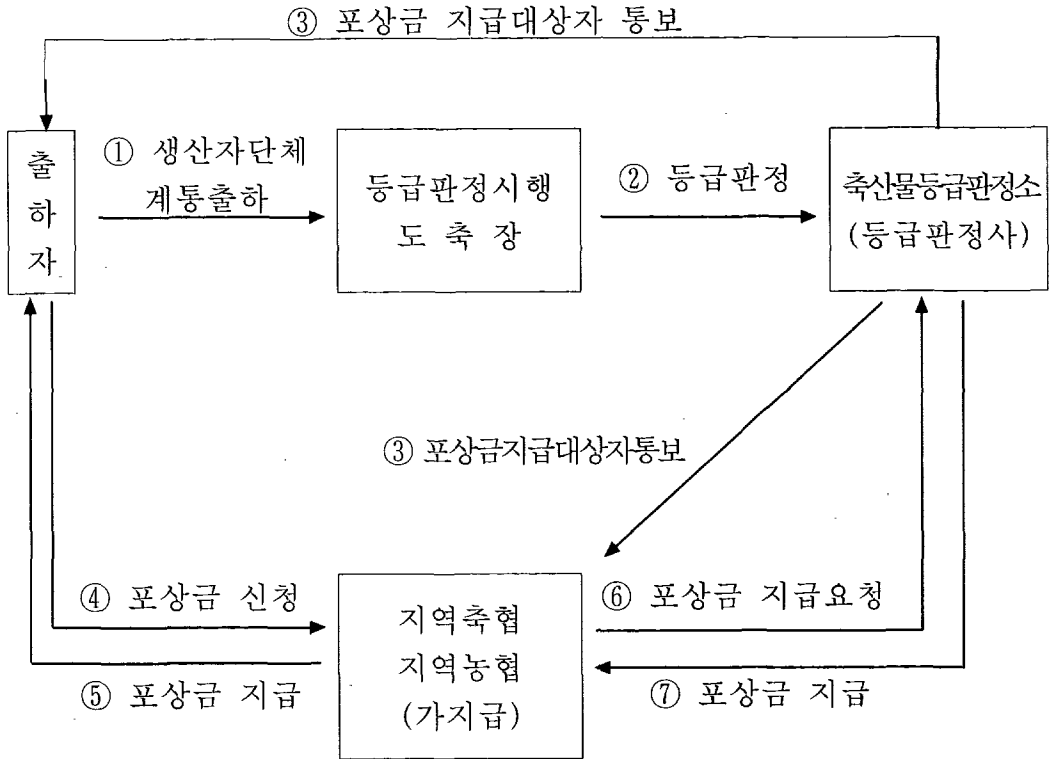
보냄 : ○○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일련 번호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출하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종 (성별)	가지급 일 자	지급액
A1+,A1						두				원
B1+,B1						두				원
합계						두				원

※ 축산물등급판정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7-7 동산빌딩 5층 (Tel : 574~2541)

우편번호 : 137-130

우수축생산포상금 지급체계도



※ 지역농협에서는 포상금을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이를 지역축협에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포상금 수령 즉시 지역 농협에 지급한다.

[저식6]

우수축생산포상금제 참여 신청서

○○시장·군수 귀하

우리 ○○(조합·협회 등)는 지역한우 농가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한우거세사업을 실시하고 고급육 생산에 앞장 서고자 우수축생산포상금제 협조단체 지정을 신청하니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조합·협회 등)

※ 첨부서류

- 우수축생산포상금제 추진 계획서
- 참여농가 명단

< 우수축생산포상금제 추진계획서 작성시 주요 포함내용 >

참여농가 현황

- 번식농가수, 비육농가 및 번식·비육 병행농가수
- 번식우 두수, 비육두수

농가가입·탈퇴절차

농가관리 및 지도방법

사업계획

번식우두수	연간송아지 생산두수	연 간 거세두수	연간 판매두수			
			거세수소	일반수소	암소	계

판매처 확보방법 등 판매계획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자조금사업 계획 등

[서식7]

참여농가 명단

농가명	주 소	사 육 두 수			서 명 (날인)	전 화
		번식우	비육우	계		
계						

※ 참여농가 변동이 있을 때 매월 변동사항 보고

※ 번식우 : 1.5세이상 암소

비육우 : 2001.12월말까지 출하가능 수소

[서식8]

우수축생산포상금제 협조단체 지정현황

○○도

2001. . . .

시·군명 (시·도명)	생산자 단체명	참여농가수	참 여 두 수		
			번식우	비육우	계

23	가축개량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이상길, 사무관 이홍철)입니다

I. 한우개량사업

1. 목 적

- 순수개량방법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 우량종우 생산기반 구축, 우량한우 보호 및 순수혈통 보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여 한우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혈통관리 및 개체능력 조사로 활용도 제고
- 한우개량농가와 한우능력검정 연계추진
- 현장후대검정(Field test) 기반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한우개량사업 참여 확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사업량		2	2	2	2	2	2
사 업 비	계	112,903백만원	23,698	19,642	20,275	18,333	55,391
	보 조	67,903	23,698	19,642	20,275	18,333	55,391
	용 자	45,000					
	지방비 자부담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사업추진배경

- '79년부터 단지 조성, '95년부터 「개량농가」로 참여 확대, '99년부터 개량농가 중심으로 육성·관리

○ 사업내용

- 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등록우관리
- 추천종모우에 의한 등록우 계획교배
-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 관리 및 등록
- 등록우에 대한 발육 및 번식실태 조사 실시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중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및 도체성적 평가로 보증종모우 선발

○ 한우정액생산·공급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농가등 양축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등록우 관리비, 농가조사 사례비등 지원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등 소요자금 지원

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한우개량농가, 한우등록우관리조합,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보조사업비, 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8,333	18,333	18,333			
○ 한우개량농가 육성	150천두	8,560	8,560	8,560			
- 개량농가지원		3,160	3,160	3,160			
- 관리조합지원		5,400	5,400	5,400			
○ 정액생산공급	1 개소	9,773	9,773	9,77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시·도(시·군),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축협조합,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580-3330)
- 시·도(시·군) 축산과(계)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개량총괄과(전화 041-663-4665)
- (사)전국한우협회(전화 02-525-1053)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 (사)전국인공수정사협회(전화 031-295-94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관리조합(이하 전국한우협회포함)은 한우개량농가 육성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우거세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의회(구 한우사업추진협의회) 심의후 확정 추진(2001년1월말까지), 단 전국한우협회는 한우개량부의 심의를 거쳐 시행
- 2개이상 시·군이 포함된 관리조합은 각 시·군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심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부는 관리조합의 한우개량농가육성계획에 포함시킬 사

항과 작성요령등을 시달(2000년12월말까지)

○ 2001년도 사업계획

등록우관리	인공수정	송아지생산
150천두	80천두	51천두

○ 등록우관리

- 개량농가의 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것
- 등록우 관리카드 작성·보존·활용(개체표식은 바코드 귀표번호로 통일, 개체별 등록우 관리자료를 PC로 작성관리, 개량정보 농가제공등)
- 귀표부착 : 신규등록우(수송아지 포함) 및 기존귀표 탈락시 지도원이 부착
- 기존 관리우중 자질이 불량한 등록우 및 혈통등록우중 고등등록 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농협중앙회장은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시·군별 등록우의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종모우를 추천하고 후대검정 교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조합 및 관련기관에 통보
- 개량농가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추천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 및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
- 등록우에 추천종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생시체중을 측정하여 어미소의 개량자료 조사표[별표 3]에 기재하고, 관리조합에 송아지생산 신고[별표 4]
-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여부(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추천종모우 정액에 의한 수정여부, 수정일과 분만에정일 적합 여부, 기술자와 수정상황 및 농가·조합비치 관리카드 정비여부, 개량자료 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한 측정·기재여부 등을 송아지생산 확인시 지도·점검
-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의 송아지생산신고에 의하여 5일 이내 현지확인하여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을 전산입력 및 기록, 3-4개월령 이내에 혈통등록 심사하여 합격측은 혈통등록과 동시에 귀표부착후 관리
- 후대검정 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및 우량 후대측은 매각방지를 위해 송아지생산 확인시 예비심사 실시로 합격이 가능한 후대측은 이동 억제토록 지도

- 한우개량농가 지정 확대 및 혈통등록이상 상위등록 유도
 - 혈통등록압소 사육농가의 한우개량농가로 지정 신청[별표 5] 및 개량농가 중 소규모 사육농가의 연차별 관리대상 제외방안은 별도 시달, 단 고등등록우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관리대상에 포함
 - 관리조합이 없는 지역은 농가에서 인접한 지역축협 또는 전국한우협회에 신청
 - 개량정도가 낮은 기초등록우는 연차별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단,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기초등록우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우 및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기초등록하여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은 포함

	2001	2002	2003
지원제외 단지 및 개량농가	'95조성단지(50개소) '95개량농가	'96~'97 개량농가	'98~'99 개량농가

- 등록우 조사사업
 - 한우개량부는 제10차 한우개량 추세조사 및 번식능력 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번식능력조사 : 초종부일령, 초산일령, 번식간격, 수태당 종부회수 등
- 개량농가 관리
 - 관리조합은 등록우 이동방지와 세대축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 도 종축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년 1회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 실시
 - 관리조합은 연간 2회(6월,12월) 시·군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연간 한우개량농가 육성계획 추진실적을 지도·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 평가(전국한우협회는 자체 실태조사 평가)하여 익년도 한우개량농가 육성계획에 반영(한우개량부는 조사요령을 작성 시달)
- 개량자료 농가조사사례비 지원
 - 지원대상 : 계획교배(관리조합에서 지정한 종모우의 정액 사용)로 송아지를 생산한 등록우 사육농가
 - 지원기준 : 기초등록우 35천원, 혈통등록우 60천원, 고등등록우 80천원 상당의 사료비 또는 현금 지급
 - 지원방법 : 송아지생산 신고시 현지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여 기초 25천원, 혈통 40천원, 고등 60천원 상당의 사료지급, 송아지(3-4월령)에 자가사육 및 판매 의향 신고시 잔액을 현금으로 온라인 입금

- 등록우 관리비 지원
 - 등록우 관리지도원의 등록우 관리실적에 따라 등록우 관리조합에 두당 36천원/년 지원(분기별로 분할지원)
 - 등록우 관리두수에 대한 경제형질조사, 송아지 생산, 번식관련기록의 분기별 전산입력 결과에 따라 관리비 지원(분기별 개체관리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부는 농가 조사사례비지급 및 등록우 관리비 지원 세부절차를 관련조합 등에 시달(1월15일까지)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당대검정
 - 검정기관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 검정목표 : 당대검정 500두, 후보종모우 선발 60두
 - 당대검정축 및 당대검정우 생산용 빈우 확보 : 농협 자체생산우, 개량기관 및 개량농가에서 매입 확보(산지평균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
 - 검정기관장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장에 통보
- 후보종모우 선발 및 확보
 - 농협중앙회장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 평가) 하여 가축개량실무위원회에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검정기관 : 축산기술연구소(남원지소, 대관령지소)
 - 검정목표 : 후보종모우 공시 60두, 후대검정 600두, 보증종모우 선발 20두
 - 후대검정용 숫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부와 축산기술연구소간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확보하되 산지평균 시세의 130% 수준에서 매입
 - 농협중앙회장과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한우개량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우현장검정계획을 수립
- 검정성적 평가 :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후대검정대상우의 성적을 후보종모우 별로 종합 정리하여 분석·평가
- 보증종모우 선발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후보종모우별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보증종모우 선발
- 검정방법 : 한우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8호, '97. 3. 6)에 의하여 실시

- 당·후대검정 사료의 생산·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농협 청주배합사료공장에 신청
 - 동 사료공장은 한우검정요령중 농후사료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 생산·공급
- 정액생산 및 공급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 농협중앙회장은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흑색등) 생산여부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르로서 민원방지
- 사업비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 집행
 - 축산기술연구소의 후대검정 비용에 대하여는 국고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과 축산기술연구소장간의 용역계약에 의거 집행
- 한우 현장후대검정 시험실시(2001~2004)
 - 검정기관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 검정두수 : 후보종모우 자손 2,400두(♂)
 - 후보종모우 자손(♂) 생산 확인 : 한우개량부는 축산기술연구소와 협의하여 후보종모우 자손(♂)의 친자확인 세부실시요령을 수립시행하고 소요예산은 한우정액생산 및 공급 예산 재료비에서 우선집행
 - 현장후대검정 참여 사례비 지급
 - 지원대상 : 현장후대검정 계획교배로 생산된 후보종모우 자손(♂)을 현장 후대검정 농가에 수송아지를 연계하여 판매한 번식농가와 이를 입식하여 현장후대 검정후 비육 출하를 신고한 농가
 - 지급액 : 생산 농가와 검정농가 각각 50,000원/두
 - 지원방법 : 2001년도 검정농가에 입식된 두수에 대한 번식농가 사례비는 2002년도에 소급지원할 계획
- 한우 생체단층 촬영
 - 사업시행기관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종축개량협회
 - 측정두수 : 5,000두(가축개량사업소 2,500, 종축개량협회 2,500)
 - 측정대상우 : 당대검정우 및 어미소, 고등등록우 및 고등등록대상우

- 측정형질 :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
- 초음파 측정 : 종축개량협회 및 가축개량사업소는 대상우에 대하여 [별표 6]에 의거 초음파 측정을 실시
- 화상판독 : [별표 6]과 화상(디스켓저장)을 가축개량사업소에 송부(전송)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자료를 판독하여 전산관리하고 결과를 축산기술연구소와 종축개량협회에 통보
- 자료활용 : 축산기술연구소는 초음파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분석 후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 사업비지급
 - [별표 6]에 의거 화상판독이 완료된 두수에 대하여 두당 21,200원을 해당기관에 지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초음파기기를 구입하여 종축개량협회에 관리전환

○ DNA-Marker 분석

- 사업시행기관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
- 분석두수 : 2,000두(한우개량부 1,000, 종축개량협회 1,000)
- 분석대상우 : 당대·후대검정우와 어미소 및 고등등록대상우와 자손
- 분석형질 : Marker 유무(12.4, 11.3, 9.4, 4.6, 3.6, 2.8)
- 혈액채취 및 운송 : 가축개량사업소와 종축개량협회는 대상우에 대하여 혈액 10cc를 채혈하고 채혈튜브(7cc EDTA Vacutainer)에 바코드번호를 기입하여 냉장포장 후 분석기관에 우송하고 [별표 7]에 의거 분석의뢰(단, 종축개량협회는 유전자분석 의뢰서식[별표 7]을 가축개량사업소에도 통보)
- 분석방법 및 결과통보 : 분석기관은 M13/HAE3 분석방법에 따라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표 8]에 의거 의뢰기관에 통보(전송)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자료전산관리
- 자료활용 : 축산기술연구소는 유전자분석 자료와 수집된 도체성적을 연계·분석하여 개량자료 및 농가지도자료로 활용
- 사업비지급
 - 분석기관은 유전자분석결과표를 가축개량사업소에 송부시 분석료를 요청하고 가축개량사업소는 분석자료를 확인 후 분석기관에 20,000원/두 지급
 - 혈액채취 및 운송에 필요한 물품은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고 우송료는 영수증에 의거 지급

○ 도축장 바코드귀표 출현우 도체성적조사

- 사업시행기관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 조사두수 : 140,000두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종축등록사업에 참여하여 바코드 귀표가 부착된 도축 한우
- 수행절차 : 도축장은 조사대상축에 대한 바코드번호와 도축번호를 [별표 9]에 의거 조사하여 도축번호가 기재된 바코드이표와 함께 등급판정소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후 가축개량사업소에 조사대상축의 등급판정자료를 [별표 10]에 의거 도축장 및 가축개량사업소에 송부(전송)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전산관리
- 사업비 지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등급판정소에서 송부된 등급판정자료 [별표10]에 의거 두당 700원을 해당 도축장에 지급

(2) 기타사항

- 한우개량사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하여 참여농가 및 관리조합의 역할증대 노력 경주
- 한우능력검정 참여기관의 역할 조정
 - 축산기술연구소장은 한우 후대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축사건축비, 검정축 구입, 검정사업비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 경주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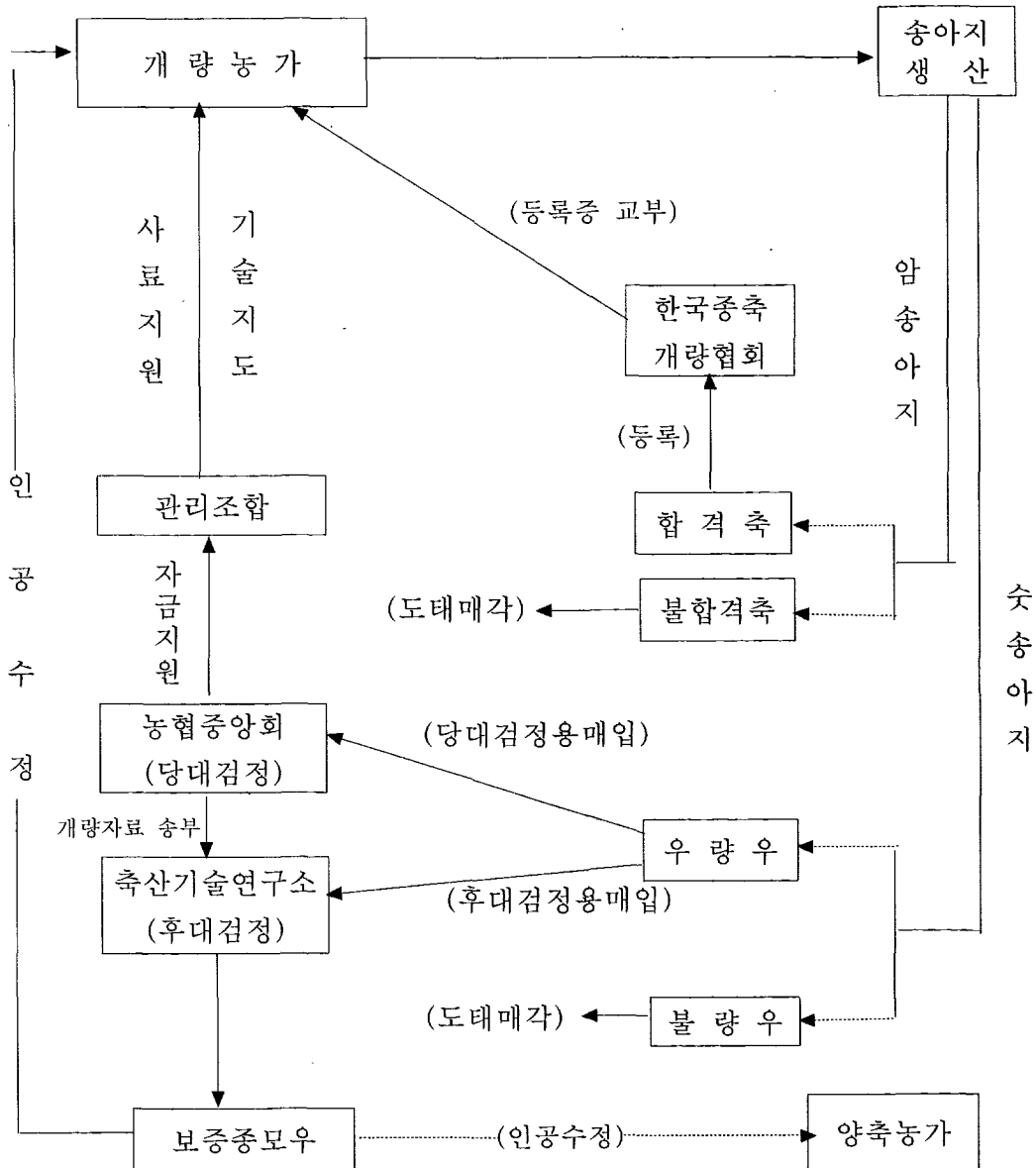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개량농가 운영장비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조합 자담 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 할 수 있음

- 나. 보 고(농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1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1. 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추진실적(서식 별표 11, 12) : 매분기 익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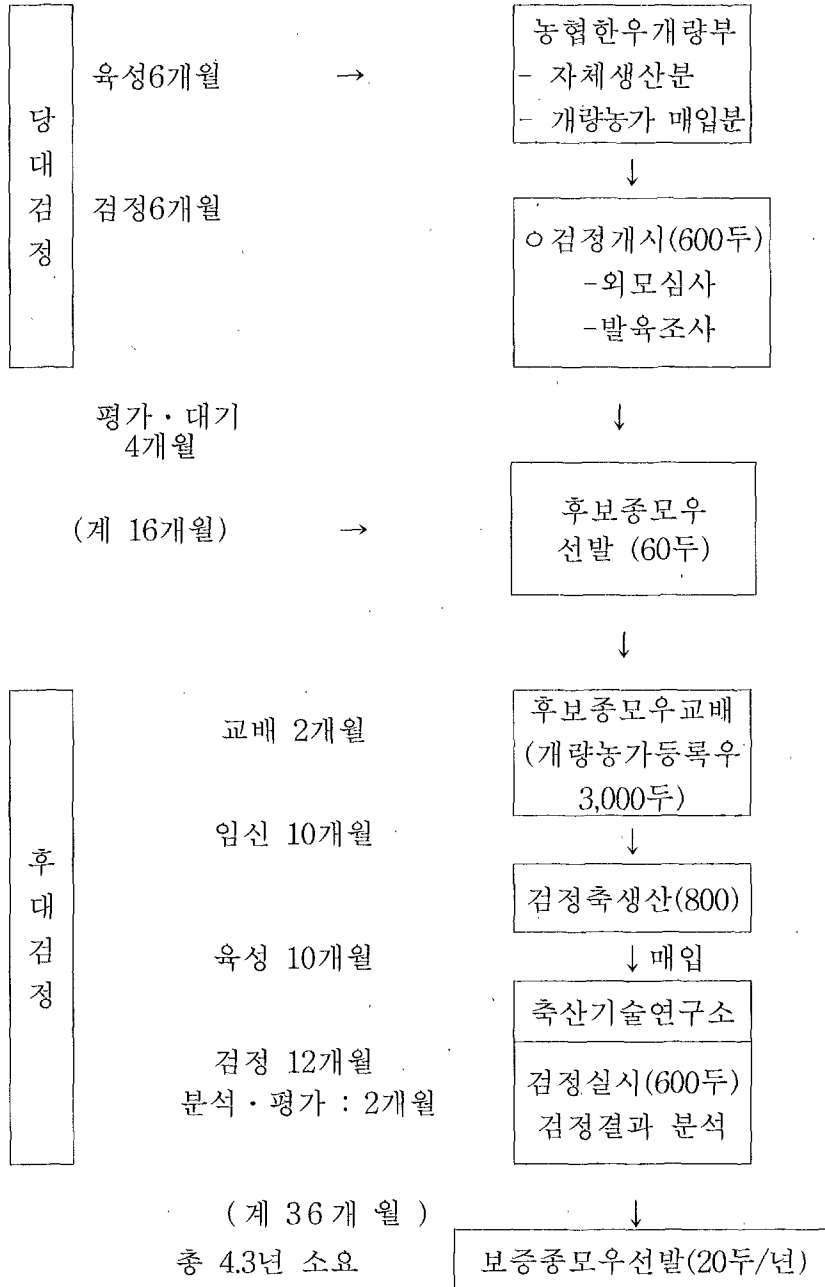
[별표 1]

< 사업시행 체계도 >



[별표 2]

< 단계별, 기관별 사업추진방법 >



※ 상기 기간 및 두수는 현지사정에 의거 조정 가능

[별표 3]

개량자료 조사표

분만우내역	개체번호		등록번호		바코드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번식상황	수 정 내 역					분 만 내 역				
	산 차	수정회수	수정종모우	최초수정일	마지막수정일	분만일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송아지특징	모 색	비 경	면 선	미 선	배 선	이모색		이상형질		
분만우 발육상황	구 분	생 시	이유시	고등등록						
	조 사 일									
	체 중	kg								
	체 고	cm								
	십자부고	cm								
	체 장	cm								
	흉 폭	cm								
	흉 심	cm								
	요 각 폭	cm								
	근 폭	cm								
	좌 골 폭	cm								
	고 장	cm								
	흉 위	cm								
	전 관 위	cm								

※ 소를 이동,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량자료조사표 작성요령 >

- 개체번호 : 등록우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써 귀표를 확인하여 기재
- 등록번호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써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바코드번호 : 소 귀에 부착된 바코드 귀표번호를 확인하여 9자리 수를 기재
- 생년월일 : 해당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등록구분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시 명시된 기초, 혈통, 고등등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번식사항 : 처녀우는 최초 종부부터, 경산우는 최종 분만이후 금번 분만까지의 기간중 종부상향 기재
- 산 차 : 분만한 회수를 기재 예) 초산, 2산, 3산 등
- 수정회수 : 금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최초수정부터 마지막 수정까지의 수정회수를 기재
- 수정종모우 : 인공수정시 종모우명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하되 쌍태임 경우는 암1, 수2, 암·수중 선택기재
- 생시체중 : 송아지 출생시 체중을 측정하여 기재
- 분만상태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송아지 특징 : 분만시 송아지의 특징 기재(혈통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사항)
예) 모색 : 황, 면선 : 하, 미선 : 결, 배선 : 후, 비경 : 황, 이모색 : 백반, 이상형질 : 프리마틴
- 조사일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연월일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체척기, 캘리퍼, 줄자를 이용한 측정값을 기재
 - 생시, 이유시는 체중만 기재하고 고등등록시에는 체중 및 체위 등 12개 형질 조사

[별표 4]

송아지생산 및 자가사육·판매의향 신고

축주	주소							
	성명						전화	
송아지생산	분만암소		사용정액		분만상황			
	이표번호	등록번호	수정일자	종모우	일자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송아지 이표번호	성별	생년월일	판매시기	사육 및 판매의향			
					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 (우상인 판매)	
조사사례비신청	송아지생산신고	일금	원정(₩)	지원방법	사료() 현금()			
	자가사육·판매의향 신고	일금	원정(₩)	지원방법	사료() 현금()			

※ 작성요령 : 송아지생산내역은 분만후 일주일 이내 작성하고, 송아지 자가 사육 판매의향은 송아지 월령이 3-4개월령에 도달시 작성(자가사육, 시장판매, 농장 문전거래등은 해당란에 ○으로 표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김

위와같이 송아지 생산신고 및 자가사육·판매의향 신고서를 제출하니 조사사례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국한우협회장, 관리조합장 귀하

[별표 5]

한우개량농가 지정 신청

축 주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한우사 육현황	합 계	성 우		육성우		송아지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조사료 재배면 적(평)	논면적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번식우사(평)			비육우사(평)				
등 록 대 상 우	바코드 귀표번호	혈통등록 번호	생년월일	송아지 생산안 정제 가입여부		부모등록번호		
						부	모	
비 고	통장 계좌번호 : ○ ○ 은행 - - -							

위와같이 한우개량농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1년 월 일

전국한우협회장, 관리조합장 귀하

[별표 11]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 도(%)	
				계 획(B)	실 적(C)	C/B	C/A
등록우관리운영 - 개량농가	조 합	사업량					
○ 등록우관리 - 관리조합 - 개량농가	두 " "						
○ 인공수정 - 관리조합 - 개량농가	" " "						
○ 송아지 생산 - 관리조합 - 개량농가	" " "						

2. 사업비 집행실적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자	합계(B)	보 조	용자	
한우개량농가육성 - 농가지원 - 등록우관리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단 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 도(%)	
				계 획(B)	실 적(C)	C/B	C/A
1. 당대검정							
o 교 배	두	사업량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 축산연	"						
o 수송아지생산	"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 축산연	"						
o 검 정	"						
o 후보종모우선발	"						
2. 후대검정							
o 검정축생산	"						
- 개량본부	"						
- 개량농가	"						
o 검 정	"						
o 보증종모우선발	"						
3. 정액생산 공급							
o 종모우 사육	두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생산	천st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o 정액공급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응 자	합계(B)	보 조	응 자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II. 젓소개량사업

1. 목 적

- 젓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
- 젓소개량을 위한 기반확충 및 인식도 제고와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젓소보증종모우 도입 및 선발
 - 이들의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여 젓소능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우균검정과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사업 연계추진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생산
 - 당·후대검정을 통한 우량종모우 선발과 도입 및 정액생산·공급
- 유우균검정은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두당 일정액 보조지원
 - 정확한 개체혈통 및 능력조사와 기록유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3~2005
사업량		2	2	2	2	2	2
사 업 비	계	34,753백만원	6,216	8,294	8,034	8,593	29,137
	보 조	24,611	6,216	8,294	8,034	8,593	29,137
	용 자 지방비 자부담	3,6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유우균검정

- 농협중앙회장은 검정희망 검정소 및 농가에 대하여 "젓소산유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축정 51530-823, '96.12.9)상의 구비요건을 심사하여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분석실을 운영하여 검정소 유성분 등의 분석 지원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각 검정소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설명 및 경영지도

○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젓소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유능력검정으로 보증종모우 선발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 유우균검정 : 검정참여농가에 연간 두당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젓소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기축개량사업소, 축발기금보조(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	8,034	8,034	8,034			
○ 유우균검정	110천두	3,213	3,213	3,213			
○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1개소	4,821	4,821	4,821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젖소개량부
- 협조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580-3330)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젖소개량부(전화 031-965-9587)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유우군검정

- 농협중앙회장은 유우군검정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젖소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과 유우군검정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실시
 -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농가사양관리 및 경영개선지도 등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대상 : 검정업무를 수행중인 단체 등 검정소
 - 지원조건 : 검정우 두당 31.1천원/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 지원방법 : 각 검정소 검정결과 검정성적 통보서상의 검정두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두당 31.1천원을 월별(월 2,590원) 분할 지급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
 - ※ 단,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검정이 실시된 후 90일 이내에 등록된 경우, 미지급된 보조금의 소급 지급 허용
 -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검정이 실시된 후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제외.
 - ※ 단, 질병치료, 품평회등 공식행사 참여 및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월에 검정이 안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허용

나)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고능력 정액도입 및 수정란에 의한 국내 송아지생산매입으로 당대검정축 확보
 - 낙농선진국의 Young Bull도입
 - 당대검정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점수, 발육상태, 정액성상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젓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종모우 선발.
 - 유우군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후대검정용 낭우(검정대상축)를 확보하고, 축산기술연구소와 도 종축장(축산기술연구소)은 각각 독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
 - 가축개량 협의회 자문 및 후대검정성적, 외모심사 점수 등을 종합한 유전능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증종모우 선발(3두 내외)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 인공수정용 정액생산·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송아지(이모색, 유전적결함 등)생산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민원방지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집행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연간 유우군검정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각 검정소, 관련기관 등에 배포
- 농협중앙회장은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대양축가 서비스 강화
 - 젓소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9호, '97.3.6)에 의거 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능력검정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조합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농협중앙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1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1.2월말까지
- 후보종모우 선발 및 매입결과 : 매입완료후 1개월이내
-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 선발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유우균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단 위	평가구분	계획 (A)	/4 분기까지		진 도 (%)	
				계획 (B)	실적 (C)	C/B	C/A
○ 검정소 운영	개소	사업량					
○ 검정원	명						
○ 검정농가	호						
○ 검정두수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 (A)	보 조	용 자	합계 (B)	보 조	용자	
유우균능력검정							

* 검정성적 분석후 보조금 정산처리하므로 보조금 집행이 익월에 처리됨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4. 향후과제

젯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후보종모우 확보							
○ 정액도입	st	사업량					
○ 수정란 도입	"						
○ 종빈우 교배	두						
○ 수정란 이식	"						
○ 후보우 확보	"						
2. 후대검정							
○ 후보우 선발	"						
○ 빈우 선정	"						
○ 낭우 생산	"						
○ 검정두수	"						
○ 보증종모우선발	"						
3. 정액생산 공급							
○ 종모우사육	"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 종모우 도입	"						
○ 정액생산	천st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 정액공급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회			실 적			진도(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젯소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Ⅲ. 돼지개량사업

1. 목 적

- 종돈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위생수준이 높은 종돈의 생산·공급으로 질병피해 방지
- 고능력 종돈의 인공수정 활용으로 우수유전자 보급 확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병행 추진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표준화, 검정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돈구입 편의 증진
- 국내 능력검정결과 우수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 종돈장 순종돈 능력검정확대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핵돈군 육성사업 기반 조성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2005
사업량		2	2	2	1	1	1
사 업 비	계	41,988백만원	25,547	24,998	189	189	567
	보 조	2,281	263	280	189	189	567
	용 자	39,707	25,284	24,718			
	자부담						

※ 2001년부터 전문종돈업육성사업 신규지원 중단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도자사에 종돈업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실시
- 종돈업 신고를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 실시
- 검정기관에 검정장비 구입비 보조
- 국내에서 능력검정을 필한 종모돈을 구입한 정액등처리업체 종모돈 구입비 일부 보조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검정소검정 및 농장검정비(입회) : 양돈협회, 종축개량협회
- 자가검정비 :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신고업체
- 검정장비(초음파측정기) 구입비 : 양돈협회, 종축개량협회
- 시·도에 등록된 정액등처리업체

○ 지원기준

- 검정소검정 및 농장입회검정비 : 검정완료돈 두당 3,200원
- 농장자가검정비 : 검정완료 두당 2,300원
 - 검정대상돈은 혈통등록된 부모로부터 생산된 순종 자돈
 - 종축개량협회에 검정돈 자신의 산육검정 및 어미의 산자기록이 D/B화 되어있어야 함
- 검정기관(양돈협회, 종축개량협회) 검정장비 구입비 : 30백만원/2대 보조
- 인공수정 활용 종모돈 구입비 : 200천원/두
 - 축산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종모돈이어야 함. 단, B모드 초음파 측정시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3) 2001년도 사업비 내용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계	보조	용자
○ 검정소검정비 및 농장검정비	40천두	119	119	119	
- 입회검정	30	96	96	96	
- 자가검정	10	23	23	23	
○ 검정장비(초음파측정기) 구입비	2대	30	30	30	
○ 인공수정 활용 종모돈 구입비	200두	40	40	40	
계		189	189	189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사업시행기관
 - (사)대한양돈협회 : 검정소검정, 농장검정, 농장별 유전능력평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농장검정, 농장별 유전능력평가, D/B구축
 -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신고농장 : 자가검정
 - 축산기술연구소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 협조기관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580-3330)
- 대한양돈협회(전화 : 협회 02-553-3942, 제1검정소 031-632-2426)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 02-588-9301)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전화 : 041-663-4666)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검정계획 및 운영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

<검정방법>

- 검정방법 : 돼지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2000-19호, '00.3.6)에 의하여 실시
단, 농장검정 개시체중은 생시체중으로 함
- 검정관련 자료수집
 - 검정기관 및 종돈업신고업체에서 생산된 자가검정자료(혈통, 산육·산자 기록)는 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여 D/B구축
 - D/B화된 자료는 종축개량협회, 양돈협회, 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능력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단, 자료를 생산한 종돈업체의 사전협의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유전능력분석 및 공표
 - 종축개량협회 및 양돈협회는 종축개량협회에서 D/B화된 혈통 및 검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분석후 그 결과를 능력검정 참여 종돈업체에 통보 및 홍보수단을 통해 공표
 - 축산기술연구소는 종축개량협회에서 D/B화된 혈통 및 검정자료를 통보 받아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수단을 통해 공표

(3) 사업비 지원방법

<능력검정비>

- 종축개량협회장은 검정기관(종축개량협회, 양돈협회) 및 종돈업신고업체의 능력검정비 지원대상두수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에 제출
 - 관련 서류 : 능력검정비 지원대상돈 혈통 및 능력검정성적내역[별표 1], 축발기금 보조금지급신청서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는 보조금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지원대상 두수 및 관련서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검정기관 및 종돈업신고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보조금 입금
- 검정비 지급신청 마감시점은 12.25일로 하며 12.26~31일에 신청된 검정비는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정액등처리업체 인공수정용 능력검정완료 종모돈 구입비>

- 정액등처리업체는 검정기관 또는 종돈업신고업체로부터 능력검정된 종모돈을 구입하였을 경우 우선 판매자에게 구입금액을 전액 지불

- 정액등처리업체가 촉발기금 보조를 희망할 경우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에 촉발기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신청서류 : 정액등처리업등록증 사본, 서약서 및 구입돈 능력 검정성적 확인서, 개체별 구입내역서
 - 서약서에는 폐돈이 될 때까지 자가사용하면서 정액채취용으로만 사용하며 폐돈이전에 판매 등 용도의 사용시는 보조금 반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포함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는 보조금신청이 있을 경우 정액처리업등록업체여부, 구입 종돈의 능력검정성적, 거래사실 확인 등을 거쳐 해당 정액등처리업체가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 입금
- 종모돈구입비 지급신청 마감시점은 12.25일로 하며 12.26~31일에 신청된 검정비는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비>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검정기관 검정장비 구입은 검정장비를 일괄 구입후 해당 검정기관에 이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

- 2001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1.1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 양돈협회, 자가검정종돈업체 → 종축개량협회 →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돼지능력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단 위	평가 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0. 검정소검정	두	사업량					
0. 농 장 검 정	"						
- 양돈협회	"						
- 종 개 협	"						
- 종돈업체	"						
0. 종모돈구입	"						
0. 검정장비 구입	대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능력검정							
- 양돈협회							
- 종개협							
- 종돈업체							
종모돈 구입							
검정장비 구입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별표 1]

능력검정비 지원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

검정기관	개체번호	부혈통 번호	모혈통 번호	검정 종 료 일	모의 산자 성적			산육검정성적		
					산차	총 산자수 (두)	생 존 산자수 (두)	일 당 증체량 (g)	등지방 두 께 (cm)	등 심 단면적 (cm ²)

IV. 닭개량사업

1. 목 적

- 종계의 자질개량 및 경제능력 향상
-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종계 선택지표 제공
- 양계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 병행 추진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계의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계구입 편익 증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3~2005
사업량		1	1	1	1	1	1
사업비	계	2,225백만원	173	142	169	169	507
	보조	2,225	173	142	169	169	507
	융자						
	지방비 자부담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도지사에게 종계장 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
 - 검정소 검정 42,480수(산란계 30,000, 육용계 12,480)
 - 농장검정 및 종계일반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 검정소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사)대한양계협회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 검정사료비, 시설 및 장비등 검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	169	169	169			
○ 닭능력검정	42,480수	169	169	169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능력검정
- 사업시행기관 : (사)대한양계협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시·도 축산과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580-3330)
- 대한양계협회(전화 : 협회 02-588-7561, 검정소 031-675-7139)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한양계협회장은 연간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닭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21호, '97. 3. 6.)에 의하여 실시

(3) 사업비 지원방법

- 양계협회의 검정시설 및 장비와 검정사료비(닭능력검정에 한함)등 농협중앙회장이 개산급으로 지원후 정산 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계검정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계종별 검정성적 공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 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 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 고(대한양계협회장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1년 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1년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닭경제능력검정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o 검정수수 - 육용계 - 산란계	수 " "	사업량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도 (B/A)
	합계(A)	보 조	용 자	합계(B)	보 조	용 자	
닭 능력검정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V. 가축개량기반구축

1. 목 적

- 우량종축의 혈통보존 및 활용도 제고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보급 확대를 통한 가축개량 촉진
- 가축개량에 대한 농가 인식도 제고
- 가축개량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반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축등록
 - 종축의 등록, 심사 및 검정사업 확대 추진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개량교육·지도 강화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소 자가인공수정기술교육 및 장비 보급
 - 소 수정란이식기술 교육
 -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교육
 - 돼지능력검정원양성교육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 가축의 혈통·능력·체형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등록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연도별 지원계획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2003~ 2005
사업량		2	2	2	2		
사 업 비	계	6,709백만원	557	633	616		
	보 조	5,991	557	633	616		
	용 자	718					
	지방비 자부담				6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 육우, 젓소, 돼지)등록, 심사, 검정 및 부대사업 추진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및 장비보급, 소 수정란이식기술교육, 돼지정액 생산 및 인공수정기술교육, 돼지능력검정원양성교육등 기타 개량총괄기관에서 가축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지원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등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비등 소요자금중 일부 보조지원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비용등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등록)
 농협중앙회(소 자가인공수정기술교육 및 장비보급, 소 수정란이식,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돼지능력검정원양성교육)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2	2	616	616			
○종축등록	1	408	408	408			
○가축개량기술교육							
- 소자가인공수정	1,375명	155	155	155		60	
- 소 수정란이식	80명	16	16	16			
- 돼지인공수정	100명	23	23	23			
- 돼지능력검정원양성	10명	14	14	1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

- 농협중앙회 :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및 장비보급, 소 수정란이식,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돼지 능력검정원양성 등

○ 협조기관 : 각 도지사(소 자가인공수정기술교육)

축산기술연구소(소 수정란이식,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돼지 능력검정원양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580-3330)

○ 시·도 축산과, 도 종축장

○ 농협중앙회 가족개량사업소(전화 041-663-4666), 축산경영지원부(전화 02-224-8433)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종축등록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가족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사업시행기관장은 협조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사업비 집행계획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추진

- 교육계획

· 소 자가인공수정기술 교육(375명) 및 자가인공수정기 보급(1,000개)

· 수정란이식기술교육 : 이식 8회 80명

·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 10회, 100명

· 돼지능력검정원양성교육 : 2회, 10명

(2) 사업추진방법

○ 종축등록

- 축종별 종축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실시
 - 등록요원, 등록물량 확대에 필요한 위축등록요원 확보
 - 위축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업무 교육
- 종축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바코드 귀표번호로 대체
 - 외국에서 도입된 정액 또는 종축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선대 혈통은 외국의 종축등록번호를 사용
 - 바코드 귀표장착을 거부하는 농가의 소는 종축등록대상에서 제외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소 자가 인공수정기술교육 및 자가인공수정기 보급
 - 각 도지사는(시·군)은 관내 한우암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인공수정 교육 및 수정기 구입희망 조사
 - 각 도지사(시장·군수)는 교육희망농가와 자가 인공수정기 구입 희망 농가 및 구입예정일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각 도 축산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교육 실시 및 자가인공수정기 보급 등 추진
- 소 수정란제조 및 이식 기술교육
 - 교육시행기관 및 협조기관장은 세부교육추진계획을 수립·확정 추진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농협중앙회장이 교육 이수증 발급
- 돼지정액생산 및 인공수정기술 교육
 - 교육시행기관 및 협조기관장은 세부교육추진계획을 수립·확정 추진
 - 교육대상 : 양돈농가 및 정액등처리업체 종사자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농협중앙회장이 교육 이수증 발급
- 돼지 능력검정원양성교육
 - 교육시행기관 및 협조기관장은 세부교육추진계획을 수립·확정 추진
 - 교육대상 : 개량기관 소속직원, 종돈업신고업체에서 추천한 자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축산기술연구소장 또는 농협중앙회장이 교육 이수증 발급

(3) 사업비 지원방법

○ 종축등록

- 농협중앙회장은 보조금 지원내용에 따라 개산금으로 지원하고 정산 실시

- 가축개량관련 기술 보급
 - 교육비용은 교육예정인원 및 예산단가에 의거 분기별로 개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분기초에 정산. 단 자기인공수정기 보급은 추진실적에 따라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축등록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교육으로 등록종축의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계획교배방법 및 필요성, 종축의 이동신고 및 등록증의 인수인계등
 - 정액혈통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실태조사·지도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반복교육으로 농가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 자치단체의 역할제고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개발 추진
- 축산기술연구소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가축개량관련 기술교육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등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 불가능하는 조합 또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처분 할 수 있음

나. 보 고(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장)

- 2001세부사업추진계획서 : 2001. 2월말까지
- 사업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말까지

종축등록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A)	/4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1. 등록							
○ 한우	두	사업량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 젖소	"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 돼지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2. 심사	"						
○ 한우	"						
○ 젖소	"						
○ 돼지	"						
3. 한우 번식능력 및 발육조사	"						
4. 종돈F ₁ 증명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실			진도 (B/A)
	합계(A)	보조	용자	합계(B)	보조	용자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추진실적 보고

1.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단위	평가구분	계획 (A)	/4 분기까지		진도 (%)	
				계획 (B)	실적 (C)	C/B	C/A
		사업량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획			실 적			진 도 (B/A)
	합계 (A)	보 조	용 자	합계 (B)	보 조	용 자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과제

Ⅲ.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여 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농업사무관 허태웅)입니다.

I. 농산물 물류표준화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 농산물 뿐만 아니라, 비료·사료·농자재 등에 다용도로 연계 사용토록 추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7조(표준장비등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9까지	2000	2001 예산(안)
사업량(개소)		648	200	220
사업비	계	34,239	12,000	13,200
	보조	9,528	6,000	6,600
	융자	17,863	3,600	3,960
	지방비	-	-	-
1. 자부담	6,848	2,400	2,640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2001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을 ULS에 맞도록 정비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나. 대상사업

- 파렛트(개소당 100매이내)·플라스틱상자(개소당 1,000매이내)·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마늘줄기절단기,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비, 선과기·밴딩기·랠핑기·제함기·진공포장기·콘베아 등 포장화를 위한 부대 시설비
 - 단, 포장화 부대시설비의 경우 신규 건설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법인화된 조직 등)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라. 개소(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 내부 품질등급을 표시하는 기기(비파괴당도측정기)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마.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단가	비 고
○ 파렛트 (PE제질 1.1×1.1m)	30	○ 나무 및 상자(철재) 파렛트 단가는 실거래 가격 적용
○ 플라스틱상자	4	○ 표준출하규격상자에 한정
○ 지게차	20,000	○ 핸드잭 단가는 실거래 가격 적용
○ 전동차	7,000	○ 실거래가격 적용
○ 광폭차량	25,000	○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능5톤이상광폭차량
○ 포장화 부대시설비	80,000	○ 선과기, 밴딩기, 랠핑기, 제함기, 진공포장기, 콘베아 등으로 실거래 가격 적용
○ 마늘줄기 절단기	1,500	○ 실거래가격 적용
○ 비파괴당도측정기	-	○ 실거래가격 적용

바.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보조50%, 용자30%, 자부담 20%
 -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제시
- 용자조건 : 연 5%, 3년거치 7년상환

사. 2001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13,200	6,600	3,960	2,64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 “다”항의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 순위
 - ① 당도 등 품질내부등급 측정을 위한 기기(비파괴당도측정기)
 - ② 산지유통 시범농협,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 ③ 생산자단체, 작목반(회)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④ 기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를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사업자의 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별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4-9411~3)
- 시·도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
- 시·군 : 농산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대출실행 또는 보조금 지급
-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1002호, '99. 11. 8.) 제13조 및 제14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
 - 기계 및 장비 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지원자금 회수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원장비·시설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보 고

- 시·도지사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완료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나. 대상사업 : 파렛트·플라스틱상자·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마늘줄기절단기·비파괴당도측정기구입비, 선과기·밴딩기·랫핑기·제합기·진공포장기·콘베아 등 포장화를 위한 부대시설비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법인화된 조직 등)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 저장업체 등
- 단,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의 포장화 부대시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준용) 1부.

바.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평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 순위

- ① 당도 등 품질내부등급 측정을 위한 기기(비파괴당도측정기)
- ② 산지유통 시범농협,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 ③ 생산자단체, 작목반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④ 기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배정

【 별첨 】

생산자조직 분류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별 품질이 균일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 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요원이 출하품 점검을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별지제1호서식)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 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									
전년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ha			톤					
전년 시설 운영 상황	총출하량	일반출하량		공동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선별(과)량			
	톤	톤		톤	톤	톤	톤			
	(100%)	(%)		(%)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활 용 일 수									
	주요 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하장	직판장	선별 (과)장	저 온 저장고	일반 창고	예냉고	선별 (과)기	기타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물류 기기 보유 현황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운송차량		핸드채	컨베이어			
	매	대	대	○톤 : ○대 ○톤 : ○대 계 : ○대		대	대			

3. 기기구입 및 포장화 부대시설 계획

가. 기기구입 계획

(단위 : 천원)

기기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용자	자부담	
○ 파렛트 ○ 플라스틱 상자 ○ 지게차 ○ 전동차 ○ 광폭차량 · · ·							
계							

나. 포장화 부대시설

(단위 : 천원)

시설명	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용자	자부담	
선과기 밴딩기 꺾핑기 제합기 등							
계							

II.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

1. 목 적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공공이용 촉진을 통하여 물류이동을 규모화 시키고, 복합운송 실현 및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물류기기 공동화체제 구축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화 촉진사업을 산지유통개선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 추진 함으로써 농산물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조기 정착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뿐만 아니라, 파렛트 적재출하 및 컨테이너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9까지	2000	2001예산(안)
○ 사업량	-	6,950	5,598
○ 사업비	-	7,787	5,714
- 국 고	-	5,451	4,000
- 자부담	-	2,336	1,714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 수송단위가 규모화되어 있지 않으며, 파렛트 공동이용 시스템의 미구축으로 물류효율이 저하
- 신선농산물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범용 포장재(플라스틱상자) 구입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채소류의 대부분이 비포장 출하
 - 유통과정에서 손상·변질되어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실질소득이 감소되고, 쓰레기발생으로 소비지시장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
- 파렛트 적재출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99)
- 국정개혁 보고회의시('99. 4)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 적재, 하역(파렛트화) 촉진을 위한 지원강화”를 유통개선 중점 추진과제로 보고

(2) 지원대상

-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회원조합, 전문조합 등),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3) 사업내용

- 파렛트/플라스틱 상자를 풀 회사로부터 임대, 농산물을 적재(포장화)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점, 생산자단체 및 그 자회사의 집배송장에 출하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 보조

(4)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파렛트 및 플라스틱상자를 풀 회사로부터 임대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 지원
- 사업기준단가(임대료) : (파렛트) 1,500원/매, (다단식목재박스) 667원/매, (플라스틱상자) 490원/매

※ 내구용(15일이상)의 경우는 기간에 다른 사업기준단가 별도 마련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나. 2001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계	5,598천매	5,714	4,000	-	1,714
○ 파렛트	3,126	4,571	3,200	-	1,371
○ 플라스틱상자	2,382	1,143	800	-	343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4-9411~3
- 농 협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조합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은 품목별, 월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지역농협에 제출(2001. 1월중)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적재출하 계획서를 취합, 농협 시·군지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풀이용료 지원 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작황 및 유통여건변화에 따라 물류기기 소요량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에게 분기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분기 익월 10일까지)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총 예산액 범위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 승인 후,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사업비 집행방법
 - ①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각각 풀 회사에 물류기기 공급을 신청하고 풀회사는 신청조직별로 차량단위별(5, 8, 11톤) 공급
 - ② 회원조합은 생산자조직 등의 농산물 출하내역을 풀 회사에 통보

- ③ 생산조직 등은 농산물 출하시 거래명세서에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사용 수량을 기입 통보(거래명세서는 회원조합과 도매시장 등이 증빙자료로 각각 보관)
- ④ 농산물 유통사업장은 입고내역을 풀회사에 통보하고 풀회사는 농산물유통사업장별 입고 내역을 취합하여 농협중앙회에 통보
- ⑤ 물류기기 이용에 따른 보조금 신청(붙임양식) 및 정산
 (신청) 회원조합(조합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 신청분) → 지역본부 → 중앙본부
 (회원조합 신청내역과 풀회사로부터 통보받은 농산물유통사업장별 입고내역 대사확인)→농림부
 (정산)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지역본부 → 회원농협 → 풀회사
- ⑥ 풀 회사와 회원조합간에 이용료 분기별 정산

○ 운용절차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①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은 풀회사와 물류기기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및 FAX로 풀 회사에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별 사용량 입고 요청
- ② 물류기기 입고 및 출하시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붙임양식)』에 입출고 수량 기록
- ③ 물류기기를 이용 출하시 『송품장(별지 제3호서식)』에 물류기기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여 출하하고 『공동이용물류기기 관리부(붙임양식)』에 출고내역을 기재하여 풀 회사에 통보
- ④ 농산물유통사업장의 검수자로부터 물류기기 이용내역을 송품장 상에 확인(기명날인)받아 자체보관하고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붙임양식)』에 기록 관리
- ⑤ 회원조합은 매 분기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 신청분을 지역본부에 신청 단,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시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 (붙임양식)』 및 송품장을 첨부하고 자부담분 이용료를 회원조합에 선납부
- ⑥ 보조금 신청 증빙서류(송품장 등)는 사후점검 및 감사에 대비하여 관리 철저

농산물유통사업장

- ① 검수자는 송품장에 기재된 물류기기의 품명, 수량을 확인 후 인수란에 기명 날인하고 1부는 출하처(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교부
- ②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붙임양식)』에 입고내역을 기록하고 당일로 동 내용을 풀 회사에 통보
- ③ 사후점검 및 감사에 대비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붙임양식)』 및 기명 날인된 송품장 관리 철저
- ④ 농협중앙회는 보조금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농산물 유통사업장의 보관 증빙자료를 점검 확인할 수 있음

풀 회사

- ① 회원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물류기기 입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고 조치
- ② 풀회사는 농산물 유통사업장별 입고내역을 농협중앙회로 통보
- ③ 풀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내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전협약 체결
- ④ 풀회사는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계약체결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강화
 - 농협중앙회(지역농협)은 사업추진체계, 지원절차 등을 생산자조직, 유통업체에 대해 적극 교육·홍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 풀 이용료 집행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책임을 규명하여 농림사업 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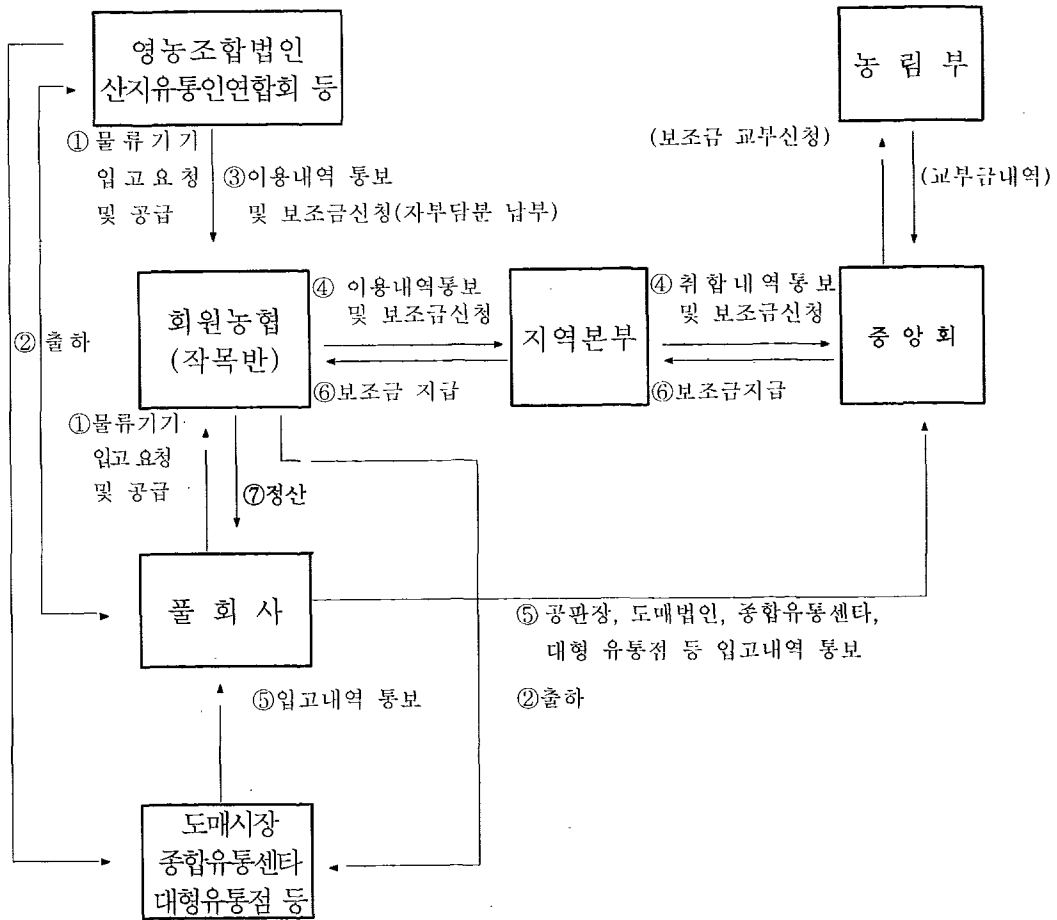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본부별 사업계획서를 2001. 1. 31까지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은 익년 1.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다. 기 타

- 물류기기 풀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풀회사는 농협중앙회와 사업추진내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풀회사는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등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

라. 사업시행 체계도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지역농협

나. 대상사업 : 2001년도와 동일

다. 신청자격 : 2001년도와 동일

라. 구비서류

- 파렛트/플라스틱상자 적재 출하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마. 사업추진방법 : 2001년도와 동일

< 별지 제2호서식 >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풀 이용료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합 계					파 렛 트					플라 스틱 상자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 별지 제3호서식 >

송 품 장

① 1999년 월 일

수 신	② 귀하										
출 하 자	③					등록번호 ¹⁾	④				
⑤적재출하 내역 및 수량	파렛트 출하					플라스틱 상자 출하					
	() 매					() 박스					
⑥주 소	(-)					(FAX No :)					
⑦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긴급연락시						
⑧생산자	⑨출하품 내역				⑩표준규격	⑪등급별 수량					
	품목	품 종	단 량	포장재 ²⁾	출하여부	⑪-1					소계
	⑨-1	⑨-2	⑨-3	⑨-4		⑪-2					
산 지	⑫				합 계						
운 송 ⑬ 내 역	운 송 비	일 금		원정		판매대금	금 용 기관명				
	차량번호					⑭ 송 금 처	계좌번호				
	기사명						예금주				

※ 1) 등록번호 : 농협, 법인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수집상은 수집상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2)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마대, 플라스틱상자, 산물출하, 기타 중 에서 해당사항 기재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회원농협 등)

○ 품 명 :

○ ○ 농협

년/월/일	적 요 (출 하 처)	입고수량	출고수량	재고수량	확 인 (송품장)
누 계	다음면 이월				

공동이용 물류기기 관리부(농산물 유통사업장)

취급점 : ○○○

년/월/일	적 요 (출하처)	출 하 수 량				확 인 (송품장)
		파렛트	목재상자	P-BOX	기 타	
누 계	다음면 이월					

Ⅲ. 농산물 규격출하

1. 목 적

가.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건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바코드 부착으로 디지털 유통 및 신용·통명거래 기반 구축
- 공동계산조직 및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으로 생산자조직의 유통활성화와 안전농산물의 지속적 공급 실현

다.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출하 촉진

- 비포장 농산물의 규격포장화 유도로 공정·투명거래 정착
- 유사도매시장과 차별화 추진으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
-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 농산물 표준바코드 부착출하 촉진으로 디지털 유통 및 신용·통명거래 기반 조기구축
- 공동계산조직 육성·지원을 통한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물류비절감
-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자조직 지원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다.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출하 촉진

- 비포장 농산물에 대한 규격출하 촉진 및 공정·투명거래 정착
- 공영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개선과 도매시장 활성화 유도

3. 근거법령

가.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의 포장제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제5조(품질인증),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4. 지원계획

구		분	'92~'98	'99	2000	2001예산(안)
포장화 미흡품목	사업비	사업량(천매)	639,000	191,000	187,000	184,000
		계 (백만원)	325,357	129,727	138,380	156,400
		국 고	56,020	40,749	41,514	46,920
		지방비	54,446	12,897	-	-
		자부담	214,891	76,081	96,866	109,480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사업비	사업량(천매)	-	-	-	77,000
		계 (백만원)	-	-	-	57,750
		국 고	-	-	-	17,325
		지방비	-	-	-	-
		자부담	-	-	-	40,425
도매시장 포장화우대품목	사업비	사업량(천매)	-	-	-	11,454
		계 (백만원)	-	-	-	8,590
		국 고	-	-	-	2,577
		지방비	-	-	-	-
		자부담	-	-	-	6,013

5. 사업비 배분

가. 포장화 미흡품목

(1) 시·도별 예산 배분기준

- 전전년도 규격출하실적, 전년도 사업량, 당해년도 사업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
- 전전년도 예산불용, 전년도 부적정 지원 시·도는 해당액 감액
 - 전전년도 불용액 발생, 전년도 사업의 지원기준 위반,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추진 실태가 좋지 않은 시·도는 예산 감액
- 우수 시·도는 특별지원 : 예산의 10%이내
 - 전전년도 투자사업 중앙심사결과 우수 시·도에 특별지원
 - 전년도 사업비의 차등지원 실시 등 사업추진 우수 시·도는 특별지원

(2) 항목별 반영 비율

항목별	전전년도 규격출하실적	전년도 사업량	당년도 사업신청량	계	사업추진에 따른 증감	
					불용액 발생	평가 결과
배분비율	70%	20%	10%	100%	5%이내	5%이내

※ 시·도의 사업신청량 이내로 배분하되, 2001년도 사업비는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2000년도 사업비를 기준으로 배분한 다음, 사업비 초과분에 대하여 우수 시·도에 추가 배분

(3) 사업추진 실태에 따른 증감 세부기준

- 감액
 - 불용액 발생시 : 당초 예산대비 불용액 발생 비율을 적용하되, 최대 5%까지 감액
 - 사업추진 실태 평가 :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1회당 0.1%, 총 지원건수 대비 지원기준 위반건수 비율을 적용하되, 최대 5%까지 감액
- 증액(7개 특별·광역시와 9개도로 구분)
 - 전전년도 투자사업 중앙심사결과 우수 시·도 : 불용액 발생 부분 감액분 만큼 증액
 - 규격출하사업 추진 우수 시·도 : 사업추진실태 평가결과 감액분 만큼 증액
 - 시·도의 사업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총 지원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이 적은 우수 시·도 3개를 선정
 - 감액분을 1위는 5할, 2위는 3할, 3위는 2할로 나누어 증액

나.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1) 시·도별 예산 배분기준

- 전전년도 품질인증품 출하량,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 실적(생산계획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
- 공동계산물량은 전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량을 기준으로 배분

(2) 항목별 반영 비율

항목별	전년도 및 당해년도 공동계산물량	전전년도 품질인증품 출하량	전전년도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신고실적 (생산계획량)	계
배분비율	10%	70%	20%	100%

다.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1) 예산 배분기준

- 전전년도 도매시장 반입억제 품목의 도매시장 포장품 반입실적 및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 포장품 반입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

(2) 항목별 반영 비율

- 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의 포장품 반입량을 동일하게 적용

6. 2001 사업실시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로 신용·공정거래를 촉진
-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농산물에 표준바코드 부착·유통으로 디지털 유통기반 조기구축
- 공동계산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자조직지원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

-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유도로 규격출하 촉진
- 농산물의 공정·투명거래 정착 및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

(2) 지원대상

<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농산물을 규격출하·공동으로 계산하는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 조직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

-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

(3) 사업내용

-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카 포함), P.E대, P.P대 등 포장자재비 일부 보조(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겉포장내의 속포장을 포함하며,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라도 표준거래 단량 이면서 농산물표준포장치수(총 87개 모듈)
 - 스티로폼 상자는 2002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대상품목

<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적용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단, 양곡류 제외)
 - 우선지원 대상품목
 - 알타리무, 열무, 열갈이배추, 파(대파, 쪽파 포함), 양파, 수박(조롱수박 제외), 양배추, 감자, 고구마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열갈이배추 제외), 미늘]
 -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경우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후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에 출하하는 경우
- 객관적 증빙서류(별지 제3호서식) 제출시 지원 가능

○ 추가지원가능 품목 : 9개

- 우선지원 대상품목 지원후 사업비가 남고, 지역특성상 지원이 불가피한 품목이 있을 경우 시·군과 농관원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 선정
- 단, 지역적 특성상 우선지원 대상품목이 표준규격출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품목수 만큼 추가지원 가능품목에 포함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적용품목

- 공동계산조직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 : 신고를 필한 포장출하 전 품목
- 품질인증 조직 : 품질인증을 받은 전 품목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

- 적용 품목 : 2001년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얼갈이배추 제외), 마늘]

(5) 지원기준 및 조건

<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 >

- 우선지원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조직등급 분류와 관계없이 신청량의 100%를 지원
- 추가지원 가능품목은 규격출하품 소비자 품질평가 및 자체품질관리 활동 정도 등에 따라 생산자 조직을 평가·분류하여 아래의 조직 등급별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사업량은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규격출하사업 계획서의 재배면적, 10a당 단수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과다 신청된 경우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구 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 가 점 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 사업량	신청량의 100%	신청량의 90~70%	신청량의 30%이하

※ 생산자조직 평가표 : 별첨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신청 및 제작수량의 100%를 지원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포장재 지원 >

- 출하수량의 100%를 지원

나. 2001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천매			
포장화 미흡품목	184,000	156,400	46,920	109,480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77,000	57,750	17,325	40,425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품목	11,454	8,590	2,577	6,013
합 계	272,454	222,740	66,822	155,918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4-941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질관리과 (031)446-0126~7
- 시·도 : 농산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원 품질관리과
- 시·군 : 산업과(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농 협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대상자 선정

< 포장화 미흡품목 >

(1) 선정기준

(가) 사업대상자별 최저 한도액 설정

- 사업시행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한도액 설정·운영
 - 사업대상자별 최저지원 한도액 : 100만원(국고)
 - 단, 우선지원 품목 사업대상자는 예외

(나) 우선 순위

- ① 우선지원 대상품목을 규격포장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②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지원
 -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생산자조직은 차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해당등급별 지원기준을 최대한 적용
- ③ 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조직이 수출계획량을 수출하고, 그 잔량을 표준 규격품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최우수조직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 ④ 평가결과 자연재해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사업이 부진하여 평가등급이 전년도 평가등급보다 낮은 생산자조직은 시장·군수,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전년도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가능
- ⑤ 개인단위 신청자(조직지원 순위적용 방법에 따름)

(2) 선정절차

- 생산자조직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을 거쳐 시·군에 2001. 1. 10까지 제출
 - 단, 전년도에 신청한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생략
-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규격출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역별 산지유통인연합회장 확인을 필한 다음, 경작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신규조직)으로 분류하여 시·군에 통보(2001. 1월중)
 - 특히,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 시·군은 농관원,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1) 우선 순위

- ① 공동계산을 하고 있는 생산자조직
(표준바코드 부착시 우선 지원하고, 출하물량이 많은 순으로 지원)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 제배 순으로 지원)

- ③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생산자조직(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지원)
- ④ 개별농가 단위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유기, 무농약, 저농약, 일반 재배 순으로 지원)
- ⑤ 개별농가 단위로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자(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지원)

(2) 선정절차

- 생산자조직(개별 품질인증을 받은 자, 개별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필한 자 포함)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내를 ‘디지털유통’으로 기재한다)를 읍·면을 거쳐 2001. 1. 10까지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취합하여 품질인증·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관원에, 공동계산조직은 농협에 각각 통보
- 농관원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와 신청조직의 전년도 출하(신고)실적을 기재하여 시·군에 통보(2001. 1월중)
 - 특히,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기재
- 시·군은 농관원,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

(1) 우선 순위

- 대상품목 [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얼갈이배추 제외), 마늘] 별 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

(2) 선정절차

- 대상품목 [무(알타리무, 열무 제외), 배추(얼갈이배추 제외), 마늘] 별 연간 규격 출하수량을 감안하여 품목별 자금집행금액 책정
- 품목별 책정 금액을 기준으로 규격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

라. 사업 시행

< 포장화 미흡품목 >

(1) 사업비 집행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또는 승인한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제에 한하여 자금 지원
 - 단, 유통능률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 군수 농관원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비 지원절차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제작 전에 반드시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농관원 출장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
 - “표준규격품” 문구, 포장재 중량, 포장재 치수, 포장재 제작연도표시 의무화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자금요청을 할 때에는 농관원 출장소장이 발급한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품목, 단량, 포장재규격(포장치수 포함),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및 농가별 포장재공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가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포장재 1매와 시·군에 제출할 증빙서류 사본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시
 - 농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시한 지원대상 포장재의 표시사항, 포장재 치수 등이 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
- 단,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공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에서 발급한 농산물규격포장출하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시·군에 추가로 제출 하였을 경우에만 포장재비 지원
 - 이 경우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지역연합회)를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의 규격포장재 확인(제작수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농산물표준규격포장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집행
 - 도매시장 포장출하 우대품목의 경우는 대형유통업체 및 가공업체,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 등 출하처의 증빙서류(별지 제3호서식)제출시 자금 집행
 - 사업단가는 포장재의 용적(길이×너비×높이)을 계산하여 아래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품단가가 이보다 낮을 경우에는 납품단가를 적용

< 포장재 용적별 최고사업단가 >

구 분	40,000cm ³ 미만	40,000 ~ 50,000cm ³ 미만	50,000 ~ 60,000cm ³ 미만	60,000cm ³ 초과
최고사업단가	850원/매	900	1,000	1,100

※ 그물망, PE포대, PP포대는 매당 450원을 넘을 수 없음

· 보조지원액은 제작매수(사업량범위 이내), 사업단가, 보조비율(30%)을 적용 산출

※ 제작매수가 당초 신청한 수량보다 적을 경우 사업량은 실제제작수량에 사업량 확정시 적용한 생산자조직 등급의 사업량 반영율을 곱하여 재산출 하여야 함

(2)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품목, 사업량, 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관원 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 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는 조직평가를 생략하고 일반조직으로 분류하여 지원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1) 사업비 집행방법

-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르되 다음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조직은 신고를 필한 포장출하 전 품목(단량), 품질인증 조직은 품질인증을 받은 전 품목(단량)을 지원
 - 친환경·품질인증품은 포장재증량과 포장재 제작연도표시만 의무화
 - 공동계산조직은 관할 농협이 발행하는 공동출하·계산물량 확인서에 의해 공동계산물량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
 - 친환경·품질인증 생산자조직은 신청수량보다 적게 제작한 경우 포장재 제작수량을 기준으로 포장재비 지원

(2) 사업계획 변경

-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따름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

(1) 사업비 집행방법

(가) 사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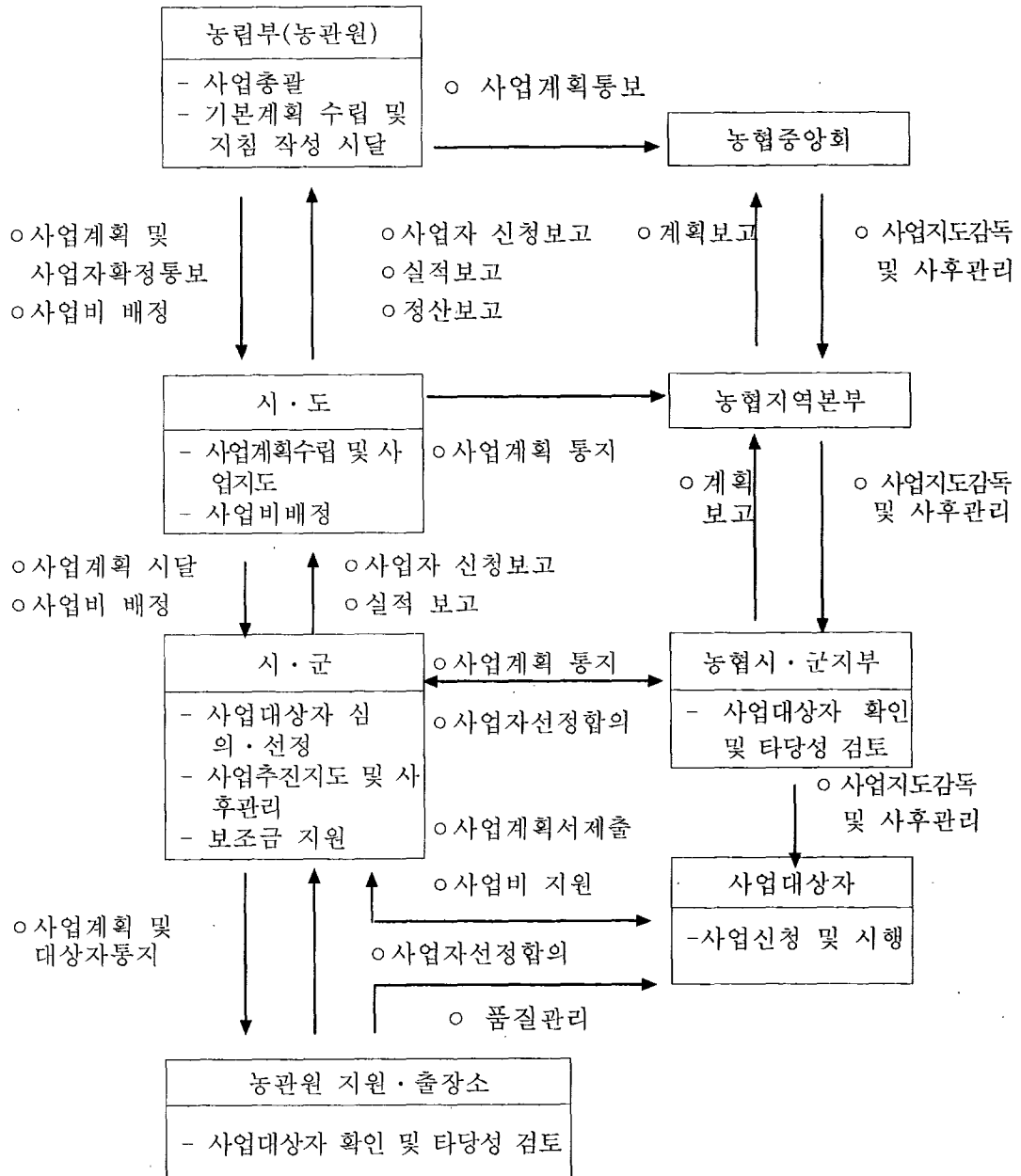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승인한 농산물 표준규격포장재에 한하여 자금지원(포장화 미흡품목의 절차에 따라 표준규격인지 여부 확인)

- 시·군 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 이하 공사)와 농협중앙회(종합유통센터)는 각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품목별, 분기별 출하물량과 예산액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행
- 사업단가는 포장화 미흡품목의 방법에 다르되 출하비용 일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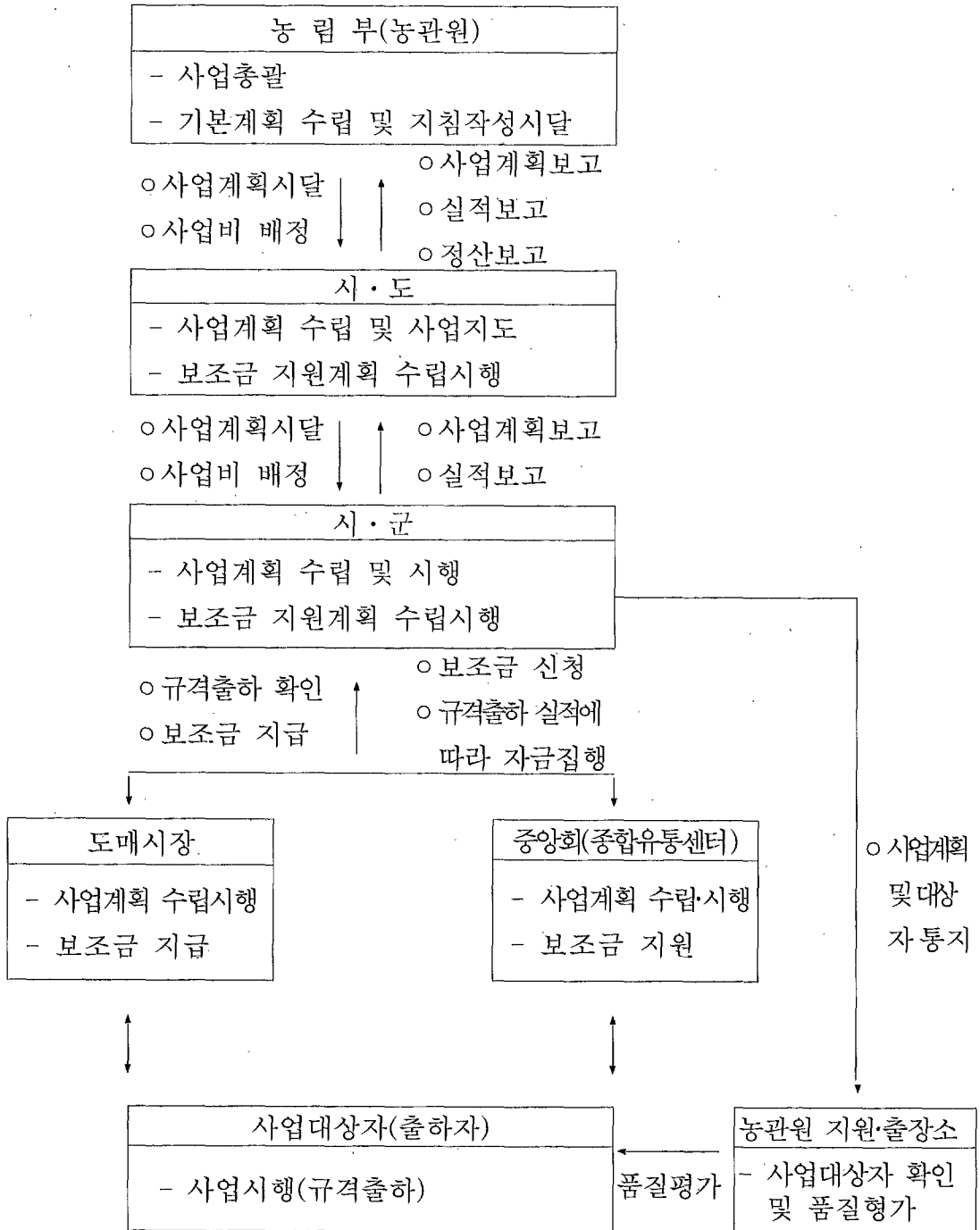
(나) 사업비 지원절차

- 공영도매시장
 - 출하자가 포장화 우대품목을 규격포장출하 하여 도매시장 해당 법인에 상장하면 해당법인은 품목별, 규격별 포장재 수량을 확인 한 후 규격 출하 지원금액을 경락대금과 같이 지급한 후 해당법인은 확인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지급요청
 - 포장화 우대품목이 비상장품목일 경우에는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신고한 물량에 한하여 도매시장 관리자 또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
 - 관할 공사는 도매법인(또는 중도매인)의 지급요청서를 검토한 후 자금집행
 - 공사는 규격출하 지원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시 도매시장포장화 우대품목 규격출하 지원금을 우선 지불한 후 정산 가능
- 종합유통센터(물류센터)
 - 출하자는 규격출하 지원 청구서를 종합유통센터에 제출
 - 종합유통센터는 입하분에 대해 청구서와 현품을 대사 확인후 출하자에게 지원금을 지원
 - 종합유통센터는 규격출하 지원금을 지급한 확인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요청
 -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터 요청내역 확인후 예산범위내에서 시·군에 예산 교부 신청
 - 시·군은 농협중앙회로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지원 자금 집행
 -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터별로 포장화우대 지원금 정산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포장화 미흡품목 >

(1)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장 비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별 포장재비 보조금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농관원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에게 통보
- 기록사항 : 지원대상자명, 품목명, 조직등급, 재배면적, 생산량, 포장재 제작 및 지원수량, 지원금액, 규격출하계획량, 규격출하 실적 등

(2)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 협조 : 농관원, 농협
- 교육내용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격출하의 필요성,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 등
- 시장·군수는 규격출하사업 내용을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3)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별 지원상황을 보고 받아 사업지도에 활용
-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규격출하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관원출장소장은 소비지 출하농산물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 농협,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시·군, 농협 시·군지부장은 소비지 품질평가결과를 읍·면 또는 지역 농협에 통보하여 사업지도에 활용토록 조치
-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결정시 반영

(4) 제재사항

- 시장·군수가 생산자조직별 사업량 결정시 농관원의 평가분류에 의한 차등지원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치 않았을 경우 차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조치하고 이를 우수 시·도, 시·군에 추가 배정 조치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농관원 출장소장과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1) 지원대상 비치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하되 기록사항에는 조직등급 대신 조직종류(공동계산조직, 품질인증, 친환경 표시)를 기재

(2)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함

(3)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하되,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 생산자조직은 농관원 출장소장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도점검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 지원 >

(1) 지원대상 비치

- 시·군 도매시장 관리자와 농협중앙회(종합유통센터)는 일자별로 규격출하 포장재비 지원상황을 기록 보관
 - 기록사항 : 지원대상자명, 품목명, 단량, 포장재종류 및 규격, 출하량, 지원수량, 지원금액, 기타 품목별 규격출하 총 수량 등

(2) 교육·홍보

- 시·군 도매시장관리공사와 농협중앙회(물류센터)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표준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3)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포장화 미흡품목에 준함

나. 보 고

< 포장화 미흡품목 >

- (1)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 (2) 시·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

- (1)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와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2) 시·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지원 >

- (1) 시장·군수는 도매시장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
- (2)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유통센터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 (3)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에 통보

다. 기 타

- (1) 이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는 각종 특산품전,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

7. 2002년도 사업실시요령

< 포장화 미흡품목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나. 신청자격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 농협은 산지유통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선과장 등 선별포장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신청절차

- 규격출하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관할 시·군이 선정한 지원대상품목(18개) 범위내에서 농립사업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제출
- ※ 단,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은 우선지원 품목에 한함

라. 구비서류

- 농립사업 지원신청서 (농립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2001년도와 같음

<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포장재 지원 >

- 2001년도 사업요령에 따른다

< 별첨 >

생산자조직 평가표

등 급	활 동 기 준	지 원 내 용
최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별 품질이 균일(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공동출하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조직원의 총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비율이 7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을 신청량의 100% 반영
우 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품질관리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질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가 있음 (선과장, 산지유통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실시 (같은 등급은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제 ○ 조직원의 총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비율이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사업량을 신청량의 90%~70% 내에서 차등 반영
일 반 출하조직 (신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미흡하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 및 우수 조직에 우선지원후 잔여금이 있을 경우 30%이하 지원

※ 기타 사업계획의 적정성, 소비자 품질평가결과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항목은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격출하사업계획서(생산자조직용)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 황	조직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성명	(인)	
	조직결성일시			조직원수(농가)			
재 배 현 황	품 목	재배 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ha		톤			
전 년 도 지 원 · 출 하 실 적	지원실적(포장재비보조)			천원			
	출 하 실 적						
	계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특허, 의장 등록번호		
	주요 출하처						
공 동 유 통 시 설 보 유 현 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조 ()	 ()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 등)을 ()내서

3.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분	품목	포장종류	단량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kg	원	매	원			

○ 출하계획

품목	생산량	출하량				주출하처	출하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목	개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 방법별

품목	농가별 수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지원년도, 사업비 등

○ 기타 특기사항

< 신청자 확인사항 >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확인자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규격출하사업계획서(산지유통인연합회회원)

1.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인)	소 속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2. 전년도에 지원받은 실적(포장제비 국고지원) : 천원

3. 전년도 출하실적

출 하 실 적				
품목별	계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합 계				
상 표 명				
주요 출하처				

4. 유통시설 보유현황

- 선과(별)장 : 동 평 ()
- 저온저장고 : 동 평 ()
- 일반창고 : 동 평 ()
- 선과(별)기 : 조 ()
- 광폭차량 : 톤 대 ()

※ 유통시설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을 ()내서

5.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분	품목	포장종류	단량	단가	사업량	포장재비 보조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kg	원	매	원			

○ 출하계획

품목	생산량	출하량				주 출하처	출하 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목	개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 방법별

품목	개별 수송	공동수송
	톤	톤

6.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지원년도, 사업비 등

○ 기타 특기사항

< 신청자 확인사항 >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확인자 : 지역산지유통인 연합회장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포장화우대품목 포장출하 확인서

취급장명 : _____

(단위 : 매)

년월일	품 목	포 장 형 태		출 하 내 역			비 고
		재질	단량	출하자명	검수번호	출하수량	

- 주) 1. 단량은 포장단위 출하량을 기재
2. 출하자명은 생산자조직(또는 산지유통인)의 명칭 기재
3.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는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지원이 종료된후 출하 할 경우 발행 가능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을 확인합니다.

_____ 장 (인)

년 월 일

I. 산지농협유통활성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서기관 홍병기)입니다.

1. 목 적

- 일선농협을 농산물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유통사업이 활성화 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조합에 중기·저리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 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농업인 공동의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기반 구축
- 자금사용에 대한 조합의 재량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사업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조합장의 책임경영 의식 고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과 “제2차 협동조합개혁”에의 참여정도 등 조합장의 사업의지를 종합 심사하여 지원대상 조합 선정
 - 광역화조합, 연합사업조합, 규격출하조합,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실시조합 등 유통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을 우선 선정하고
 -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사업규모가 작은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지농협을 중심으로 작목반, 영농조합 등 유통주체를 계열화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및 공동규격출하 확대
- 산지농협의 유통사업 규모를 대형화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에 대응
- 자금운영실적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 및 평가를 통하여 賞罰 실시

3. 근거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다목

4.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협에 지원하는 유통사업 관련 운전자금이 세분화되어, 사업별로 사용용도가 제한됨에 따라 조합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자금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됨
- 규모화·전문화된 조합이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중기(3년) 저리(3%)의 유통종합자금을 지원

2) 2001년 지원방향

- 합병조합·품목조합 등 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시설) 운영조합 등 대규모 사업 추진조합, 공동규격출하조합,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실시 등 농산물유통개혁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조합 등에 자금을 集中支援 ⇒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을 뒷받침
- 소포장 출하 또는 고유상표 출하 등 소비자 지향의 농산물 유통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조합과 특정품목 중심으로 전문화된 조합에도 적정수준의 자금을 지원하여 규모화 유도
- 이미 지원 받은 조합 중에서도 위 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의 자금소요에 맞추어 추가지원함으로써, 조합별 유통사업의 발전단계에 적절히 대처
-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확보하고 농협이 20%(자부담) 추가
 - 정부자금 중 농특세는 신규지원 위주로, 농안기금은 인센티브 위주로 각각 운용

3) 지원대상조합의 범위(신청자격)

- 최근 1년간¹⁾ 유통사업²⁾ 실적이 50억원 이상인 조합에 신청자격 부여

1) “최근 1년간”이란 1999. 10.부터 2000. 9.까지를 말함

2) “유통사업”이란 농산물(양곡류 제외)의 판매 및 가공사업을 말함

- 1998년부터 2000. 9.까지 연속 적자를 낸 조합과 2000년 산지농협 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 받은 조합 중 사업포기조합은 제외하고
- 유통사업 실적 20억원 이상인 다음 조합은 포함
 - 연합사업조합
 - 2개 이내 품목이 유통사업 실적의 30%를 초과하는 등 특정품목 중심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다른 조합의 모범이 되는 조합

4) 지원내용(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동규격출하를 위한 출하선도금,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채소수급안정사업 품목 제외), 산지유통센터·산지공판장·가공공장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매취사업자금,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장비 구입자금 등 산지유통 개선에 필요한 용도로 사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용

5) 재원 및 지원조건

- 재 원 : 정부자금 80%, 농협자금 20%
- 용자조건 : 연리3%,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나. 2001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예산(안)
○ 사업량	99	00
○ 사업비	264,161	370,000
- 정부자금	211,330	300,000
(농특세)	(161,330)	(250,000)
(농안기금)	(50,000)	(50,000)
- 농협자금(자부담)	52,831	70,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농업경제기획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4-9411~2)

다. 지원대상조합 선정 심사기준

- 공동규격출하¹⁾ 확대(37점), 상품의 고급화 추진(20점), 유통비용 절감(20점), 유통개혁 추진 및 유통활성화 기반 구축(13점), 산지유통시설 등의 활용(10점) 실태를 심사하여 득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별지 I-1)
- 연합사업조합²⁾,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시설) 운영조합, 공동규격출하조합에는 기본점수에서 우대하고
- 위 조합과 광역조합³⁾,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시행조합⁴⁾ 등 우선선정 대상조합에는 지원위원회에서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각 항목마다 농협중앙회의 실적 중심 심사항목(85%)과 지원위원회의 발전가능성 중심 심사항목(15%)을 설정

- 1] 정부표준규격(정부표준규격보다 세분한 경우 포함)에 따라 공동선별한 농산물을 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것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 조합이 정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조합(또는 작목조직)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 다만, 조합이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의 통일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조합이 이를 확인한 경우는 공동선별로 봄
- 2] 3개 이상(영농법인 포함)이 연합하여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연합체(법인 여부와 무관함)를 결성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동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합, 2001년 중에 연합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조합
- 3] 조합원 수 5천명 이상인 지역조합, 조합원 수 2천명 이상인 품목조합, 2001년 중에 위 규모로 합병 등 광역화할 계획인 조합
- 4] 2001년 중에 실시할 계획인 조합 포함

- 심사점수가 동점인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 ① 우선선정대상조합
 - ② 상위 심사항목의 득점비율이 높은 조합
 - ③ 유통사업 규모가 큰 조합
 - ④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
 - ⑤ 기타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사항이 우수한 조합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원액 산출방법

- 지원한도액을 60억원으로 하되, 다음 조합은 90억원으로 함
 - 광역조합(자금지원일까지 2001년 합병 등 광역화 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조합 제외)
 - 연합사업조합(자금지원일까지 2001년 연합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조합 제외)
 -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시설) 운영조합 중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조합
 - 지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시행조합(자금지원일 현재 2001년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조합 제외)
 - * 유통명령제 시행조합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원인 조합, 유통명령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조합
- 다음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신청하는 금액을 지원액으로 함
 - 공동규격출하선도금은 최근 1년간 실적 등을 감안하여 2001년에 실시 계획인 금액 이하
 -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시설) 원료구입자금, 유통사업(공판장 제외)운전자금은 최근 1년간 실적의 130%이하
 - 일반출하선도금(수출선도금 제외), 기타 유통개선 용도[4-사업개요-가-4) 참조],의 자금은 최근 1년간 실적의 30%이하
 - * 2000년 지원조합은 산출액(산출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한도액)에서 2000년 당초 지원액(중도회수금 포함)을 뺀 금액으로 함
- ※ 조합은 위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원 받아 전액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자금회수(위약금 포함) 및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적정금액을 신청해야 하며, 농협중앙회는 이를 철저히 홍보 및 지도함

마. 사업시행

1)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최근 1년간의 유통사업실적 및 2001년 사업추진방향과 지원신청액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신청서(심사기초자료)양식을 작성하여 조합에 共知(2000. 10.~11.)

* 지원신청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요건을 기재함

- 조합은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내용, 60억원 초과지원 요건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협중앙회(지역본부)에 제출

2) 농협중앙회(지역본부)의 지원대상조합 추천(2000. 12, 세부일정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함)

- 농협중앙회(지역본부)는 신청자격을 갖춘 조합 중에서 다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조합을 엄선하여 농협중앙회에 추천(조합이 제출한 신청서내용을 검토하고, 지원신청액이 지원액 산출방법에 의한 금액 또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액 감액)

- ① 우선선정대상조합(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시설 운영조합, 공동규격출하조합,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 시행조합)
- ② 소포장출하 등 일반 소비자 거래단위출하와 고유상표 출하 등 소비자 지향의 농산물유통을 실천하는 조합
- ③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파렛트 단위 출하 등 거래단위를 대량화하고 있는 조합
- ④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조합
- ⑤ 기타 농산물 유통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2001년 중에 확실하게 그러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합

3) 농협중앙회(본부)의 심사 및 심사결과 농림부 제출(2000. 12. 중순)

-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지원신청액이 지원액 산출기준에 적합한지 재 확인
- 조합별로 심사항목의 내용을 종합한 현황표 작성(협동조합 유통활성화 지원위원회 제출용)

4) 지원대상조합 및 지원액 확정(2000. 12.)

- 지원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조합 및 지원액 심의·의결 및 확정(확정내용을 농협중앙회에 통지)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은 확정된 지원액과 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
 - 농협중앙회에서 표준양식 별도제공
- 지원대상조합은 2001. 1. 20.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대상자가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부사업 금액의 $\pm 20\%$ 범위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 세부사업 금액의 $\pm 20\%$ 범위를 초과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

6) 2000년 사업 부진 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한

- 자금지원일 현재 2000년 지원조합 중 사업실적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어 지원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확정되었거나, 지원자금 부당운용 또는 사업의무 미달 등으로 동 자금의 회수 등 제재를 받은 조합에는 2001년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

《사업실적의 평가》

가. 원칙

- 산지농협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 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년마다 전년도 사업계획의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엄정한 賞罰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활용함

나. 2000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1) 평가개요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
- 평가시기 : 2001. 1.~2.

- 평가기준 : 지원 前後 변화된 조합의 유통사업 환경을 중심으로 평가 하되, 계량(80%), 비계량(20%)부문으로 구분 평가
 - 계량부문(별지 I -2) : 공동규격출하 확대 및 내실화 추진(28점), 상품의 고급화 추진(13점), 유통비용 절감(12점), 유통개혁 추진(7점), 유통시설 활용(7점), 지원자금 운용(7점), 중간점검결과(6점)를 평가
 - 표준모델조합⁴(5점), 조합간 연계하여 유통사업을 실시한 조합(5점)에는 加點하고,

1] 생산·출하·포장·시장관리 등 유통사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조합을 농협중앙회가 지역본부의 복수추천을 받아 규격상품화, 물류체계 개선, 상품성 제고, 판로확대 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별로 1개 씩 선정할 조합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조합(5점), 지원자금 부당운용 조합(10점)은 減點
- 비계량부문(별지 I -3) : 경영진단 실시(4점), 시장관리 활동(3점), 임직원 인식도(3점), 사업계획 이행의 충실도(2점), 출하조직원 육성(2점), 일시 운용수익금의 사용(2점), 조합원 교육(2점), 외부전문가 초청·자문(2점) 사항을 평가

2) 평가절차

- 배점기준표(별지 I -2, I -3)에 따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평점을 부여하여 농협중앙회(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지역본부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부적절한 평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조합이 평점을 사실과 다르게 부여한 경우는 해당항목 평점의 1/2을 감점
- 농협중앙회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001. 2. 28.까지 농림부에 제출
 - 평점 상위 15% 이내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제출하기 전에 농협중앙회가 현지확인을 통해 평점의 眞僞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을 조정
- 평가결과를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1. 3.)

3) 평가결과의 활용

- 상위 10% 이내 조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2001년 농안기금)
 - 지원조건 : 연리 3%, 1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2001. 3.~4. 중)
 - 지원내용
 - 상위 5% 이내(5개, 예산액의 60%) : 120억원(개소당 평균 24억원)
 - 상위 5% 초과 10% 이내(5개, 예산액의 40%) : 80억원(개소당 평균 16억원)
 - 하위 10% 이내 조합으로부터는 지원자금(농안기금)일부 회수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2001. 4.)
 - 회수규모 : 하위 5% 초과 10% 이하 해당조합은 지원액의 10% 수준,
하위 5% 이하 조합은 지원액의 20% 수준
- * 다만, 하위 5% 초과 10% 이하 조합의 평점이 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는 회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조합이 자율적으로 유통사업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
 - 경영진단 실시 여부 및 결과는 평가에 반영
- 농협중앙회는 지원대상조합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및 조합의 담당자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
-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분기별 지도·감독 실시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
 - 산지농협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조합에 대하여는 지원기간 중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자금, 공동규격출하선도금,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 가공공장수매지원자금, 회원농협공판장출하촉진자금, 직거래사업지원자금,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자금, 농협중앙회유통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산지농협유통활성화자금 지원일 현재 사용중인 위 자금이 산지농협유통활성화자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자금의 상환기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음

나. 제 제

- 지원자금을 다음과 같이 부당사용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준용)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사업의무 미달 등에 대한 조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사업계획상의 총사업비에 미달할 경우는 당해 미달액을 다음과 같이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금의 25%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금의 25%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실제 사용액의 차액 회수
 - 사업을 포기한 때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위약금 징수는 차진 상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다.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는 정부자금 취급수수료(0.5%)를 조합의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용도에 사용
 - 경영진단 : 용역, 경영진단 보고 및 평가회 등
 - 평가 : 평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 표준모델 개발·보급(우수사례집 발간, 우수사례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평가 연찬회 개최 등
 - 교육 : 경영진단사 외부 위탁교육, 조합원 및 임직원에 대한 집체·보수교육, 전자상거래 외부 위탁교육 등
 - 판촉지원 : 마케팅자문단 운영, 유통업체 거래알선, 도매시장 파렛트 단위 출하촉진, 상품설명회, 소비자 유통정보제공 등
 - 지도점검 및 조사활동 등 : 현장지도 및 현황조사, 협의회 개최, 선진사례 견학 등
 - 기타 : 사업홍보 및 광고 등

라. 일시운용수익금의 관리

- 정부지원액 중 사업시행 전후의 遊休額을 조합이 상호금융 여신재원으로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금(총 수입액에서 차입이자 30%해당액을 뺀 금액)은 “산지유통활성화추진자금계정”에 적립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계리
- 계정적립금은 생산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비, 고유상표 및 포장재 개발비, 예냉 기술 습득 관련 비용, 유통정보화 관련 비용(교육·조사·전산개발 등), 공동계산 프로그램 개발비, 선별작업반 운영비, 개발상품 홍보·판촉비, 유통전문기술 자문비, 상품성 제고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경영진단(컨설팅)비, 시설 개보수비(수익적 지출에 한함) 등 유통사업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조합 자체자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연말에 자금 대체
- 일시운용수익금의 사용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업자금의 미운용기간, 미운용 규모, 운용가능 금리 등 운용수익을 감안하여 조합의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에 반영(품목의 종류, 생산자의 자금수요 형태, 재고 보유기간 등을 감안)

마.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는 2002년 산지농협유통활성화자금 소요액을 파악하여 조합별 명세(2000년 및 2001년 지원액과 중도 회수액 현황 포함)를 2001. 3. 31. 까지 농림부에 제출함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기재된 사항중 유통사업(공판장에 한함)운전자금 및 매취사업자금의 사용비율이 높은 조합은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용비율을 축소함
- * 2001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지원자금의 운용금리를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농업인에 대한 금리를 조합이 적정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함

(별지1)

2001년 지원신청자 심사 배점기준표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1.공동규격 출하 확대 (37점,6항목)	1-1. 최근 1년간 공동규격출하 비중			
	<탁월> 총 출하실적 중 30% 이상 공동규격출하	12		
	<우수> 총 출하실적 중 20% 이상 30% 미만 공동규격출하	10		
	<보통> 총 출하실적 중 10% 이상 20% 미만 공동규격출하	8		
	<미흡> 공동규격출하 실적이 있으나, 10% 미만	5		
	<부진> 실적 없음	0		
	1-2. 신청일 현재 공동규격출하 조직원 수			
	<탁월> 조직원수 100명 이상	5		
	<우수> 조직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4		
	<보통> 조직원수 20명 이상 50명 미만	3		
	<미흡> 조직원수 5명 이상 20명 미만	2		
	<부진> 조직원수 5명 미만 또는 조직원 없음	0		
	1-3. 최근 1년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탁월> 공동계산 또는 3가지 모두 실시	5		
	<우수>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시	4		
	<보통> 공동선별·공동출하 중 하나 실시	3		
	<미흡>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음	0		
	1-4. 최근 1년간 판매粗수익율			粗수익율 = 판매수익 + 매출이익 + 가공이익 ÷ 유통사업실적(공판장 제외)
	<탁월> 2% 이상	5		
	<우수> 1.5% 이상 2% 미만	4		
	<보통> 1% 이상 1.5% 미만	3		
	<미흡> 0.5% 이상 1% 미만	2		
	<부진> 0.5% 미만	1		
	1-5. 최근 1년간 유통사업 실적 대비 채소류 취급실적			유통사업 실적에는 양곡류 제외
<탁월> 점유비 50% 이상	5			
<우수> 점유비 40% 이상 50% 미만	4			
<보통> 점유비 30% 이상 40% 미만	3			
<미흡> 점유비 20% 이상 30% 미만	2			
<부진> 점유비 20% 미만	1			
1-6. 위 각 사항을 2001년에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 및 발전가능성				
<탁월> 4개 이상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5			
<우수> 3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4			
<보통> 2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3			
<미흡> 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2			
<부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음	0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2. 상품 의 고 급 화 추 진 (20점, 6항목)	2-1. 최근 1년간 소포장 등 일반 소비자 구매단위 출하실적 <탁월> 10억원 이상 <우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통>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미흡> 실적은 있으나 3억원 미만 <부진> 실적 없음	5 4 3 2 0	비닐, 망, 랩, 트레이 (1단 개방형 상자) 포장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단위의 포장(예 : 감귤10kg, 사과5kg, 배7.5kg, 건고추5근, 포장마늘, 양파 3kg) 출하 실적
	2-2. 최근 1년간 고유상표에 의한 공동규격출하 비중 <탁월>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전량 공동규격출하 <우수>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80% 이상 100% 미만 공동규격출하 <보통>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60% 이상 80% 미만 공동규격출하 <미흡>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60% 미만 공동규격출하 <부진> 고유상표가 개발되지 않음	4 3.5 3 2.5 0	고유상표 적용 품목의 출하 실적
	2-3. 수확 후 품질향상 방안 추진 - 新鮮度 및 糖度 제고 장치 마련·시행 -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방법의 개선·시행 - 기능성 포장재 사용 등 <탁월> 2가지 이상 실행 <우수> 1가지 실행 <부진> 실적 없음	3 2 0	
	2-4. 최근 1년간 선별의 세분화 추진 실적 <탁월> 출하 농산물의 30% 이상 <우수> 출하 농산물의 20% 이상 30% 미만 <보통> 출하 농산물의 10% 이상 20% 미만 <미흡> 세분화 선별 실적은 있으나 10% 미만 <부진> 실적 없음	3 2.5 2 1.5 0	도매시장 거래 관행보다 세분화 하여 출하하는 정도
	2-5.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탁월> 5(3)억원 이상 <우수> 3(1.8)억원 이상 5(3)억원 미만 <보통> 수출실적은 있으나 3(1.8)억원 미만 <미흡> 수출실적 없음	2 1.5 1 0	()안은 채소류에 적용하는 금액임
	2-6. 위 각 사항을 2001년에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 및 발전가능성 <탁월> 4개 이상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우수> 3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보통> 2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미흡> 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부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음	3 2.5 2 1.5 0	

구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고
3.유통비용절감 (20점,5항목)	3-1. 최근 1년간 대형매장 등과의 직거래 비율 <탁월> 공동출하실적 중 20% 이상 점유 <우수> 공동출하실적 중 10% 이상 점유 <보통> 직거래 실적은 있으나 10% 미만 점유 <부진> 직거래 실적 없음	6 5 3 0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거래를 제외한 실적임 (상설매장에 한함)
	3-2. 최근 1년간 파렛트 출하실적 <탁월> 도매시장에 파렛트단위 출하실적 있음 <우수> 도매시장 외 거래처에 파렛트단위 출하실적 5억원 이상 <보통> 도매시장 외 거래처에 파렛트단위 출하실적이 있으나 5억원 미만 <부진> 파렛트단위 실적 없음	4 3 2 0	
	3-3. 최근 1년간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출하 실적 ○ 포장출하 여건을 갖추고 포장출하비중이 50%이상 ○ 포장출하 여건을 갖추었으나 포장출하비중이 50%미만 ○ 여건도 못 갖추고 실적도 없음	4 2 0	비포장산물: 무, 배추, 파, 수박, 풋마늘
	3-4.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 실적 ○ 전자상거래 여건을 갖추고 실적있음 ○ 여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실적은 없음 ○ 여건도 못 갖추고 실적도 없음	3 1 0	
	3-5. 위 각 사항을 2001년에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및 발전가능성 <탁월> 4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우수> 3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보통> 2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미흡> 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부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음	3 2.5 2 1.5 0	
4.유통개혁추진 및 유통활성화 기반구축 (13점,6항목)	4-1. 조합연합체를 결성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유통사업을 추진한 실적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3 0	
	4-2. 최근 1년간 계약재배 실적 ○ 계약실적 있음 ○ 계약실적 없음	3 0	손실발생시 정부가 보전하는 계약재배 제외(채소수급안정 등)
	4-3. 유통전문가 양성 및 배치 실적 ○ 3주 이상 유통전문교육 이수자 근무 ○ 실적 없음	3 0	유통업무 근무에 한함
	4-4. 최근 1년간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 실적 ○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 실적 없음	2 0	
	4-5. 최근 1년간 매취사업 비중 <탁월> 20% 이상 <보통> 실적은 있으나 20% 미만 <부진> 실적 없음	2 1 0	매취사업 비중 = 매취사업 실적 ÷ 판매사업 실적(양곡 실적 제외)
	4-6. 위 각 사항을 2001년에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및 발전가능성 <탁월> 4개 이상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우수> 3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보통> 2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미흡> 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부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음	2 1.5 1 0.5 0	

구 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5.산지유통 시설 및 가공시설 활 용 (10점,4항목)	5-1. 최근 1년간 시설 가동율		산지유통시설 : 산지 유통센터, 집하장(선발· 포장)시설이 설치된 것, 저온저장시설
	<탁월> 각 시설의 가동율 평균이 90% 이상	4	
	<우수> 각 시설의 가동율 평균이 80% 이상 90% 미만	3	
	<보통> 각 시설의 가동율 평균이 70% 이상 80% 미만	2	
	<미흡> 각 시설의 가동율 평균이 50% 이상 70% 미만	1	
	<부진> 각 시설의 가동율 평균이 50% 미만	0.5	
	5-2. 신청일 현재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시설 운영		2개 시설 모두폐업 상태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5-1 항목에서 “보통” 이상을 받고 현재까지 보유시설을 모두 운영중	2	
	○ 5-1 항목에서 “미흡” 이하를 받고 현재까지 보유시설을 모두 운영중	1.5	
	○ 보유시설 중 1개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나 회생가능성은 있음	0.5	
	5-3. 최근 1년간 다른 조합 또는 영농법인과의 시설 공동이용 실적		
	<탁월> 연간 30일 이상 공동이용	2	
<우수> 공동이용 실적은 있으나 연간 30일 미만임	1.5		
<부진> 공동이용 실적 없음	0		
5-4. 위 각 사항을 2001년에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계획 및 발전가능성			
<탁월> 3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2		
<우수> 2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1.5		
<보통> 1개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1		
<미흡>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음	0		
합 계	심사항목수 : 27개, 기본점수(滿點) : 100 점		

(주)

- 신청서 집계결과 조합의 유통사업 수준이 심사항목 별 배점기준(배점기준을 인원, 비율, 금액으로 정한 것에 한함)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전체 조합의 평균점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배점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음. 그러나 배점을 증감할 수는 없음
- 가점(5점 이내) 대상조합
 - 조합원수 5천명 이상(2001년에 광역화할 계획인 조합 포함)이고, 최근1년간 유통사업실적 200억원 이상인 조합
 - 조합원수 2천명 이상(2001년에 광역화할 계획인 조합 포함)이고, 최근 1년간 유통사업 실적 200억원 이상인 조합
 - 3개 이상 조합(영농법인 포함)이 연합하여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연합체를 결성하여 규약에 따라 유통사업을 실시하는 조합(2001년에 연합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조합 포함)
 - 산지유통센터(또는 가공시설) 운영조합(5-2항목의 점수가 “0”인 조합 제외)
 - 자조금 또는 유통명령제를 실시하는 조합(2001년에 실시할 계획인 조합 포함)

(별지2)

2000년 사업 평가 배점기준표(계량부문)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1. 공동규격 출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28점,7항목)	1-1. 출하 농산물 중 공동규격출하 비중		실적은 없으나 2001년
	<탁월> 총 출하실적 중 30% 이상 공동규격출하	5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우수> 총 출하실적 중 20% 이상 30% 미만 공동규격출하	4	수립된 경우 1점
	<보통> 총 출하실적 중 10% 이상 20% 미만 공동규격출하	3	
	<미흡> 공동규격출하 실적이 있으나 10% 미만	2	
	<부진> 실적 없음	0	
	1-2. 공동규격출하 농산물의 취급 성장을		실적이 전혀 없는
	<탁월>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	4	경우 0점
	<우수> 전년 대비 20% 이상 30% 미만 성장	3.5	
	<보통>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성장	3	
	<미흡> 전년 대비 10% 미만 성장	2.5	
	<부진> 전년 대비 역조	1	
	1-3. 공동규격출하 작목조직의 확대		실적은 없으나 2001년
	<탁월> 조합단위의 규모화 조직을 운영하거나, 등록된 작목반 중 30% 이상이 공동규격출하	4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우수> 등록된 작목반 중 20% 이상 30% 미만이 공동규격출하	3.5	수립된 경우 1점
	<보통> 등록된 작목반 중 10% 이상 20% 미만이 공동규격출하	3	
	<미흡> 등록된 작목반 중 5% 이상 10% 미만이 공동규격출하	2.5	
	<부진> 공동규격출하 조직 없음	0	
	1-4.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실시		실적은 없으나 2001년
	<탁월> 공동계산 또는 3가지 모두 실시	4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우수>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시	3	수립된 경우 1점
<보통> 공동선별·공동출하 중 하나 실시	2		
<미흡> 아무것도 실시하지 않음	0		
1-5. 판매사업 실적 성장을		관내 농산물(품목	
<탁월>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	5	조합분 포함) 취급	
<우수>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성장	4	점유비가 60% 이상인	
<보통> 전년 대비 5% 이상 10% 미만 성장	3	경우 5점	
<미흡> 전년 대비 5% 미만 성장	2		
<부진> 전년 대비 역조	1		
1-6. 판매 조수익율 증대		판매조수익율이 2%	
<탁월> 전년 대비 20% 이상 증대	4	이상인 경우 4점	
<우수>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증대	3	(공판장 운영조침은 제외)	
<보통> 전년 대비 10% 미만 증대	2		
<부진> 전년보다 낮음	1		
1-7. 주요 품목 출하수수료 증대		수탁사업에 한하되,	
<탁월> 전년 대비 3% 이상 증대	2	관내생산 농작물 중	
<우수> 전년 대비 2% 이상 3% 미만 증대	1.5	5대 품목이내로	
<보통> 전년 대비 1% 이상 2% 미만 증대	1	선정하여 조사	
<미흡> 전년 대비 1% 미만 증대	0.5		
<부진> 전년 대비 증대하지 않음	0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2. 상품의 고급화 추진 (13점, 5항목)	2-1. 일반 소비자 구매단위 출하실적		- 비닐, 망, 랩, 트레이 (1단 개방형 상자) 포장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단위의 포장(예 : 감귤10kg, 사과5kg, 배7.5kg, 건고추5근, 포장마늘, 양파 3kg) 출하 실적 -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탁월> 20억원 이상 출하	3		
	<우수>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출하	2.5		
	<보통>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출하	2		
	<미흡> 출하실적은 있으나, 5억원 미만	1.5		
	<부진> 출하실적 없음	0		
	2-2. 고유상표 개발 및 사용시 공동규격출하 비중			2001년 고유상표 사용계획이 구체적 으로 수립된 경우 1점
	<탁월>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천량 공동규격출하	3		
	<우수>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80% 이상 100% 미만 공동규격출하	2.5		
	<보통>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60% 이상 80% 미만 공동규격출하	2		
<미흡>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고유상표 사용시 60% 미만 공동규격출하	1.5			
<부진> 고유상표가 개발되지 않음	0			
2-3. 수확 후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鮮度 및 糖度 제고 장치 마련·시행 -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방법의 개선·시행 - 기능성 포장재 사용 등 </div>				
<탁월> 3가지 이상 실행	3			
<우수> 2가지 실행	2.5			
<보통> 1가지 실행	2			
<부진> 실행하지 않음	0			
2-4. 선별의 세분화 추진 (도매시장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 대비 세분화 정도)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탁월> 출하 농산물의 30% 이상을 세분화하여 출하	2			
<우수> 출하 농산물의 30% 미만을 세분화하여 출하	1.5			
<부진> 실적 없음	0			
2-5. 수출실적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탁월> 신규품목을 개발하여 수출하였거나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2			
<우수>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증가	1.5			
<보통> 실적전년 대비 10% 미만 증가	1			
<부진> 실적없음	0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3.유통비용 절 감 (12점,6항목)	3-1. 직거래 비율 확대 <탁월>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우수>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확대 <보통> 전년 대비 5% 이상 10% 미만 확대 <미흡> 전년 대비 5% 미만 확대 <부진> 전년 대비 역조	3 2.5 2 1.5 1	도매시장(유사도매시장 포함) 거래를 제외한 실적임(상설매장에 한함)
	3-2. 파렛트 단위 출하 실적 <탁월> 도매시장에 파렛트단위로 출하한 실적이 있음 <우수>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 도매시장의 거래처에 파렛트 단위 출하실적이 10억원 이상 <보통>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 도매시장의 거래처에 파렛트 단위 출하실적이 10억원 미만 <부진> 실적 없음	2 1.5 1 0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3-3.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추진 ○ 실적 있음 ○실적 없음	2 0	- 비포장농산물(무,배추, 파,수박,꽃마늘) -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3-4. 전자상거래 실시 ○실적 있음 ○실적 없음	2 0	실적은 없으나 실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3-5. 파렛트 및 컨테이너 풀 이용 <탁월> 두가지 실적이 있음 <우수> 한가지 실적이 있음 <부진> 실적 없음	1.5 1 0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3-6. 운송비용 절감 <탁월> 파렛트 출하 등을 통해 운송비 절감분을 계약체결시 반영 <우수> 운송계약을 조합이 직접 실시하여 비용절감한 실적이 있음 <부진> 운송비 절감 실적이 없음	1.5 1 0	- 차량 공동이용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새로운 제도운영시 2점 -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4.유통개혁 추 진 (7점,3항목)	4-1. 유통전문가 육성·배치 <탁월> 전담직원 2명 이상(정산담당직원 제외) 배치되어 있고, 그중 1명 이상이 유통대학과정을 수료함 <우수> 유통대학과정을 수료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부진> 유통대학과정 수료자가 타업무에 배치되어있음	3 2 0
4-2. 신규사업 개발 ○ 종전 사업방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신규개발 실적 없음		2 0	
4-3. 매취사업 비중 <탁월> 20% 이상 <우수> 실적은 있으나 20% 미만 <부진> 실적 없음		2 1 0	매취사업 비중 = 매취사업 실적 ÷ 판매사업 실적(양곡 실적 제외)

구 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5.유통시설 활 용 (7점,2항목)	5-1. 운영실적 증대 <탁월> 전년 대비 취급물량, 조수익(또는 시설취급 분의 수수료)이 모두 증가 <우수> 위 항목 중 하나가 증가 <부진> 증가하지 않음	4 3 1	보유시설 중 주요 시설 하나만 평가 - 보유시설 중 주요 시설 하나만 평가 - 연간 가동일수가 200일 이상이면 3점
	5-2. 가동율 증대 <탁월> 가동일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 <우수> 가동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증가 <보통> 가동일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10% 미만 증가 <미흡> 가동일수가 전년 대비 5% 미만 증가 <부진> 가동일수가 전년 대비 역조	3 2.5 2 1.5 1	
6.지원자금 운 용 (7점,3항목)	6-1. 자금(총사업비) 사용실적 <탁월> 100% 사용 <우수> 90% 이상 100% 미만 사용 <보통> 80% 이상 90% 미만 사용 <미흡> 70% 이상 80% 미만 사용 <부진> 70% 미만 사용	3.5 3 2.5 2 1	
	6-2. 일시운용수익금의 유통사업 추진비 사용 <탁월> 100% <우수> 80% 이상 100% 미만 <보통> 60% 이상 80% 미만 <부진> 60% 미만 사용	2 1.5 1 0.5	
	6-3. 출하선도금 운용기간의 적정성 <탁월> 파종기 지원, 판매기 회수 약정 <우수> 지원은 늦었으나, 판매기 회수 약정 <보통> 지원 및 회수 시기가 품목 특성과 괴리	1.5 1 0.5	
	7. 기 타 (6점,1항목)	7-1. 중간점검 결과	6
합 계	심사항목수 : 27개,	점수 : 80 점	
(주) 다음의 경우는 加點 또는 減點 - 표준모델조합(+5) - 조합간 연계하여 수탁사업을 추진하는 조합(+5) -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조합(△5) - 지원자금 부당운용 또는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자금회수 등 제재를 받은 조합(△10)			

(별지3)

2000년 사업 평가 배점기준표(비계량)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비 고
1. 경영진단(컨설팅) 실시 <탁월> 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개선요구사항을 사업 계획에 대부분 반영하였음 <우수> 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개선요구사항을 사업 계획에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음 <보통>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개선요구사항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부진> 경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음	4 3 2 0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1점
2. 시장관리(마케팅) 활동 <탁월>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납품제안서 발급, 상품 설명회 개최, 판촉행사 등 3가지 모두 실시 <우수> 위 항목 중 2가지 실시 <보통> 위 항목 중 1가지 실시 <부진> 위 항목 3가지 모두 실시하지 않음	3 2 1 0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0.5점
3. 임직원의 사업추진 인식도 <탁월> 3, <우수> 2, <보통> 1, <부진> 0.5	3-05	
4. 사업계획서 이행의 충실도 <탁월>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행됨 <우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이행정도가 약함 <보통> 사업계획 수립은 미진하나 사업추진은 양호함 <부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정도가 전반적으로 미약함	2 1.5 1 0.5	
5. 출하조직원 육성 <탁월> 선별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 현장견학, 회의 등 우수하게 실시함 <우수> 선별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 현장견학, 회의 등 양호하게 실시함 <보통> 선별체계 개선을 위해 교육, 현장견학, 회의 등 양호하게 실시하였으나 내용면에서 종전과 변화가 없음 <부진> 전반적으로 부진함	2 1.5 1 0.5	
6. 일시운용수익금 관리의 적정성 <탁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대단히 성실하고 정확하게 관리 <우수>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 <보통> 다소 미흡함 <부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실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2 1.5 1 0.5	
7. 유통활성화사업 관련 조합원 교육 <탁월>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 실시 <부진> 미실시	2 0	
8. 외부 전문가 초청 자문 사항 <탁월> 마케팅자문단, 수확후관리기술자문위원 등을 2회 이상 초청하여 자문 <보통> 마케팅자문단, 수확후관리기술자문위원 등을 1회 초청하여 자문 <부진> 실적 없음	2 1 0	실적은 없으나 2001년 실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 0.5점
합 계 (8항목)	20	

* 농협중앙회(지역본부) 관내 조합의 평균평점이 14점이 되도록 각 조합의 평점을 강제 배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농업사무관 허태웅)입니다.

II.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1. 목 적

- 품목별 주산지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대량의 규격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조직의 계열화를 통해 산지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공동선별·공동수송·공동판매를 통한 유통효율 증진
- 조합당 유통사업 취급품목을 3개 품목 이내로 제한, 주산지화·전문화 촉진
- 지역협의회 운영활성화를 통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 및 시장교섭력 강화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8까지	'99	2000	2001예산(안)
○ 사 업 비	673,278	199,675	174,088	234,563
- 용 자	538,623	159,900	139,670	187,650
- 자 부 담	134,655	39,775	34,418	46,913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배 경

- '98년까지는 농산물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에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 전략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
- 2000년에는 산지유통 개혁방안에 따라 자금의 공급 및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각종 운영자금을 통합지원
 - 조합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자금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2) 대상품목

- 주산지화·전문화 가능 품목(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제외)으로서 조합(영농조합법인)당 3개 품목이내
-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품목에 대하여 총 사업의 80%이상을 사용

3) 지원대상 : 품목별 전국협의회(채소수급 안정사업 대상품목에만 가입한 조직은 제외)에 1개 품목이상 가입한 생산자조직(지역농협·전문조합·영농조합법인) 단, 화훼품목 생산자조직은 예외로 함.

4) 대상사업 : 매취사업, 계약재배사업, 유통설비 및 자재구입비, 규격출하 선도금

5)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년이내
- 지원금리

	<u>대여금리(중앙회)</u>	<u>대출금리</u>
- 회원조합	4.5%	5.0%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3.0%	5.0%

나. 2001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기금대출 취급기관별	사 업 비			비 고
	계	용자	자부담	
○ 농협중앙회	229,563	183,650	45,913	
○ 농수산물유통공사	5,000	4,000	1,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4-9411~3)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02-397-5724)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4-5087)

다. 대상자 선정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시·도별 경작면적, 농업생산액, 공동판매실적 등을 감안 지역본부(유통공사지사)에 한도액 배분
- 농협지역본부(유통공사지사)는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용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자 대상자 추천서(심사결과서 첨부)를 농협중앙본부(유통공사)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유통공사 사장)은 사업자 선정 및 조합별 자금지원 지원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적격 사업자 확정

라. 선정기준

- ① 사업신청 품목에 대한 공동출하실적(40점)
- ② 품목별 전문화 - 원예특작품목 공동출하액에 대한 사업신청 품목의 공동출하액 비율(20점)
- ③ 사업신청 품목에 대한 전국협의회 가입비율(20점)
- ④ 지역협의회 결성(10점)
- ⑤ 우수사례 - 공동계산, 파렛트 출하 등(10점)

마. 조합선정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규모) 조정기준

- 각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기준 항목별로 수·우·미·양·가로 평점 후 사업 규모조정
- 평점 결과에 따른 조합별 사업규모 조정기준
 - A그룹 : 90점이상을 획득한 조합은 신청액의 100% 반영
 - B그룹 : 80~89점 평점 조합은 신청액의 90% 수준으로 조정
 - C그룹 : 70~79점 평점 조합은 신청액의 80% 수준으로 조정
 - D그룹 : 70점 미만 평점 조합은 신청액의 60%수준으로 조정
- 사업계획서가 현저하게 부실 작성되었거나, 유통사업 현황에 비추어 과다 신청된 조직의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의한 평점결과에 관계없이 D그룹에 포함
- A, B, C, D그룹에 대한 배정금액 총액보다 용자한도액이 많을 경우 상위등급 조직부터 신청액의 100%까지 상향조정하여 배정
- 신청액이 2000년도 사업신청품목 공동판매실적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1.5배 이내로 조정

바.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조합(영농조합법인)은 관내 주요작물생산 및 출하동향, 조직현황, 유통사업 현황, 유통관련 사업별 자금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2001. 2. 20까지 시·군지부에 제출(시·군지부→지역본부→중앙본부)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기금대출 취급 기관이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2) 사업규모 확정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조합선정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규모) 조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별 지원계획을 확정
- 사업자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사업지원 기관에 제출

3) 자금 지원절차

- 사업대상자는 월별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서를 기금대출 취급기관에 제출 (자금소요월 전월 20일까지)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융자한도액 배정요구 내역을 취합, 사업 지원 기관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청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과)에 자금 대여 신청
-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및 사업실행
- 사업대상자별 자금배정 이후, 농업인 등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계획(품목, 사업량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역농협과 농협시·군 지부장이 협의 하여 변경시행 가능

사. 사업계획의 변경

- 중앙본부의 사업규모 조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별 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재수립, 시·군지부를 경유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 사업계획을 중앙본부에 제출후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별 $\pm 20\%$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 용도별 사업계획 변경액이 $\pm 2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유통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
 - * 조합 직접사업과 농가지원자금(규격출하선도금)간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음(정부 차입금리가 상이함에 유의)
 - 농협중앙회장(유통공사 사장)이 조합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점검 실시
 - 분기별·지역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2) 사업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연2회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사업추진방향,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3) 부당운용·미운용에 대한 제재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준용

나. 보고·기타

- 품목별, 용도별 사업계획서(총괄) : 2001. 3. 5까지(농림부 유통정책과)
- 월별, 용자한도액 배정계획 : 2001. 3. 5까지(농림부 유통정책과)
- 사업추진 실적보고
 - 사업자(매분기 익월 5일) → 기금대출 취급기관(매분기 익월 25일) → 사업지원기관

다. 평 가

- 품목별협의회 회원조합(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사업실적, 집행성과, 자금운용 등을 평가(상반기)
- 평가결과 반영
 -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조직등급별로 차등지원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기금대출 취급기관

나. 신청자격 : 지역농협,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다. 신청절차

- 사업자 → 기금대출 취급기관 → 사업지원 기관

라. 구비서류 :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사업 계획서

마. 대상자 선정 : 2001년도와 동일

< 별지 제1호서식 >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수신 : ○○ 지역본부장

○ 작성자(직·성명) : _____ (문의전화 : _____)

1. 사업자(회원농협명) :
2. 전국협의회 가입품목명 :
3. 사업신청품목 생산현황

(단위 : ha, M/T, 개, 명, 백만원, %)

구 분	관내현황		작목반, 기타법인 구분		조합 취급실적 (2000년도 실적)		점유비 (B/A)
	재배면적	생산량 (A)	조직수	농가수	물량(B)	금액	
사업 신청 품목	①						
	②						
	③						
	소 계(1)						
원예특작기타(2)							
원예특작 총계 (3)=(1)+(2)							
곡류, 축산등(4)							
총 계 (3)+(4)							

주) 품목별 조합취급실적(금액)은 2000년도 조합의 판매사업실적과 일치시킬 것

4.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협의회 육성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여부	지역협의회 결성현황			비 고
		결성일자	참여조직수	참여농가수	
사업 신청 품목	①				
	②				
	③				
	소 계(1)				
(가입·결성)총계	개	개			

주) 지역협의회 결성현황은 2000년말 현재 보고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보고 누락조합 등은 별도 증빙자료 첨부

5. 우수사례

공동계산제 실시작목반(법인) 육성 : 개 작목반 개 법인

○ 공동계산제 실시품목 : ① _____, ② _____,

○ 공동계산제 실시작목반(법인)명 : ① _____, ② _____,

※ 공동계산제 실시여부의 확인은 '99년도 업적평가관련 보고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누락조합은 별도 증빙자료(출하대장, 출하정산서, 농가별 정산내역서 등) 제출

파렛트 출하체제 구축(조합자체 보유대수를 기입)

○ 지게차 ()대

○ 파렛트출하용 광폭차량 : ()대

◆ 기타 사업신청품목과 관련하여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

6. 소요자금 신청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사업신청 품 목 별	소요시기	2001년도 사업계획		2001년도 소요자금		
			물량(A)	단가(B)	신청액	자부담	계(A×B)
대농가지원 (규격출하사업)	①						
	②						
	③						
	소 계						
회원조합 직접사업	매취 사업	①					
		②					
		③					
		(소 계)					
	계약 재배 사업	①					
		②					
		③					
		(소 계)					
	유통 설비· 자재 구입	①					
		②					
		③					
		(소 계)					
소 계							
총 계							
비 고 (품목별 소계)	①						
	②						
	③						

주) 소요시기는 상·하(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표시

위와 같이 2001년도 생산자단체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1년 월 일

○○농협협동조합 조합장 (인)

7. 세부추진계획

가.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				주출하처	출하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나.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농가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Ⅲ. 공동규격출하 촉진

1. 목 적

- 산지에서의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물류이동의 규모화를 도모하여 유통비용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실시의 내실화로 유통효율 증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
-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 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표준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2-'98	'99	2000	2001예산(안)
○ 사 업 비	796,568	159,500	125,000	125,000
- 용 자	637,254	127,600	100,000	100,000
- 차 부 담	159,314	31,900	25,000	25,0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작목반을 공동출하의 기간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실작목반 정비 및 규모화 유도('97~)
- 작목반 공동계산 시범사업 추진 등 작목반 운영내실화방안 추진을 통해 공동계산제 실시 확대도모('99)

2) 대상품목(17개 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제정품목으로 하되, 우선지원대상 품목과 추가지원 대상품목으로 구분 지원, 단, 생산자단체 유통활성화사업 대상품목(3개)은 당해 조합의 지원대상 품목에서 제외

- 우선지원 대상품목(14개)

- 무, 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딸기, 상추, 풋고추, 감자, 고구마, 가지

- 추가지원 대상품목(3개)

- 지역특성상 우선지원 대상품목(14개)외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관원·농협이 합의하여 시·군별로 3개 품목이내에서 추가선정 가능

3) 지원대상 :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4) 대상사업 : 공동규격출하 선도금

5) 지원기준·지원기간 및 금리

- 지원기준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2월이내
- 지원금리
 - 조합대여금리 : 3%
 - 조합대출금리 : 5%

나. 2001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사 업 비			비 고
	계	읍자	자부담	
○ 공동규격출하 선도금	125,000	100,000	25,000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4-9411~3)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02-397-5685), 지역농협

다. 대상자 선정

- 작목반 등 기초생산자조직은 농협(지역농협→시·군지부→지역본부→중앙본부)에 사업신청
- 농협은 작목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내역 및 평가결과를 농림부(유통정책과)에 보고
- 농림부와 농협이 협의하여 품목별·조직별 자금배정
- 자금배정 결과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라. 선정기준

- 농협의 작목반육성 및 지도·지원 준칙에 의해 평가하고, 우수조직 위주로 차등지원

< 조직등급별 지원내용 >

- ①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조직에 일정비율 이상 최우선 지원
 - ② 시·군 등 지자체, 농협,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 ③ 최우수조직 : 공동계산 실시조직 우선지원후 사업계획의 80%이상 반영
 - ④ 우수조직 : 상위조직 지원후 잔액을 있을 경우 사업계획의 50%이상 반영
 - ⑤ 일반조직(신규조직) : 상위조직 지원후 잔액이 있을 경우 지원
- ※ 위 순서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며, 해당조직 등급 범위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 가능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실시 기관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사업지원 기관에 보고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실시 안내

2) 시행절차

- 농림부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품목별 사업지원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에 시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시 30일전까지 사업실시 계획과 대상자선정 결과를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고, 사업지원 요청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별 사업자 확정후 세부사업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 및 개별품목 담당과에 보고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하고(사업지원기관에 배정결과 보고), 사업자금과에 자금대여 신청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실행 및 사업시행
 - 지원금액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및 물량에 대하여 기금 대출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지원
 -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자금지원 불가
 - 조직평가결과 최우수조직은 농가당 300만원이상, 우수조직은 1백만원이상 지원하되, 농가간 배분은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자율검사원은 300만원 우선지원 가능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정부 차입일로부터 40일이내에 농가에 지원 완료
 - 단, 자금전·수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기일이 경과될 경우 농협 시·군지부에 지원계획 등 제출후 지원가능

3) 사업계획 변경

- 조직별 자금배정 이후 조직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대상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농협별로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변경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변경시에는 변경내역을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회원농협 조합장은 농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 검사원을 지정하여 자율검사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관원 출장소장은 소비자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및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회원농협 조합장은 농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조직별 지원규모 책정시 반영

나. 제 재

- 제재대상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제재내용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농안사업 실시요령에 의하여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규격이 아닌 포장규격을 사용한 경우 자금지원 중단
 - 단, 유통능력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농관원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한 경우와 농산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약정 불이행시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 결과를 계통보고 및 농관원 출장소장에게 통보
- ※ 약정 물량과 금액중 한가지가 이행될 경우에는 약정이행으로 간주

-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재해발생 및 수확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 시·군 지부장이 농관원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위약금 면제 가능

다. 보 고

- 사업자(매분기 익월 5일) → 기금대출 취급기관(매분기 익월 25일) → 사업지원 기관
- 자금지원 및 사업완료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유통정책과)에 보고

라. 평 가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
- 평가시기 : 10월중
- 평가위원회 구성 : 3-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 : 시·군지부 담당차장
 - 평가위원 : 위원장, 시·군지부 담당과장, 농관원관계관(이상 필수위원), 행정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상 위촉위원)
- 평가결과 반영
 -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조직등급별로 차등 지원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실시기관장

나. 신청자격 : 작목반(회), 영농조합법인

다. 신청절차

- 작목반 → 관할 회원조합

라. 구비서류 : 2000년 사업실적 및 2002 계획

마. 대상자선정

- 선정권자 : 사업실시 기관장
- 우선순위
 - 작목반 운영평가에 의해 분류한 상위등급부터 우선지원

IV. 인삼생산장려

1. 목 적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생산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작의욕 고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 및 수급조절의 자율적인 추진
- 생산자조직을 통한 규격화 및 공동출하 촉진으로 유통효율 증진
-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로 사업성과 확보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9까지	2000	2001예산(안)
○ 고년근생산장려사업	23,924	10,224	6,500	7,200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99년까지는 전문생산자조직인 인삼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개선과 공동생산·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회원조합 육성자금으로 통합 지원
- 2000년부터는 자금성격별(자체사업, 대출사업)로 구분지원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자단체 활성화 유도

(2) 대상사업

- 고년근 생산장려사업

- ##### (3) 지원대상 : 인삼경작농가 중 4~5년근 삼포에서 수확을 하지 않고 5~6년근 까지 재배하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4) 지원대상자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자	지원조건
인삼경작농가	융자 30%, 자담 70% 연리 5%, 1년이내상환

나. 2001년 지원계획(안)

구 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안기금)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고년근생산 장려사업	600ha	24,000	7,200	-	7,200	16,800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채소특작과 (02-504-9422~4)

나. 기금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사업부 (02-397-2991)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권자 : 기금대출취급기관장(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2) 사업대상자

- 인삼산업법에 의거 경작신고한 농가
- 융자금 부실채권이 없고 융자금회수가 가능한 자
- 인삼을 포전매취 및 매매하지 않은 자

(3) 선정절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인삼협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우선 지원순위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지침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 물량 및 금액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본 요령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개시 60일 전까지 사업지원과에 보고

(2) 시행절차

- 사업지원과는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시달
- 사업지원과는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자금관리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배정
-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자금배정결과를 사업지원과에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나. 제재

- 제재대상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이 사업 의무액에 미달한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제재내용
 - 대출금 회수, 일정기간 자금지원 중단
 - 약정 불이행시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 결과를 계통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실시기관장

나. 신청자격 : 인삼재배농가

다. 신청절차

- 전국협의회 회원조직, 삼협회원조합 → 기금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 → 사업지원기관(채소특작과)
- 구비서류 : 2000년 사업실적 및 2002년 계획

라. 대상자선정

- 선정권자 : 사업실시기관장
 - 민간수출업체와 계약하여 고년근을 재배하는 농가
 - 지원대상자로서의 재배경력,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능력 등을 감안 우선순위 부여
 - 출입경작으로 인한 타지역 거주자 차별대우 금지

마. 기타사항

- 2002년 이후의 융자금 금리와 품목별 사업비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서기관 홍병기)입니다.

I.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1. 목 적

- 농산물의 규격상품화를 위한 가격정보·계약재배정보·고유상표개발정보 등의 수집·전파를 위한 거점시설 확충
-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을 통한 신선농산물 출하촉진
- 직거래 등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의 조직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업기반과 능력을 갖춘 조직이 산지유통센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창업진단을 실시하고 준공 후에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정책에 반영
- 농산물의 상품성제고 및 규격상품화, 공동규격출하 및 물류비 절감을 촉진 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기계장비를 일괄 지원
- 집하선별포장시설과 예냉·저온저장고의 규모를 각각 100평 이상으로 하여 시설을 규모화
 - 기존의 저온유통기반시설 및 간이집하장, 민간시설 중 산지유통센터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기존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산지유통센터로 전환
- 사전계획에 의하여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상향식 사업방식)
 -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신청자격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자격에서 제외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자를 먼저 확정 한 후 사업에 착수
- 산지유통센터 시·군별 배치계획을 준수하여 지역별 시설과잉 소지 사전차단
 - 종전의 청과물 관련 시설과 포장센터를 합쳐 계획 個所 數 조정(220개소→248개소)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9실적	2000실적	2001예산(안)	2002-2004
○사업량	248개소 <확장 20>	160 <9>	17 <11>	28	43
○사업비	275,578백만원	196,178	20,200	23,800	34,400
- 국고	151,057	102,995	12,842	14,580	20,640
(보조)	(88,956)	(68,167)	(7,649)	(6,260)	(6,880)
(용자)	(62,101)	34,828	(5,193)	(8,320)	(13,760)
- 지방교부금	42,946	29,631	2,275	4,160	6,880
- 시도(시군)비	11,248	7,861	2,487	900	-
- 자담	69,327	55,691	2,596	4,160	6,880

- (주) 1) 2001년 예산은 신규설치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시설 확장이 포함될 수 있음
 2) 2002-2004년 사업비는 잔여사업량 43개에 예산상 단가 8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국고보조20%, 국고용자40%, 지방교부금20%, 자부담20%의 재원 분담율을 적용하였으나 각 연도 예산편성시 지자체, 유통업체 등 지원비율이 다른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 재원분담율이 달라질 수 있음
 3) 사업량은 “산지유통센터 시·군별 배치계획(참고 I -1)” 참조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경위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97년부터 농산물간이집하장의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집하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지원
- '98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99년부터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합원 중심의 “시설이용형” 위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산지종합유통시설로서의 기능을 재정립·강화
- 여러 사업으로 분산지원하던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2001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으로 일원화
 - 1999-2000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을 흡수

2) 지원대상자의 범위

- 생산자단체 : 농협조합, 인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청과류 및 화훼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특용작물은 청과류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유통업체(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농안법 제23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산지유통인이 상법 제170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제1호의 직영점형 체인사업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며, 농산물을 취급하는 법인
 - 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회사,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회사

3)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예시)

- 건물(350평, 554백만원)
 - 집하선별포장장 : 200평×1백만원 = 200백만원
 - 예냉 또는 저온저장고 : 120평×2.7백만원 = 324백만원
 - 사무·회의실, 기타건물 : 30평×1백만원 = 30백만원
- 기계류(선별기,결속기,봉합기,제함기,컨베어 등) : 80백만원
- 장비류(120백만원)
 - 냉장탑차(1대) : 50백만원
 - 팔레트(480개) : 12백만원
 - 운반상자(4,800개) : 11백만원
 - 지게차(1대) : 22백만원
 - 수송차량(1대) : 25백만원
- 기타 시설장비(46백만원)
- 계 800백만원

< 참고사항 >

- 사업비의 한도제한은 없으며, 사업장 실정에 따라 시설 및 사업규모를 증감하여 사업계획 수립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표준단가를 초과할 수 있음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예 : 깎마늘 관련 기계, 비파괴 당도측정기, PC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사전 기술검토를 거쳐 설치함
-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시설(기계·장비·설비 등) 중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대상인 것은 동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함. 다만, 수량단위로 확연하게 구별되고 工程上 독립적인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수량이 동 사업에서 정한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초과수량을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 *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은 예산형편과 사업자 선정여건에 따라 상호융통할 수 있음
- 시장·군수 : 국고보조 70%, 시·도(시·군)비 30%
 - * 시·도(시·군)비는 시·도와 시·군이 각각 반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 시·도(시·군)비 부담에 있어 다음의 유형을 허용함
 -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 외의 자가 임차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 지원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일정액을 분담한 후 일정기간 사용권 허용
- 유통업체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시장·군수는 15억원, 기타는 8억원을 표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100평 이상이어야 함.
 - 다만, 환경농업육성법에 정한 친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만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배방법의 특성상 생산량이 소량이어서 100평 이상의 시설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이 인정하는 때에는 50평 이상 100평 미만도 가능
 - 산지유통센터는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일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냉·냉장수송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예냉·냉장수송 권장품목
 - 주로 여름철에 수확되는 것으로서 저장성이 적어 鮮度유지가 어려운 신선과일 및 엽채류 등
 - (예) 딸기, 토마토, 고랭지배추, 양상추, 양채류, 대파, 쪽갓, 복숭아, 포도, 버섯 등
 - 예냉·냉장수송 선택품목
 - 주로 봄·가을에 수확되는 것으로 鮮度低下가 비교적 느린 품목
 - (예) 단감, 배, 사과, 밤, 마늘, 양파, 당근, 가을배추 등
- ※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 지원품목의 예외
- 청과류 중 임산물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나. 2001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안(농특세)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용자			
○산지유통센터설치	28	23,800	14,580	6,260	8,320	4,160	900	4,160
- 생산자조직	26	20,800	12,480	4,160	8,320	4,160	-	4,160
- 지방자치단체	2	3,000	2,100	2,100	-	-	900	-

《사업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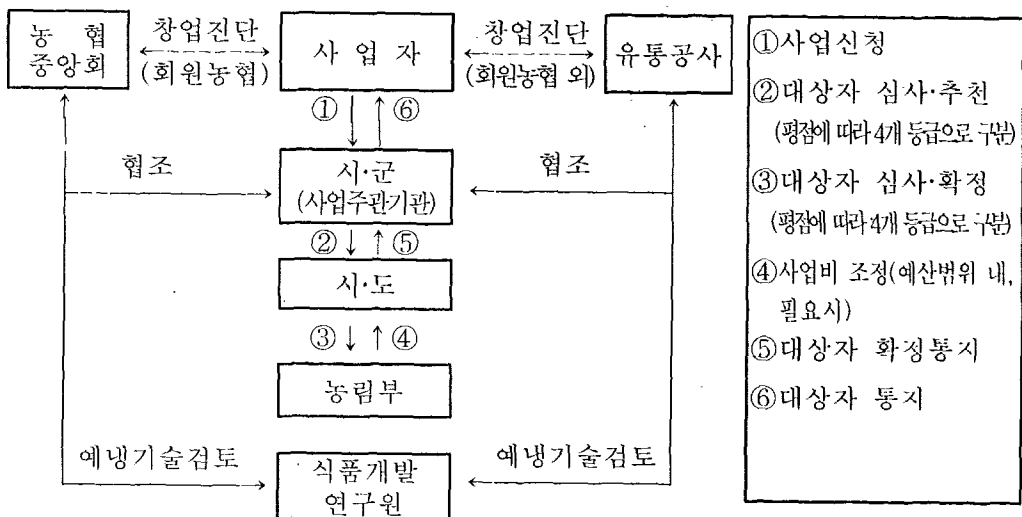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도지사

나. 사업기간 : 1년(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개년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는 해당연도 사업분에 한함)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02-504-2671~2)
- 시·도 : 당해 시도 직제에 따름(일반적으로 농정, 농업, 유통 등 명칭을 가진 부서)
- 시·군·자치구 : 당해 시·군 직제에 따름(일반적으로 산업, 농정, 유통 등 명칭을 가진 부서)

라.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마. 사업추진 요령

- 농림부장관은 2000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신청자 현황을 2000. 9. 중 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통지함
-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
 - 농협중앙회 회원인 농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기타 신청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각각 창업진단을 실시하되,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장·군수와 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할 법인에 대하여,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는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003호)제41조 별표3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각각 창업진단을 실시함(창업진단서에는 시·도에서 심사시 실제로 참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예냉시설에 대하여는 미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치고, 그 검토의견을 창업진단서에 기재
 - 창업진단은 시·군별 산지유통센터 배치계획 정수 범위 내에서 실시함. 다만, 시·도지사가 당해 시·군의 농산물 생산량과 산지유통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간 또는 시·도간 정수 조정계획을 농림부에 제출(1개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시·도간 조정은 이체 받고자 하는 시·도가 이체에 응할 시·도와 협의한 공문 사본 첨부)하여 농림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시·도지사는 농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창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별지 I-1)(창업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2000년 이전에 이미 시설(농림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을 포함함)의 지원을 받은 법인이 시설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신청한 경우는 창업진단 및 평가착수일 전(前)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에 창업진단 및 평가를 실시함. 다만, 경영능력이나 권역내 농산물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시설확장이 절실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운영실적 기간을 6월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음.

— <심사항목 外로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

- ①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 ②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③ 생산자단체 연합체를 구성한 법인
- ④ 깎마늘 위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 ⑤ 무·배추·대파·양파 등 공동규격출하가 어려운 품목위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 ⑥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 ⑦ 산지농협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 받은 농협조합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0. 12. 10.까지 농림부에 제출(별지 I -2)
- 농림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2000. 12. 31.까지 시·도에 통지(시·도지사가 이미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시·군별 배치계획 조정 승인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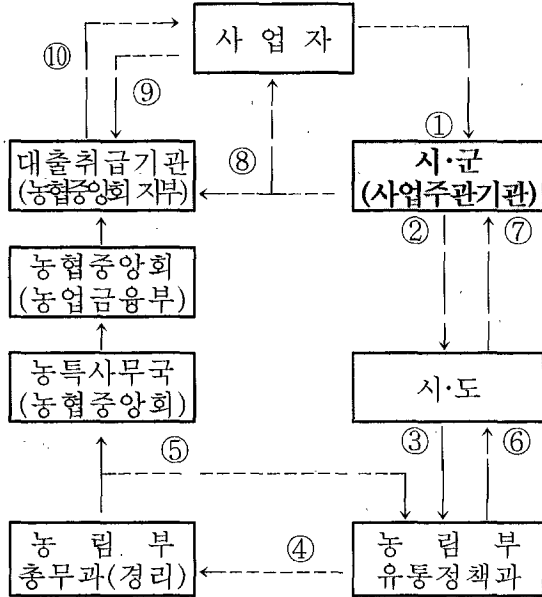
바. 사업시행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 양식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통지)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2001.3.31까지 농림부에 제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사업부지 변경, 운영자(시장·군수인 경우) 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부 보고)
 - 주요시설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부에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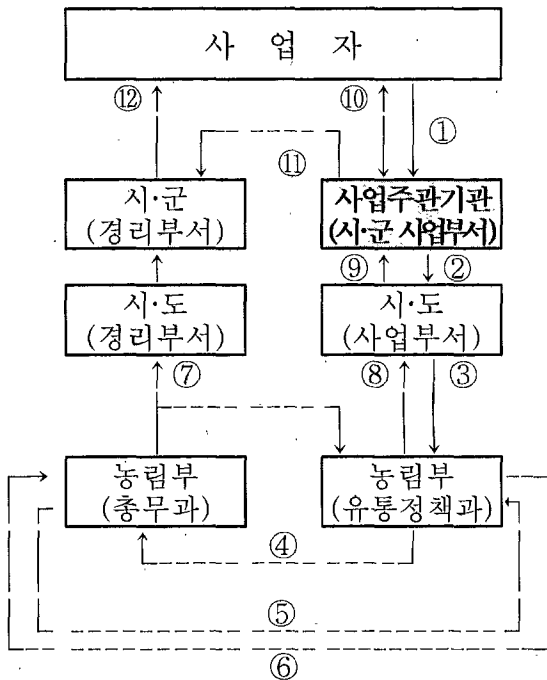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추어 집행하되, 보조금은 금융기관의 용자실행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지급

<용자금 집행절차>



-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금액)
- ②용자한도액 배분 요구
- ③용자한도액 배분 요구
-사용예정 월 전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요구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요구내용이 무효가 되므로, 다음 번 자금요구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④용자한도액 배분 요구
- ⑤용자한도액 배정 및 동 내용 통지
- ⑥용자한도액 배분(시·도별)
- ⑦용자한도액 배분(시·군별)
- ⑧사업자별 대출예정금액 통지
- ⑨사군의사업실적 확인을 받아 대출신청
- ⑩대출실행

<보조금 집행절차>



-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요구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요구내용이 무효가 되므로, 다음번 자금요구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⑤사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 ⑥사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 ⑦사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서 통지
-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사도별 송금액 참조)
-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 ⑫자부담금 및 용자금 집행 확인후 보조금 지급

사.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에 철처를 기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저장시설 중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다음과 같은 설계감리업체가 시행
 - 공조냉동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예냉시설은 농산물 생산·유통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시행
 - 예냉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만 받도록 함
-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의 정의와 설계·감리업무 수행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술사법
-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설한 공사가 되도록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또는 시·군) 및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얻어 매년 마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함(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Ⅱ. 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사업 참조)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을 명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7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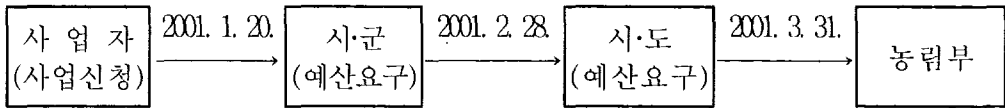
* 처분제한기준은 보조금 해당분에 한함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 (별지 I-3)를 시·도를 경유하여 다음해 1. 2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94~'97년 간이집하장사업과 '97~2000년 집하장보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연간 운영실적 보고(별지 I-4) : 2001. 1. 31.

6. 2002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 일정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I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산지유통센터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인원, 지적도 축척(1/500),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최근 1개년간 결산재무제표, 농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실적 입증서류

○ 2001. 3. 31.까지 농림부에 제출하는 서류(별지 I -6)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는 총괄표와는 별개임

나. 신청자격(2001년 지원대상자 범위 참조)

- 2001년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002년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 2000년 이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2002~2004년간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타 안내사항

- 지원조건, 지원내용,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요령은 2001년 내용 참조(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01년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30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15	10	7	5	A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당해 상표가 도매시장 등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고유상표는 개발되어 있으나, 공통기준이 아닌 개별농가 단위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 C :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으나, 규격상품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D : 고유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1-2.규격상품화 참여정도	5	4	3	2	A : 조직구성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이상 B : 조직구성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3,000-5,000톤 미만 C : 조직구성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3,000톤 미만 D : 조직구성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톤 미만	
	1-3.공동사업 실적	10	8	6	4	<생산자단체> A : 포장재 지원사업에 따른 농관원 평점이 90점 이상(최우수조직) B : 80-90점 미만(우수조직 중 상) C : 70-80점 미만(우수조직 중 하) D : 70점 미만(일반조직, 미분류조직) <업체> A : 과거 1년간 출하물량을 90% 이상 계열조직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 B : 80-90% 미만 C : 70-80% 미만 D : 70% 미만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2.사업수행 능력 (30점)	2-1.사업동기 및 의지와 사업자의 경영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사업동기		평점	경영관리	평점
						사업동기와 의지가 매우 높음		10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정리상태 우수	10
						사업동기와 의지가 높음		8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중 한가지만 우수	8
						사업동기와 의지가 보통		6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미흡	6
						사업동기와 의지 미약		4	회계 및 내부관리 장부불량	4
	2-2.대표자 및 경영진의 경력	5	4	3	2	A :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 B : 관련분야 5년 이상 10년 미만 종사 C : 관련분야 3년 이상 5년 미만 종사 D : 관련분야 3년 미만 종사 ※ 관련분야 : 협동조합 임원, 생산자조직 대표, 유통분야 종사자 ※ 대표자 및 경영진 중 1인의 경력을 합산				
	2-3.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점 이상 20점 미만 C : 평점 12점 이상 16점 미만 D : 평점 12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 이상		10	150% 이상	10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8	100% 이상 150% 미만	8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	50% 이상 100% 미만	6
	2억원 미만	4	50% 미만	4						
2-4.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하고, 앞으로의 조달계획이 합리적임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미만이나,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합리적임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며, 앞으로의 조달 계획이 불투명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3.사업계획의 적정성 (4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매출총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3-2.부지확보 계획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명의 계약체결 8 약간 제한 4 타인명의, 사용승락 6 상당한 제한 3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제한이 많음 2
	3-3.입지조건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상호보완성 10 양호 8 경합, 보완성 없음 7 보통 6 경합성 있음 4 미흡 4
	3-4.예상가동율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과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5 300일 이상 5 200일 이상 300일 미만 4 250일 이상 300일 미만 4 100일 이상 200일 미만 3 200일 이상 250일 미만 3 100일 미만 2 200일 미만 2
	3-5.사도지사 조정	10	8	6	4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4개소 이하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加點) ○ 간마늘만 취급할 계획 : 5점 ○ 간마늘을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 취급할 계획 : 3점 (減點) ○ 임산물을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 취급할 계획 : △5점						가 점
						감 점
						기본점수+加減點 합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평가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평가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지 I-2)

200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사군	구분	주요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온 저장고	냉장 냉동	냉장 냉동	냉장 냉동	사무 실	냉장 탑차	칸마 늘 시설	비과 과 도 도 기	선별 기	신청액	조정액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00.0)	()		기존 신청 계										0,000,000		< >		
2 (00.0)	()		기존 신청 계												< >		
3 (00.0)	()		기존 신청 계												< >		
4 (00.0)	()		기존 신청 계												< >		
5 (00.0)	()		기존 신청 계												< >		
6 (00.0)	()		기존 신청 계												< >		
7 (00.0)	()		기존 신청 계												< >		
8 (00.0)	()		기존 신청 계												< >		
9 (00.0)	()		기존 신청 계												< >		
10 (00.0)	()		기존 신청 계												<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깎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별지 I-3)

총 공 통 - 9

2001년 산업유통센터설치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테핑 기·밴 딩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자

(주) 사업세부명세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한함

(별지 I-4)

심사제외

2001년도 간이집하장 운영상황 보고

(간이집하장사업과 집하장보완사업으로 지원한 시설)

○ 시설설치 및 성수기 활용 상황

사업자		주요시설 명세					사업비					운영상황 (성수기)					연간 활용 일수	
명칭 (대표자)	주소	사업 연도	부지 면적	건물 면적	지은 지장 고	선별 기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품목 명	생산 량	집하 량	선과량 (선별량)	공동 출하 량		주거래 처
00법인 (홍길동)			평	평	평	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비수기 활용상황

○ 기타

(별지 I -5)

200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평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사모사급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20%
- 유통업체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건 물	평					
-집하선별포장장	평			저장능력/일		
-예냉고	평			"		
-저온저장고	평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평			"		
-사무·회의실	평			-		
·						
·						
○기 계						
-선별기	조			처리능력/시간		
-포장기	대			"		
-컨베어	대					
·						
·						
○장 비						
-냉장탑차	대					
-팔레트	개					
-수송차량	대					
-운반상자	개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 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톤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톤	매 취	
								물량(B) 톤	금액 천원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 등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따.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별지 I-6)

200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신청자 명세서
(시·도)

신청자	사군	구분	주요 시설								사업비	주요 품목	비고	
			에냉고	저온 저장고	예냉저온 접용	집하선별장	사무실	냉장탑차	깎마늘 시설	비과과糖度機				선별기
() (/)		기존 신청 계	평	평	평	평	평	대	대	조	조	천원 0,000,000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		기존 신청 계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從"으로 해야 함. ○ 마늘과 깎마늘은 주요품목란에 구분기재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안에는 "배치계획정수/2000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 예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안에 기재. 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참고 I -1)

산지유통센터 시·군별 배치계획

시·도	목표 개소	시·군별 배치계획 / 2000까지 실적	산지유통센터로 보는 청과물시설
합계	개 248 (여유71)	목표 248개 = 2000년까지 설치 177 + 여유 71	개 28
경기	15 (여유7)	평택(1/0), 구리(1/1), 남양주(1/0), 이천(3/3), 파주(1/0), 여주(1/0), 화성(1/1), 연천(1/0), 안성(2/2), 양평(1/0), 고양(2/1)	이천2, 안성1
강원	26 (여유8)	춘천(2/2), 원주(1/1), 강릉(1/1), 태백(1/1), 삼척(1/0), 홍천(3/1), 횡성(2/2), 영월(1/0), 평창(5/5), 정선(3/3), 화천(2/1), 양구(1/0), 高城(1/0), 양양(1/0), 인제(1/1)	평창1, 인제1
충북	11 (여유4)	충주(2/1), 청주(1/1), 청원(1/0), 보은(3/3), 영동(1/1), 괴산(1/0), 음성(1/0), 단양(1/1)	충주1
충남	35 (여유8)	천안(3/2), 공주(3/3), 보령(3/2), 아산(5/5), 논산(4/4), 금산(1/1), 연기(2/1), 부여(5/5), 서천(2/1), 청양(1/0), 예산(2/1), 홍성(2/1), 당진(2/1)	논산1, 예산1
전북	20 (여유8)	전주(3/2), 익산(2/2), 정읍(1/1), 남원(2/1), 김제(1/0), 완주(1/1), 진안(1/1), 무주(1/0), 장수(2/1), 임실(1/0), 고창(3/1), 부안(2/2)	익산1, 완주1, 장수1
전남	48 (여유16)	순천(1/0), 나주(6/5), 광양(2/1), 담양(1/0), 곡성(1/1), 고흥(2/1), 보성(2/1), 화순(1/1), 장흥(1/0), 강진(1/1), 해남(9/6), 영암(2/1), 무안(5/3), 함평(4/4), 영광(3/2), 장성(1/0), 진도(3/2), 신안(3/3)	나주2, 고흥1, 진도1
경북	46 (여유11)	포항(3/2), 경주(1/0), 김천(3/1), 구미(2/0), 영주(2/2), 영천(4/4), 상주(3/3), 문경(3/2), 경산(1/1), 의성(3/3), 청송(1/1), 영양(1/1), 영덕(2/1), 고령(1/1), 청도(3/3), 성주(1/0), 칠곡(1/0), 예천(3/3), 봉화(2/2), 울진(1/0), 안동(3/3), 군위(2/2)	포항1, 안동2, 영주1, 영천1, 상주1, 군위1
경남	26 (여유4)	진주(2/1), 사천(1/1), 밀양(1/1), 의령(1/0), 창녕(5/3), 남해(3/3), 하동(2/2), 산청(1/1), 함양(2/2), 거창(3/3), 합천(1/1), 김해(1/1), 창원(1/1), 거제(1/1), 양산(1/1)	창원1, 김해1, 양산, 거제, 거창
제주	13 (여유2)	서귀포(3/3), 북제주(5/4), 남제주(5/4)	
부산	3	기장군(1/1), 강서구(2/2)	
광주	2 (여유1)	남구(1/1), 서구(1/0)	
울산	3 (여유2)	울주군(3/1)	

II.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지원

1. 목 적

- 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신선농산물 유통 확산 도모
- 계약재배, 공동규격출하 등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직거래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매취 및 출하선도금으로 지원하고 일정수준의 사업의무량 부여
- 사업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자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경쟁동기 유발
- 산지농협유통활성화사업과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

4.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00년 실적	2001년 농안기금	비 고
○ 사업량	91	71	○ 2001년 추정 : (99말 160개 - 2000년 활성화조합 28개 - 2001년 활성화조합 추정 30개) × 70%수준 = 71개
○ 사업비	41,807	46,800	○ 2001년에는 인센티브 포함

* 융자조건 : 연리 5%, 1년 이내 일시상환

나. 지원자격

- 산지유통센터(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종합유통시설, 포장센터 포함) 운영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건축 준공검사를 마치고 당해연도에 운영예정인 자
- 산지농협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 받은 농협조합 제외

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시설 활용도(32점), 산지유통기능 수행(20점), 사업 안정성(농협외 12점, 농협 16점), 운영활성화 노력(농협외 12점, 농협 16점), 사업실적 및 운영 규모(20점) 등을 종합평가(별지Ⅱ-1)하여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득점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 평가일 현재 2000년 이전 자금을 사용중인 자의 경우는 득점이 40점 미만이라도 2001년에 한하여 이를 40점으로 봄
- 신규자(2000. 1. 1. 이후에 시설을 준공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건축 준공검사를 마치고 당해연도에 운영예정인 자)의 경우는 붙임Ⅱ-1 항목 중 3-2 자기자본 비율(4점), 3-3 유동비율(4점), 5-3 출자조합원 수 및 출자액 규모(5점), 5-4 예냉·저온저장고 규모(5점)의 합계 18점 만점에 8점 이상 득점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 지원기준

기본지원

-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본지원액 차등산출

등급	등급 구분	지원한도액
A	평점 90점 이상	20억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15억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12억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9억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6억원
F	평점 40점 이상 50점 미만 또는 신규자	3억원

- * 법인의 규모, 취급물량의 多寡, 수출실적에 따라 농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지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음(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배정액의 50% 이하를 지원 받은 자의 경우는 전년도 지원액 이하로 조정)
- * 간마늘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지원한도액의 150% 해당액을 기본지원액으로 함

인센티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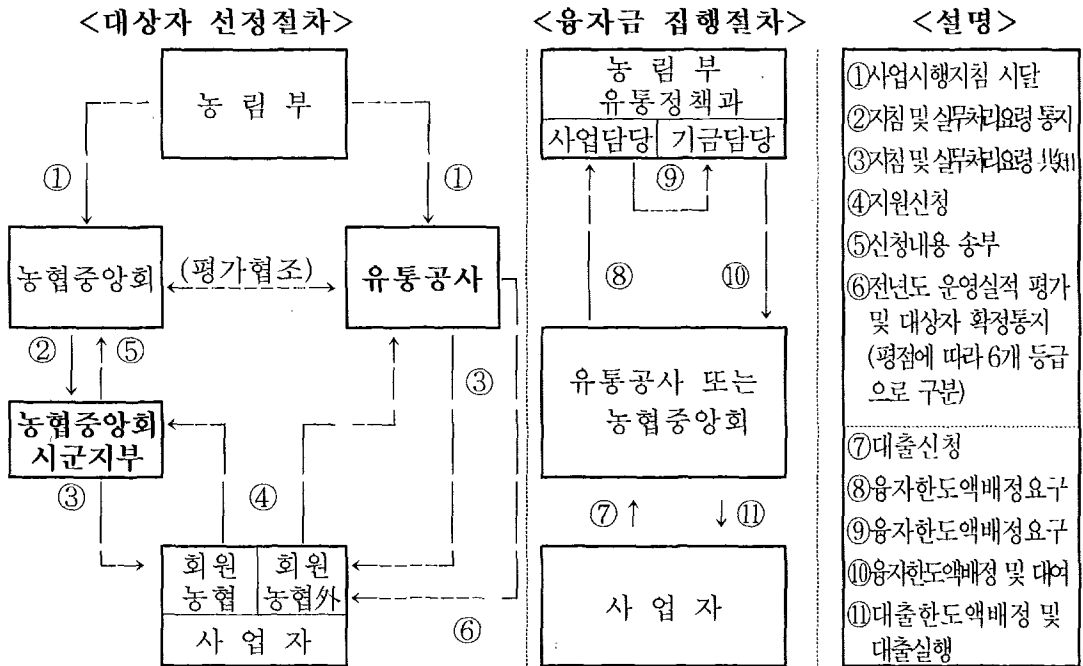
-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의 자에게는 기본지원액의 50% 해당액을 인센티브지원(기본지원액에 추가)

직거래촉진지원

- 대형유통업체(물류센터, 직영점형 체인사업법인)와의 직거래를 실시하는 경우는 기본지원액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직거래 실적 해당액 이내 금액을 직거래촉진지원(기본지원액에 추가)

라.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0-2671~2)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조성처(물류개선팀) (02-793-5006)
 - 농협중앙회 : 과수화훼부(화훼팀) (02-360-5814)
-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집행절차



(주) ④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 소정양식)
- 시설설치 완료 입증서류(신규설치자에 한함)
- 기타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가 지원대상자 선정상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⑦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 대출취급기관 소정서류

- 깎마늘과 관련하여 확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깎마늘 관련 시설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직거래촉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년도 거래선별로 확인을 받은 직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지원대상품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처리할 원료 농산물(다만, 곡물류는 제외)

5) 자금의 용도 및 사업자 의무

- 자금의 용도 : 매취 및 출하선도금(단, 출하선도금은 총지원액의 50% 미만으로 운영)
- 사업자 의무 : 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해야 함

6) 지원대상자 확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또는 시·군) 및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2001. 3. 31.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동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아 2001. 4. 31.까지 지원대상자별 지원액(기본지원, 인센티브지원, 직거래촉진지원 등 구분)을 확정함

마. 행정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중앙회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부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아닌 지원대상자도 농협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중앙회는 신속하게 대출을 실행해야 함
 - 전년도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자(농협조합을 제외함)가 상환기한 만료일에 금년도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담보능력 및 사업능력 등 여건이 종전 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지원예정금액에서 이미 사용중인 금액을 相計處理하는 방법으로 대출실행
- 사후관리
 - 사업자는 매취실적관리대장(별지Ⅱ-2)에 買取代金支給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 대출기관은 대출실행 후 지원기간 중의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사업실적을 확인해야 함(의무량 미달시는 위약처리)
- 보고·기타
 - 지원대상자 확정보고(보고기관 소정양식, 확정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1029호, 2000. 6. 7.호)에 따름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2002년 산지유통센터운영자금 소요액을 파악하여 소요자별 명세를 2001. 3. 31.까지 농림부에 제출함

(별지 II-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평가 배점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 기준
		조합	농협	
1. 시설 활용도 (32점)	1-1 공동규격출하 비율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공동규격출하량 ÷ '00년 총출하량 × 12점 × 적용율 - 공동규격출하량 : 정부표준규격에 의한 출하실적 (소분포장 포함) - 적용율 : 출하단량과 포장규격이 일치하는 경우 100%, 출하단량만 일치하는 경우 80%
	1-2 시설 활용율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총취급량 ÷ (선별기 처리능력 + 저온저장고 일시저장능력) × 12점 - 총취급량 : 총출하량 + 현재고량 - 선별기처리능력 : 선별기 제원상 처리능력의 50% × 100일 × 공사가 정하는 품목별 가중치 - 저온저장고 일시저장능력 : 면적 × 평당 4톤
	1-3 선별기 가동일수	4	4	○ '00년 가동일수 ÷ 100일 × 4점
	1-4 저온저장고 가동일수	4	4	○ '00년 가동일수 ÷ 300일 × 4점
2. 산지유통기능 수행 (20점)	2-1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시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총취급량의 10% 이상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하는 경우 다음 평점의 합계 <공동계산>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실시(6점) - 공동선별·공동출하, 개별계산(4점) - 공동선별·공동출하 중 하나만 실시(3점) - 해당없음(0점) <계약재배> - 재배계약 체결, 계약물량의 50% 이상 확보실적(6점) - 재배계약 체결, 계약물량의 50% 미만 취급 또는 선도급 등 지급(4점) - 계약은 없으나 전속출하농가의 출하량이 총출하량의 50% 이상(3점) * 전속출하농가 : 관할 사군 내의 농가로서 2년 이상 계속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 해당없음(0점)
	2-2 이용 농가수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이용 농가수 ÷ 200명 × 4점 * 이용농가 : 관할 사군 내 농가
	2-3 구성원 이용정도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조합원 이용율과 구성원 수에 대한 다음 평점의 합계 <구성원 이용율> - 80% 이상(2점) - 60 이상 80 미만(1.5점) - 40 이상 60 미만(1점) - 20 이상 40 미만(0.5점) - 20 미만(0.3점) <구성원 수> - 200명 이상(2점) - 100 이상 200 미만(1.5점) - 50 이상 100 미만(1점) - 10 이상 50 미만(0.5점) - 10 미만(0.3점)
	2-4 조합원 이용율	-	8	○ '00년 이용 작목반원 수 ÷ 조합구역내 총 작목반원 수 × 8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 기준
		농협외	농협	
3.사업 안정성 (농협외 16점) (농협 12점)	3-1 고정자산 이익율	8	8	○ '00년 세전 순이익(감가상각비 및 신용사업부분 제외)÷산지유통센터 설치비 - 5% 이상(8점) - 2.5 이상 5 미만(6) - 0 이상(4점) - △2.5 이상 0 미만(2점)
	3-2 자기자본 비율	4	4	○ 농협외 : 평가일 현재 자기자본÷총 고정 자산가액의 30%×4점 * 자기자본 : 출자금+잉여금 ○ 농협 : 평가일 현재 산지유통센터 자기자본 ÷산지유통센터 설치비(부지제외)의 30%×4점 * 산지유통센터 자기자본 : 부지 외의 산지유통센터 설치비÷(총고정자산-업무용 동산)×총자기자본 * 총자기자본 : 출자금+잉여금
	3-3 유동비율	4	-	○ 평가일 현재 유동자산÷유동부채÷150%×4점
4.운영활성화 노력 (농협외 12점) (농협 16점)	4-1 회계처리 능력	8	-	○ '00년 실적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및 지체결산능력 보유(8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5개 이상) 확인 가능한 장부 보유(6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3개 이상) 확인 가능한 장부 보유(3점) - 산지유통센터운영실적(3개 미만) 확인 가능한 장부 보유(1점) <확인항목> - 매입·매출, 조합원 수, 이용농가 수, 저온 저장고 가동, 선별기 가동, 운영비 집행
	4-2 보조장부 사용	-	8	○ '00년 실적 - 중앙회 양식에 따라 기장 및 사업손익 관리(8점) -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5개 이상) 확인 가능(6점) -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3개 이상) 확인 가능(3점) -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3개 미만) 확인 가능(1점) * 보조장부 양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이미 보급완료 <확인항목> - 생산·출하일지, 시설관리, 선별작업, 저온 저장고 압출명세, 매취사업실적, 이용 수수료 징수, 사업관리비 집행, 월별손익명세
	4-3 경영개선 노력	4	4	○ 산지유통센터 경영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취한 사례(예시참조) 1건 당 1점 - 조합원 결속력 강화, 작업효율성 증진, 시설물 관리능력 제고 등 - 농약·농자재·포장재 등 공동 구매 - 단순가공·직판·小分포장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의한 수익성 향상 노력 - 유통정보 수집·전파의 거점역할 수행 - 계약재배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作付체계 조정 - 전문수확단 운영, 자조금 조성, 수출 추진 등
	4-4 매취자금 운용비율	-	4	○ '00년 매취실적÷매취자금 지원액의 125%×4점 * 매취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2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배점기준																								
		농협	농협																									
5.사업실적 및 운영규모 (20점)	5-1 매출실적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매출액 - 40억원 이상(5점) -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4점)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3점)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2점) - 10억원 미만(1점) 																								
	5-2 매취사업 실적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지원액의 50% 초과액을 매취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취사업 실적이 매취자금의 - 170% 이상(5점) - 150% 이상 170% 미만(4점) - 125% 이상 150% 미만(3점) - 100% 이상 125% 미만(1점) 																								
	5-3 출자조합원 수 및 출자액 규모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 현재 상황에 대한 평점합계 - 평점합계 10점 이상(5점) - 평점합계 8점 이상 10점 미만(4점) - 평점합계 6점 이상 8점 미만(3점) - 평점합계 5점 이상 6점 미만(2점) - 평점합계 5점 미만(1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출자조합원수</th> <th>평점</th> <th>출자액</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100명 이상</td> <td>5</td> <td>10억원 이상</td> <td>5</td> </tr> <tr> <td>50~100명 미만</td> <td>4</td> <td>5~10억 미만</td> <td>4</td> </tr> <tr> <td>30~50명 미만</td> <td>3</td> <td>3~5억 미만</td> <td>3</td> </tr> <tr> <td>5~30명 미만</td> <td>2</td> <td>1~3억 미만</td> <td>2</td> </tr> <tr> <td>5명 미만</td> <td>0</td> <td>1억원 미만</td> <td>0</td> </tr> </tbody> </table>	출자조합원수	평점	출자액	평점	100명 이상	5	10억원 이상	5	50~100명 미만	4	5~10억 미만	4	30~50명 미만	3	3~5억 미만	3	5~30명 미만	2	1~3억 미만	2	5명 미만	0	1억원 미만	0
	출자조합원수	평점	출자액	평점																								
	100명 이상	5	10억원 이상	5																								
50~100명 미만	4	5~10억 미만	4																									
30~50명 미만	3	3~5억 미만	3																									
5~30명 미만	2	1~3억 미만	2																									
5명 미만	0	1억원 미만	0																									
5-4 예냉·저온저장고 규모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일 현재 상태 - 1,000평 이상(5점) - 500평 이상 1,000평 미만(4점) - 300평 이상 500평 미만(3점) - 100평 이상 300평 미만(2점) - 100평 미만(1점) 																									
합 계		100	100																									

(주) ○ 공동규격출하 : 정부표준규격(정부표준규격보다 세분한 경우 포함)에 따라 공동선별한 농산물을 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것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가 정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선별·출하·계산 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운영자(또는 작목조직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다만, 운영자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자의 통일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운영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는 공동선별로 봄

Ⅲ.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지원

1. 목 적

-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선도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출하촉진, 유통질서확립, 안정적인 출하조절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유통인이 농산물유통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분위기 조성
- 사업의무량 미달시는 위약금 징수 등 제재 조치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6항

4.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0. 실적	2001. 예산안
○ 사업량	19	00
○ 사업비	1,900	1,400

* 재원 : 농안기금, 융자조건 : 연리 8%, 1년 이내 사용 후 일시상환

나.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된 산지유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출하액이 3천만원(법인은 20억원) 이상인 자

2) 자금의 용도

- 농업인과의 圃田賣買에 따른 출하선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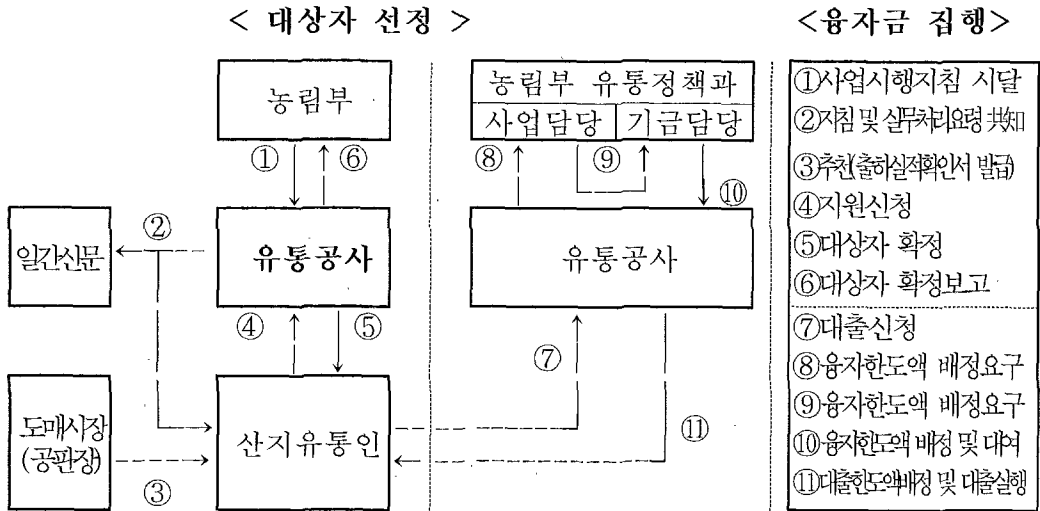
3) 사업자 선정

- 최근 1년간의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실적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

4) 사업의무량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출하의무 부여

다. 사업추진체계



라. 행정사항

- 1)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출실행 후 지원기간 중의 출하의무량 이행여부 등 사업실적을 확인해야 함(의무량 미달시는 위약처리)
 -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산지유통인에게 지급한 경우는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에 의한 출하실적 산정시,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운용기간 중의 출하약정액을 제외함
 - 사업자는 지원기간 중의 출하실적확인서를 당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으로 부터 발급받아 이를 대출금 상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하여야 함(제출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
- 2) 보고사항 : 지원대상자 확정 보고(보고기관 소정양식, 확정시)
- 3) 기타사항
 - 출하실적 산정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상환월의 전월까지로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절차 등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1029호, 2000. 6. 7.)에 따름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2년 산지유통인출하선도금 소요액을 파악하여 소요자별 명세를 2001. 3. 31.까지 농림부에 제출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허원석, 이정형, 이상만)입니다.

I.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 목 적

- 농수산물의 대량·신속한 유통체계 구축
- 농수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 도심지 재래시장 이전으로 교통·환경문제 해소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주요도시에 2002년까지 32개소의 도매시장 건설
- 현재 건설중인 도매시장의 추가건설을 지양
-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99까지	2000	2001예산(안)	2002	합 계
사 업 량		22	(8)	(4)	(1)	32
사 업 비	계	1,302,992	71,087	46,227	53,682	1,473,988
	국고보조	466,098	40,659	32,359	11,545	550,661
	지방비	836,894	30,428	13,868	42,137	923,327

주) ()는 계속사업지구수 임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 (1) 지원대상 :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시)
- (2)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3) 지원내용 :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물건축비

<부지매입비>

- ①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 ②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등)
- ③ ①~②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물건축비>

- ①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보일러실 등)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② 토지정리공사비
 - ③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 ④ 전신전화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⑤ 감리비
 - ⑥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은 『정부예산편성기준』의 세출과목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참조

(4) 2001년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4	46,227	32,359	-	13,868	-
서울서남	1	25,874	18,112	-	7,762	-
광주제2	1	9,261	6,483	-	2,778	-
포 향	1	1,318	922	-	396	-
마 산	1	9,774	6,842	-	2,932	-

주) 1. 지방비는 농림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금액임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 500-2675]
- 특별시·광역시·도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 시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특별시·광역시·일반시의 시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 농림부는 주변의 농수산물유통시설배치 실태와 농수산물 유통량 등을 감안 국고보조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 정부가 건설목표로 하는 32개소의 도매시장이 개장 운영중이거나 건설공사중에 있어 2001년도중 추가건설계획은 없음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 참조)

① 사전 조사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유통체계 조사·분석
 - 반출입 현황, 기존도매시장 현황, 소매시장 현황 등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
 - 사업조사연구 : 인구, 교통계획, 주요 도로망, 입지, 자연환경 등
 - 규모, 위치 및 투자비 추정
- 사업계획에 대한 정책결정
-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보조사업 결정 등)
 - 국고예산 편성으로 사업계획 확정

② 기본계획 수립

- 실무작성반 편성 : 시청 담당과
 - 건설에 따른 적정 상근인원 확보 (도시계획, 건설기술직 포함)
- 추진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관련 단체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 시장관계자 등으로 구성

- 전문기관 용역의뢰 :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확정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및 용지확보
- ③ 도매시장 건설 추진 전담기구 발족
- 시장 건설추진반과 관리운영추진반으로 구분
 -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 공사 발주 및 추진
 - 시장건설 및 개장
- ④ 도매시장 개장준비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추진)
-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서 및 업무규정 작성
 -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되, 특히 도매시장법인(또는 도매인)이 하역료를 부담토록 조치(보조금교부 조건 참조)
 -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확정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및 모집
 - 도매시장개설구역내 유사시장 흡수방안 등 정비계획 병행 추진
 -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
 - 입주대상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도매시장 홍보 추진
- ⑤ 도매시장 개장 운영
- 공사준공
 - 관리부서에 시설인계 및 시장개설 허가
 - 도매시장 관리조직 입주
 - 도매시장 관련조직 입주 및 업무수행 준비
 - 개장운영 초기 지도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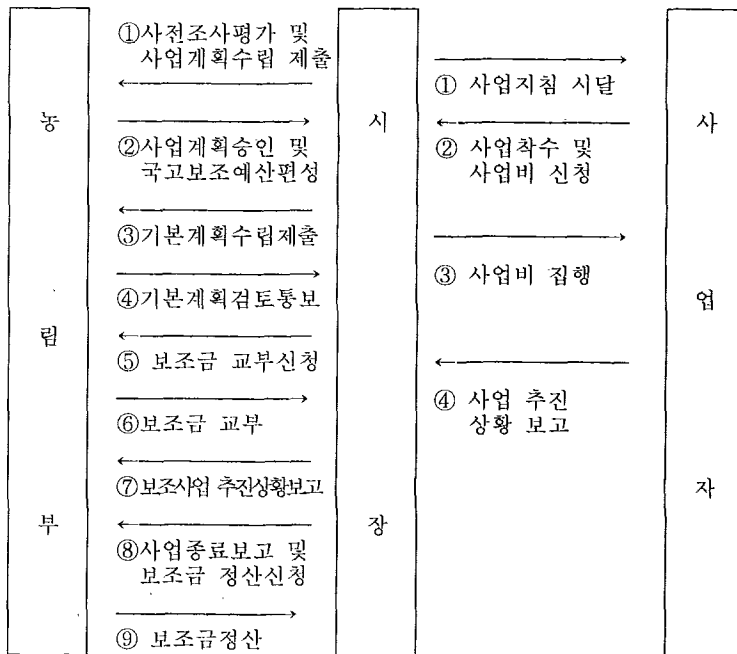
(나)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도매시장 건설 위치, 사업비, 주요시설물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이 도매거래이므로 도매기능 수행에 저해되는 관련 상품동이나 직판시설 등은 최대한 억제될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 조치
 - 관련상품동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경매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 (청과부류만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경우 수산, 축산, 양곡, 화훼 등) 을 소매상인이 구색을 갖추어 도매로 구입(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 하되, 규모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함
 - 직판시설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도매시장과 구역을 완전히 분리 하여 순수지방비로 추진
 - 각종 사무실이나 회의실 면적을 최소화하여 개장후 유휴시설 방지

(다)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배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

(라) 사업시행 체계도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건물 및 주요설비	개설	폐쇄		

(2) 보고·기타

- 보고체계 : 시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건설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15일
까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
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국고보조
금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2002년도 사업(비)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기관 : 시(특별시, 광역시, 시)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정부가 건설목표로 하는 32개소의 도매시장이 개장운영
중이거나 건설공사중에 있어 2002년도중 추가건설계획은 없음

다. 사업비 신청 : 2001년 현재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도매시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중에서 2001말까지 국고예산배정이 종료되지 않은 시(市)

○ 신청절차 : 시→시·도→농림부

○ 신청서류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II. 농산물공판장 건설

1. 목 적

- 산지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 도모 및 출하농업인 편의 도모
- 산지농산물 기준가격 형성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주요 농산물산지에 2002년까지 38개소의 농산물공판장 건설
-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지경매식집하장중 공판장 전환 희망지역 우선 선정
- 2002년이후 공판장 신규건설은 지양하고 운영중인 공판장 역할 재정립 및 경쟁력 강화방안 강구

3.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8까지	'99	2000	2001	2002	합 계
사업량		33	2	1(1)	-	2	38
사 업 비	계	101,520	4,398	2,800	-	6,000	114,718
	국고보조	31,502	1,750	1,120	-	2,400	36,772
	지방비	15,458	445	280	-	600	16,783
	국고융자	16,058	1,313	840	-	1,800	20,011
	자부담	38,502	890	560	-	1,200	41,152

주) 사업량중 ()외서는 계속사업 개소수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공판장건설을 추진하는 농협회원조합

※ 2001년도 지원 대상지역은 없음

(2)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국고융자 30%, 자담 20%

* 융자조건 : 연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채권보전 : 농협 여신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3) 지원내용 :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물건축비

<부지매입비>

- ①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 ②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등)
- ③ ①~②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물건축비>

- ①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보일러실 등)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② 토지정리공사비
- ③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 ④ 전신전화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⑤ 감리비
- ⑥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은 『정부예산편성기준』의 세출과목 『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참조

(4) 2001년도 사업비 내역

- 대상지역 없음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 500-2675]
 - * 화훼공판장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02) 500-2685]
- 특별시·광역시·도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 시·군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3) 대상자 선정

- 기존 농산물유통시설이 없고 농협회원조합장이 농산물공판장 건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 농림부는 주변의 유통시설배치 실태와 농산물유통량 감안하고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고보조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 투자효율성을 위해 산지경매식 집하장중 공판장 전환희망지역 우선 지원
- 화훼공판장은 과수화훼과에서 별도 선정 추진

(4)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① 공판장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 ②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 ③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사업 결정
- ④ 건설공사 착수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마무리
- ⑤ 건설공사 착공 및 개장준비
- ⑥ 공판장 개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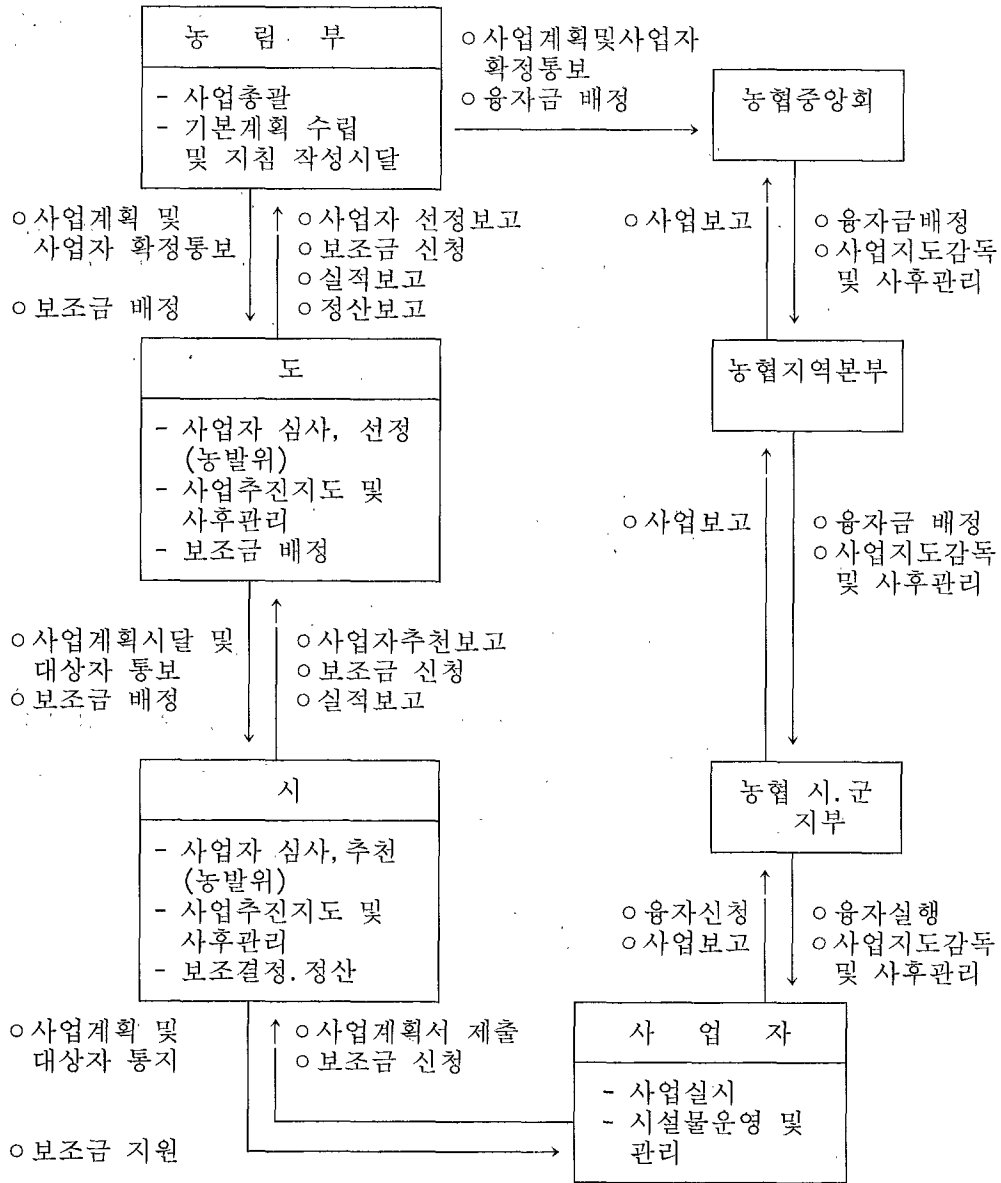
(나)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공판장 건설 위치, 사업비, 주요시설물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배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절차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 보조금은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권자는 이미 지출한 증빙서류나 기성고 등의 사업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배정하므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라) 사업시행 체계도(공판장)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 군수 또는 농협조합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산물공판장 부지, 건물 및 주요설비	개 설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이 하고, 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도지사의 승인없이 공판장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보고·기타

- 보고체계 : 보조사업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 까지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 까지 기일엄수하여 정산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국고보조금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화훼공판장 건설사업은 사업담당부서인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에서 본 지침에 따라 추진

6. 2002년도 사업(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규 농산물공판장건설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서류 : 농산물공판장건설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거 주변 농산물유통시설 배치실태와 유통량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선정

다. 사업비 신청 : 2002년도 신규사업 선정 지역

- 신청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신청서류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Ⅲ. 농산물유통시설보완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시장기능 저하 방지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가격정보의 실시간 분산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산물공판장 시설을 '99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완
- 전국 공영도매시장 입주 법인에 대한 전자경매시스템(무선응찰·이동식)을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운영에 적극적인 도매시장법인 우선 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조 및 제7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9까지	2000	2001예산(안)	2002~2004	합 계
합 계 (국고보조+국고융자)	6,209	6,469	8,370	21,390	42,438
○도매시장 시설보완	8,267	670	7,434	27,900	44,271
- 국고보조	5,787	469	4,460	16,740	27,456
- 지방비 (사업량)	2,480 (7)	201 (2)	2,974 (6)	11,160 (15)	16,815 (30)
○공판장시설보완	603	-	1,300	3,000	4,903
- 국고보조	241	-	520	1,200	1,961
- 지방비	60	-	130	300	490
- 국고융자	181	-	390	900	1,471
- 자담 (사업량)	121 (2)	- (-)	260 (1)	600 (15)	981 (18)
○전자경매시스템도입	-	12,000	6,000	5,100	23,100
- 국고보조	-	2,400	1,200	1,020	4,620
- 지방비	-	2,400	1,200	1,020	4,620
- 국고융자	-	3,600	1,800	1,530	6,930
- 자담 (사업량)	-	3,600 (44)	1,800 (20)	1,530 (17)	6,930 (81)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을 확충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市)
- 공판장 시설보완 : 공판장을 개설한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청과부류 공판장에 한함)
- 전자경매시스템도입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 시장법인과 공판장(청과부류에 한함)

(2) 지원내용

- 도매시장 및 공판장 : 부족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쓰레기처리시설설치, 기타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
 - 단, 건물방수공사, 문짝 및 환기창 보수, 지붕보수, 건물도색, 기자재구입 및 수리 등 경미한 사항은 농안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추진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전자경매시스템 구입비
 - 1개 도매시장법인당 총사업비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구성내역 : 주컴퓨터, 무정전시스템(UPS), 출력모니터(법인사무실용 제외) 이동식경매대, 응찰기, 무선LAN장비, 수신기 구입·설치비 등

(3) 지원기준 및 조건

<도매시장시설보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공판장시설보완>

- 지원기준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10%, 국고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전자경매시스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상환

(4) 2001년도 지역별 사업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담
합 계	27	14,734	6,180	4,304	2,190	2,060
<도매시장 시설보완>	6	7,434	4,460	2,974	-	-
○ 인천구월동도매시장	1	360	216	144	-	-
- 쓰레기 처리시설		360	216	144	-	-
○ 울산도매시장	1	1,732	1,039	693	-	-
- 구조체균열 등 노후화 보수		1,732	1,039	693	-	-
○ 안산도매시장	1	2,500	1,500	1,000	-	-
- 복합주차빌딩 신축		2,500	1,500	1,000	-	-
○ 강릉도매시장	1	860	516	344	-	-
- 쓰레기처리시설 등 6종		860	516	344	-	-
○ 청주도매시장	1	784	470	314	-	-
- 쓰레기처리시설 등 2종		784	470	314	-	-
○ 진주도매시장	1	1,198	719	479	-	-
- 주차장 설치 등 2종		1,198	719	479	-	-
<공판장시설보완>	1	1,300	520	130	390	260
○ 남원원협공판장	1	1,300	520	130	390	260
- 쓰레기 처리시설 등 2종		1,300	520	130	390	260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20	6,000	1,200	1,200	1,800	1,800

주)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은 사업지역 미선정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시행기관

- 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공판장 시설보완 : 시·군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시(특별시, 광역시, 시)

(3)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 500-2675]
- 특별시·광역시·도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 시·군 : 농수산물유통담당부서

(4)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지역별로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안 통지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 시설부족 및 노후화로 시장기능상 장애가 현저한 경우 우선 지원
- 냉동·냉장시설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은 물류효율화 증진차원에서 지원
-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의한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필요시설
-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한 개설자의 관리노력 반영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취급규모 등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경매시스템 운영 여건
- 도매시장법인의 사전준비 실태
 - 직원교육 및 훈련, 주변기자재 확보실태 등
- 도매시장법인대표의 전자경매 실천의지

(5) 사업시행

(가) 사업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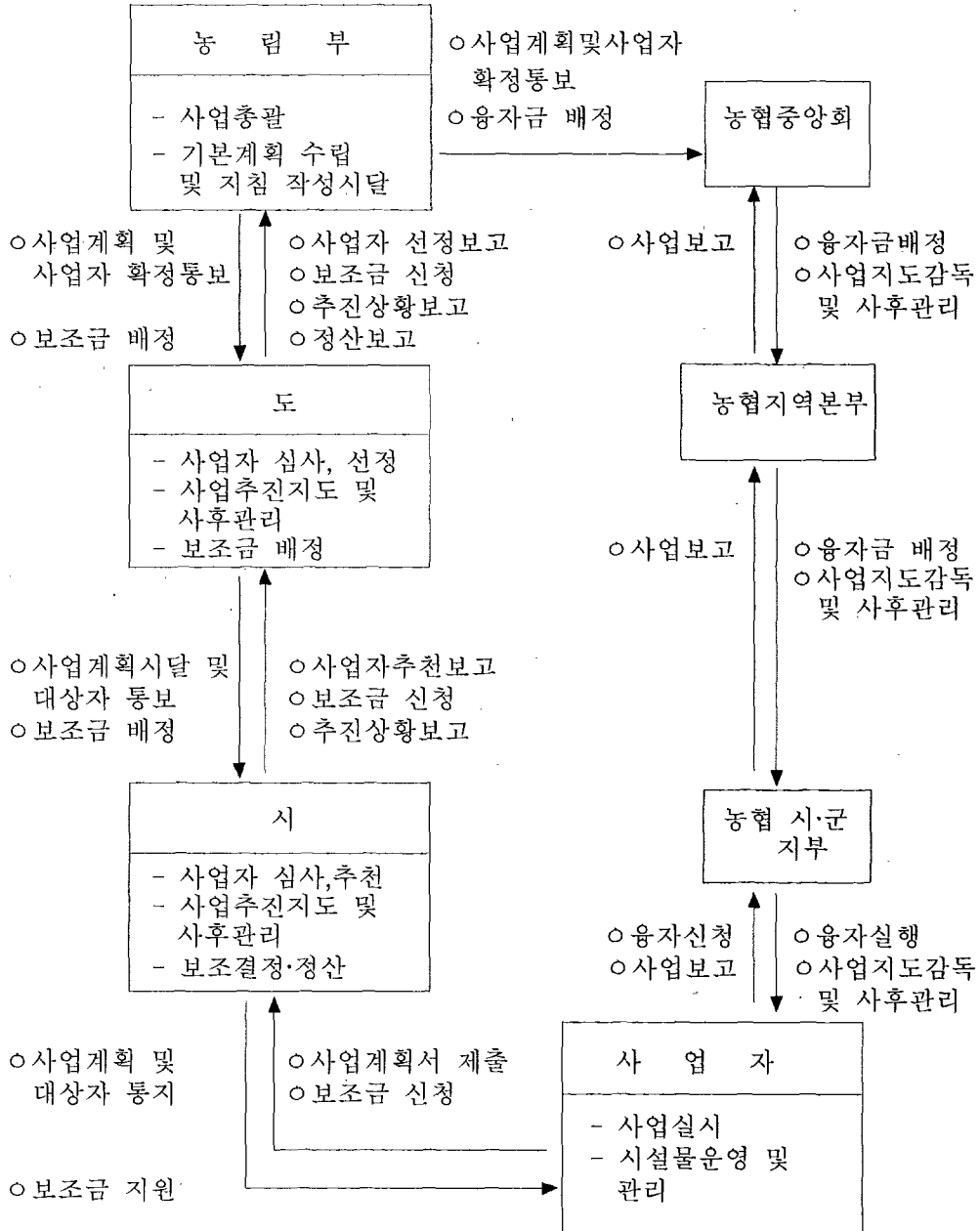
- 도매시장 시설보완[별지 제4호 서식]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별지 제4호 서식]
 - 농협중앙회 : 시·도 → 농림부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별지 제6호 서식] : 시 → 시·도 → 농림부

(나)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시설보완 대상사업 위치, 사업비, 시설보완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사업시행체계도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과 동일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라) 사업비(보조금·융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융자금) 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시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도매시장 시설보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
 - 공판장 시설보완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 교부결정 : 시·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배정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농협회원조합장
 시·도지사 → 농협중앙회장
 - 전자경매시스템도입 : 농림부 → 시·도지사 → 시장 → 사업자(도매시장법인)
- ※ 보조금은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권자는 이미 지출한 증빙서류나 기성고 등의 사업 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배정하므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 군수, 농협조합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사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전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도매시장 시설보완	부지, 건물 및 주요설비	개설	폐쇄		
공판장 시설보완	“	“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전자경매 시스템도입	전자경매시스템 설비	구입	정부물품 내용연수 준용	“	○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장비교체는 가능 ○ 법인교체시는 시설 장비를 승계함

- 도매시장, 공판장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시장(도매시장법인) 또는 해당조합이 하고, 시·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공판장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다
- 공판장, 도매시장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개설자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나. 보고·기타

○ 보고체계

- 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
 - 회원조합 공판장 → 시·군 → 시·도 → 농림부
 - 중앙회 공판장 → 시·도 → 농림부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시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
 - 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 【별지 제5호 서식】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별지 제5호 서식】
- 최종 정산보고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보고. 단, 이전·확장사업등으로 2개년 이상 계속사업지역은 매년도 마다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하고 최종정산보고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국고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2002년도 사업(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별지 제4호 서식】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별지 제4호 서식】 : 시·군(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시(특별시·광역시·시)

나. 신청자격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을 확충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 공판장을 개설한 시·군(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시

다. 신청절차

-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비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사업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시·도 → 농림부
-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 시 → 시·도 → 농림부

IV.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지원

1. 목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농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장 거래제를 정착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산지집하와 대금결제가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 등에 출하선도 자금과 대금결제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출하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5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92-'95	'96	'97	'98	'99	2000	2001계획
계	258,887	120,500	121,383	122,260	89,154	77,910	81,624
도매시장법인	139,184	49,400	52,875	47,744	35,638	23,910	23,910
농협 공판장	119,703	71,100	68,500	74,516	54,516	54,000	57,714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농산물 출하를 촉진시키고 상장거래 정착지원
- (2) 사업내용 : 소비지 유통개선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이 생산자(생산자단체포함) 및 등록된 수집상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 자금
- (3) 사업규모 : 사업실적에 따라 용자실행기관에서 결정
- (4)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 차등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전자경매 실적, 포장화사업추진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법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기간에 해당되는 법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차등지원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에 의거 차등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효과가 없는 공판장

(5) 지원조건

구 분	용자기간	지원금리
○ 농협공판장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5.0%
○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5.0%
	"	8.0%

(6) 2001년도 사업비 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81,624	81,624	-	81,624	-	-
도매시장법인	-	23,910	23,910	-	23,910	-	-
농협공판장	-	57,714	57,714	-	57,714	-	-

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용자실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3)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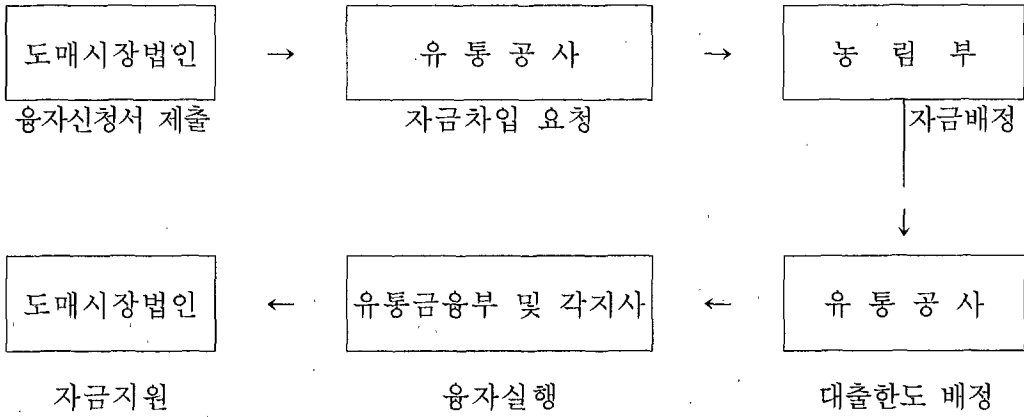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출하촉진자금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02)504-9415]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컨설팅처[(02)790-8012]
 - 농 협 : 사업장 지원부[(02)397-5764]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컨설팅처[(02)790-8012]

(4) 용자신청 및 실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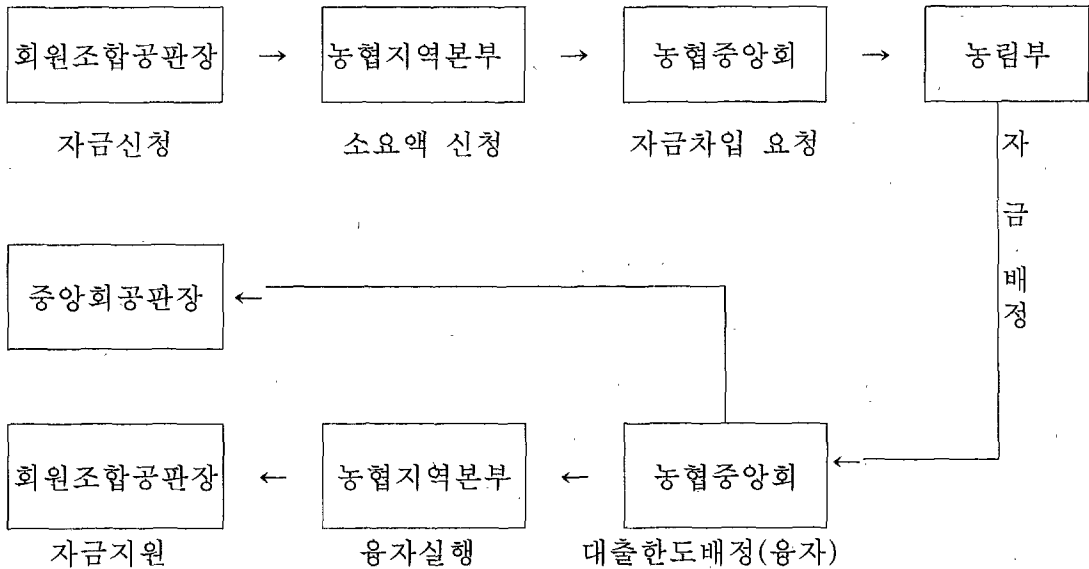
- 자 격 : 용자실행기관이 별도기준에 의함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용자실행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용자실행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5) 사업시행체계도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6) 용자액 산정

(가)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법인별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상장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24)을 기준으로 배정

(나) 농협공판장

- 농림부가 정한 「농산물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 과
- 용자대상공판장의 실제 산지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 (연 소요액의 1/24)의 10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배정비율 산정
 - 농산물유통정책 목표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부와 협의 배정비율 조정 가능

다. 행정사항

(1) 용자신청 및 사후관리

- 도매시장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공판장 : 농협중앙회
- 수집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2) 보고·기타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한다.
- 용자실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은 용자금이 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타 용도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보고한다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포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건설팀처
 -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사인 경우에는 동 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장이 일괄 신청하며, 비회원사일 경우는 직접 신청
- 농협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장지원부
 - 농협중앙회 산하 공판장은 직접, 회원농협공판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신청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체계도 참조

라. 구비서류 : 용자실행기관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건설 국고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m²(평), 건물 m²(평)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부담)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부담)
- 사업기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지방비에 대한 차입계획이 있을 경우에 기재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 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 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4. 지역 농수산물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〇〇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² (평)	m ² (평)	톤/년	백만원/년
계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도매시장별로 작성

5.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마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나. 당해년도 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업비집행액	비 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액	비 고
계			

6. 기타

-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연구보고서 및 내용 (용역기관, 용역비 등)
-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작성할 것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공판장 건설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위 치 : (위치약도 첨부)
- 사업규모 : 부지 m²(평), 건물 m²(평)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보조 , 지방비 , 국고용자 , 자담)
 -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추진 조합명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내 용	투자(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용자			
계							

3. 지역별 유통시설 및 농산물 생산현황

가. 지역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년)	
		부·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² (평)	m ² (평)	톤/년	백만원/년
계					

※ 시장별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시장 별로 작성

나. 주요품목별 생산 현황 (5개년)

(단위: 톤)

품 목					
계					

※ 품목은 청과물(과일, 채소)을 10개품목 이상으로 함

4.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시행계획

가. 공판장 건설사업의 필요성

※ 신청당시의 인구수등 지역 유통여건을 포함한다

나. 총사업비 산출

	규 모	단 가	소요액	비 고
부 지 건 물	평			
계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별지로 작성

다. 취급물량 추정

	1 일 평 균		연 평 균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과일 채소					
계					

라. 연차별 수지전망 (개장후 5년간 손익 추정)

수 익 비 용 순손익					

마. 일정별 추진 계획(구체적으로)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소요예산 등)

바. 사업예정지의 타당성 검토

(1) 입지선정 사유

(2) 입지 형태별 면적 현황

(3) 부지구입여건 및 관련 법령상 설치 가능성 검토

(4) 대체입지 선정 가능성 검토

※ 사업예정지의 지적도면 첨부

5. 기타 참고자료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건설 추진상황 보고

(○○년도 ○○분기)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부지 m²(평), 건물 m²(평)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담)

2. 연차별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 산 상					시 자 체 계 획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시 비	농안기금
			계	도 비	시 비				
계									

* 과거년도는 실적, 당년도와 이후년도는 계획을 기입

3. 주요시설물 배치 및 관리·운영방안

- 주요시설 배치계획
 - * 모든 시설물을 기록하고 시설물전체합계는 건물면적 전체와 일치되도록 작성
- 관리·운영방안
 - 관리운영체계 :
 - 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 부류별 법인수와 법인명
 - 하역비 부담주체 :
 - 거래관계자 현황 : 중도매인(명), 매매참가인(명), 경매사(명), 수집상(명)

4. ○○분기 일자별 추진상황

* 분기중 일자별 추진상황을 자세히 정리

5. 분기별 사업비 집행실적

재원별 사업비 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확 보					집 행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국 고	지 방 비			
			계	도 비	시 비			계	도 비	시 비	
누 계											
전분기말											
금분기											

<사업비 미확보사유 및 대책>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적 요	예 산 액	전분기말 집행액	금분기 집행액	집행누계액
계				

주) 적요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기타 등으로 세부하여 기재

6. 향후계획

- 다음분기 추진계획
- 사업종료시까지 계획

7. 문제점 및 대책(건의사항)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농수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 신청서

1. 기존 도매시장(공판장) 개요

- 위 치 :
- 규 모 : 부지 m²(평), 건물 m²(평)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국고융자 , 자담)
- 사업기간(개장일) :

2. 시설보완 사업개요(자세히 기재)

- 시설보완내용
- 필요성
- 소요사업비 및 산출근거
- 시설보완후 효과

3. 사업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소 요 액

4. 기타(문제점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시설보완사업 추진상황

1. 사업개요

2. ○○분기 일자별 추진상황

3. 보조금 집행실적

가. 연도별(분기 보고시는 분기별로 작성), 재원별

(단위:천원)

연도별 (분기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담

나. 세부내역별 집행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다. 향후추진계획 : 시기별, 비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4. 향후계획

- 다음분기 추진계획
- 사업종료시까지 추진계획

5. 기 타

- 최종 정산 보고시에는 세부내역별 집행조서와 증빙자료, 착공전·후 시설물별 사진 제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사업계획서

1. 시장명 :

2. 현 황

○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FAX)	주 소

○ 기 타

법인명	지정기간	자본금	임 직 원			거래실적('99)	
			직 원 (임원)	전 산 담 당	경매사	물 량	금 액

○ 전산담당자 현황

법 인 명	일 반 현 황			대표 담당자 관련경력	주컴퓨터 사양
	인 원	성 명	연 령		

3. 사업계획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법 인 명	계(100%)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세부내역(별첨가능)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명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계					
H/W부문					
부대시설부문					

* 구성내역은 기본계획의 별첨 참조

○ 전자경매 확대 실시 계획

법인명	구 분	2002				
		1/4분기	2/4	3/4	4/4	
	품목	총취급품목수(A)				
		전자경매 품목수(B) 및 품목명				
	전자경매비중(B/A)	%	%	%	%	

○ 전자경매 정착방안

법 인 명	대 상	교 육 · 홍 보 계 획	
		도입전	도입후
	경 매 사 중도매인 출 하 주 기 타		

4. 추진 일정

○ 법인별로 사업착수에서 완공시까지의 구체적 일정 등

5. 기타사항

○ 지방비 확보 사항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서기관 남동익)입니다.

I.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 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물류 및 상류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대도시 소비지 유통권 중심으로 건설
 - '00년도 신규 2개소는 공공유형으로 추진(지방자치단체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운영)
- 2001년도는 현재 추진중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외의 신규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지양하고, 개장지역의 운영활성화에 중점
-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비절감형 구조로 설치 권장
 - 집배송장, 소매매장, 포장·가공실 및 저온창고 등 현대적 경향에 적합하게 설치
 - 사무실, 편의시설 등 영업활동에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은 최소 설치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 등 비직영 금지
 - 양곡, 청과, 축산 등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형태 운영
 -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 등도 일정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편의 제공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4-'97년	'98년	'99년	'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년
사업량 1)		8	10	12	9	6	5
사업비	계	백만원 234,347	115,430	88,697	133,394	45,230	87,734
	○ 국고 2)	163,046	94,719	62,009	90,556	31,270	61,806
	- 보조	92,500	83,157	62,009	90,556	30,290	61,806
	- 용자	70,546	11,562	-	-	980	-
	○ 지방비	-	-	14,550	31,103	9,857	25,928
	○ 자부담	71,301	20,711	12,138	11,735	4,103	-

* 1) 사업량은 계속지역 포함, 2) '99년까지는 지원실적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추진배경

- '94. 5 농안법파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척대책」의 핵심과제로서 대도시 외곽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결정
- '00.10현재 7개소 개장, 8개소 추진중
- * 2000년도 신규지역 2개소(김해, 금산)선정 추진중

(나) 지원내용

-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직영점, 가맹점 및 소매상 등에 배송하고,
- 농수산물의 가공, 소포장, 보관, 현장판매 및 산지 물류체계 개선선도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비 지원

(다) 지원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물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라) 지원비율

- 단독추진

유 형	기 존	'99부터 적용
	'95~'96 신정지역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운영)	부지구입비 : 70% 용자 건설비 : 70% 보조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지방비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부지매입비 : 50% 용자 시설비 : 70% 보조
<전문유통업체유형> -전문유통업체가 소유 및 운영	건설비 60% 용자	총사업비의 80%국고용자, 20%자부담

- * 용자조건 : 연리 4.0%(민간 5.0%), 5년거치 10년상환

- 컨소시엄추진

- 각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비율을 각각 적용

(마) 지원조건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준수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평가 등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준수

(바) 지원범위

□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매입비

□ 시설비

○ 집배송장

- 농산물(양곡, 청과, 축수산, 가공농산물) 집배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은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필수지원시설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 기타 지원시설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쉼터,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 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옥내주차장, 별동으로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

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속에 포함되지 않음

□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종합유통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저온저장고	지게차, 대차, 카고테이너, 파렛트 예냉시설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채소류 신선도유지 및 상품 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파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배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다만 업무용PC, 업무용 집기류, 주방기구 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사) 사업계획 승인전에 이루어진 사전기성고

○ 사전기성고 인정의 필요성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 사업기간 축소와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부담 우선 투입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것
-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 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외 사용방지

-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지원금액이 종합유통센터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

(자) 지원범위 초과시 대책과 예외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비 정산대상이 아님)
 - 예) ① 집배송장 설치기준 미달면적(필수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의 초과면적)
 -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등
- 설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가능한 것
 - 농림부장관이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
 -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2)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	45,228	31,270	30,290	980	9,854	4,104
〈계속지역〉							
대 전	1	12,374	8,270	7,290	980	-	4,104
대 구	1	7,142	5,000	5,000	-	2,142	-
목 포	1	4,285	3,000	3,000	-	1,285	-
수 원	1	7,142	5,000	5,000	-	2,142	-
김 해	1	1,428	1,000	1,000	-	428	-
금 산	1	12,857	9,000	9,000	-	3,857	-

* 용자조건 : 연리 4.0%, 5년거치 10년상환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504-9415~6)
- 시·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 시·군·구 : 농산물 유통담당과(농림과, 산업과 등)

(3) 사업대상자 선정

- 건설중(8개소)인 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사업기간내 완공토록 지도·감독
- 2001년도에 신규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은 없음.

(4) 사업시행

(가) 계속지구 사업시행

- '00년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대상자는 2001년 1월 20일까지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산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85%이내 범위내에서 개산급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연도말정산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12월 31기준으로 연도말 정산을 한후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산자단체 등 기타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연도말 정산신청을 농림부에 하여야한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대상자는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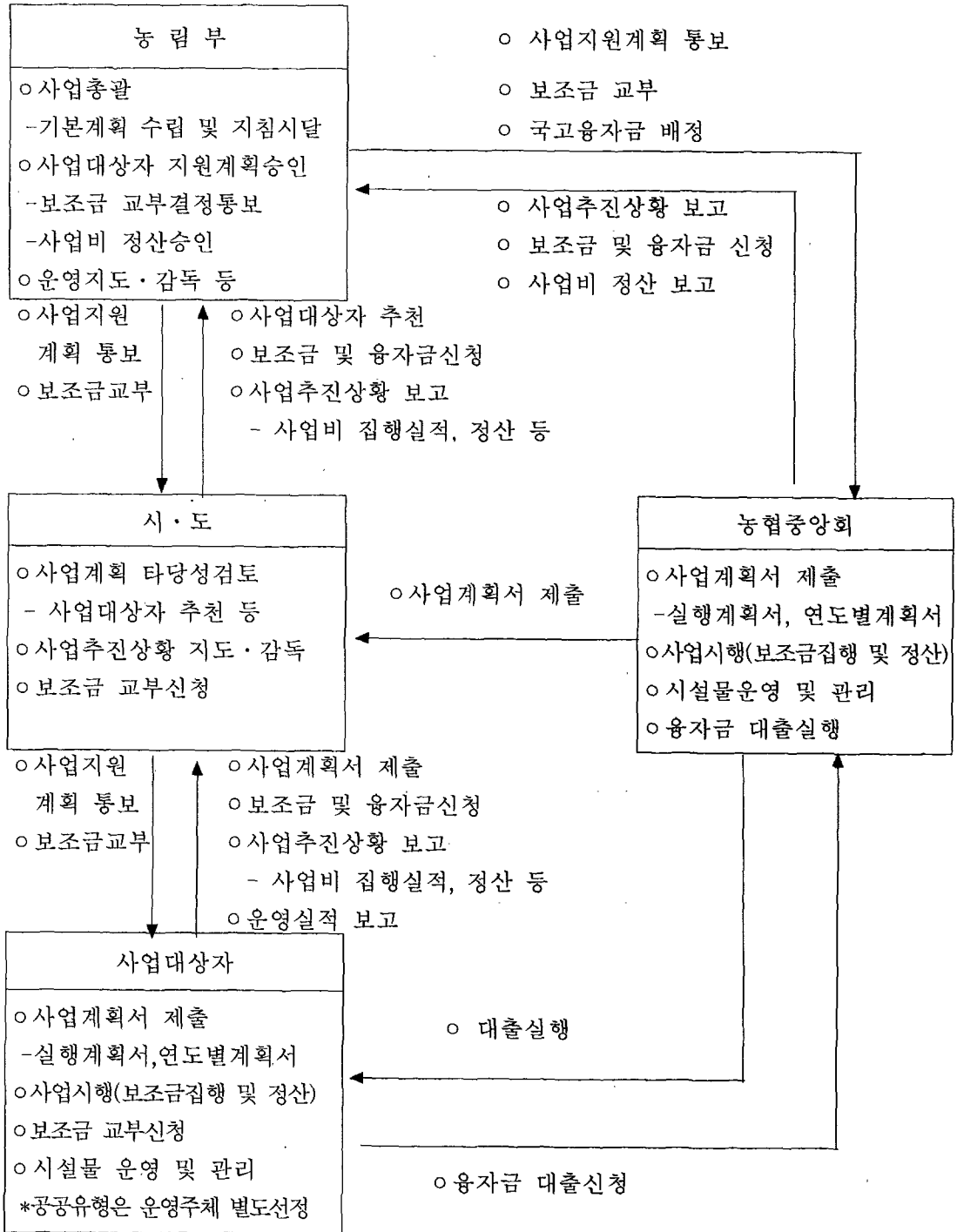
(라) 사업비 지원방법

- 부지매입비 및 건설비는 기성고 등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보조신청(당해연도 예산의 85%범위내에서 공정실적 및 계획에 따라 개산급 가능)
- 시·도지사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보조금(융자금 포함)의 집행상황(교부결정, 검정, 정산 등)을 분기별로 보고

(마) 물류장비 구입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여 소유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공공유형 종합유통센터 장비의 구입 및 관리
 - 위탁받을 운영주체가 선정된 경우 운영주체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여 운영주체에 보조지원)하여 운영주체가 구입가능
- 운영주체가 집행한 간접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정산신청

(5) 사업시행체계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짐.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책임자는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감독 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수 있음
 -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관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 건물 - 물류설비	개 장 정부물품 내용연수 준용	폐 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 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관련 조항 준용

(2) 보고·기타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장 및 사업대상자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는 본사업의 매출액 등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한 법인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운영계획서(공공유형)
- 편익비용(B/C)분석 (별지 제2호 서식)

마. 사업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역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자
 -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로서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자.
 - * 시설비(자부담과 담보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사업자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자

(2)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농수산물 유통 및 연관분야 사업경력, 사업실적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출하조직의 확보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가능성 등

(3)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및 평가요소 (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 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95년 이후 국내·외 할인점 등 대형유통시설이 급격히 진출하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감안 종합유통센터 신규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 ※ 신규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내역, 부지매입계획 및 건설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전화 504-9415, 9416)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위 치 :	도 시 동	번지	[위치약도(1/5,000축적지형도) 첨부]
○부지면적 :	(소유자명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 입지선정 사유(주변현황 등)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단위 : 평, 백만원)

구분	규모	사업비		주요기능
		단가	금액	
○부지(6,000평 이상)				
○건물(3,000평 이상)				
<기본시설>				
-집배송장				
-소매매장(농산물·가공품·생필품 구분)				
<필수지원 시설>				
-소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일반창고				
<기타 지원시설>				
-사무실·전산실				
-품질관리실				
-출하주 및 거래처 상담실				
-직원용 편의시설(식당, 강당, 회의실, 강의실, 샤워실, 경비실, 용역업체사무실)				
-고객용 편의시설(휴게실·간이금융점포)				
-기계실·전기실				
-공용면적(용도별로 구분)				
-옥내주차장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옥외배송장				

다. 물류설비

(단위:백만원)

구 분	품 명	단 가	수 량	구입비	비고(기능)
물류기계					
포장기기					
축수산장비					
전산장비					
기 타					
계					

라. 사업추진 일정 :

5. 세부추진계획

가. 유통권역 일반현황

- 유통권역 인구규모, 도로교통여건, 유통시설현황(재래시장, 소매시설, 대형 할인점 등의 매출액을 포함한 운영현황)

나. 농산물 생산현황

- 유통권역 인근지역 주요 농산물의 월별,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물량 등
 - 인근지역의 지역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현황 및 농산물 취급실적
- 유통권역내 주요 농산물의 유통물량 및 유통체계(유통시설별 취급비율)
 - 종합유통센터의 부류별 경유비율

다. 농산물의 수집, 분산계획

- 산지 출하처 확보방안(양곡류, 청과류, 축산류, 수산류 등 부류별)
- 소비지 거래처 확보방안(소매업체 가맹점화 등), 현장도매, 직판장 운영계획 등

라. 물류체계 개선방안

- 규격포장화, 소포장, 예냉 등 상품경쟁력 제고방안
 - 보관, 배송체계 및 하역체계 개선 등 물류체계 개선방안

마. 운영주체 선정(운영자금 조달방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방안

6. 기대효과

7. 연차별 수지전망 : 편익비용 분석

- ※ 첨부서류 : 1. 종합유통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
- 2.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3. 운영계획서(공공유형)

[별지 제2호 서식]

편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1차년도	2차년도	---- 9차년도	합 계
비용(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각종기계구입비 화재보험료 전속인건비 기 타 소 계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 타 소 계				
	합계(가)	현재가치(가)	$가 \times 1+r^1$	$가 \times (1+r)^2$	$(가) \times (1+r)^1$	TC(총비용)
편익(B)	수탁사업	선별, 포장 등 각종수수료 저장 기 타 소 계				
	매취사업	가공 및 판매 금액				
	합계(나)	현재가치(나)	$나 \times 1+r^1$	$나 \times (1+r)^2$	$(가) \times (1+r)^1$	TB(총편익)
B/C	나 / 가					TB/TC

<작성시 유의사항>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건축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융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 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판매사업

- 가공 및 판매사업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 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은 0.06으로 계산

○ 기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 B/C : TB
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

2.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운영주체 :
- 기대효과 :

3. 주요시설규모

- 부 지 :
- 건 물
 - 집배송장 :
 - 소매매장 :
 - 소포장·가공실 :
 - 저온저장고 :
 - 냉동·냉장창고 :
 - 하역장·일반창고 :
 - 품질관리실·전산실 등 :
 - 주차장 :
 - 사무실, 출하주 대기실, 회의실 등 기타 지원시설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	시·도비	시·군·구비	용 자	기 타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나. 건설비

(단위:백만원)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전기공사				
-세부내역				
○통신공사				
-세부내역				
○기계설비공사				
-세부내역				
○소방공사				
-세부내역				
○자재대금				
-세부내역				
-세부내역				
○기 타				
-세부내역				
합 계				

다. 물류장비

(단위:백만원)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

구 분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 출하처 개발					
- 거래처 개발					
- 전산시스템 개발					
- 운영시스템 개발					
- 기타 운영계획 등					

○○년도 사업추진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0까지	2001	2002이후
○총사업비 -국 고 -시·도비 -시·군·구비 -용 자 -자 부 담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0까지	2001	2002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괄

지목	계			'00까지			2001년			2002이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계 담 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매입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량	단가	사업비	비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당해연도)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마. 개설준비반 운영계획(당해연도)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운영주체 선정					
○ 조직 및 인원					
○ 운영준비사항					
- 출하처 개발					
- 거래처 개발					
- 전산시스템 개발					
- 운영시스템 개발					
- 기타 운영계획 등					

II.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지원

1. 목 적

- 소비자단체에 물류시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간에 정례화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 도모
- 포장센터 등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소비자와의 연계체제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 직거래제도의 조기정착과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농산물 물류시설 설치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소비자 유통권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시설 또는 직판장 설치비 지원
- 소비자단체의 규모와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설치
 - 대도시 외곽의 부지에 창고형으로 설치하여 사업비 절약

3.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
- 동 법 시행규칙 제4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99예산	'00예산	2001 (예산안)	2002	계
소비자단체물류시설지원					
○ 사업량	5	10	10	10	35
○ 사업비(용자)	1,498	2,000	1,570	2,000	7,068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 경

- '98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에 대비하여 소비자단체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비 또는 임차료 지원
- 전국의 주요도시에 친환경농산물 등 물류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나) 자금지원 대상자

- 소비자단체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단체
-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지원기준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0%)

(라) 지원시설의 종류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지원범위와 동일
- 다만 임차시에는 임차료 지원

(2)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개소,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재원명)	자 부 담
			국고 용자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10	2,242	1,570	672

나. 추진체계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추진체계를 준용함(연도별 사업계획서 제외)

다. 행정사항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참조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지방자치단체

나.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단체)
-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수시로 제출
- 시·군·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전년도 3.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 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 준용

마. 사업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고 경역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단체
 - 시설비 (자부담 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단체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단체로서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단체

(2)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 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 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 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 출하조직의 확보 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 가능성 등

(3)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된 심사 및 평가요소(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 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농산물 물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전화 504-99415,9416)로 문의

Ⅲ. 농산물 직거래시설 지원

※ 이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사무관 김승환)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직거래를 농산물 유통체계의 장기·제도적인 사업으로 정착·발전시켜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자 함.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와와의 직거래 활성화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직거래장터 : 기존의 「고정식 간이시설형 장터」와 「이동식 천막형 장터」 두가지 유형을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실정에 맞는 유형의 장터를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추진
 - 고정식 장터 :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조직)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지체가 시설비를 지원·건설하여 생산자(단체·조직)이 공동으로 운영
 - 이동식 장터 :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조직)가 특정한 장소(공용부지, 주차장, 아파트단지, 도로변, 5일장 등)에서 장터를 개설하여 생산자(단체·조직)가 직거래 추진
- 파머스마켓 : 지자체·지역농협 등이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농협이 건설·운영
 - 농산물판매장과 원예자재점·생필품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로 육성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등의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 도모
 - 백화점·대형점 등 대형소매유통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산지구매 및 농산물 취급확대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매유통개선 촉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직거래 장터	사업비	-	2,000	2,000	2,200	-
	보조	-	1,400	1,400	1,540	-
	지방비	-	600	600	660	-
파머스 마켓	사업량	-	10	20	20	100
	사업비	-	6,400	12,800	16,000	80,000
	보조	-	3,200	6,400	8,000	40,000
	융자 자부담	-	1,280 1,920	2,560 3,840	3,200 4,800	16,000 24,000
직거래 자금	사업비	11,000	45,000	44,040	58,680	200,000
	생산자단체	11,000	27,000	29,040	38,080	120,000
	소비자단체	-	8,000	5,000	5,600	20,000
	대형유통업체	-	10,000	10,000	15,000	60,000

- ①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 ② 2001년 이후의 지원계획은 변동 가능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경위

-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유통개혁을 위해 대통령께서 농림부 및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확대 지시('98)
-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시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직거래 시설비 지원계획을 보고하여 '9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2) 지원대상자

- 직거래장터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파머스마켓 : 지역농협(전문단위농협 포함)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판매장 및 지역농·인삼협조합
 - * 협동조합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합 제외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3)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 고정식 시설형장터

- 지원내용 : 장터기반정비 및 시설비, 판매장비·통신·전기·수도 등 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홍보시설물 등 포함
- 시설규모 : 판매장면적 200평 기준
- 예산상 단가(총사업비 기준) : 200백만원
- * 부지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 이동식 천막형장터

- 지원내용 : 천막 및 판매대 구입·제작비
- 시설규모
 - 자바라식 천막 20동(6m×3m 기준), 판매대 20조(천막규격에 맞게 제작)
 - 몽고식 천막 10동(6m×5m 기준), 판매대 10조(천막규격에 맞게 제작)
- 사업비(총사업비 기준) : 14백만원
 - 자바라식 천막 기준단가 : 700천원(천막 500천원, 판매대 200천원)
 - 몽고식 천막 기준단가 : 1,400천원(천막 1,200천원, 판매대 200천원)
- * 천막의 종류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이상 부담가능)

○ 파머스마켓

- 지원내용 : 농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 시설규모 : 200~500평평 범위내에서 입지여건에 맞도록 설치

구 분		세부시설명	총면적기준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판매장	농업인 코너 : (1차년도) 30% → (2차년도) 40 → (3차) 50	49%이상 (42%이상)	
	부속시설	필수시설	소포장실, 창고, 저온저장고 등	15%이하
		기타시설	상주직원 편의시설, 기계실, 공용면적 등	15%이하
부 대 시 설		생필품점, 원예자재점, 특산품 코너, 화훼코너 등	21%이하 (28%이하)	

* ()내서는 읍이하지역 기준을

- 예산상 단가(총사업비 기준) : 500백만원~1,250백만원(2,500천원/평)
- * 부지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용자 20%, 자부담 30%(자부담은 30%이상 가능)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 : 직거래 추진실적·계획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
 - 소비자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125%이상 사업의무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이상 사업의무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20	76,880	71,420	9,540	61,880	660	4,800
○ 직거래장터		2,200	1,540	1,540		660	
○ 파머스마켓	20	16,000	11,200	8,000	3,200		4,800
○ 직거래자금		58,680	58,680		58,680		
- 생산자단체		38,080	38,080		38,080		
- 소비자단체		5,600	5,600		5,600		
- 유통업체		15,000	15,000		15,000		

- ① 재원 : 직거래시설(농특세), 직거래자금(농안기금)
- ② 용자조건 : 파머스마켓(연리 4%, 3년거치 7년상환)
직거래자금(농안기금 사업별 용자금리 적용,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직거래장터 : 농림부(시·도)
- 파머스마켓 : 농협중앙회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 소비자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신청자격

- 직거래장터 : 시·도(시·군·구)
- 파머스마켓 : 지역농협(전문단위농협 포함)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판매장 및 지역농·축·인삼협조합
 - * 협동조합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합 제외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다. 신청절차

- 직거래장터 : 별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0.12월말 까지 제출
- 파머스마켓
 - 사업희망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직거래자금 :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농협·농유공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농협·농유공의 사업시행세부요령은 사업시행진 별도 통지(공고)

라. 구비서류

- 직거래장터 : 별지 사업계획서
- 파머스마켓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협중앙회 소정 양식),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
- 직거래자금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직거래장터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이 선정
- 파머스마켓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타당성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직거래자금
 - 선정기준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농협(판매장 포함)·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로서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선정절차 : ①사업지원지침 통보(농림부) → ②사업지원계획 통지 또는 공고(사업실시기관) → ③사업신청(사업희망자) → ④사업신청접수 및 사업자확정통보 (사업실시기관) → ⑤자금배정요구(사업실시기관) → ⑥자금배정(농림부) → ⑦용자실행 및 실적점검(사업실시기관)

바. 기타 : 이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직거래장터 : 시·도(시·군·구)
- 파머스마켓 : 농협중앙회
- 직거래자금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02-504-9414~6, 500-2675~6)
- 시·도 : 농산유통과(농업특작과, 근교농업과 등)
- 농협중앙회 : 직거래 추진단(02-397-7162, 파머스마켓 및 직거래자금)
-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장지원팀(02-790-8012, 직거래자금)

다. 사업시행

- 직거래장터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자 및 사업장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업비 변경 등 중요사항은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한다.
 - 이동식 장터 개설 추진
 - 천막, 판매대 등 장터개설장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 장터개설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나 생산자(단체·조직)이 임의 선정
 - 지자체가 특정장소에 장터를 개설하여 직거래를 추진하거나 직거래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조직)에게 천막과 판매대를 지원하여 추진(시·군·구가 개설한 장터, 광역장터, 정기장터, 자매결연장터, 노변장터 등)
 - 지자체 또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조직)는 장터조성·가격 및 품질관리와 장터의 지도감독·육성 등 지원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과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 파머스마켓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당해연도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자 변경은 농협중앙회장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농협중앙회장이 승인한 사항중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거래자금

- 사업실시기관은 농림부 사업지원지침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용자실행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직거래시설)

- 시·도지사(파머스마켓은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고정식 직거래장터의 부지정지비, 시설비, 화장실·통신·전기·판매장비 등 장터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홍보시설물 등은 사업비 정산에 포함하고, 홍보용 인쇄물비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 파머스마켓의 내부설비(기계장치, 판매장비 등)는 사업비에 포함하고, 사무용 비품, 홍보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마. 기타사항

-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농협중앙회장)는 사업자로 확정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 사업자 자격을 취소하고 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직거래장터, 파머스마켓

- 시·도지사(파머스마켓의 경우 농협중앙회장)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단체가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농협중앙회장)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장 입구, 몸체 등 잘 보이는 곳에 농림사업안내표지판 설치
 - 직거래장터 : 농림부지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시·군·구 로고 표기
 - 파머스마켓 : 농림부지원 파머스마켓 및 농협 로고 표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고정식 장터	준공	3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이동식 장터	최초장터 개설일	2년간		
파머스마켓	준공	10년간		

○ 직거래자금

- 사후관리기관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 사업실시기관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수립
 - 계약서·입출금자료 및 현장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 사업의무를 미달한 경우에는 농안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직거래장터·파머스마켓
 - 시·도지사(농협중앙회장)는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
 - 자금요구 :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매월 25일 까지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농협중앙회장)는 직거래시설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여야 함.
- 직거래자금
 - 각 사업실시기관은 매월말 대출실적을 익월 5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 사업자는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사업실시기관에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안사업실시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융자규정과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파머스마켓 : 농협중앙회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 소비자단체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 대형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신청자격

- 파머스마켓 : 지역농협(전문단위농협 포함)
- 직거래자금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판매장 및 지역농·인삼협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다. 신청절차

- 파머스마켓
 - 사업희망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001.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직거래자금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지원계획을 2001. 6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농림부 사업지원지침에 의거 사업시행세부요령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공고)
 - 사업희망자는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라. 구비서류

- 파머스마켓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협중앙회 소정 양식)
- 직거래자금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파머스마켓 : 농협중앙회장이 사업타당성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직거래자금
 - 선정기준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농협(판매장 포함)·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고 무점포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선정절차
 - ①사업지원지침 통보(농림부) → ②사업지원계획 통지 또는 공고(사업실시기관) → ③사업신청(사업희망자) → ④사업신청접수 및 사업자확정통보(사업실시기관) → ⑤자금배정요구(사업실시기관) → ⑥자금배정(농림부) → ⑦용자실행 및 실적점검(사업실시기관)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통보할 계획임
- 본 사업은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별지 1-1호 >

고정식 시설형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고정식 시설형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 00시·도(00시·군·구)

4. 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 위 치 :	시(도) 시(구) 동	번지(1/5000 위치약도 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① 입지선정사유(주변현황 등)

② 토지관련법령 등 저촉여부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구 분	규 모	사업비(천원)		조달방법		비 고
		단가	금액	국고보조	지방비	
○기반정비						
○매장시설						
○판매대, 장비 등						
○기 타						
계						

다. 사업추진일정(세부적으로 작성)

라.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매장운영 및 관리방안, 판매방법 등 포함)

5. 기 타

< 별지 1-2호 >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및 주요 직거래참여단체 : 0 0 0 시·구·구, 0 0 단체(조직)

4. 사업계획

가. 장터개설장소(주된 장소 표기)

○ 위 치 : 시(도) 시(구) 동 번지
○ 장터면적 : (소유자명)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해당지역만 표시

① 입지선정사유(주변현황 등)

② 장터개설장소 : 공공청사 주차장·청사예정부지, 체비지,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공설운동장 등 구체적으로 표기(여러 곳일 경우 모두 기록)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구 분	수 량	사업비(천원)		조달방법		비 고
		단가	금액	국고보조	지방비	
○천막구입						자바라식, 봉고식 등 천막종류 표기
○판매대,						
○기 타 계						

다. 사업추진방법(세부적으로 작성)

라.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매장운영 및 이동식장터 관리방안 등 포함)

5. 기 타

< 별지 1-3호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 000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

2. 사업량 : 개소

3. 사업대상자 및 주요 직거래참여단체 : 0 0 0 시·구·구, 0 0 단체(조직)

4. 설치장소 :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지역명	사업량	예산액	교부요청액	잔액	비고
					이동식, 고정식

※ 이동식장터 개소당 기준사업비 : 14,000천원(국비 9,800천원, 지방비 4,200천원)

< 별지 2호 >

심사제외

농산물 직거래시설 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계획

구 분	규모	사업비 (천원)	조 달 방 법			비 고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자담)	

2. 사업추진상황

사업자	사업착수	입찰(계약)	착 공	공 정	준공예정	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	월 일	

- ① 사업장별 분기중 추진실적 및 다음분기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별지 작성
- ② 사업자란에는 시·도, 시·군·구(파머스마켓은 지역농협)명을 기재

3. 사업비 집행상황

사업자	계(천원)		국고보조		융 자		지방비(자담)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4. 문제점 및 부진사유

*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3호 >

총 공통-9

농산물 직거래시설 지원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부지		매장		계획				집행(정산)실적				대비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집행잔액	착공일	준공일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국고보조(A)	읍자(B)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보조(C)	읍자(D)	지방비	자부담					보조(A-C)

- ① 사업자란에는 시·도명, 시군구명 기재
- ② 차년도 이월액 및 불용 또는 집행잔액도 국고보조와 읍자로 구분 작성

IV. 종합유통센터 출하촉진자금지원

1. 목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및 물류센터 활성화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기능 활성화와 새로운 거래방식인 예약수의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의 융자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6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99	'00	2001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22,000	32,000	32,000

* 2001년도 지원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배 경 : 농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조기활성화와 예약수의거래제도의 정착 지원

(나) 사업내용 : 소비자 유통개선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결제자금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다) 지원대상

- 농안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 제외대상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침 등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라) 지원조건

구 분	용자기간	지원금리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1년 이내 “	5% “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운영계획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2001년도 사업비(예산)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종합유통센터	-	32,000	32,000	-	32,000	-	-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대출취급기관)

(3)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02-504-9415-6), 유통정책과(02-504-9411)

(4). 신 청

- 자 격 : 지원대상 종합유통센터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 구비서류 : 사업시행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함
 - 용자 신청서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기타 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5) 지원방식

- 선도금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별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산지선도금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예약수의조달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의 80%이내

(6) 지원규모

- 종합유통센터별 거래실적, 도·소매비율, 거래형태, 운영계획, 입지여건, 개장년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입지, 상권,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자금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관리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안기금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보고·기다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 등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통보)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이 완료되었을때에는 정산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관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2001년도 사업신청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판매부 (02-397-5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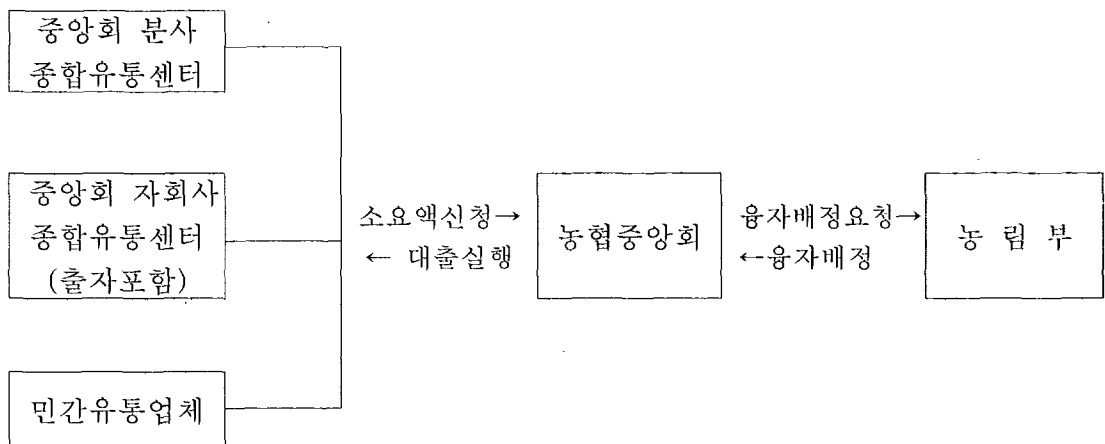
나. 신청자격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다. 신청절차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라. 구비서류 : 용자신청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
기타 대출취급기관에서 요구서류

[별표 1]

지 원 절 차 도



29.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이상용, 서기관 홍병기)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 품목별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주도력이 있는 수준의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 지급
- 자조금 납입 이탈자를 최소화하고, 자조금의 기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차등지급제 시행(자조금 조성액의 50~100%)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4.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축산(젓소, 돼지, 닭)분야 자조금제 시행
- 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6.1)에서 자조금 적립지원 대상품목을 농산물에까지 확대(종전의 축산분야 흡수)

2)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0-66호, 2000. 10. 23.)

- '99년도 기준 재배면적 상위 5개 시·군의 재배면적을 전국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재배면적 집중율)이 30% 이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품목으로 볼 수 있음(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
-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일반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穀類 제외)은 재배면적집중율과 관계 없이 대상품목으로 하되, 개별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볼 수 있음
- 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과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품목 등은 재배면적집중율과 관계없이 대상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국 사업부서가 축종별 사육여건 등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축종을 정함

<2000. 10. 23. 현재 고시품목(20개품목)>

겨울배추, 감귤, 양배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참다래, 복숭아, 포도, 양파, 마늘, 사과, 배, 파프리카, 친환경농산물,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꿀벌

3) 자조금조성단체의 범위

- 협동조합 : 농협조합, 축협조합, 인삼조합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사단법인 : 생산자·협동조합·법인경영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회원인 사단법인(그 사단법인이 회원인 사단법인을 포함함)

4) 자조금의 용도

- 소비촉진 홍보(방송·신문 광고, 전단 제작·배포,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
-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 품질향상·수급조절을 위한 구성원 교육
-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이행 경비
- 유통정보 제공 및 구성원간 유통정보화, 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 연구
-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
- 자조금 운용상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과)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4-9412) : 제도총괄
- 농림부 채소특작과(02-504-9422) : 사업시행
- 농림부 과수화훼과(02-504-9425) : 사업시행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5) : 사업시행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02-503-7284) : 사업시행

다. 사업시행절차

1) 자조금 조성의사 결정방법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및 규모를 갖춘 자조금조성단체가 정부지원을 받아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원 중 10인 이상이 “자조금조성계획안”을 작성
- 자조금조성계획안에 대해 당해 단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고, **찬성인의 생산량이 당해 단체 구성원 생산량의 50% 이상**이면 자조금 조성의사가 확정됨(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중에 법인이 있을 경우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의결에 참여하기 전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인 구성원이 결정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
 - 자조금 조성의사는 1회계연도(1. 1.~12. 31.) 단위로 결정함

2) 자조금관리규정 작성

- 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다음내용이 포함된 자조금 관리규정을 작성함
 - 목적, 사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가입·탈퇴·제재사항 등), 회원의 탈퇴·제명시 납입금 계산방법, 납입금의 조성방법·납입금액·수납장소, 자조금의 용도 및 사용방법,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의결(집행)기관 및 의결(집행)방법, 기구·인원 및 경비의 범위, 자조금특별회계 설치 및 회계처리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구성단체는 사업계획서에 자조금관리규정을 첨부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자조금사업계획서에는 전전년도 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농림부 고시 제2000-66호, 2000. 10. 23.)>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당해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이 당해 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금액을 합한 금액
-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는 그 구성원 중 자연인이 자조금 조성단체를 거치지 않고 개별출하한 금액에 대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입액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자조금 조성단체를 거쳐 출하한 금액에 합산하여 자조금조성단체 출하실적을 산정함.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이 자조금조성단체인 경우도 이에 준함.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관리규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확정(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유통정책과에 통지

4) 보조금의 지급절차

- 자조금구성단체는 전년도 자조금 조성액(보조금 포함)의 용도별, 사용액, 총 구성원 수(총회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성원 명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자로서 매분기 초일기준), 당해 분기의 출하액·납입율·납입액 및 이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주관기관에 보조금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 조성액(당해단체 구성원의 연간 생산액의 1% 해당액)의 50% 해당액을 기본으로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그 내용(자조금조성액 포함)을 유통정책과에 제출

구 분	가중치	해당비율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전체구성원 대비 납입 구성원 비율	% 80	납입원금의 40% (80×0.5)	56 (80×0.7)	68 (80×0.85)	80 (80×1.0)
전년도 조성액(보조금 포함) 중 연도내 사용액 비율	20	10 (20×0.5)			2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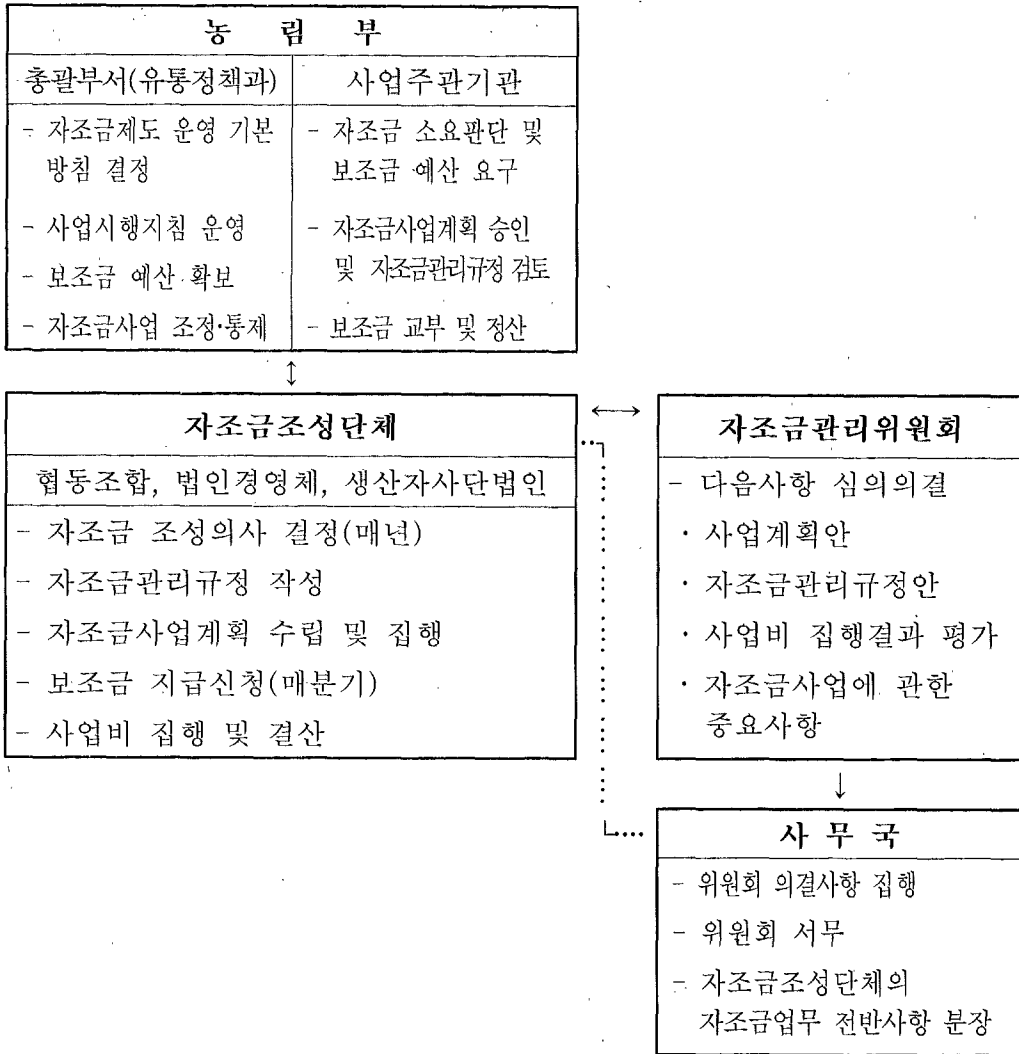
(주) - 납입액을 정액으로 정한 자조금조성단체의 전체회원 대비 납입회원 비율은 총회원 수에 납입단가를 곱한 금액에 대한 실제 납입액의 비율을 말함

- 보조금 지급시 전년도 조성액의 연도내 사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규로 참여하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최초 사업시행년도에는 전년도 조성액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중치(20%)의 상한을 적용함
 - 4/4분기에 조성한 자조금에 대하여 12. 20. 이전에 당해분기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이를 당해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
 - 다음연도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에 전년도 4/4분기에 조성한 자조금과 동 분기에 지급한 보조금 중 다음연도 1/4분기 내에 사용한 금액은 자조금조성연도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조금 조성액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함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자조금조성단체인 경우로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출하를 목적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농산물을 인수한 때에 자조금을 징수한 경우는 “인수 농산물의 인수가액(인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최근분기의 평균출하단가에 인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출하액”으로 갈음할 수 있음.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이 자조금조성단체인 경우도 이에 준함

5) 사업시행

- 자조금조성단체는 자조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6) 자조금 사업시행 체계도



《 행정사항 》

- 자조금조성단체는 2002. 1. 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자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별지1)
- 사업주관기관은 정산결과를 근거로 연간 자조금조성액 및 보조금 지급액 현황을 유통정책과에 제출

5.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주관기관(농림부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과)

나. 신청자격 : 협동조합, 법인경영체, 생산자사단법인

다. 신청절차

- 2001. 3. 31.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2001. 4. 10.까지 총괄부서(유통정책과)에 예산요구

*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자조금관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01년 사항 참조
(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1)

2001년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조성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01. . . . ~ 2001.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01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2002.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권은오, 농업사무관 이재욱)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조직)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조직)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주산단지 재배농가(작목반, 산지법인등)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 생산 및 출하조절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손익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부담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합리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97	'98	'99	2000	2001
계	400,000	247,500	33,500	19,000	50,000	50,000
정부융자	320,000	198,000	26,800	15,200	40,000	40,000
농협자금	80,000	49,500	6,700	3,800	10,000	10,000

* 지원금액은 농안기금예산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융자 재원 : '95년 → 농특세 전입금, '96년이후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자부담 : 농협중앙회 및 사업참여농협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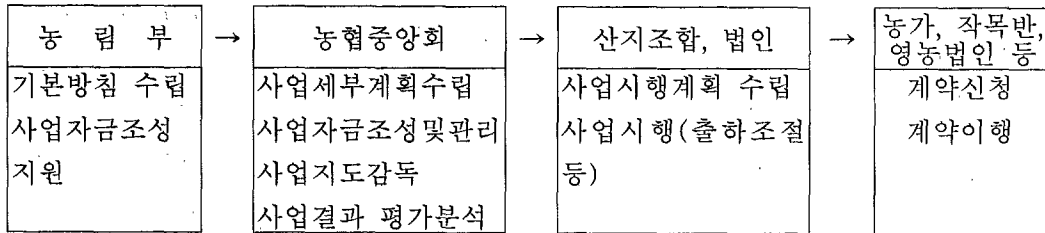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설명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산지농협·영농조합법인등에게 지원하면 사업대상자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계약물량의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 지원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사업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음

4)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조합 또는 품목조합(주산지조합 위주)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

< 사업적격자 검토기준 >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 ② 법인의 구성원수
- ③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 ④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5) 사업추진방법 : 계약재배중심

가) 계약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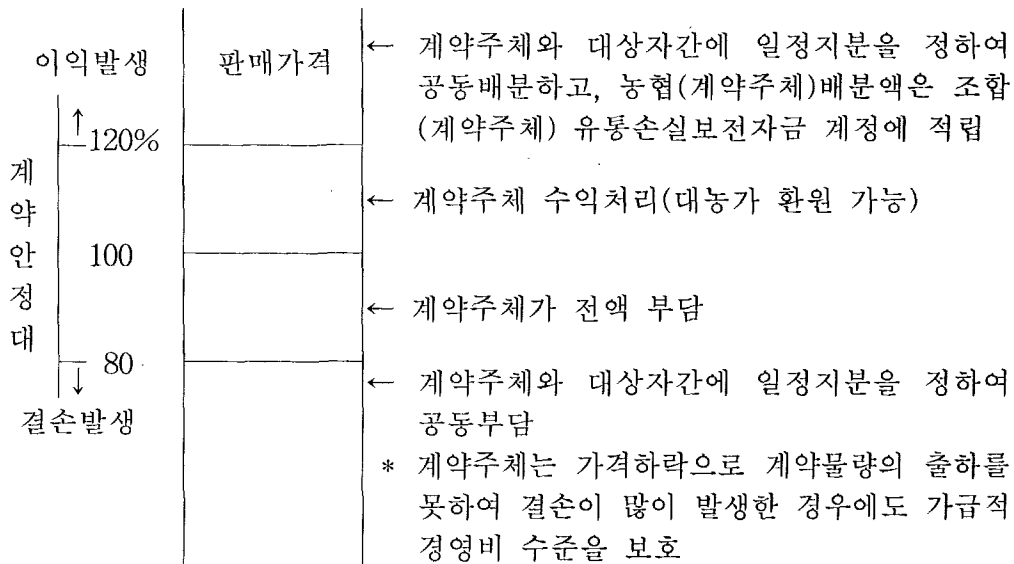
(1) 계약재배 및 출하

- 계약주체 : 산지농협(영농조합법인등 산지법인)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정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 사업정산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 $\pm 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pm 20\%$ 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수매시점의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대농가 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가격상승시 판매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할 수 있음

[사업정산체계]



주1) 정산단위는 품목특성을 감안하여 농가단위 또는 공동정산방식 채택

2)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pm 20\%$ 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pm 10\% \sim \pm 20\%$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가격폭락시 수급안정사업

(1) 기본방향

구 분	무·배추등	마늘, 양파, 고추
가격폭락시	○ 자체폐기 ○ 저온저장	○ 구매비축
가격폭등시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 공급 ○ 직거래 확대	○ 구매물량 방출 ○ 직거래 확대

(2) 시행방법

- 무·배추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시
 - 고랭지배추 출하기(7~9월), 김장배추(11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 소요비용은 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및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 활용
- 가격폭락시 자체폐기
 - 요건 :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또는 경영비) 이하로 3일연속 하락시
 - 물량 : 회원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조합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충당금

6) 사업우수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가격폭락시 조합유통손실보전자금 범위 내에서 경영비 수준 우선지원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위약금리를 부과
-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 익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7)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채소수급조정충당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수 있음
 -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 ②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 ③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계약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과 농가로 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유통 손실보전자금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2001년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업비	400,000	320,000	80,000
○ 2000년 추가조성	50,000	40,000	10,000
○ 기초성('95~'99)	350,000	280,000	70,00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사업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별도 시달
- 사업자금의 운용
 - 총자금중 사업자금 70~80%, 손실대비운용자금 30~20%로 농협중앙회장이 품목별 자금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정함
 - 사업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운용 자금을 5% 추가지원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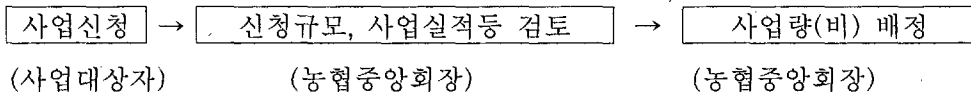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 (02-500-2683/4)
- 농협중앙회 : 채소수급안정사업단(02-397-5734)

다. 사업시행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계획 변경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용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평가, 기타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수급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 운영자금 확대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사업자금 운용지침의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과장 양태선, 사무관 임종길), 채소특작과(과장 권은오, 서기관 송영환, 사무관 고경봉) 과수화훼과(과장 박병원, 사무관 강귀순, 이재인), 축산물유통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최염순) 입니다.

1. 목 적

- 김치·전통장류·신선채소·인삼·신선과실·화훼류·축산물(생축포함)에 대하여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현재 수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수출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 고품질 우수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물류비 차등 지원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	'99	2000(잠정)
합 계	5,366	10,166	15,355	19,081
김 치	1,120	1,381	2,094	3,000
전통장류	-	-	-	-
채 소	893	3,061	4,627	5,560
인 삼	-	-	-	-
과 실	2,940	3,379	3,492	4,250
화 훼	413	2,345	4,373	5,121
축 산 물	-	-	769	1,150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목 적

- 김치·전통장류·신선채소·인삼·신선과실·화훼·축산물에 대해 수출물류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촉진

○ 사업내용

- 대상품목: 김치·전통장류(간장,고추장,된장)·신선채소·인삼·신선과실(사과, 배, 단감등)·화훼류(백합, 선인장 등)및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축)
- 지원내용: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의 일부를 수출물류비로 지원 (축산물은 포장상자만 지원)
- 지원대상: 대상품목의 수출업체, 수출육가공업체, 생축수출농가
- 사업시행 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비율: 국고보조 100%(축산물은 40%)

나. 2001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톤,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1,194	21,194	21,194	-	-	-
○ 김 치	31,250	3,281	3,281	3,281	-	-	-
○ 전통장류	820	820	820	820	-	-	-
○ 채 소	50,000	4,700	4,700	4,700	-	-	-
○ 인 삼	2,100	2,520	2,520	2,520	-	-	-
○ 과 실	14,100	4,230	4,230	4,230	-	-	-
○ 화 훼	900	4,680	4,680	4,680	-	-	-
○ 축 산 물	45,000	963	963	96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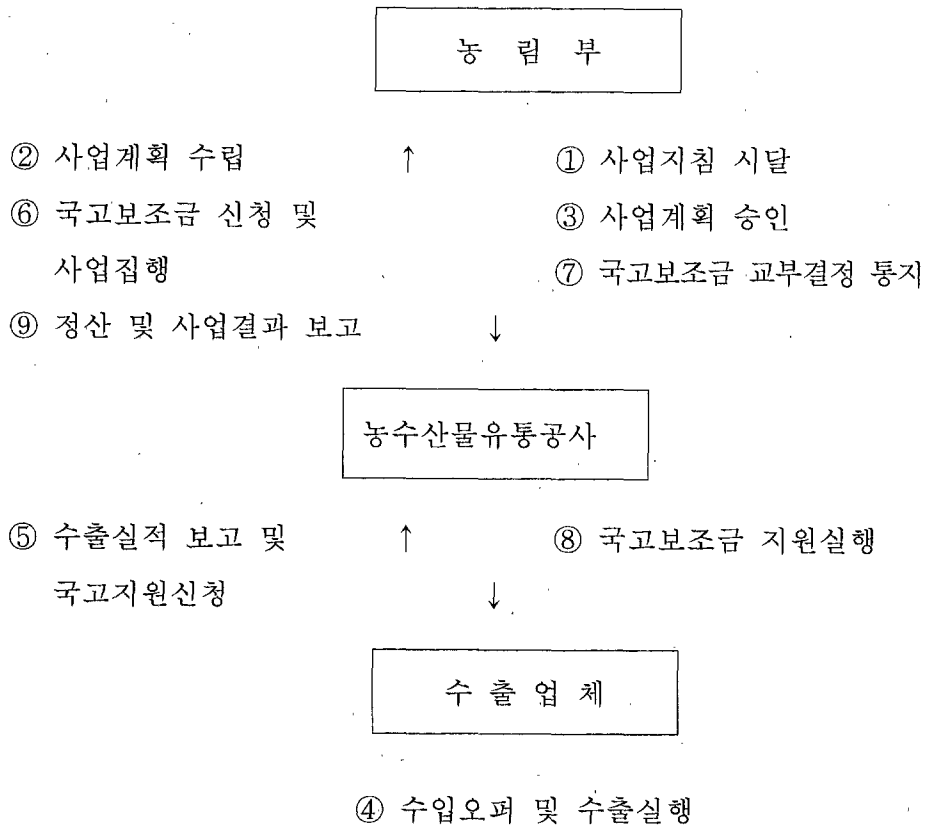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품산업과(504-9417), 채소특작과(504-9422), 과수화훼과(504-9425), 축산물유통과(504-9436)
-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개발처 수출개발 1팀(798~8591), 수출개발 2팀(796~4044)

다. 사업시행체계



라. 사업시행 :

- (1)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200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0.12월까지 농림부에 제출
- (2) 사업추진 : 2001. 1. 1~ 2001.12.31
- (3) 사업정산실적 보고 [연 2회]
 - 상반기 정산실적 보고 : 7. 15 까지
 - 최종 정산실적 보고 : 익년 1. 30 까지

<행정사항>

가. 보 고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및 평가분석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상반기 보고 : 7. 15까지
 - 최종 보고 : 익년 1. 30까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기에 보고

6. 200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등 기타사항 :

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류별 세부사업시행계획에 의함

I.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박철수, 행정 사무관 김홍우)입니다.

1. 목 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농업기반 구축함과 함께 신규 수출시장개척 및 다변화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진흥 여건 조성
- 농산물 수출업체의 대외수출경쟁력 제고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 기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 수출축진을 위하여 해외농업 박람회 및 특별관측전에 참가하는 수출업체에게 전시장 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등을 지원
- 농산물 수출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 지원, 수출대상국의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상품개발 지원, 농산물 수출컨설팅을 통해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대책 강구
- 수출대상국의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상품 구매상담알선, 수출국에 한국농산물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업체의 일본시장 마케팅활동 지원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수출확대 기반구축
-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시장 심층조사와 무역정보 등 필수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전파 및 인터넷 무역거래알선 시스템 구축으로 시장개척활동 지원

3. 근거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 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국제 농업 박람회	박람회 참가 및 특판전 개최	95회	25	24	25	90
	계	13,259	3,796	3,725	4,098	14,100
	보 조 자 답	9,611 3,648	3,796 -	3,725 -	4,098 -	14,100 -
수출 활성 화 사 업	포장디자인 개발	234품목	72	68	68	270
	현지화적응상품개발	29품목	20	20	26	95
	채소류, 김치판촉지원	77,260톤	-	-	-	-
화훼판촉지원	2,317톤	-	-	-	-	
농산물 수출컨설팅	-회	-	57	60	180	
계	17,416	1,033	1,273	986	5,260	
보 조 자 부 답	9,861 7,555	777 256	986 287	986 -	5,260 -	
대형 유통 업체 직거 래체 제구 축	우수 바이어초청	1회	5	3	4	13
	해외상설매장설치	-개소	2	3	4	22
	시장개척단 파견	-회	4	2	4	-
현지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회	-	-	4	-	
계	33	840	1,150	1,150	6,800	
보 조 자 부 답	33 -	840 -	1,150 -	1,150 -	6,800 -	
수출 홍보 사 업	한국농산물 해외홍보	10종	3	5	8	15
	한국식문화 홍보	11종	8	4	5	12
	계	3,421	1,994	1,870	1,998	10,150
보 조 자 부 답	2,845 576	1,994 -	1,780 90	1,998 -	10,150 -	
해외 시장 정보 조사	심층조사	100품목	100	100	정보조사	정보조사
	DB 구축	31개	9	10	유지관리	유지관리
	인터넷 거래알선시스템 구축	-식	-	-	1	운용
계	3,093	817	802	1,116	5,560	
보 조 자 부 답	2,476 617	817 -	802 -	1,116 -	5,560 -	
합 계	계	37,222	8,480	8,820	9,348	41,870
	보 조 자 부 답	24,826 12,396	8,224 256	8,443 377	9,348 -	41,870 -

5. 2000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국제 농업박람회 참가

< 사업 개요 >

(1)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농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나) 지원기준 : 박람회 참가비용 및 수출지원(단, 참가업체 전시물품 통관, 운송비용 등은 참가업체 부담)

(2)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5회	4,098	4,098	4,098	-	-	-
가. 박람회	17	3,536	3,536	3,536	-	-	-
베를린 농업박람회	1	163	163	163	-	-	-
캘리포니아 농기계	1	89	89	89	-	-	-
모스크바 식품박람회	1	150	150	150	-	-	-
동경 식품박람회	1	950	950	950	-	-	-
서울 식품전시회	1	197	197	197	-	-	-
시카고 식품박람회	1	198	198	198	-	-	-
타이페이 식품박람회	1	138	138	138	-	-	-
상해 식품박람회	1	151	151	151	-	-	-
홍콩 식품박람회	1	332	332	332	-	-	-
시드니 식품박람회	1	110	110	110	-	-	-
리오 식품박람회	1	155	155	155	-	-	-
VIV ASIA 2001	1	53	53	53	-	-	-
홍콩 식품전시회	1	163	163	163	-	-	-
오사카 식품박람회	1	334	334	334	-	-	-
퀵론 식품박람회	1	203	203	203	-	-	-
미국 신선농산물박람회	1	87	87	87	-	-	-
암스텔담 원예농자재박람회	1	63	63	63	-	-	-
나. 특별관측행사	8	562	562	562	-	-	-
싱가포르 특관전	1	54	54	54	-	-	-
삿포로 특관전	1	80	80	80	-	-	-
뉴욕 식품쇼	1	81	81	81	-	-	-
뉴욕 추석맞이 특관전	1	52	52	52	-	-	-
지자체연계 특관전	1	61	61	61	-	-	-
샌다이 특관전	1	82	82	82	-	-	-
나고야 특관전	1	82	82	82	-	-	-
쿠마모토 특관전	1	70	70	70	-	-	-

* 박람회 참가계획 및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7 - 4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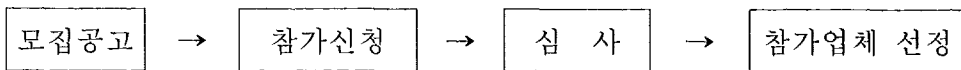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02 - 797 - 4022)

(3)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유망 품목으로 판단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제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 농산물 및 농기자재를 생산, 수출하는 농업인, 업체 및 관련 협회, 조합, 단체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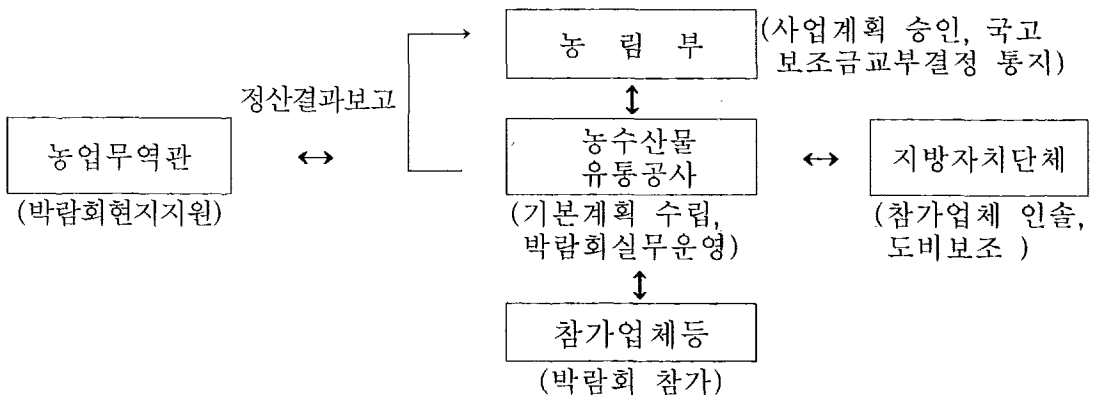


○ 선정방법 및 기준

- 기일내 참가신청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참가업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과거 수출실적, 기존 박람회 참가 여부, 해당 전시품의 박람회 개최 지역 진출 가능성여부 등을 종합평가
- 해당지역에의 수출가능성, 전시품의 현지어 표기, 포장디자인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등 검토

(4) 사업 시행

○ 사업체계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국제박람회 참가 및 특별관측행사 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년도 참가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정
 -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 내용
 - 사업시행자가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기본 장치 후 업체별로 전시부스 제공
 - 종합 홍보 팜프렛 제작, 통역, 관측물 제작, 해외광고, 수출상담, 박람회장 총괄 관리 등 실시
 - 전시품 운송업무 지원 (선적, 통관 등)
 - 현지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
 - 지역별 우수 바이어 포상

(5)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사업비 집행내역이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보조금 교부 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정, 확인

< 행정 사항 >

(1) 사후관리

- 국제 박람회 종합 평가 실시 (4/4분기)
 -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박람회에 반영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
- 참가업체별 전담제 운영으로 TOTAL 서비스 실시
 - 수출정보, 자금, 수출절차 등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처
 - 수출계약 체결업체에 대하여 수출이행 지원

(2) 기타 사항

- 매 박람회 개최 후 결과 분석 및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나. 수출 활성화 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 >

- 수출농산물의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농산제품에 대한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규모 : 68품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70%, 업체 자부담 30%
 - 지원한도 : 포장디자인 3,500천원/품목, 용기디자인 21,000천원/품목

< 포장디자인 개발 사례집 발간 >

- 수록내용
 - 해외 우수 포장·용기디자인 사진 및 경향
 - 2001 신규 개발 포장·용기디자인 사진 및 사례
- 제작부수 : 2,000부
- 배포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나)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 수출상품의 현지화에 필요한 개발사업비 지원
 - 상품개발비, 마켓테스트비, 시장조사비, 광고·홍보비 등 수출상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내 농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한식연, 농촌진흥청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 지원규모 : 26품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업체 자부담 20%

다) 농산물 수출컨설팅

- 수출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 생산, 운송, 포장, 검역, 통관, 홍보, 시장개척 등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컨설팅과 전문가 초빙 지도교육 실시
- 지원내용 : 사업시행기관의 컨설팅 요원 출장비, 분야별 외부전문가 초청비, 교재 및 사례집 발간·배포 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2)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986	986	986	-	-	-
○ 포장디자인 개발		397	397	397	-	-	-
- 디자인 개발지원	68품목	382	382	382	-	-	-
· 포장디자인	60품목	210	210	210	-	-	-
· 용기디자인	8품목	168	168	168	-	-	-
· 업체모집공고	2회	3	3	3	-	-	-
- 사례집 발간·배포	2,000부	16	16	16	-	-	-
○ 현지화적용 상품개발	26품목	500	500	500	-	-	-
○ 농산물 수출컨설팅	60회	89	89	89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6 - 4044)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98)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02 - 790 - 6065)

(3)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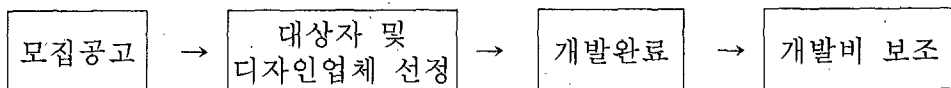
가)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의 생산, 수출업체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신용장 또는 계약서 근거)이 있는 업체

* 디자인 업체 : 포장디자인 기획업체로서 산업디자인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농림부 지정 20개 수출유망품목 및 관련 제품을 우선 선정하되 수출 실적이나 해외시장개척노력이 전무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일반 수출품목은 수출실적(70%)과 해외시장 개척도(30%)를 기준으로 산정한 득점순에 따라 선정
- 포장디자인 개발 신청 품목중 포장형태가 유사한 품목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 품목수 조정

나)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출하거나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신청접수 : 중앙일간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정기간행물을 통한 공고에 의해 사업신청 접수
- 지원품목 선정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품목 및 해당업체의 수출실적(계획), 수출확대가능성, 해외시장 개척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및 위원 11인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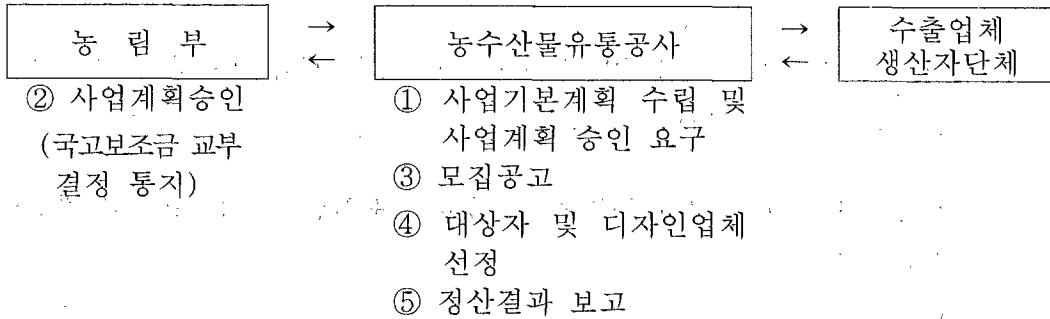
다) 농산물 수출컨설팅

- 수출컨설팅 희망자의 신청에 의거 선정 (FAX,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관내 수출업체 또는 품목별 전문단지와 협의후 선정
- 관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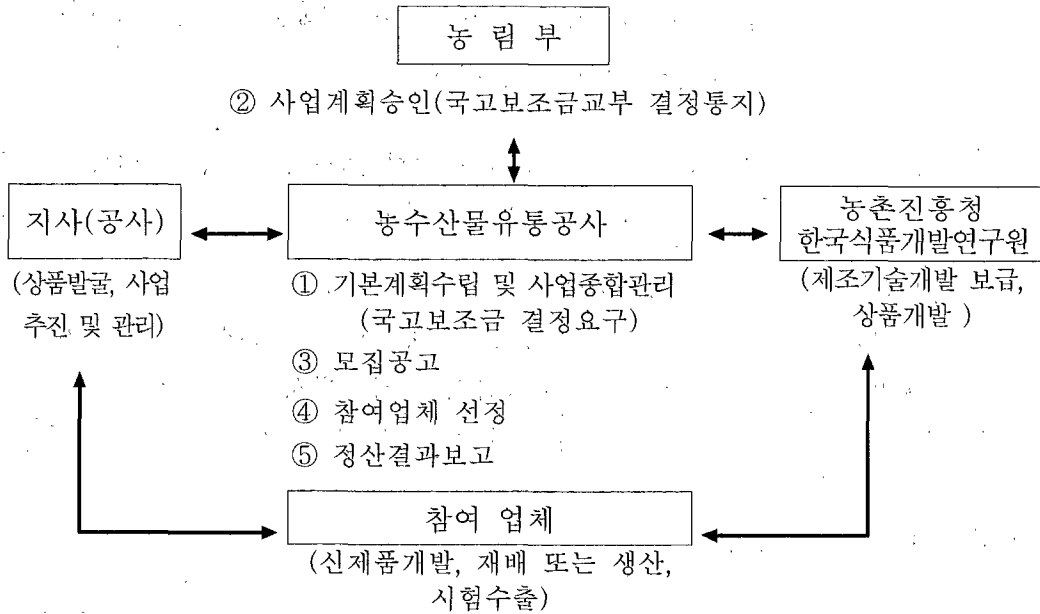
(4) 사업시행

○ 사업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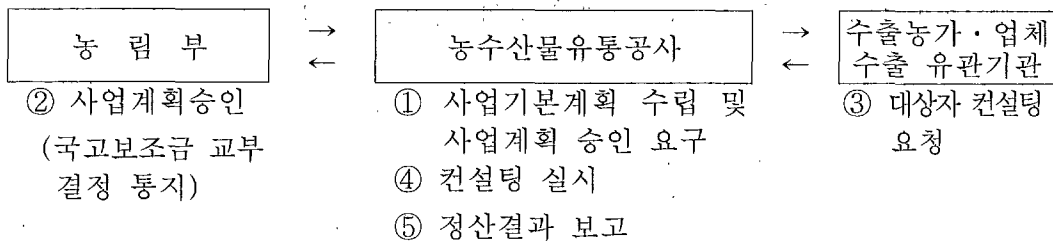
<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 현지화적응 상품개발 >



< 농산물 수출컨설팅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지점검 및 서면조사 병행)
 - 포장디자인 개발품 활용실태 조사 및 사업평가
 - 현지화 적응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 농산물 수출컨설팅 추진상황 등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다.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체제 구축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우수바이어 초청

- 사업내용 : 해외 대형유통업체, 유명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우리 상품의 구매상담 알선 지원
- 초청대상 : 우리농산물의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또는 책임자
- 초청규모 : 4회 (예산집행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규모변경 가능)
- 지원내용 : 국내체류비, 왕복항공료, 구매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100%

나)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 사업내용 :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출목표 시장에 우수한 한국 농산물의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지원
- 설치지역 : 일본 3개소, 싱가포르 1개소 (설치지역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매장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국고 100%

다) 시장개척단 파견

- 사업내용 : 우리 농산물 주요 수출시장에 우수 수출업체를 파견하여 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 및 유력 수입상 발굴 지원
- 파견지역 : 일본, 구주, 아주 등
- 파견기간 : 지역별 10일 내외
- 파견횟수 : 4회
- 지원내용 : 참가업체 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상품홍보 팸플렛 등
- 지원기준 : 국고 100%

라) 현지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 사업내용 : 해외유력시장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한국농산물의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수출업체 및 한국 농산식품을 수입하여 특판 행사를 추진하는 현지 유통업체에 행사비 지원
- 행사횟수 : 4회
- 지원내용 : 행사장사용료, 홍보비, 현지운송비 등 행사 체비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100%
 - 판촉행사(3회) : 행사비의 50% 이내 국고보조 (업체 자부담 50%)
 - 한국특판행사 홍보지원(1회) : 행사비의 100% 이내 국고보조

(2)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150	1,150	1,150	-	-	-
○ 우수바이어초청	4회	200	200	200	-	-	-
○ 상설매장 설치	4개소	650	650	650	-	-	-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4회	200	200	200	-	-	-
○ 현지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4회	100	100	10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8 - 5031)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98)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02 - 790 - 6065)

(3) 대상자 선정

가) 우수바이어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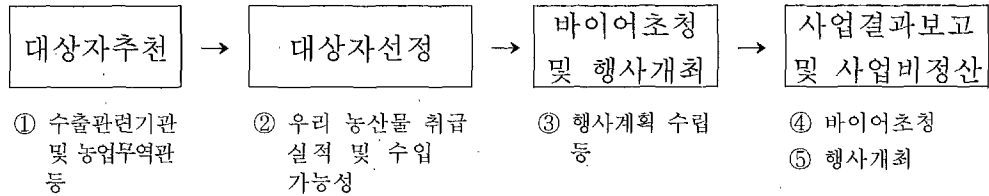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등 우리 농산물 주수출국 및 수출가능지역의 우수바이어,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또는 책임자

○ 선정기준

- 한국과의 거래실적 및 향후 거래 전망과 한국의 농산식품의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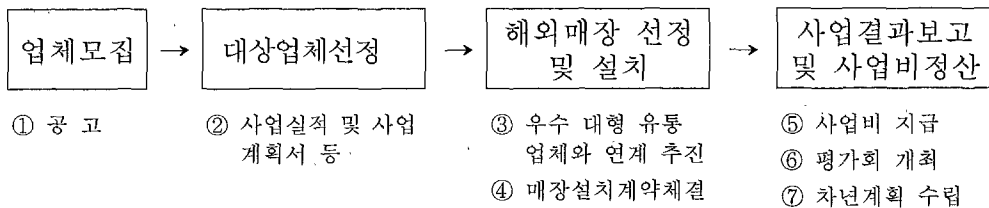


나) 해외상설매장 설치

○ 지원대상

- 우리 농산물을 일본 및 미주지역에 수출 또는 수입하는 업체중 적격업체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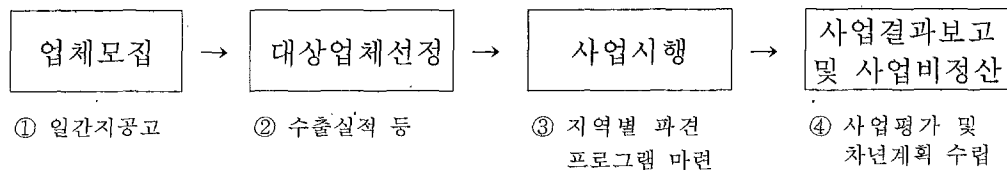


다) 시장개척단 파견

○ 지원대상

- 우수 농산물 수출업체, 단체 등 수출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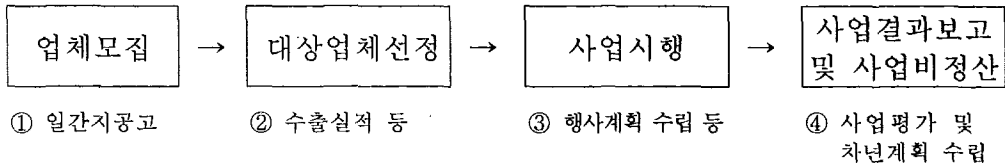
○ 사업추진절차



라) 현지 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유력시장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한국농산물의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수출업체 및 한국 농산식품을 수입하여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현지 유통업체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사업결과 종합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 대형유통업체 및 현지판매 실적 및 운영실태조사
 - 시장개척단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라. 수출홍보사업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가) 농산물 수출확대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농산물 홍보

- 옥외광고판 설치
 - 대상국가 : 2개국(일본, 홍콩)
 - 광고매체 : 멀티비전, 빌보드
 - 주요내용 : 김치, 인삼, 돈육, 신선농산물 등 주요 수출품목 위주로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국에 광고 실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전파매체 홍보
 - TV광고 : 1개지역
 - 대상지역 : 일본
 - 광고내용 : 주 수출품목인 김치 이미지 집중 광고
 - 방영기간 : 6개월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라디오광고 : 1개지역
 - 대상지역 : 일본
 - 광고내용 : 김치, 신선농산물, 화훼류 등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일본의 주요 라디오 채널을 이용하여 홍보
 - 방송기간 : 10개월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전문지광고
 - 광고횟수 : 20회
 - 광고내용 : 국내외 유력매체를 활용한 전문지 광고, 인터넷 홍보 및 주요 수출유망품목 광고사진 제작 등 수출홍보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인터넷광고
 - 광고매체 : 1개 매체
 - 광고내용 : 농산물 거래 및 알선 사이트인 Agrottrade 인터넷광고 실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우수품목 홍보지원
 - 대상품목 : 정부지정 20대 수출유망품목 및 가공식품
 - 지원내용 : 해외시장 홍보효과 거양 및 수출확대를 위해 광범위한 이미지 홍보와 병행하여 해외시장에 직접 광고하는 자사브랜드 홍보 지원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나) 한국식문화 홍보

- 김치요리교실 및 순회전시홍보
 - 김치 주 수입국인 일본 현지에서 김치담그기 등 김치요리교실을 개최하고 유통업체 등지를 순회하면서 전시판매행사 개최
- 김치인터넷 광고
 - 김치의 효능, 역사 등을 수록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명 외국사이트와 연결하는 배너광고 실시
 - 광고매체 : 1개 매체
- 이벤트 홍보 : 동경, 오사카 등 대도시와 권역별 주요 거점도시로 구분하여 판매를 포함한 시식, 홍보, 상담 등 종합적인 해외 이벤트성 행사로 추진
- 연중홍보 : 홍보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 마스크 홍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2)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백만원)	-	1,998	1,998	1,998	-	-	-
○ 한국농산물홍보	8종	1,738	1,738	1,738	-	-	-
○ 한국식문화홍보	5종	260	260	26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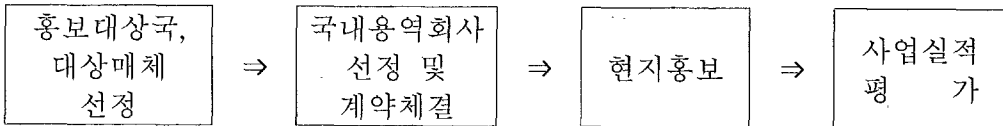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8 - 5031)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02 - 790 - 6065)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 홍보효과 분석 및 사업평가
 - 사업중간 점검 실시(홍보활동 현장을 방문해 점검 실시)
 - 사업종료시 결과보고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전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마. 해외시장정보조사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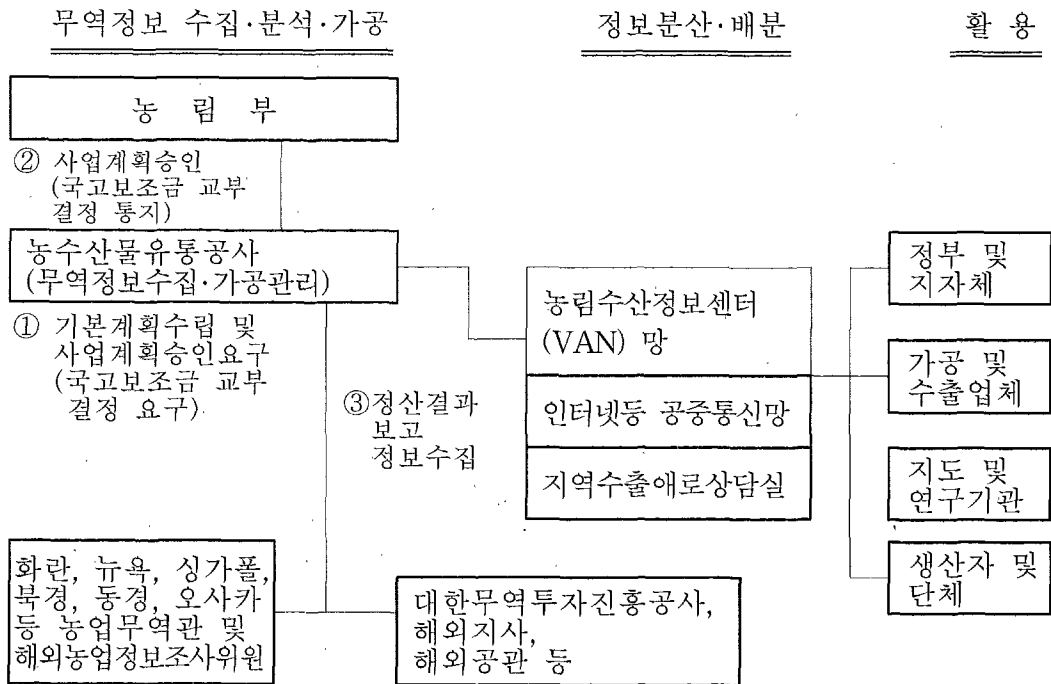
- 농산물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 및 수출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한 품목별 필수정보를 수집하는 등 심층조사
- 기 조사된 품목별 정보의 보완·갱신 및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외 심층조사
- 국내외 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품목별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생산·유통·시장상황 등 정보를 분석가공·DB화하여 전파
- 정보이용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지원 S/W 및 DB 관리
- 인터넷을 통한 한국 농산물의 홍보 및 거래 알선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2) 2001년 사업비(예산) 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백만원 1,116	1,116	1,116	-	-	-
○ 농수산물무역 정보심층조사	○ 품목별 자료 갱신및보완	316	316	316	-	-	-
○ 농수산물무역 정보DB관리	○ 50개 DB 관리	515	515	515	-	-	-
○ 인터넷 거래알선 시스템 구축	○ 영,일문 시스템 구축	285	285	285	-	-	-

< 추진체계 >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02-794-0594)
-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지원처(02 - 749 - 9522)
- (3) 사업시행
 - 사업체계도



-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자는 농업인, 수출업체,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무역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1.1월말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
 - 심층조사 :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 대상품목, 조사인원, 사전조사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등
 - D/B관리 : S/W관리의 내용, 추진시기 등
- 사업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조정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농수산물무역정보 심층조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조사결과의 자료집 발간배포 및 DB화 전파
- 농수산물무역정보 DB관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평가내용 : DB의 내용 및 범위 등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 인터넷 거래알선시스템 구축
 - Agro Trade 이용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포 등 거래알선시스템 홍보 및 프로모션 강화방안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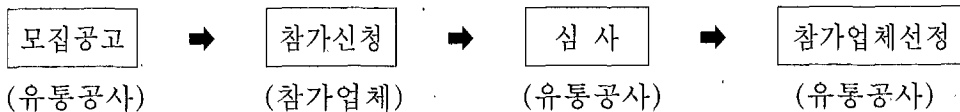
(2) 기타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 보고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국제 농산물 박람회 참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박람회사업팀(02-797-4022)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
- 대상자 선정



나. 수출활성화 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수출개발2팀(02-796-4044)
수출조성팀(02-798-5031)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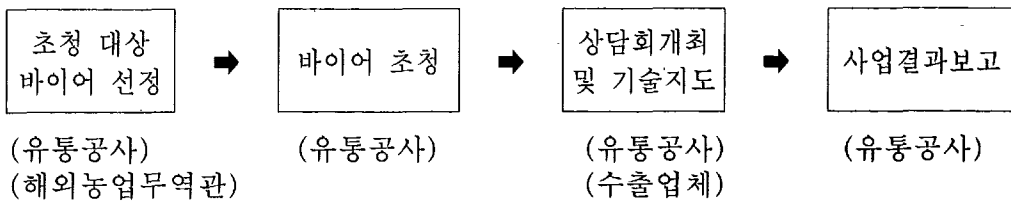
< 현지화적용 수출상품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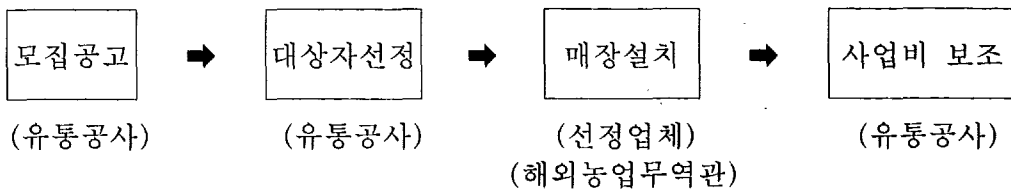
다.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체제 구축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상품개발1팀(02-798-8591)
일본팀 (02-794-4707)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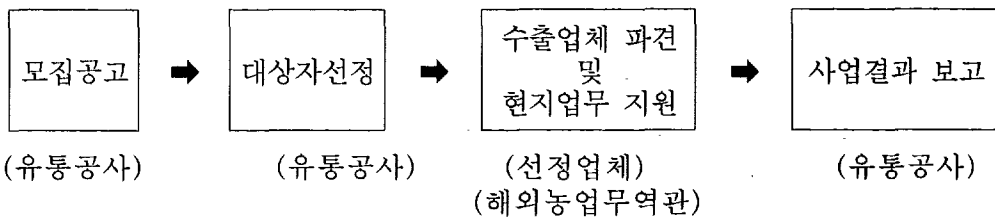
< 우수바이어 초청 및 기술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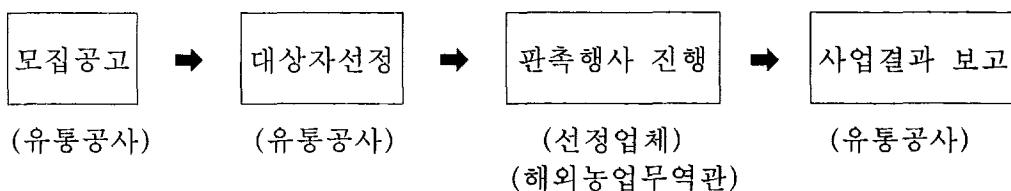
< 상설매장 설치 지원 >



< 시장개척단 파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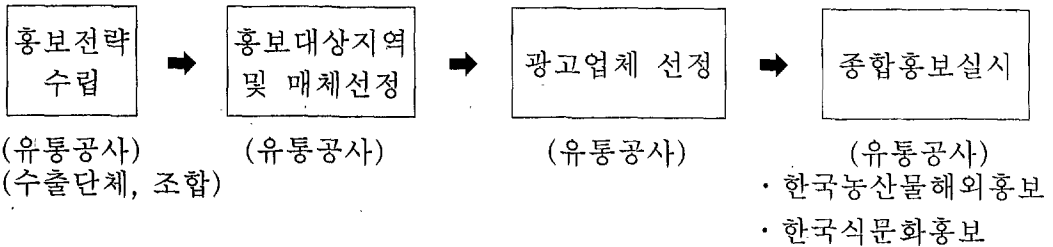
< 현지 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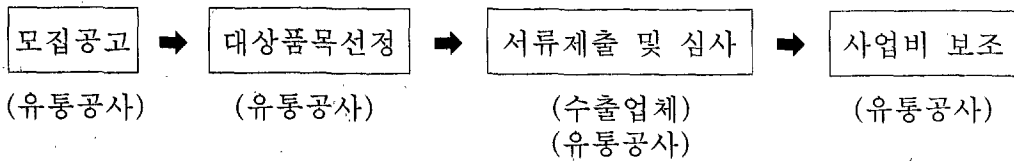
라. 수출홍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조정팀(02-798-5031)

< 농산물 및 식문화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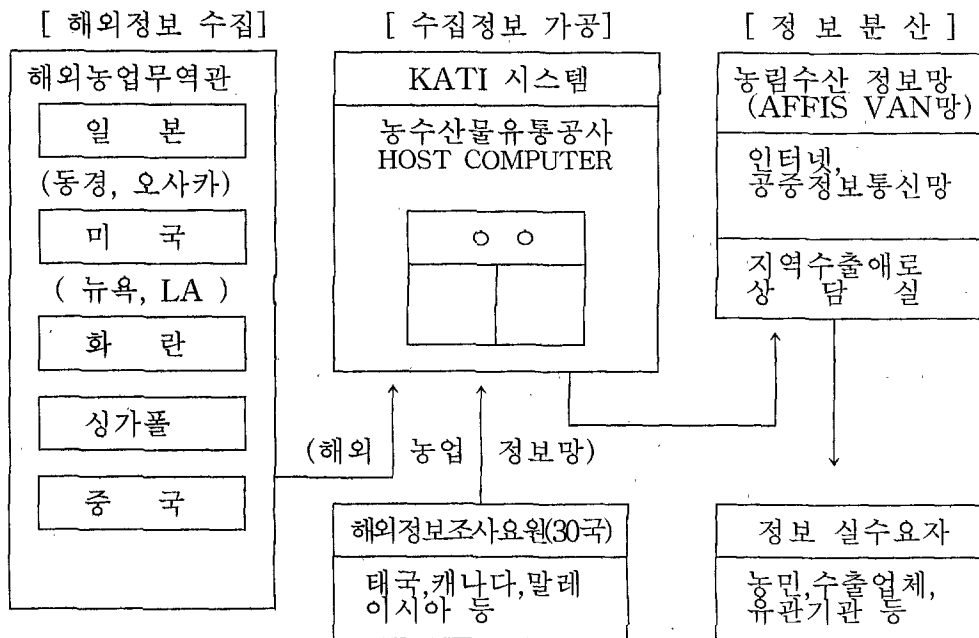


< 우수품목 홍보지원 >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정보지원처) : 02-794-0594



II.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박철수, 행정사무관 김홍우)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수출지원 기능을 한 곳에 갖춘 수출종합 지원시설로서 농수산물 무역의 중심이 될 수출거점기지 건설로,
-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 수출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 촉진 및 수출농업 육성

2. 추진방향

- 전시장, 회의장, 무역정보센터 등의 수출지원시설과 기능을 갖추어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종합수출거점 역할 수행
 - 농수산물관련 국제박람회, 전문전시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및 각종 이벤트 및 회의 개최로 우리 농산물 판촉 및 교역의 장으로 활용
 - 해외 바이어, 농어민,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식품의 생산, 유통, 무역정보 등에 대한 종합지원
 - 해외시장 개척, 첨단기술농업 습득, 바이어 유치, 수출상담, 알선 등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종합마케팅 지원
 - 국제교류 협력, 선진기술 및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수출활로 개척
- 수출지원시설의 일원화, 종합화로 생산에서, 수출단계까지 전과정을 일괄 서비스 제공
 - 수출정보 및 수출컨설팅 - 수출자금지원 - 수출상담·알선 - 바이어연결 - 해외마케팅 및 홍보 - 검역·통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수출 One-Stop 서비스 제공
- 2002년 10월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
 - 농수산물 수출종합지원기지로써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시설 및 기능 확보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98	'99	2000	2001 (예산안)	2002- 2004	
사업량	17,683평	설계도서 작성 및 건설공사 추진 (1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2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3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4차년도)	건설공사 마무리 및 준공	
사 업 비	계	77,351	8,226	16,058	14,976	15,236	22,855
	국고보조	26,838	5,467	6,652	4,682	4,015	6,022
	(설계·감리비)	(5,189)	(3,691)	(406)	(359)	(293)	(440)
	(건설공사비등)	(21,649)	(1,776)	(6,246)	(4,323)	(3,722)	(5,582)
	농안기금융자	28,865	1,776	6,261	5,846	5,993	8,989
	(설계·감리비)	(-)	(-)	(-)	(-)	(-)	(-)
	(건설공사비등)	(28,865)	(1,776)	(6,261)	(5,846)	(5,993)	(8,989)
	자부담	21,648	983	3,145	4,448	5,228	7,844
	(설계·감리비)	(-)	(-)	(-)	(-)	(-)	(-)
	(건설공사비등)	(21,648)	(983)	(3,145)	(4,448)	(5,228)	(7,844)

- 주) 1. 총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11층→15층) 및 총사업비 조정('00.6)에 따른 금액임
 2. '99년까지는 실집행 편성이며, 2000년은 예산현액으로 '99이월액포함 편성
 - 2001년 이후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비 지원
- 지원기관(사업수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조건 및 지원형태
 - 건설공사비 : 정률지원(국고보조 30%, 농안융자 40%, 자부담 30%)
 - 설계·감리비 : 정률지원(국고보조 100%)
- 건설내용
 - 사업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화훼공판장 부지 내)
 - 건축규모 : 부지 5,690평, 건물 17,683평
 - 주요시설 : 전시장, 회의장, 무역정보센터, 전시·홍보관, 수출상사관 등
 - 사업기간 : 1996~2002년
- 주요시설별 기능
 - 전시장 : 국제박람회, 전문전시회, 품평회 및 이벤트 행사 등 유치·개최
 - 회의장 :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강연회 등 유치·개최
 - 무역정보센터 : 국내외 농수산물관련 무역정보 수집 및 분산
 - 전시·홍보관 : 농수산 정책홍보관 및 우수농산물 전시관 운영
 - 수출상사관 : 농수산 관련기관/단체 및 수출업체 입주, 수출상담 등 수출종합서비스 지원
 - 편의시설 : 은행, 여행사, 우체국, 판매시설 및 외식시설 등
 - 부대시설 : 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농특회계)	용 자 (농안기금)		
계	17,683평	15,236	10,008	4,015	5,993	-	5,228
설계·감리비 건 설 비 등		293 14,943	293 9,715	293 3,722	- 5,993	- -	- 5,228

* 농안기금융자 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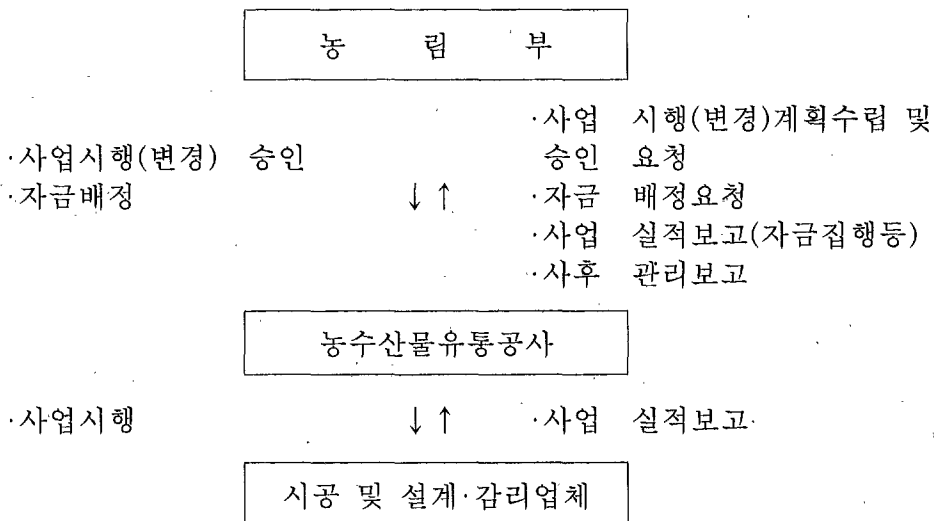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다.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 절차도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 자금집행절차는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집행에관한법률』에 의하며, 융자금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

마. 사업정산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검정기관은 연도말에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등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를 심사
- 사업별 보조금은 당해사업 지원조건에 소정 보조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은 교부액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수입액을 확인
-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예치 이자는 정부 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회계예규 2200.01-1151, '93.5.20)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과 함께 국고에 반납 조치
- 공사실형은 승인된 설계도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감리조서등에 따라 검정하며 실형상태가 불합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
- 공사실형을 검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부여한 지시조건 이행 여부를 대조하여 검정
- 공사실형 검정에 있어서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이전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과 전시 등 운영기법 습득으로 센터 준공이후 성공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
 - 센터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영 효율성 향상
- 센터 건립 후 운영·관리방안 강구
 - 특화된 농업전문 무역전시장이 되도록 각국 박람회 조직과 협력하여 바이어 유치 등 사업효과 극대화
 - 국내외 시장 및 물류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종합 『무역 데이터뱅크』로 운영
 - 농수산물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등 개최로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과 농업발전 촉진
 - 수출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정보 및 경영컨설팅 제공(농수산물 유통 및 무역에 관한 정책홍보 및 전문교육실시)
-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농수산물무역 진흥센터	2002	2042	농림부 장관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준용

나. 보고·기타

- 매 분기마다 건설 추진상황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 분기 익월 15일 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III.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박철수, 행정 사무관 이낙휘) 입니다.

1. 목 적

- 공동 선별·포장, 예냉·저온저장, 운송, 검역, 통관 등의 일관 수출체계 구축으로 수출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제고를 통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극대화
- 내륙, 공항, 항만에 연차적으로 수출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인 농산물 수출물류 및 품질유지시스템 구축

2. 추진방향

- 수출농산물 주생산지역에 설치하여 권역내 생산되는 수출농산물을 수출물류센터 를 통해 일관처리 후 선적 수출
- 채소류, 절화류 수출물량의 63%를 차지하는 주산지인 경남, 전남지역에 우선수출물류 센터를 시범설치·운영하고 이의 운영결과와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공항·항만에는 수출품 통관, 선적, 탑재기능을 위주로 하고 필요시 일부 산 지물류센터 기능을 수행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농산물의 수출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00까지	'01	'01이후
사업량(설치개소수)		2	
사업비(백만원)	-	3,171	8,989
-국고	-	2,220	6,292
-지방비	-	951	2,697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현재 미확정 상태로 기본계획 확정(2000년 12월)후 기재

2) 자금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경상남도)
- 시설운영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3) 지원기준

- 총사업비의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4) 지원조건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기본계획 및 지침 준수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평가협조 및 평가결과 수용
- 기타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준수

5) 지원범위

가) 부지매입비

- 선별·포장실, 보관창고, 집배송장등 설치용 부지매입비등

나) 시설비

- 설계·감리 및 시설비등

다) 물류설비

- 지원대상 : 수출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구 분	종 류	기 능
선별·포장기	오이, 가지, 토마토, 파프리카, 사과, 배, 단감등	수출규격품 선별·포장
소포장실	랩포장기등	바이어가 요구하는 수출 규격품 생산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수출품의 신선도유지
물류기계	운송트럭, 지게차, 팔렛트, 팔렛트랩 핑기등	저온유통 및 집배송의 기계화

※ 다만 업무용PC등 업무지원 장비는 제외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02-503-7298)
-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경상남도)

3) 사업시행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수출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수출물류센터 Task Force 심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내역, 부지매입계획 및 건설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단 건축설계가 늦어질 경우 늦어지는 사유와 건설비의 추정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건축설계 완료후 건설비를 포함한 사업실행계획서(별지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을 검토하여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이때 당해연도 지원계획도 함께 통보.
-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별지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비 연도말 정산

- 지방자치단체장(전남·경남도지사)은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도말 정산을 한후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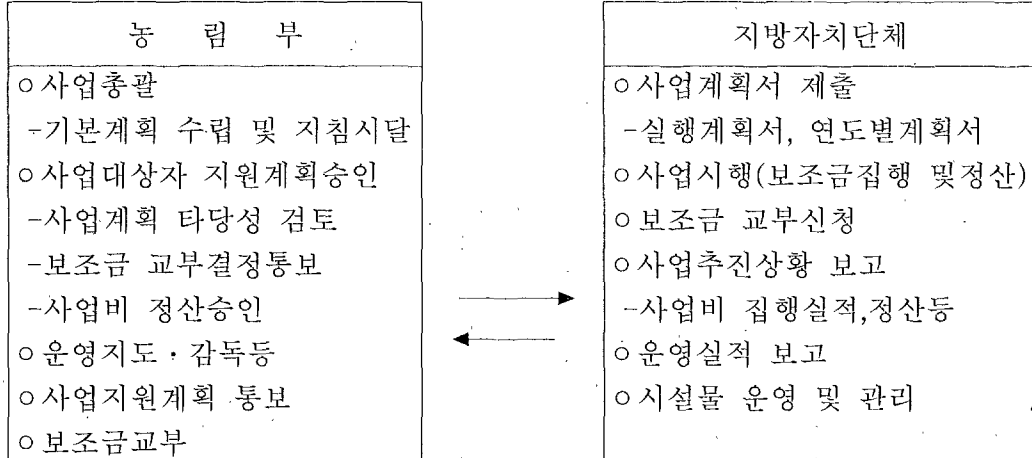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는 수출물류센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라) 사업비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제공 또는 매입시 부지가액이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에게 협의하고 부지매입 계약체결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지원신청
- 건설비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보조금의 집행상황(교부결정,검정,정산등)을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

4) 사업시행체계



다.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책임자는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 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시정명령 조치등을 할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건설 - 건 물 - 물류설비	개장 정부물품 내 용 연 수 준용	폐쇄	○ 매각,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등을 할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의 승 인 을 받아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관리에 관한법률 관련 조항 준용

2) 보고·기타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주체는 본사업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전화 503-7278, 7298)로 문의

다. 물류설비

(단위:백만원)

구 분	품 명	단 가	갯 수	구입비	비고(기능)
선별·포장기					
운송트럭					
지게차					
파렛트					
기 타					
계					

라. 사업추진 일정 :

마.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수집 및 수출방법, 콘소시움의 경우 운영방안 등 포함

5. 기대효과

- 수출물류센터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수출물류 개선과제와 개선방안

6. 연차별 수지전망 : 편익비용 분석(별지제2호서식)

- ※ 첨부서류 : 1. 수출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
- 2.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3. 운영계획서

편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1차년도	2차년도	---- 9차년도	합 계
비용 (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각종기계구입비						
가변비용	직접노무비	화재보험료					
		전속인건비					
합계(가)	원료구입비	기타					
		소계					
편익 (B)	수탁사업	전기료					
		수도료					
합계(나)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					
B/C	나 / 가	소계					
		현재가치 (가)	(가)	$가 \times 1+r$	$가 \times (1+r)^2$	$(가) \times (1+r)^9$	TC(총비용)
합계(나)	현재가치 (나)	선별, 포장 등					
		각종수수료					
합계(나)	저장	기타					
		소계					
합계(나)	현재가치 (나)	소계	(나)	$나 \times 1+r$	$나 \times (1+r)^2$	$(가) \times (1+r)^9$	TB(총편익)
		현재가치 (나)	(나)	$나 \times 1+r$	$나 \times (1+r)^2$	$(가) \times (1+r)^9$	TB(총편익)
B/C	나 / 가					TB/TC	

<작성시 유의사항>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계상하고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기재
- 건물구입비(건축비)는 국고를 제외한 자부담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수탁사업

- 선별·포장등 수탁사업으로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은 0.06으로 계산

○ 기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 B/C : TB
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사업실행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

2.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운영주체 :
- 기대효과 :

3. 주요시설규모

- 부 지 :
- 건 물
 - 저온저장고 :
 - 예냉고 :
 - 선별·포장실 :
 - 소포장실 :
 - 자재보관실 :
 - 집배송장 :
 - 주차장 :
 - 컨테이너야드장 :
 - 사무실등 기타 지원시설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	지방비	기 타
합 계				
1차 년도				
2차 년도				

5. 항목별 사업비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물 량	사업단가	사업비	비 고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6.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단위:백만원)

지 목	지 번	면 적	매 입 비	소 유 자
전				
.				
답				
.				
대지				
.				
임야				
.				
합 계				

나. 건설비

(단위:백만원)

사업내역	물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세부내역				
-세부내역				
-세부내역				
○전기공사				
-세부내역				
○통신공사				
-세부내역				
○기계설비공사				
-세부내역				
○소방공사				
-세부내역				
○자재대금				
-세부내역				
-세부내역				
○기 타				
-세부내역				
합 계				

다. 물류장비

(단위:백만원)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기타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년도 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적

○

2. 사업개요

○

3.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1	2002이후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합 계			

4. 항목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1	2002이후
○부지매입비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차재대금			
○물류장비			
○기 타			
합 계			

5. 세부사업내역

가. 부지매입비

○ 총괄

지목	계			2000년			2001이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필지수	면적	사업비
계 담 전 · · ·									

○ 당해연도 부지매입대상 필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매입비	토지소유자

나. 건설비(당해연도)

사업내역	물량	단가	사업비	비고
○설계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자재대금				
○기타 사업비				
합계				

다. 물류장비(당해연도)

장 비 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라. 월별·공종별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명 :
- 사업기간 :

확인자 : 인
 감리자 : 인
 시공회사대표: 인
 작성자 : 인

33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박철수, 사무관 이낙휘)입니다.

1. 목 적

-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우수농산물을 수매, 가공 및 수출 등 우수농산물 유통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기능을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간업체의 우수농산물 수매·수출을 지원하고 계약생산 체제를 적극 유도 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확보
- 우수농산물의 포장개선, 규격화와 물류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
- 저장·가공 및 부대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우수농산물 규격품 생산 확대와 고품질화를 적극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57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92~'98	'99	2000	2001
합 계		868,092	307,531	315,486	276,367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	용 자	819,728	281,052	293,486	260,755
우수농수산물시설 현대화지원	"	48,364	26,479	22,000	15,612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자금

(1) 구매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규모(지정품목) : 1,173억원

2) 지원조건

- 대출 금리 : 연 5%(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업체 4.0%, 우수업체 4.5%)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용 도 : 각 품목별 국내 농산물 구매비
- 대출한도
 - 최고한도 : 품목별 지원규모의 30%이내
 - 최저한도 : 품목특성에 따라 최소 적재물량(1컨테이너) 해당액으로 하되 50백만원 이상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분 류	세부대상품목	지원액(P)	지원시기	대출기간	비고
채 소 류	소 계	35,475			
	(오이, 토마토등 일반채소)	(19,800)	4월	12개월	
	(김치원료)	(15,675)	4월	"	
과 실 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실류 전품목	17,500	6~10월	"	
약 용 류	시호, 길경, 산수유 등 생약 전품목	1,300	자금요청시 (품목특성감안 조정가능)	"	
버 섯 류	송이,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 전품목	500	5월	"	
화 훼 류	질화, 분화, 선인장 등 화훼류 전품목	2,200	자금요청시 (품목특성감안 조정가능)	"	
인 삼 류	백삼, 홍삼, 뿌리삼 또는 그 가공제품 (분말, 엑기스 등)	15,000	7월	"	
임 산 물	소 계	44,350			
	(밤)	(30,000)	7월	"	
	(표고)	(5,350)	3월	"	
	(송이)	(9,000)	7월	"	
채소종자	무, 배추종자 등 종자류 전품목	980	9월	"	
합 계		117,305			

※ 품목별 지원액은 2000년도 품목별 수출액이 최종 집계된 후에 '99년도 실적 대비 증감여부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여 별도 확정 (수출증가품목 : 10% 범위내에서 증액, 수출감소품목 : 10%범위내에서 감액)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3-6597)

(라)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수매지원은 해당품목)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우수농수산물을 저장·가공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2) 선정기준

- 업체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구비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0.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소)
- 2000. 12월 중순 ~ 2001. 1월 중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1. 3월말한 (전품목 일괄선정 및 배정)

4) 업체별 자금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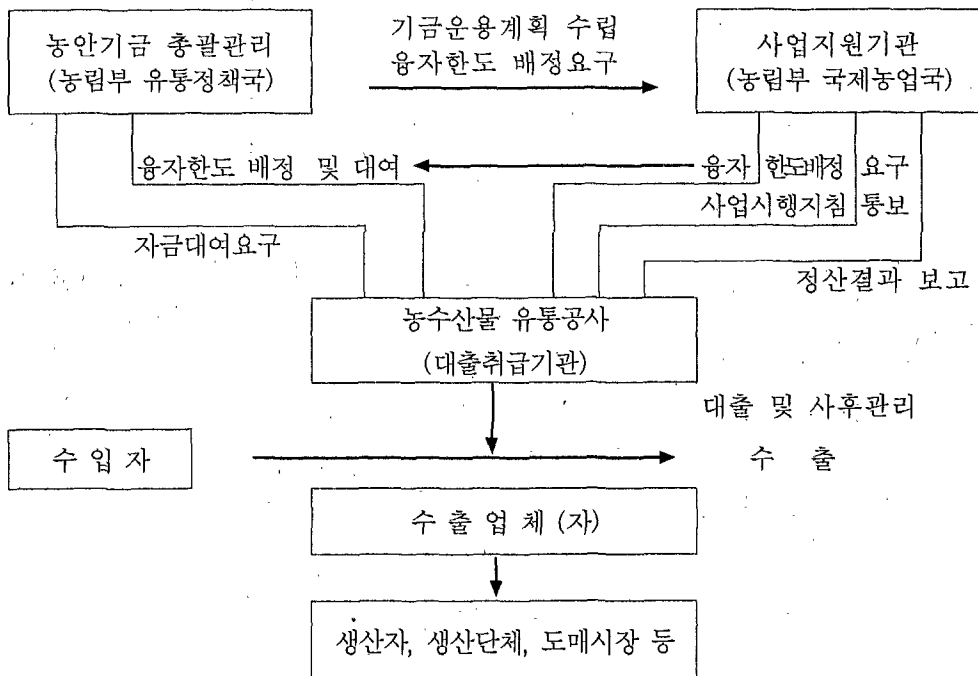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수출실적 70%, 수출추진노력 30%를 적용하고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평점 산출시 우대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항의 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된 금액은 2000년도 업체별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하여 조정 배정할 수 있다.
 - 2000년도 수출실적이 '99년 대비 100%이상인 업체 : 10% 해당액 이내 증액
 - 2000년도 수출실적이 '99년 대비 90%미만인 업체 : 10% 해당액 이내 감액

5)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본 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후관리방법 : 업체별 사후관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사업의무

- 수매의무액 : 대출액의 110% 이상
- 수출의무액 : [대출금 + (대출금 × 자부담비율)] × 50%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실적은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

○ 수매대상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한 경우
- 현지 생산대표 농가로부터 수매한 경우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한 경우
- 우수농산물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에 한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수집상 포함)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 사업정산

- 사업시행자는 품목별 자금상환 만기일 후 1개월 이내에 수매 및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부당사용 정도에 따라 당해 사업자금 대출정지 1~5년

*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50% 범위내에서 단축가능

- 법령위반 : 대출금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2년간 기금대출 중단 또는 감액가능)

- 사업의무미달

- 자부담비율 미만 수매 :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당해 사업자금 대출정지 2년

※ 다만,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정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가능

- 자부담비율 이상 수매하였으나 의무액 미만 수매 : 미이행 상당액의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수출의무 미달 : 위약금 징구

(나) 보고·기타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구매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출(2001.1.20까지)
 - 분기별 자금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익분기 10일까지)

(2) 유통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675억원

- 일반업체 : 625억원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50억원

2) 지원조건

- 대출 금리 : 연 5%(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업체 4.0%, 우수업체 4.5%)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용 도
 - 우수농수산물의 가공, 저장, 포장, 운송경비 등 부대비 및 부자재 구입비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 공급비(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 업체에 한함)
- 대출 최고한도 : 업체당 30억원 이내
 - ※ 지원한도별로 배정하되 여유자금이 발생하거나 연간 예산규모가 증액되어 추가 지원할 경우 수출업체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단, 신규지원으로 평가를 미실시한 대량생산형 가공식품업체의 경우는 예외)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7,400	67,400	-	67,450	-	-
○ 일반업체 유통지원	62,400	62,400	-	62,450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지원	5,000	5,000	-	5,000		

○ 자금지원 시기

- 수매 및 유통지원자금 동시 배정업체 : 수매지원 품목별 지원 시기
(2품목 이상 사용업체의 유통지원용자금은 각 품목별 지원시기 또는 최초 품목 지원시기에 일괄 지원 가능)
- 유통지원용자금만 배정된 업체 : 2001. 8월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3-6597)

(라)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 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우수농수산물을 저장·가공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부자재(석판, 공관 등)를 제조하여 통조림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업체(해당자급에 한함)

2) 선정기준

- 업체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구비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사업은 석판, 제판, 골판지 등 부자재 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수출업체에 공급실적이 있고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0.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소)
 - 2000. 12월 중순 ~ 2001. 1월 중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1. 3월말한
(단,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용은 2001. 5월말한)

4) 업체별 자금배정기준

- 일반업체 및 대량생산형 가공식품업체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수출실적 70%, 수출추진노력 30%를 적용하고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평점 산출시 우대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업체에 사업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 배정하되 업체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한도별로 배정하고 여유자금 발생시 지원한도 초과 가능

5)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 사업시행

- 사업시행 체계 및 사업계획 수립·변경 : 수매지원과 동일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후관리방법 : 용도별 업체별 사후관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일반업체 및 대량생산형 가공식품업체
 - 수출의무액 : 대출액의 55%이상
 - 수출실적 : 농수산물 수출실적 전체(대량생산형 가공업체는 지원가능 부류)로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
- 우수농수산물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사후관리 방법 : 비축공급실적으로 같음
 - 공급의무액 : 공급계약액의 50% 이상 공급
 - 사후관리 세부기준은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한국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 이사장은 매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제출한다.
 - 공급실적 확인방법은 공관(제관, 골판지) 공급실적 보고서, Local L/C사본 또는 영세율 매출계산서 사본 등에 의한다.
- 사업정산
 - 사업시행자는 대출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지원업체로부터 수출실적 자료 등을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부당사용 정도에 따라 당해 사업자금 대출정지 1~5년

*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50% 범위내에서 단축가능

- 법령위반 :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 기관과 협의하여 2년간 기금 대출중단 또는 감액가능)

- 사업의무미달

· 자부담비율 미만 수출(공급) :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당해 사업자금 대출정지 2년

※ 다만,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정지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가능

· 자부담비율 이상 수출(공급)하였으나 의무액 미만 수출(공급) : 위약금 징구

(나) 보고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유통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2001. 1. 20일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유망품목시장개척 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760억원

2) 지원조건

○ 대출 금리 : 연 5%

○ 대출 기간 : 12개월 이내

○ 자금운용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 자금용도

- 생산자 조직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국내 우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구매하는 자금

- 우수농수산물의 포장자재비, 운송비, 부자재구입비 등 유통사업비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기 관 ,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76,000	76,000	-	76,000	-	-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00	20,000	-	20,000	-	-
○ 농협중앙회		56,000	56,000	-	56,000	-	-

※ 농협중앙회 560억원중 60억원은 인삼사업분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사업시행자 또는 기금대출 취급기관 [사업시행자 : 농협중앙회
기금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농 협 중 앙 회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수출관련 자회사 및 회원조합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은 다음에 의한다.
 - 지원대상조합 : 우수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는 전문조합을 우선 지원한다.
 - 지원기준 : 조합당 10억원 이내

1) 지원대상자

- L/C, 수출계약서, Local L/C, 구매승인서 및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서 중 어느 하나를 제시한 유망품목 창업업체, 신규품목 개발업체, 우수 경영체 및 생산자조직 등에 우선 지원하되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도 지원가능

2) 선정기준

- 업체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구비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0.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소)
- 2001.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접수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연중 수시선정 및 배정

4) 업체별 자금배정기준

- L/C(Local L/C 및 구매승인서 포함) 제시업체(자)는 L/C금액의 80%이내, 수출계약서 제시업체(자)는 계약금액의 30%이내,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서 제시업체(자)는 공급계약금액의 50%이내에서 배정하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출최고한도 : 업체당 대출잔액 기준 연간 지원규모의 7%이내

5) 사업지원신청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및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분)

1)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2) 사후관리방법

- 사업의무
 - L/C, 수출계약서, Local L/C, 구매승인서 제시업체(자) : 수출의무액은 대출액의 55% 이상
 - 수출용 물품 공급계약서 제시업체(자) : 공급의무 또는 대응수출 의무액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 정산시기, 제재사항 : 유통지원용 자금과 동일

(나) 보고사항

- 사업시행자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2001. 1. 20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수출실적,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금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사업추진실적(자금배정 및 집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우수농수산물 시설현대화 지원자금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지원규모 : 156억원
- 용 도
 - 우수농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
 - 우수농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시설(건물 등) 증축(설) 및 개보수
 - 우수농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장비(운반차량, 물류장비 등) 구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 비율 : 자금 지원액의 25% 이상

(2) 2001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0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일 반 업 체		15,612	15,612	-	15,612	-	-

< 추진체계 >

- (1)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 (3)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3-6597)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가)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최근 2개년간 200천\$ 이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해 100천\$ 이상인 자에 한한다.
-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수출자에게 완제품을 최근 2개년간 200천\$ 이상 공급한 실적이 있는 업체(자)

(나) 선정기준

-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2개년간 농수산물 수출실적이 200천\$ 이상인 업체(자)중에서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자)는 제외한다.
 -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최근 2개년간 농수산물 수출실적
 -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 시기
 -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
-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적격심사 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2000. 12월 중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소)
 - 2001. 1. 2 ~ 2001. 4. 15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2001. 5월말한

(라) 업체별 자금 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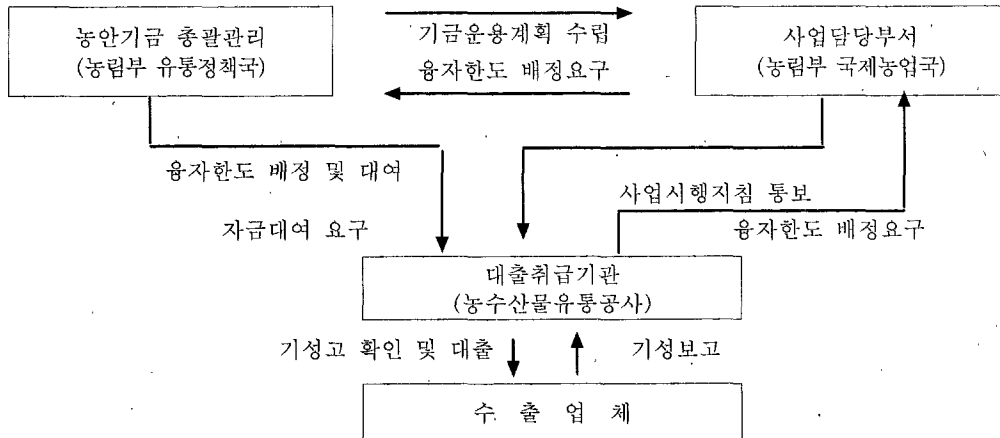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적격심사 평점 40%, 수출추진 노력 30%, 수출실적 30%로 한다.
- 항목별 평점 산출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출금 지급은 대출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후관리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후관리방법
 - 우수농수산물 시설현대화자금의 사업실적 확인은 기성고 확인으로 같음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징구 및 부당사용 정도에 따라 당해사업자금 대출정지 1~5년
 - *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50% 범위내에서 단축가능
 - 법령위반 :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2년간 기금 대출중단 또는 감액 가능)

(2) 보고·기타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1.1.20까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 우수농수산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나.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소

다. 신청자격 : 우수농수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라. 구비서류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 신청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간 농수산물 수출실적 증명원(외국환은행장 발행) 또는 수출신고필증
-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농안기금 대출 신청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서류

마.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2001년 12월 중순(일간신문, 경제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2001년 12월 중순 ~ 2002년 1월 중순(시설자금은 4월 15일까지)
 - ※ 단, 유망품목시장개척자금(농수산물유통공사)은 연중 신청접수 및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2002년 3월(시설자금은 5월말)
- ※ 사업별 자금지원 시기를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음.

여 백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여 백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이학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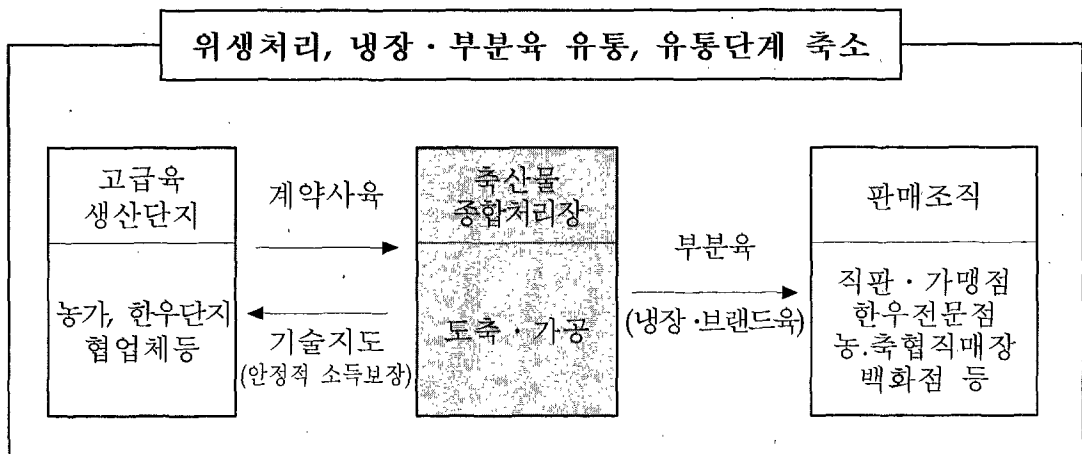
1. 목 적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중심으로 가축사육(계약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괄 유통 체계 확립으로 국내 축산물유통구조의 선진화
 - 육류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제로 전환 및 등급별, 부위별 차등가격제도 정착
- 선진국 시설기준의 도축·가공시설 운용으로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산 육류의 공급확대 도모
 -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육류 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LPC는 2000. 10월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장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생산·유통모델

- 가축사육(계약생산)·도축·가공·판매의 일괄 처리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5~6 → 3~4단계)하고, 유통비용을 20%수준 절감유도
 -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위생적인 국내산 육류 유통량의 30%수준 공급



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기본계획

(2)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개념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acking Center)이란 선진국 위생수준 (미 USDA시설기준)의 도축·가공시설(계류, 도축, 및 부분육가공 등), 보관시설 (냉장·냉동)을 동일 장소에 갖추고 양축농가(전업농·협업체·단지 등)와 계약 또는 자체 생산된 소, 돼지를 부분육, 냉장육으로 도축·가공하여, 등록된 상표(브랜드)를 부착, 자체판매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및 수출하는 일련의 축산물 종합 유통시설

(2) 건설 및 가동계획

- 2001년까지 9개소(대규모 6, 중규모 3)의 LPC를 건설·운영하므로서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의 품질향상 및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경쟁력 제고
 - 2000년까지 운영 중 LPC : 6개소
 - 김제LPC(농협), 청원LPC(주,한냉), 안성LPC(안성축산), 제천LPC(주,박달재 한우마을), 익산LPC(주, 부천), 포항LPC(주 , 명신산업)
 - 2001년 개장계획 LPC : 1개소(군위LPC : 동아축산)
 - 2001년 건설 중 LPC : 2개소(원주LPC; 푸른육원, 홍성LPC; 하이미트21C)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39조, 제5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까지	2000	2001예산안	합계	
축산물종합 처리장건설	사업량(개소)	7	(1)	(2)	7	
	사업비	보조금	975	-	-	975
		융자금	52,737	5,551	8,312	66,600
		지방비	3,050	-	-	3,050
		자부담	38,565	1,388	2,392	42,345
계	95,327	6,939	10,704	112,970		

※ 사업량 ()는 계속사업이며, 기존 2개소(김제LPC, 청원LPC)는 미 포함됨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지원개요

- 표준사업비 및 도축·가공능력(개소당)
 - 대규모 : 17,984백만원, 소 100두/일, 돼지 1,500~2,000두/일
 - 중규모 : 10,503백만원, 소 50두/일, 돼지 750~1,000두/일
- 자금용도 : 도축·가공, 오·폐수시설 관련 건축, 기계 등 (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총액은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되는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함

(2) 사업지원대상

- 기존도축장 운영자 등이 농림사업 신청에 의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3) 세부 사업별 지원기준

- 도축시설 : 용자 80%, 자담 20%
- 오·폐수시설 : 용자 100%
- 육가공시설 : 용자 70%, 자담 30%
- * 용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생산자단체(농·축협 등)가 참여하는 LPC는 참여지분에 대한 20%를 세부 사업별 지원기준에 의한 용자지원 비율을 보조로 전환하여 지원
 - 생산자단체가 건설 중에 있는 LPC를 인수할 경우에도 동일 조건을 적용
 - 지원액은 인수가격이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사업비를 적용하고, 미달하는 경우는 인수가격을 기준으로 함

(4) 대상자·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제3자 매각 등

- 사업규모조정, 사업자변경 등 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로 승인요청
 - 기본계획하의 경미한 사항의 세부내역 변경은 도지사가 검토 승인
- 제3자 매각 시에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대상자 선정시의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사업자 평가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등 정책자금지원 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평가에 적합하고 양자간 인수·인도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상자 변경승인(농림부)
- ※ 사업자 변경시 주요 검토사항 : 원료 및 판매망 확보계획, 자부담 조달 방안, 도축장·가공장의 위생관리계획 및 고급육 생산계획 등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대상자)	합 계	2001 예산안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 조	용 자		
원주 LPC (하이미트21C)	10,503	2,510	-	2,510	-	804
홍성LPC (주, 푸른육원)	17,097	5,802	-	5,802	-	1,588
합 계	27,600	8,312	-	8,312	-	2,392

다. 사업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2)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500-2691~2)
- 도 : 축산과 또는 담당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등)

(3) 대상자선정

- 신규사업 추가 선정계획 없음

(4) 사업시행

- 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위원장 : 시·도 담당국장
 - 위 원 : 축산과장, 공업과장, 농어촌개발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 개발과장, 식육유통전문가, 관련학계전문가, 회계사 등 경영분석전문가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위원회의 기능 : 도축·가공시설 설계안 및 사업계획서 심의, 사업계획 변경·조정안 심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개최

- 사업비는 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에서 집행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 훈령제999호, '99.9.8)에 의거, 지원자금집행 요건·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도, 시·군)은 매년 말(회계년도 말)에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라. 행정사항

(1) LPC 건설 및 자금집행 세부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 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 5454호),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99.9.8)에 따름

(2) 사후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실시
 - 사업추진 내용점검 : 도지사 주관으로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설중인 LPC : 건설추진상황(부진 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운영중인 LPC : 원료확보, 가맹점·직판장 설치등 정상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관리 : 시·도 주관
 -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지침”(축통 51557- 399호, '97.9.25)에 의거 사후 관리 및 운영지도 실시

(3)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융자금 회수 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내에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5454호)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에 의함

(4)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도지사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사업완료 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사진 첨부 등)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추가사업 계획 없음

- 신규 사업자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이 없음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 및 운영지침

1. 사업자 준수사항

- 안정적인 원료육 확보 및 가동을 제고를 위하여 전업농·협업체 등 양축농가 및 계열화사업체와 계약생산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자체 브랜드를 개발·등록하여 공급·판매할 수 있는 조지를 확보할 것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도축·가공 과정에서의 세균오염을 최소화시켜 품질향상과 냉장육 유통에 필요한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 도축된 지육은 가공시설 운영주체에게 인도하여 냉장·부분육으로 가공하고, 고유상표를 부착, 자체 판매망(가맹점·직판장 등)에 공급 및 수출
 - LPC에서 도축된 지육의 관내·외 반출은 축통 51554- 409(2000.5.27)에 의거 2000.6.1부터 3년간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냉장육, 부분육, 브랜드육 유통 활성화 등을 포함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축산물 브랜드업체가 자체 부분육 가공을 위하여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지육반출 허용

2. 시설설치 및 운영

- 소 및 돼지의 전용 계류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류장 바닥은 불침투성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하고 내수성의 지붕을 설치하여야 함.
 - 생축 하차시 가축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전용 하차대를 설치하여야 함.
- 돼지 전용 계류장에는 자동물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도축방법은 소는 에어건에 의한 타격법, 돼지는 전살법이나 CO₂ 가스법을 사용하여야 함.
- 도축 및 가공장 실내 천장에는 반드시 자외선 살균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육가공실은 세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와 완전 차단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가공작업중의 실내온도는 15℃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3. 위생수준 향상

- 도축 및 가공시설 운영주체는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위생관리인의 책임 하에 작업장 등의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관리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도축 및 가공시설의 위생유지를 위하여 월 2회이상 지육의 표면 및 육가공장의 작업대에서 일반 세균수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3년이상 보관해야 함.
 - 도축후 지육 표면의 일반 세균수는 10^3 cfu/cm²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00.7.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 하여야 함(구제역 발생으로 HACCP 적용을 3개월 시행연기됨)

4. 기타사항

- 위에서 언급한 기준 외의 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5. 준수사항 불이행 시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위 반 회 수 별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LPC 시설 및 운영지침 위반	주의통고 (시정조치)	경 고 (시정조치)	지원자금 20%회수	지원자금 50%회수
2.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 1) 본 기준은 축산물종합처리장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5년 동안 적용한다.

2)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언급하여 조치에 필요한 기한 (1년이내)을 정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이행 시 다음 차순으로 조치.

35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김정옥, 이학주), 가축위생과(과장 이주호, 사무관 장기윤)입니다.

I. 도축 도매 시설

< ①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 >

1. 목 적

-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의 통·폐합 및 시설개선을 유도
- 선진국 수준의 위생적인 도축시설을 갖추어 가동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경쟁력 강화

2. 시책 추진방향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구축으로 국민식생활 개선
- 2001년 시범사업으로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폐합 추진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검토하여 금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장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한 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육류유통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39조, 제5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9까지	2000	2001	2002이후*	계
○사 업 량	-	-	(시범) 1	(미정)	1
○사 업 비	-	-	12,500		12,500
- 촉발기금 용자	-	-	8,750		8,7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3,750		3,750

※ 2002년 이후는 금년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5. 2001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신청자 대상요건

- ① 기존 도축장 영업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2000년 말 현재 기존 도축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
- ② 축산발전기금 용자에 결격사유나 제한을 받고 있는 도축장 영업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 ③ 인접 시·도의 기존도축장 3개소이상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시에는 지원대상자는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되, 통·폐합전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통·폐합후 승계하며, 본 사업 완료 즉시 기존 도축장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서를 반납하겠다는 공중각서를 동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기존 도축장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서 제출

(2)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의하여 결정

- 1순위 : 도내 3개 도축장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업 영업자로서 기존 도축시설 3개소의 도축능력규모의 합계가 큰 것을 우선함
- 2순위 : 시설이 노후화 된(건설년도가 오래된 것)된 3개 도축장의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한 도축업 영업자
- 3순위 : 도축장 시설개선 등 정부지원자금을 적게 받은 자
또는 도축장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 잔액이 적게 남은 자

(3) 지원용도 : 소·돼지 도축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자금
(전산화 시설 포함)

(4) 사업규모(도축능력) : 소 50~100두/일, 돼지 750~1,000두/일

(5) 사업기간 : 2001~2002년(2년)

(6) 사업비 : 12,500백만원(축발기금융자 8,750, 자부담 3,750백만원)

(7) 지원기준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개소 당 지원한도액 : 용자 8,750백만원
- 세부지원기준 : 도축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 용자 70%
- 용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

나. 사업추진체제

(1)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2)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물유통과 (500-2691~2)
- 도 : 축산과 또는 담당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담당과)

(3) 사업시행

가) 신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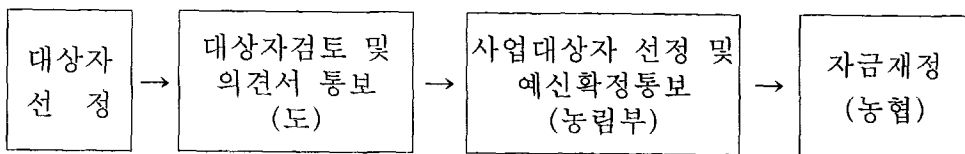
-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 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1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경유하여 2001년 2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 내용의 통합 도축장시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장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하여야 함
- ※ 특히, 사업계획서의 통합 도축시설규모는 기존 도축능력규모와 같거나 적어야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선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내역 및 건설비 산출내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이때 당해 연도 지원계획도 함께 통보

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⑥사업신청자 공증각서 ⑦기타 관련자료 등

다)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의거 선금지급 가능)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집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99.9.8)에 의거, 지원자금 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도, 시·군)은 연도말에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그 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다. 행정사항

(1) 통합도축장 건설 및 자금집행 세부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관리에 관한법률(제5454호),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02호 '98.11.8)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 훈령 제999호 : '99.9.8)에 따름

(2) 사후관리

-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내용점검 : 도지사 주관으로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3)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용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관리에 관한법률(법률제5454호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4)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 2서식)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 등)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추진사업계획은 추후 시범사업 검토결과에 의함

〈별첨 1〉

도축장 통·폐합 사업계획서

1. 도축장 통합신청 개요

- 사업추진 사업자·도축장 명 :
 -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사업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 백만원(융자 , 자부담)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 도축장 도축능력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	용도	비고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분야 :
 - 시설분야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이전과 이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3개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 (첨부 요함)

<별첨 2>

도축업 통·폐합 사업정산서

1. 사업개요

- 위 치 : (부지 : 평)
- 사업도축능력 :
- 총 사업비 : 백만 원(용자 , 자 부담)

2.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시설명	사 업 비			비 고
	계	축발기금 용자	자 부담	
예 산 액				
정 산 액				
증 감				

3.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집행일자	주요사업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액	지급처	비 고
계				

※ 세금계산서, 지로영수증 등 집행관련서류 사본 첨부

4.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기존 도축장 폐쇄 및 영업허가 반납서류 사본 등

5. 기타(준공된 건물 및 주요시설 사진 등 첨부)

< ② 축산위생시설(도축장 HACCP) 및 컨설팅 지원 >

1. 목 적

- 도축장 규모별로 년차적인 HACCP 의무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도축위생 시설의 신규도입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향상을 통한 식육의 안전성확보로 국민위생 수준 제고
- 년차적으로 HACCP 의무 적용하는 도축장에 대한 HACCP 운용체계 자문 수행
 - 개별 도축장별 기본적 위생시설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작업장에 적합한 자체위생관리기준 프로그램 개발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작업장 규모별로 연차별 의무적용 확대
 - 2000. 7. 1일부터 도축장에 대한 체계적인 HACCP 의무적용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및 능력이 부족한 도축장에 전문가 집단에서 일관된 HACCP 자문 필요
 - 미국은 1998. 1월부터, 일본은 2001. 4월부터 자국으로 수출되는 식육은 HACCP하에서 생산된 식육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축산물의 수출 지속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HACCP 구축필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규정
 - HACCP제도 적용대상 작업장 :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49호 : '98.8.10.)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0-'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년
사업량	-	30개 업체	30개 업체	30개 업체	20개 업체
사업비	계	5,000	7,650	7,650	5,100
	보조	-	105	105	70
	용자	-	3,500	5,250	5,250
	지방비	-	-	-	-
	자부담	-	1,500	2,295	2,295

6.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도축장 HACCP 시설지원

- 도축장 HACCP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도축장 위생시설의 신규설치나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 위생시설지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지원사유	지원내역	
		금액	산출근거
돼지이송체인컨베어	도체자동이송으로 도체오염 사전예방	100	100×1대
소이송체인컨베어	"	100	100×1대
손칼세척기	작업자 위치마다 온수 세척·소독설비 설치하여 도체간 오염방지	30	2×15대
장화세척기	작업장 출입시 장화소독	10	5×2대
앞치마세척기	작업장 앞치마세척	20	2.5×8대
트로리 및 훅세척기	도체이송라인 세척으로 위생도축	20	10×2개
공조시설	작업장내 먼지, 수증기 등에 의한 도체 오염방지	100	100×1대
냉동차량내 현수시설	도체현수로 도체의 바닥접촉 오염방지	20	20×1대
지육상차시설	위생적인 지육상차작업 실시	20	20×1대
항문결찰기	항문파열로 인한 대장균등 병원성미생물 오염방지	80	40×2대
계		500	10종, 33대

□ 도축장 HACCP 컨설팅 지원

- 자체적으로 HACCP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능력이 부족한 도축장에서 HACCP 자문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한 HACCP 교육기관에 한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을 적용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컨설팅 내용
 - 도축장 실태 및 특성에 맞는 HACCP 계획서 개발지원
 - 위해요소분석
 - 중요관리점 선정
 - 관리한계치, 감시방법, 기록관리방법, 검증방법등 설정
 - HACCP 계획서 작성 및 시행 지원
 - 도축장 영업자, 종업원등 HACCP 교육
 - 도축장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개발지원
 - 위생관리프로그램(개인, 시설, 환경)
 - 계측장비 관리 프로그램
 -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그램

나. 지원대상 및 기준

- 사업기간 : 1년
 - 도축장 HACCP 적용 희망 영업자
- 총사업비
 - HACCP 시설자금 지원 : 개소당 500백만원(융자 70% : 350백만원, 자담 30% : 150백만원), 5년거치 10년상환(5% 이자율 적용)
 - HACCP 컨설팅 자금 지원 : 개소당 10백만원 지원(보조 7백만원, 자담 3백만원)
- 지원대상 시설 : 돼지이송체인컨베어 등 10종
 - 단, 지원대상작업장에 지원대상시설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비를 여타 위생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는 본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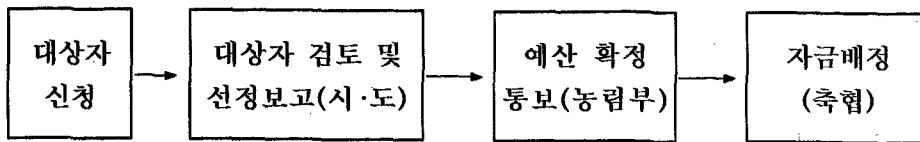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가축위생과(02-500-2693)
- 시·도 : 축산(축정·농산)과
- 농협중앙회 : 축발기금사무국

다. 사업시행절차

- 도축장 영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사업계획서(별첨 참조)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사업시행 대상 도축장 1개소 신청
 - 사업신청도축장이 총 15개를 넘는 경우는 농림부에서 대상작업장 결정
 - 1개 시·도 1개 작업장 지원원칙이나 지원신청 시·도가 적은 경우는 1개 시·도에 1개 이상 지원가능
 - 수출 작업장 등 HACCP 적용 필요성이 높은 도축장부터 우선지원
- 사업비는 시·도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집행



< 행정사항 >

- 도축장 영업자는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및 컨설팅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2001. 3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에 제출한 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
- 사후관리 : 시·도에서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전분기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해당도에 보고, 시·도는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 등)

7.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 나. 신청자격 : 도축장 경영자
-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
- 라. 대상자 선정기준 : 2001년 사업요령과 동일

< 별첨 1 >

축산위생시설 사업계획서

1. 도축장 개요

- 도축장명 및 허가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종업원 수 :
- 도축능력(두/일)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위생시설 구입 및 설치계획

시설명	소요금액	용도	구입예정 시기	설치예정 시기	비고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 위생시설 설치이전과 이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도축장 위생관리프로그램(위생적인 도축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 별첨 2 >

축산위생시설 사업비 장산보고

(단위 : 백만원)

작업장명	시설명	사업비 지원 대 정산			비 고 (설치일자 등 기입)
		계	추발용자	자부담	
	합 계				

※ 상단, 하단 구분하여 상단: 정산액, 하단: 예산액을 지원

< 별첨 3 >

HACCP 컨설팅 사업계획서

1. 도축장 개요

- 도축장명 및 허가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 종업원 수 :
- '00년말 기준 도축실적 :
- 도축능력(두/일)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작업장명	소요금액	용 도	컨설팅 사업 시 기	비 고

3. 구체적인 사업내용

-
-
-

4. 붙임

- HACCP 자문기관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 별첨 4 >

HACCP 컨설팅 사업비 정산보고

(단위 : 천원)

작업장명	사업내역	사업비 지원 대 정산			비 고
		계	축발용자	자부담	
	합 계				

※ 상단, 하단 구분하여 상단: 정산액, 하단: 예산액을 지원

II. 가공·판매시설

< ①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 >

1. 목 적

-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시장차별화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대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한우고기 판매망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설치를 점차 확대
- 한우고기 냉장육 유통체계 확립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3~'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업량	개소 582	66	90	100		
사 업 비	계	백만원 120,872	12,059	20,026	20,000	
	보조	-	-	-	-	
	융자	120,872	8,441	14,000	14,000	
	지방비	-	-	-	-	
	자부담	-	3,618	6,026	6,000	

※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육농가(전업농가)로서 한우고기전문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 기존의 식육판매업자가 한우고기전문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자
 - 기타 한우고기전문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100개소, 14,000백만원
 - 개소당 200백만원(용자70% 140백만원, 자담30% 60)
 - ※ 점포면적 10평이상이며, 30평이상 설치하는 경우 개소당 사업비 400백만원 (용자280, 자담120) 이내로 함
 - ※ 농협중앙회 사업량 및 사업비는 추후 시달
 - 시·도별 사업비 배정 : 별도시달

- 지원조건
 - 연리 : 5%(생산자단체, 생산농가) 및 8%(일반)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지원내용(지원자금의 용도)
 - 식육판매점포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용자금의 50%이내)
 - 식육판매업소시설 : 냉장, 냉동, 가공,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기타부대시설 등

- 시설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10평이상
 - 식육판매진열장길이4m·냉장숙성실2평·냉동실1평·냉장육절기1대 이상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사업자 준수사항
 - 한우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수입쇠고기, 육우고기, 젓소고기는 판매할 수 없음) 하여야 하며 기타 축산물은 국내산만 판매
 - 한우고기는 부위별, 등급별(등심, 채끝)로 구분하여 판매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한우고기전문판매점을 표시하는 간판 부착(붙임1 예시참조)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주(종업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식육전문기관(농협 축산교육원 또는 대학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주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외)
 - 사업자가 점포를 매도, 임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시·도지사에게 미리 알려야 함

나. 사업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시·군) : 축산업무담당과
- 사업시행절차
 - 시장·군수는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2000.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0.2.10까지 농림부에 보고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우선순위>

- ① 한우 관련 생산자 단체 : 지역조합 > 영농조합법인·협업체
- ② 한우사육농가(수소거세에 의한 고급육생산농가로서 사육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한다)
- ③ 기존 식육판매업소가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자
 - ※ 단, 동일한 순위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품질인증)에 근거한 축산물 품질인증 단체(또는 농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육기술교육을 이수(농협 축산교육원 또는 대학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한자, 자기소유점포를 소유한자는 우선한다.
 - 농림부는 시·도별로 사업비와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또는 추가신청을 받아 적정한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한다.
 - 시·도지사는 대상자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붙임2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번호, 업소명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계약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자가시공은 인정하지 않음)
 - 융자금은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행정사항

- 시·도지사(시장·군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가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를 강구한다.
-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사업자가 판매부진 등에 따른 판매장을 이전 및 신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정기간 판매점 운영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판매장 휴업사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휴업기간을 정하여 지정서를 회수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판매점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농협중앙회에 통보한다.
- 시·도지사는 매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붙임3서식에 의거 다음분기 15일 까지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한다.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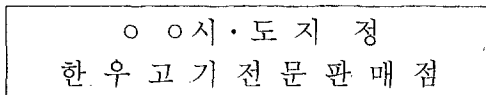
-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붙임 1]

한우고기전문판매점 간판설치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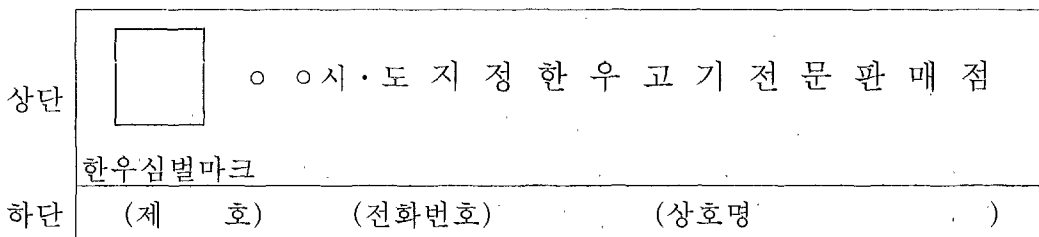
< 식육판매업소 내부간판 >

- 명칭 : ○○시·도 지정 한우전문판매점
- 규격예시 : 30cm × 70cm(자율조정)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1/2크기로 하여 중앙에 표시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로 하되 한우는 적색으로 표시

< 식육판매업소 외부간판 >



- 크 기 : 자 율 결 정
- 색 깔 : 상단글씨는 청색(단, 한우는 적색), 하단글씨 자율적으로 선택
 - 한우심별마크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

[붙임 2]

지정번호 제 호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서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업소는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한우고기 전문 판매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서식 : 아트용지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붙임 3]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추진실적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대 상 자				사 업 량			사 업 비						비율 (B/A, %)	
업소명	성명	전화	소재지	사업 내용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누계)				
							계	용자 (A)	자담	계	용자 (B)	자담		
계						개소								

주1) 사업완료보고시에는 증빙사진 첨부 보고.

주2)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② 브랜드육 가공시설 >

1. 목 적

- 브랜드육의 품질향상 및 냉장 부분육 유통활성화
- 브랜드육의 운영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브랜드육업체의 육가공공장 육성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	2001	2002
사 업 량		45개소 (신규20, 시설개선25)	35개소 (신규15,시설개선20)	
사업비	-	23,000	17,400	
- 축발기금	-	16,100	12,180	
(보조)	-	-	(-)	
(용자)	-	16,100	(12,180)	
- 지방비	-	-	-	
- 자부담	-	6,900	5,220	

※ 2002년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부분육가공장을 경영하면서 상표법 규정에 의한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브랜드를 등록하고 직판장 또는 가맹점 등을 통하여 브랜드육으로 판매 하는자로서 가공장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자
- 지역조합 등 생산자단체, 식육판매업단체, 일반업체 등에서 브랜드육을 생산하여 회원이나 가맹점 등을 통하여 공급(판매)하고자 하는자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가 있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

<신규시설 우선순위>

- ①순위 : 생산자단체로서 브랜드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자(한우브랜드, 품질인증업체를 우선함)
- ②순위 : 판매업단체(사업할 수 있는 법인격)에서 브랜드육을 하고자 하는자
- ③순위 : 기타 신규로 브랜드를 등록하여 가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35개소(신규 15, 시설보완 20), 12,18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신규 1,000백만원(용자 700, 자부담300), 보완120(용자 84, 자담 36)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규모 등에 따라 조정(신규 2,000, 보완 500백만원까지)가능

- 지원(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사업내용

- 가공장 건물신축(150평 기준) : 가공처리능력 소 20두/일 이상 및 돼지 200두/일 이상
- 가공기계설비, 냉장·냉동설비, 운송장비, 오페수 처리시설 등
- ※ 가공장 부지구입비는 자체부담

나. 사업추진체계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시·군) : 축산업무담당과
- 사업시행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로부터 브랜드가공장 설치 또는 시설보완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2000.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익성, 담보 및 자금능력 등)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0.2.10까지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사업계획서 내용>

- 사업개요
- 가공장 시설계획
 -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 원료육확보 및 브랜드육생산·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 사업시행일정
 -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 브랜드등록증 사본 또는 브랜드등록 신청서 사본
 - 부지확보(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등) 및 당해 부지의 도시계획확인서
-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당초와 보완 계획을 비교

○ 사업시행요령

- 사업시행자는 대상자 확정통보에 의거 추진하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에 즉시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총 사업비 중 융자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 계획 승인 후 즉시 농림부 보고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통보
 - 사업계획의 총 사업비 중 융자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농림부에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후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 기타 공장부지 변경, 항목간 조정 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후 농림부 보고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 시공업체 선정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자가시공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금은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다. 행정사항

- 축산물브랜드업체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의뢰 도축하는 경우는 지육반출 제한에 구애되지 않음
-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
 - 규정 위배시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고
 - 시·도지사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붙임서식)
 -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붙임서식)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붙임 >

()분기 브랜드육 가공장설치 추진실적 보고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명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B/A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계	용자(A)	자담	계	용자(B)	자담		
가공장 신설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운송장비 :											
		소 계											
가공장 시설보완		○원료육 보관실 : ○숙성실 : ○가공처리시설 : ○운송장비 :											
		소 계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③ 브랜드가맹점 육성 >

1. 목 적

- 브랜드육의 판매망을 구축하여 국내산 브랜드육의 수입육과의 시장차별화
- 브랜드육의 품질향상과 위생수준 제고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브랜드업체의 가맹점설치 확대
- 브랜드가맹점 확대로 부분육·냉장육 유통활성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 브랜드가맹점 설치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	2001	2002
사 업 량	311개소	247	250	
사 업 비	42,969	49,400	50,000	
- 축발기금	29,362	34,580	35,000	
(보조)	-	-	-	
(융자)	29,362	34,580	35,000	
- 지방비	-	-	-	
- 자부담(추정)	13,607	14,820	15,000	

※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브랜드업체별 가맹점 설치기본계획(누계)>

- 축산물종합처리장(농협중앙회, 한냉(주) 포함) : 대규모 개소당 350~400개소, 중규모 개소당 175~200개소
- 지역조합, 일반브랜드업체 : 개소당 10~40개소

※ 브랜드업체 여건에 따라 기본계획이상 설치 가능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축산물(한우고기, 돼지고기)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업체로서 (축산물 종합처리장, 지역축협, 일반브랜드업체)냉장육 생산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영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당해 브랜드육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확보하고자 하는자(품질인증업체 우선 선정)
- 사업량 및 사업비 : 250개소 50,000백만원(용자35,000, 자담15,000)
 - 개소당 200백만원(용자70% 140백만원, 자담30% 60)
 - ※ 가맹점의 여건에 따라 업체별 배정사업비 범위내에서 배정받은 물량이상으로 설치가능, 다만, 지원한도액(140백만원)은 초과할 수 없음.
 - 시도별 사업량 : 별도시달
- 지원조건 : 연리5%,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지원내용
 - 신규건축, 매입비, 임차료(용자금의 50%범위내에서 지원)
 - 가맹점의 식육보관, 가공, 포장, 진열장, 인테리어, 운송차량 등 시설비
- 시설기준
 - 식육판매점포면적 : 10평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권장하는 면적8평(26.4m²)을 적용할 수 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판매업"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사업자 준수사항
 - 브랜드업체는 자체 육가공장에서 가공한 국내산 브랜드육을 등록된 자체 상표를 부착하여 가맹점에 냉장육으로 공급하여 판매한다
 - 가맹점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브랜드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 브랜드업체에서는 가맹점의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주(종업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식육전문기관(축협 식육교육센터 또는 대학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주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외)
- 가맹점을 매도, 임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신고하고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브랜드업체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 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시·군) : 축산업무담당과
- 사업시행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희망자로부터 브랜드가맹점 설치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2000.1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자별 브랜드가맹점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붙임1 서식에 의거 2000.2.10까지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전년도 실적, 가맹점 설치목표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 배정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대상자 모집 및 선정기준을 정하고 배정된 물량의 대상자를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가맹점 설치대상자의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 자금대출 기관에 신청하여 자금을 받도록 협조

다. 행정사항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브랜드업체에 대하여 품질인증제가 확대시행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를 강구한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브랜드업체로부터 대상자 변경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한다
- 브랜드업체는 가맹점설치 추진현황을 조사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다음분기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브랜드 주체 관할 시·군에서 사업 실적을 확인(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브랜드주체를 통하여 가맹점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조치하여야 함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붙임 1 >

2001년 축산물 브랜드육가맹점설치 계획보고

주관 기관구분	브랜드 유형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브랜드명		가맹점설치				
					한우 고기	돼지 고기	누계 (년~년)	2000 까지 (A)	2001계획		계 (A+B+C)
									2000 이월분(B)	신규 설치(C)	
○○시·도	축산물 종합처리장 (농협중앙회, 한냉(주) 포함) 지역축협 일반 브랜드업체										

< 붙임 2 >

()분기 브랜드육 가맹점 지원실적 보고

(단위 : 백만원)

주관기관	브랜드 유형	브랜드 업체명	계 획			실 적			B/A (%)
			물량	사 업 비		물량	사 업 비		
				계(A)	용자		자담	계(A)	
○○시·도	축산물 종합처리장 (농협중앙회, 한냉(주) 포함) 지역축협 일반 브랜드업체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④ 브랜드업체 운영자금 지원 >

1. 목 적

- 브랜드업체 경영여건 개선으로 브랜드육의 유통활성화
- 브랜드육의 품질향상 제고에 의한 수입축산물과의 시장차별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브랜드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개선
- 브랜드업체의 가맹점 설치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	2001	2002
사 업 량	-	67개소	160(10)	
사 업 비	-	2,680	8,000(2,000)	
- 촉발기금	-	2,680	8,000(2,000)	
(보조)	-	-	-	
(용자)	-	2,680	8,000(2,000)	
- 지방비	-	-	-	
- 자부담	-	-	-	

주1) ()내는 브랜드육가공시설 운영자금이며,

주2)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2000년도 브랜드육 가공시설의 사업대상자(신규 또는 보완)로 선정되어 브랜드 가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업체
- 브랜드가맹점 자금을 지원받아 가맹점을 설치하고 한우고기 또는 돼지고기 브랜드업을 영위하는 브랜드업체

※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사업 등 정부자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브랜드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위 사업대상자는 가공시설, 가맹점 중 한가지 운영자금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량 및 사업비 : 160개소, 8,000백만원
 - 브랜드가공장 개소당 200백만원
 - 한우고기브랜드육만 가공·판매하는 경우 5두/일 기준, 개소당 100백만원, 3두/일 기준일 경우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 돼지고기만 가공·판매하는 경우 70두/일 기준, 개소당 100백만원, 35두/일 기준일 경우 50백만원 이내 지원
 - ※ 한 품목만 공급하는 경우 규모에 따라 200백만원까지 지원가능(소 10두/일, 돼지 140두/일)수준일 경우
 - 브랜드육가맹점 개소당 40백만원
 - 한우고기 브랜드육만 공급하는 경우 월간 8두 판매기준, 개소당 27백만원 이내
 - 돼지고기만 공급하는 경우 월간 60두 판매기준 13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5%,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자금 용도 : 한우고기,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원료구매 및 브랜드육 판매회전자금

나.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시·군) : 축산업무 담당과
- 사업시행절차
 - 시장·군수는 브랜드육 가공장 운영자금의 경우 가공시설이 완공된 후 1개월 이상 브랜드육 가공실적을 감안하고, 브랜드육가맹점의 경우 2000년까지 설치된 브랜드육가맹점을 감안하여 브랜드업체로부터 붙임1 서식에 의거 운영자금 수요조사를 2001년 2.10까지 시·도를 통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브랜드가공장 운영자금 수요조사시 신청자로부터 월 평균 가공 두수에 대하여 도축실적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받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2000년 브랜드육가공시설 설치실적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비 배정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에는 브랜드업체가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브랜드업체 소재지 시·군을 걸쳐 시·도에 자금 지원을 신청
- 시·도에서는 농림부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자금신청 시·군에 통보하고 당해 시·군에서는 브랜드업체에 브랜드가맹점 운영자금을 대출

다. 행정사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를 강구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사업포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붙임2 서식에 의거 다음분기 15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붙임 1 >

2001년 브랜드업체 운영자금 신청

<브랜드가공시설 운영자금>

주관 기관	브랜드 가공시설 업체명	한우고기		돼지고기		합 계
		일 평균 가공두수	신청액	일 평균 가공두수	신청액	
○○ 시, 도	(주).....	두/일	백만원	두/일	백만원	백만원
합 계						

<브랜드육가맹점 운영자금>

주관 기관	브랜드 유형	브랜드 업체명	2000년까지 브랜드가맹점 설치			2001년 운영자금 신청액		
			한우 고기	돼지 고기	계	한우 고기	돼지 고기	계
○○ 시, 도	축산물 종합처리장 지역축협 일반 브랜드업체							
합 계								

< 붙임 2 >

()분기 브랜드업체 운영자금 지원실적 보고

<브랜드가공시설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주관 기관	브랜드 가공시설 업체명	한우고기		돼지고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시, 도	(주).....						
합 계							

<브랜드육가맹점 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주관 기관	브랜드 유 형	브랜드 업체명	한 우 고 기				돼 지 고 기				합 계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가맹점	금액	가맹점	금액	가맹점	금액	가맹점	금액	가맹점	금액	가맹점	금액					
○○ 시·도	축산물 종합처리장																		
	지역축협																		
	일반 브랜드업체																		
합 계																			

※ 실적은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⑤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 >

1. 목 적

- 식육판매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정예화하여 소매단계 유통 개선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제 실시로 시범효과 거양
- 식육냉장 유통체계와 구분판매제(부위별, 등급별, 쇠고기종류별) 촉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99까지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 업 량	-	500	714	
사 업 비	-	15,000	21,428	
- 축발기금	-	15,000	15,000	
(보조)	-	-	-	
(용자)	-	15,000	15,000	
- 지방비	-	-	-	
- 자부담	-	-	6,428	

※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5. 2001년 사업 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자로서 법적권장 면적(8평)이상의 식육판매 점포면적을 보유한 자
 -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하여 냉장육을 판매하고 있거나, 냉장육 판매 시설과 기술이 있는자로서 식육의 구분판매(부위별·등급별·쇠고기 종류별)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타 업소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자

< 모범업소 지정 제외대상 >

- 농·축·수협 판매점 및 한우고기·육우고기 등 전문판매점·브랜드가맹점·냉장육시설개선지원업소, 백화점, 수퍼마켓, 대형할인매장 등 이미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업소
- 부도발생 또는 화의중에 있거나 관계법을 위반하여 계류중이거나 과거(3년 이내)에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식육판매업소
- 사업량 및 사업비 : 714개소 15,0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30백만원(용자 70%, 자담 30%)
- 지원조건
 - 연리 : 5%(생산자단체, 생산농가) 또는 8%(일반)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냉장육판매·보관·가공·진열시설, 장비 및 인테리어 개·보수비, 기타 부대시설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등심, 채끝), 한우고기 축종별 구분 판매
 - 가축가격과 연동하여 식육을 판매하여야 함
 - 식육판매모범업소 간판 설치(붙임1 예시참조)
 - 사업자가 점포를 매도, 임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시·도지사에게 미리 알려야 함

나.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시·군) : 축산업무담당과
- 사업시행절차
 - 시장·군수는 식육판매모범업소 지정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축산기업중앙회, 시·군·구지부 등으로부터 추천)를 제출받아 순위를 정하여 2001.1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보고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관련 단체 등과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2001.2.10 까지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시·도별로 사업비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차 순위자 또는 추가 신청을 받아 적정한 자를 선정·확정하고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대상자가 모범업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붙임 2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번호, 업소명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모범업소의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계약 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자가시공은 인정하지 않음)
- 지원자금의 집행은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해 집행하되,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이미 현대화시설이 완료되고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모범업소의 경우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지원없이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를 강구한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대상자 변경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한다
- 시·도지사는 매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붙임3서식에 의거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붙임 1]

식육판매모범업소 간판 설치규격

< 식육판매업소 내부간판 >

- 명칭 : ○○시·도 지정 식육판매모범업소
- 규격예시 : 30cm × 70cm(자율조정)

○ ○ 시 · 도 지 정 식 육 판 매 모 범 업 소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1/2크기로 하여 중앙에 표시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 식육판매업소 외부간판 >

상단	식 육 판 매 모 범 업 소
하단	○○○시(도) 지정 (○○○시(도) 지정제 호) (전화번호) (상호명)

- 크 기 : 자 율 결 정
- 색 깔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색깔 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모범"은 적색), 하단글씨는 자율적으로 선택

[붙임 2]

지정번호 제 호

식육판매 모범업소 지정서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업소는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모범업소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

서식 : 아트용지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붙임 3]

식육판매모범업소 추진실적 보고

(단위 : 개소, 천원)

대 상 자				사업내용		사업비						B/A (%)
업소명	성명	진화	소재지	항목	세부내역	계획			실적			
						계	용자(A)	자담	계	용자(B)	자담	
계	개소											

주1) 세부내역

- 시설비 : 냉장육판매·보관·가공·진열시설, 장비 및 인테리어 개·보수비 등
- 정부지원없이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는 별도표시

주2)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⑥ 축산물종합처리장·공판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사업 >

1. 목 적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의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계약 등으로 조기 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모
- IMF영향 및 환율상승 등으로 건설에 소요된 자 부담이 과중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LPC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의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LPC의 안정적인 원료육 확보를 위한 계약농가 확보 등으로 운영활성화 도모
- 사업 당해 연도에 가동 중 또는 가동예정인 LPC에 대하여 지원
- 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 위 :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예산	2001예산안
합 계	사업량(개소)	9	17	19
	사업비	22,533	21,546	26,000
	- 축발(용자)	22,533	21,546	26,000
	- 자부담	-	-	-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사업량	2개소	3개소	5개소
	사업비	15,533	12,979	21,000
	- 축발(용자)	15,533	12,979	21,000
	- 자부담	-	-	-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사업량	7개소	14개소	14개소
	사업비	7,000	8,576	5,000
	- 축발(용자)	7,000	8,576	5,000
	- 자부담	-	-	-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부서 : 시·도지사
-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
 - 시·도 : 축산물유통 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나. 사업내용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경영안정자금]

(1) 2001년 지원계획 : 21,000 백만 원(금리 5%/년,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규모 LPC 경영안정자금: 3개소 15,000백만 원(개소당 5,000백만원 이내)
- 중규모 LPC 경영안정자금: 2개소 6,000백만 원(개소당 3,000백만원 이내)

* 단, 농산물 수매, 유통수매자금(농안기금, 돼지부분), 규격 돈 생산 출하촉진자금 등을 기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액만큼은 2중 지원 방지차원에서 감한 후 지원

(2) 지원대상

-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운영중인 LPC
- 축산발전기금융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 육가공 임차업체가 원료구매자금 지원 요청 시에는 업체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

- LPC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 고금리 차입금 충당, 원료구매자금 등)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서(자금사용계획 등)를 첨부하여 도에 신청(별표 1 서식)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경영안정자금 지원
- ※ 기 지원 받은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상환기한 연장조치는 검토 가능함)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1) 2001년 지원계획 : 5,000 백만원

- 금리 5~8%/년(생산자단체 5%, 일반8%), 1년 거치 일시상환

(2) 지원기준

- 대금정산일 4일, 소 2,500천원/두×70%, 돼지 200천원/두×70%
 - 소 : $1095\text{두} \times 40\% \times 4\text{일} \times 2,500\text{천 원} \times 70\% = 3,000\text{백만원}$
 - 돼지 : $10,873\text{두} \times 40\% \times 4\text{일} \times 180\text{천 원} \times 70\% = 2,000\text{백만원}$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으로서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어야함
- 계통출하를 통한 생축(소, 돼지)을 도축하여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하여야함
 - 도축을 하지 아니하고 지육을 반입하여 경매하거나, 경매실적이 없는 곳 제외
 - 경매와 이용도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용도축 부분은 제외
 - 쇠고기 부분육 상장 경매 시에는 부분육 유통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원함
- 수탁품에 대하여 출하 자에게 지불하는 대금을 경락일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정산하여 송금 할 수 있는 곳
- 축산법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가 없어야 함
- 축산발전기금 용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3) 지원자금 용도 및 운용

- 수탁 판매품의 거래인(중·도매인 및 매참인)을 통한 판매로 자금회수지연(통상적인 외상판매)에 따른 출하농가 지급자금으로 운용
- 출하가축을 도축·경매하여 경락 익일까지 정산하여 출하 자에게 송금하여야 함
- 사업시행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별표 3]
-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 가축출하계획, 축산물 판매(경매) 계획, 도축 및 등급판정현황, 경락대금 정산방법, 경영수지분석 현황
-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업체별 자금배정
- 사업대상자는 자금 집행기관에 용자 신청을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

다. 행정사항

(1) 대출심사 및 대출실시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축협 포함)
- 사업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관할 농협)에 대출신청
 - 지역 축협에 신청 시에는 도 지역 본부와 사전협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대출관련규정 및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실시

(2)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도) 책임 하에 사후 관리
 -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사후 관리 중 실시요령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조치하고 농림부에 보고

(3) 기타사항

- 보고(시·도 → 농림부)
 - 사업 신청서 제출 : 2000.2월말
 - 사업추진현황(실적)보고 : 분기별 실적을 다음분기 15일 이내에 보고[별표2]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즉시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
- 도지사는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6. 2002년 사업시행요령 : 2001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별표 1]

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인)
- 사업개요 :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분	소				대 지				비 고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2000실적									
2001.1/4									
4/4분기									
2000합계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종	단위	2001 계획					2000년 실적	부분육 거래량	
		1/4	2/4	3/4	4/4	연간		두수	%
소	두수								
	거래금액								
대 지	두수								
	거래금액								

4 자금운영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간소요액	원료구매자금	경영자금	LPC건설 부채상환	기 타 ()	기 타 ()
2000년도						
2001년도						

5. 축산물 가맹점 및 직판장 확보 계획

구분	가맹점				직판장				비 고
	'99	2000	2001	2002이후	1999	2000	2001	2002이후	
당년실적									
누계실적									

※ LPC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표 2]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 추진실적 보고

1. 자금 집행 실적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용자금) (A)	실 적		(B/A)
		()분기	누 계(B)	
금 액				

2. 계통출하 실적

(단 위 : 두)

축 종	계 획(A)		실 적(B)		(B/A)
	()분기	누 계	()분기	누 계	
소					
돼 지					

주) 계통출하에 의한 도축·경매 실적을 기입

3. 도축 및 등급판정 실적

○ 소, 돼 지

(단 위 : 두)

구 분	도축두수			등급판정두수(D)	(C-D)
	수 탁	이 용	계(C)		
계 획(A)					
누계실적(B)					
(A-B)					

※ 총 도축 및 등급판정 실적으로 작성하되, 소·돼지를 각각 별도 작성

4. 출하대금 정산 및 대금지급 소요기간(분기 중 총 출하두수 대상)

(단 위 : 두)

축 종	()분기중 대금정산			누 계		
	2일이내	3일이상	계	2일이내	3일이상	계
소						
돼 지						
계						

※ 경락일로부터 대금 지급일 까지 소요일수

[별표 3]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사업운영 계획서

작성자 : ○○ 대표

(인)

1. 가축출하(원료확보) 계획

(단 위 : 두)

축 종	2001 계 획			2000 실 적			(A-B)	
	계통출하	기타	계(A)	계통출하	기타	계(B)	두 수	%
소								
돼 지								
계								

※ 계통출하 : 생산농가가 농·축협을 통하여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 생축을 출하·도축·경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2. 축산물 판매(경매) 계획

축 종	단 위	2001 계 획					전년 실적 (B)	(A-B)	
		1/4	2/4	3/4	4/4	연간(A)		두수	%
소	두수								
	거래금액								
돼 지	두수								
	거래금액								
거래금액									

주) 두수 및 거래금액은 국내산이며, 수입육 경매는 제외한다

3. 도축 및 등급판정

가. 소

(단 위 : 두)

년 도	도 축			등급판정(D)	(C-D)
	수 탁 경 매	이용도축 및 기타	계(C)		
2000실적(A)					
2001계획(B)					
(A-B)					

나. 돼 지

(단 위 : 두)

년 도	도 축			등급판정(D)	(C-D)
	수 탁 경 매	이용도축 및 기타	계(C)		
2000실적(A)					
2001계획(B)					
(A-B)					

4. 국내산 대금정산 및 판매

(단 위 : 백만원)

축 종	2001 거래대금 지급기간 (예정)	2001 판매 계획			2000 실적		증 감 (C-D)
		1일평균 거래금액 (A)	거래인 외상일수 (B)	외상거래 운영금액 (C=A×B)	거래대금 지급평균 소요기간	연도말 거래인 미수금 잔액 (D)	
소							
돼 지							
계							

주) 거래대금 지급기간 : 경락일로부터 출하조합(농가)에 정산하여 대금 송금일 까지 소요되는 일수(대금정산 및 판매는 국내산에 한함)

5. 판매 및 거래

년 도	거래인수			1일 평균거래금액			외상거래 기간(C) (평균)	운영자금 총소요액 (A×C)+ B
	중· 도매인	매참인	계	외상거래 (A)	현금거래 (B)	계		
2000실적 2001전망	명	명	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일	억원

6. 경영 손익

(단 위 : 백만원)

년 도	수 입				지 출 (B)	손 익 (A-B)
	상장수수료	도살·처리수수료	기 타	계(A)		
2000 실적 2001 전망						

주) 2000년 실적은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 ⑦ 오리 도축·가공시설 설치사업 >

1. 목 적

- 오리의 위생적인 도축, 가공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오리고기 공급
- 도축장에서의 오리도축 의무화지역 확대에 대비 위생적인 오리 도축시설 기반 구축
- 고품질의 차별화 된 제품생산으로 사육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위생적인 오리고기 유통을 위한 오리도축·가공시설 설치로 양축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체계 확립
 - 오리고기의 가공 및 저장기능 보완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여
 - 오리고기 가공제품 개발로 신규 수요창출 확대 및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도모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오리도축·가공산업의 육성 발전도모
 -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정(농림부 고시 2000- 34호, 2000.05.02)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39조, 제 57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0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1999까지	2000	2001예산안	계
사 업 량	-	2개소	2(2)	2
사 업 비	-	5,610	14,166	19,776
- 축 발	-	4,000	11,653	15,653
보조	-	-	-	-
용자	-	4,000	11,653	15,653
- 지방비	-	-	-	-
- 자부담	-	1,610	2,513	4,123

* ()내서는 계속사업임.

5. 2001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오리의 생산, 도축·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로서 오리 도축장 경영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자

(2) 사업기간 : 2000.1~2001.12(2년)

(3) 사업내용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용도 : 오리도축시설·저장보관시설·가공시설, 오·폐수시설 및 오리도축을 위한 기계·장비구입비 등(부지매입비 제외)
- 지원한도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조정
- 세부 사업별 지원기준
 - 오리 도축시설 : 용자 80%, 자부담 20%
 - 오리고기 가공시설 : 용자 70%, 자부담 30%
 - 오·폐수 처리시설 : 용자 100%
- * 용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4) 2001년도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예산안			합계		
	용 자	자 담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합 계	4,000	1,610	5,610	11,653	2,513	14,166	15,653	4,123	19,776
혜성농산	1,000	338	1,338	2,433	633	3,066	3,443	971	4,404
화인코리아	3,000	1,272	4,272	9,220	1,880	11,100	12,220	3,152	15,372

※ 2001년도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없음

나.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유통과(02-500-2691~2)
- 시·도 : 축산물유통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3) 사업시행절차

-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승인한 후 사업시행(세부사업 승인 결과는 즉시 농림부에 보고)
-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추진계획(일정), 원료확보·판매망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시·도지사는 필요시 추가자료 보완지시)
- 사업시행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관련한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은 시·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의거 집행
 -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5454호)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99.9.8)에 따름

(4)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규모조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로 승인요청
- 기본계획하의 경미한 사항의 세부내역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승인

다.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
- 사업 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분기 15일까지 보고
-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 (사진 첨부 등)
-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성고 확인 등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음

6. 2002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추가사업 계획 없음

- 신규 사업자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이 없음

III. 축산물등급판정

< 축산물등급판정 >

1. 목 적

-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 육류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육 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등급거래지역(고시지역)의 확대
 - 쇠 고 기 :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전국 확대
 - 돼지고기 :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의무지역 확대
- 등급판정 교육 및 홍보 실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9조 제6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94~'99	2000	2001(예산안)	2002~2004
축산물등급판정사업				
- 사업량	1건	1	1	
- 사업비(보조)	37,231	6,568	10,473	

5. 2000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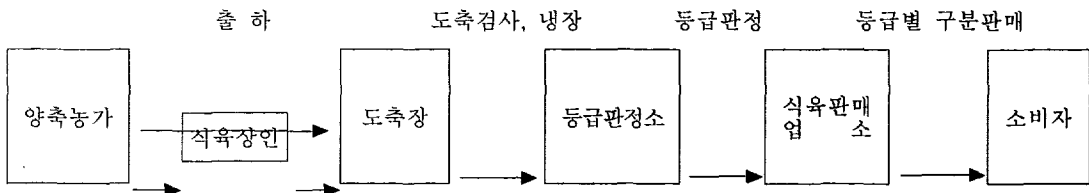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돼지 등급판정 실시
 -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
 - 등급판정 기술 개선
 -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2000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0,473	10,473	-	-	-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10,473	10,473	-	-	-

< 추진체계 >

- 사업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
- 사업 담당기관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Tel. 02-504-9436~7)
- 사업 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2-574-2541~3)
- 등급판정 절차(소)



< 행정사항 >

-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축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검사 및 축산법 제2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제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출장소) 검사

6. 2002년도 사업신청안내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2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IV. 축종별 자율사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이상길, 행정 사무관 민연태)입니다.

1. 목 적

- ① 축협조합 경제사업활성화지원 : 축협조합을 경제·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축협조합 중심의 축산물 생산·유통계열화 체계구축으로 축산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보장
 - 경영개선과 개혁의지가 있는 조합에 경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건전화 및 책임경영 유도(협동조합개혁 완수)
- ② 중앙회 사업장 인수지원 : 중앙회의 사료공장 등 경제사업장을 축협 조합이 공동으로 인수케하여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하고 일선 축협조합을 지역 축산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함(중앙회와 일선조합의 경합관계 해소)
- ③ 축종별 자율사업 협의체 육성 : 정부의 획일적이고 직접적인 시장개입 방식을 지양하고,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및 유통인 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율적으로 축산현안 해결기반 구축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① 축협조합경제사업활성화 지원
 - 일선 축협조합을 축산경제·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축협조합 중심의 축산물 생산·유통계열화 체계구축으로 축산농가의 판로확대 및 소득보장
 -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기능 활성화로 규모화·전문화 유도
 - 축산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축산경제의 중심체로 개편
 - 자금의 공급·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합의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지원
 - 일률적 지원방식에서 조합별 주력경제사업 중심 지원방식으로 접근

- 경영개선과 개혁의지가 있는 조합에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건전화 및 책임경영 유도
 - 신용사업 위주의 폐단을 극복
-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조합의 경영 및 기술애로사항 지도
 -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부진할 경우 차등금리적용 및 위약금 징수 또는 자금회수

② 중앙회사업장 인수지원

- 중앙회사업장을 인수코자하는 조합은 경영이 건실한 조합으로 가급적 중앙회 및 여러조합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추진(컨소시엄 구성)
- 중앙회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유통거점에 속해 있는 조합
- 축산물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합

③ 축종별 자율사업협의체 육성

- 축종별 축산사업 추진협의체 육성
 - 지역별로 일선 축협조합 중심으로 지자체, 협회지부, LPC, 도축·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체 구성 유도
 - 관련축협이나 지자체에 종합 조정·지원조직 설치
 - ※ 예 : 안성지역 농협사업연합회와 평창축협간 한우협력 사업추진
 - 축종별 축협조합연합회와 관련협회, 축산기업중앙회 등으로 축종별로 전국적 규모의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농협중앙회 사업부서가 지원사무국 역할 수행, 집행업무 담당
- 민간자율의 축산사업 추진 여건조성
 - 축종별 축협연합회 또는 전국단위사업 추진협의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과 자금배정 요구권한 부여
 - 관측·생산·출하조정, 수매·비축·유통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Package로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자체사업계획서 수립유도
 - 축종별로 자조적 재원확보기반 강화
 - 현행 임의자조금제도 확대 및 단계적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추진
 - 축발기금 취급수수료중 일부를 자조금으로 적립집토
 - ※ 양돈·양계 자율사업추진협의체에 2001년도에 각각 500억원씩을 Package로 용자 지원하여 시범실시(우유는 낙농진흥회 중심으로 추진)

3.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경위

-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법률 제6018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97	'98	'99	2000	2001
사업비 (용자)	○ 축협조합경제활성화	500 (90개소)	500 (90)	500 (90)	480 (24)	600 (30)
	○ 중앙회사업장인수	-	-	-	-	591
	○ 축종별자율사업협의체	-	-	-	-	1,000

※ ()는 사업량

5. 2001년도 사업시행 요령

① 축협조합경제사업활성화 지원

가. 사업내용

지원규모 : 총 600억원

- 축산발전기금 지원액 600억원, 자부담 150억원
- 축발기금 80%, 조합자부담 20%(Matching Fund 구성)

지원조건

- 운전자금으로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미 운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제자금 소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지원원칙
- 필요시 선정조합의 지원 규모 내에서 분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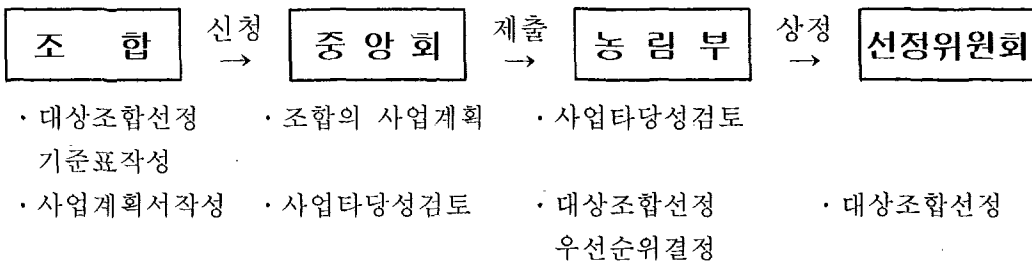
지원사업(자금의 용도)

- 축협조합의 축종별 계열화 참여 축산농가 계통출하 선급금 운영
- 가축계열화, 육류브랜드화, 축산물 수출사업, 출하조절사업 및 기타 유통 활성화사업 참여농가
- 축협조합의 출하조절을 위한 매취사업자금 및 유통사업 운전자금
- 조합소유 도축 및 육(유)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 유통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규모의 10%이내)
- 축협조합 자체브랜드 개발 및 홍보관련 비용 등 유통활성화 사업관련 추진비용
- 사료가공공장·축분처리공장 활성화 등 조합경제사업 운영자금

나. 사업신청 및 선정기준

1)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조합은 지원사업(자금용도)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조합선정기준표”와 함께 중앙회(지역본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는 지원사업(자금 용도)에 적합한 조합의 주력 경제사업에 대하여 장단기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작성
 - 자금을 무리하게 신청하면 선정에서 탈락되며 선정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조치
- 중앙회는 조합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을 첩부하고 사업신청 조합의 “대상조합선정기준표”에 의거 서열을 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사업계획서” 및 “대상조합선정기준표”에 의한 사업대상 후보조합을 확정 선정하여 선정위원회에 추천
- 선정위원회는 추천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조합 선정



2) 선정기준

- 유통시설 보유 등 유통거점으로서 가능성이 큰 조합
 - LPC, 가공장, 도(계)축장, 일정규모이상 축산물판매장, 냉장·냉동비축창고 및 자체생축사업장(유통사업 참여) 등
- 축산물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고 지역축협의 전문화 촉진을 위해 업종 조합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조합
 - 한우브랜드 생산, 한우계열화사업, 한우전문판매점 및 TMR 사료 공장 운영 등

- 조합자체적으로 수직적·수평적 계열화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 농가생산 축산물을 조합을 통해 출하하는 조합
- 자체브랜드를 갖고 브랜드육을 농가로부터 공급받아 자체 판매망을 통해 출하하는 조합
- 축산물 가격안정 및 축산농가 사육의욕 고취를 위해 수매비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축산분뇨처리공동시설 사업 등 조합원 편의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조합

3) 우선순위 결정방법

- 조합의 경영상태, 사업수행능력 및 개혁의 정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항목별 3~5개 기준을 정하고 기준별 점수 배정
 - 평가항목(8개) : 자본금현황, 결산현황, 경제사업규모, 유통시설보유, 편의사업 수행여부, 경제사업 참여도, 개혁추진상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대상조합 선정기준표”에 의거 대상조합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조합의 서열을 점수에 의거 평가
 - 중앙회에서 1차 평가후 농림부가 2차 평가 실시
 - 대상조합이 작성·제출한 “선정기준표”에 대해 서류심사를 원칙으로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조사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 『축협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대상조합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상조합 결정

4)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농림부 축산국장을 위원장으로 『축협조합 경제사업활성화 사업대상조합 선정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
 - 농림부(4) : 축산국장(위원장), 축산국 과장 3인
 - 중앙회(2) : 담당상무 및 부장
 - ※ 간사 : 농림부 축산정책과 담당 사무관
- 임무 : 대상조합선정, 축협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내용 심의
- 의결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다. 자금의 운용관리

1) 자금운용 실적 관리

《 인정기준 》

- 자금운용 실적관리는 자금운용 형태별로 인정기준을 정하여 자금운용 실적에 따라 제재 및 평가 등에 활용키 위한 것으로
- 자금운용실적은 선급금, 매취사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운용형태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액으로 함.

□ 농가에 대한 출하 선급금

- 조합을 통한 축산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 약정금액, 약정물량, 지원금리, 지원기간, 약정위약시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 약정금액 및 약정물량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조합 여건에 따라 5.0%이하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조합이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간내에서 조합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사항 :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 약정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판매선급금, 가공선급금, 기타선급금의 차변누계액 (전년도 이월액 차감)

□ 매취사업자금

- 출하조절 및 수매비축을 위한 조합의 축산물, 생축 매입자금
-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위한 매취사업자금
- 가공공장 등의 원료매입자금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판매품, 생축, 가공원재료 등의 차변누계액(전년도 이월액 차감)

□ 조합 운영자금

- 거래처에 축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미수금
- 가공공장의 제품매출에 따른 가공미수금
- 사료공급 등 구매사업과 관련한 미수금 및 선금금
- 농가에 단순 가축 입식을 목적으로 지원한 자금
- 기타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소요된 부문 등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자금의 해당 금액의 평잔

□ 시설개보수 자금

- 가공공장, 판매장 등 유통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운용실적 인정 : 가공공장, 판매장 등 유통시설에 대한 개보수로서 지원규모의 10% 이내에서 사용한 자금을 시설개보수 대금 지급시기부터 자금의 상환기일까지 실적 인정

2) 자금운용계획의 변경

- 수급 상황 등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자금운용)의 20% 이내에서 조합 자체적으로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
- 20% 초과시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중앙회는 농림부에 동 변경 내역을 보고

가) 조합에 대한 제제

□ 위약금 징수

- 연간 자금운용실적이 축발기금 지원금액의 100% 미만인 경우 및 부당 운용한 경우에는 미달액과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대출 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연도말 기준 평가시 위약금 징수
-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 / 365

□ 지원자금 회수

- 연도말 평가시 연간자금운용 실적이 축발기금 지원액의 25% 미만인 경우 : 지원금액 전액을 회수
- 연도말 평가시 연간자금운용실적이 축발기금 지원액의 25%~100% 미만인 경우 : 자금지원규모를 조정
- ※ 조정(회수) 금액 = 지원금액 - 운용실적
- 자금운용평잔이 사업자금 평잔의 30% 미만인 경우 자금 규모 조정

나)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으로 운용한 경우 계통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하여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 위약금=【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 사용일수/365×(연체금리 - 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에 전액 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 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다)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연간 자금운용 내역을 익년 2월에 평가, 중앙회가 징수하여 익년 3월까지 축발기금에 납부
- 축산농가에 대한 위약금은 조합이 선급금 회수시에 징수하여 중앙회(지역본부)로 전금하며 중앙회는 연간 발생액을 익년 3월까지 축발기금에 납부토록 함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 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합이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조합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 조합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차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 부담

4) 계정처리

- 경제사업활성화 자금 관련 발생하는 계정은 반드시 별도의 보조부를 작성 비치하여 구분 계리 하여야 함(실적인정기준)

업무내용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자금조성	자금차입 (축발기금)	일시자금	경제사업차입금 축산발전기금운전차입금 경제사업활성화자금 시설자금차입금 축산발전기금시설차입금 경제사업활성화자금
	조합자부담금	기표 없음(보조부에 비망기록)	
자금운용	선급금	판매선급금 가공선급금	현금 또는 ○○예금
	매취사업	판매품 생축 가공원재료 등	현금 또는 ○○예금
	자체운영자금	판매미수금 가공미수금 ○○미수금 기타사업선급금 등	○○품 판매대금등 현금 또는 ○○예금
이자납부	농가징수	현금	사업외수익(수입이자 < 경제 활성화자금이자 >)
	축발기금	사업외비용(지급이자 < 경제 활성화자금이자 >)	일시자금
위약금	농가징수	현금	가수금
	농가위약금전금	가수금	일시자금
	조합위약금전금	사업외비용(잡손실 < 경제 성화자금위약금 >)	일시자금

라.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점검 및 평가

1) 사업추진 실적보고

- 자금운용상황, 사업실적, 경제사업활성화 추진성과 등이 포함된 당해 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반기 및 연도말 기준으로 보고
 - 조합 → 중앙회 : 반기말(연도말) 익월 15일까지
 - 중앙회 → 농림부 : 매반말(연도말) 익월 30일까지
-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식 : “붙임” 참조

2)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지도·점검

-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현지 점검을 통하여 조합의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부적절한 사업추진을 조기에 사전차단)
 - 사업추진과정에서 겪게되는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기술지원체계 및 유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점검사항
 - 사업추진 조합이 조합에서 수립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함과 자금운용을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점검표 붙임 참조)
 - 중앙회(지역본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농림부와 합동점검
 - 점검결과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 등을 미 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을 촉구 하고 미 이행시는 제재 방안 강구시행
 - 연도중 2회 점검 실시

3) 사업 평가 및 평가결과 조치

□ 평가내용 및 절차

- 자금운용실적 및 사업추진성과 등에 의해 평가하되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
 -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배점을 부여하고 합계액으로 평가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치	비 고
○ 자금운용실적	50점	100%달성	지도·점검결과 10 내서 가점
○ 경제사업실적성장치	30점	20%성장	
○ 사업계획대비추진실적	20점	100%달성	
합 계	100점		

- 조합이 자체적으로 평가표(붙임 참조)에 의거 평점을 부여하여 중앙회(지역본부→ 축산기획부)에 제출하고 중앙회는 사실여부를 확인(필요시 현지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하며 농림부에서 검토 후 확정

- 평가시기 : 익년도 1~ 2 월중

□ 평가결과의 활용

- 우수조합은 차년도 지원금리를 인하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규모 조정(우수조합은 신청에 의거 차년도 사업자금 추가지원)

② 중앙회사업장 인수

- 대상 : 일선 축협조합
- 지원내용 : 축협조합이 중앙회의 사업장 인수, 중앙회 및 조합간 공동출자시 인수자금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10년 상환
- 지원금액 : 인수대상자산의 장부가액 기준 50%까지를 지원하며,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비율내에 공동인수 조합수에 의거 균등액으로 나누어 지원하되 자기자본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축산대표이사)은 2001년 3월 31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작성·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③ 축종별 자율사업 협의체 지원

- 권역별로 일선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생산자협회, LPC, 도축·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체 구성 유도
- 권역별 축산사업 추진체를 상호 연계하고, 축종별 축협조합협의회와 관련 생산자협회, 축산물유통협회 등으로 전국적 규모의 축종별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 - 협의체를 통해 사육두수 조절, 계통출하, 냉장·부분육 생산, 브랜드개발, 판매망 확보 등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까지 일관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
 - ※ 양계산업 협의체의 경우 양계축산조합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노계 전문도계시설, 계란공판장, 계란가공 및 집하장, 프랜차이즈 판매장 등 유통시설을 공동보유하여 상호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급과잉시 자율적으로 노계도태, 계란폐기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꾀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 추진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협의체 사무국 동시 수행)
- 지원조건 : 연리 0~5%, 3년거치 일시상환
-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장(축산대표이사)은 2001년 3월 31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작성·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사업명 :

※ 본서식을 참고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하되 사업실적(3개년) 자금운용계획(3개년) 자금투자계획을 나타내도록 할것

1. 사업개요 (※ 3~4 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작성)

- 사업목적 및 추진방법
- 사업추진체계
-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계획

사업규모

(1) 향후 3 년간 매출(사업실적)

※ 물량과 금액으로 나누어 동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량(실적) 예측

- 부문별(판매, 구매, 가공 등) 실시코자 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사업종류별·품목별로 작성할 것
- 사업평가지 기준(부진시 위약금부과)이 되므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예측

(2) 원료조달 계획(조합원출하 계획, 매취계획 등)

(3) 판매품(제품)생산계획

(4) 생산물판매 계획(판매처)

(5) 기타(위의 매출액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작성)

손익

(1) 향후 3 년간 추정손익

※ 조수익, 인건비, 사업추진비용 감안 추정

- 부문별(판매, 구매, 가공 등) 실시코자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작성

(2) 부문별 조수익 산출근거

(3) 기타(손익 추정과 관련된 사항)

3. 종합자금계획

자금투자 계획

(단위 : 톤,백만원)

내역	물량	투자액			최초소요 시기	비고
		용자요청	자부담	계		
계						

주)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한 3년간 평균 운영되는 자금(평균 잔액 기준)으로 수립
자부담은 (운영자금)20% 이상 반영

자금운용계획

※ 3년차에 걸쳐 운용형태별로 작성

- 조합원에 대한 출하선급금 운용 및 매취사업자금 등은 취급액기준(전기이월액 차감)으로 하며 미수금 등 단순 조합 운영 자금은 연간 평잔기준으로 작성,(세부추진계획의 자금운용실적 인정기준 참고)

※ 자금운용 세부 계획

- 자금의 연간회전 운용처 등 세부계획을 작성

□ 자금상환계획

- 3년후 상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4. 시설활용 및 장비활용계획

-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설활용 계획 등을 작성

※ 고정투자 수반시 투자내역 기재

5. 기타사항

<붙임 1-1 : 조합일반현황>

1. 사업자

사업자명		조합장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조합원수	

2. 가축사육현황(2000말 기준)

(단위 : 호/두,수)

구분	소		젖소		돼지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시(군)전체								
조합원								

3. 주요 생산현황(2000말 기준)

구분	시(군)주요생산품목	조합주력사업
내용	○ ○	○ ○

4. 사업현황

가.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99	'2000	비고
정	구	매			
		취			
		수			
제	판	매			
		취			
		수			
사	업	계			
		생활물자			
		생축			
		가공			
		가축시장			
		가축개량			
		창고			
		이용			
계					
공계					
신용(예수금)					

- 주) 1. 비고란에 주요내용(품목) 등을 기재할 것
 2. 합계란은 B/S와 일치시킬 것

나.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조 수 익							공제	신용	순이익
	경 제 사 업									
	구매	판매	생활자	가공	기타	계				
년										
년										

5. 시설운영현황

시설명	규모(평)		설치 인도	총 투자액	처리 능력	실적		비고
	부지	건물				물량	금액	

- 주) 1. 시설현황은 개소수별로 작성
- 2. "규모" 및 "총투자액"은 2000기준 작성
- 3. "처리능력"은 1일 처리능력 기입
- 4. 임대차 경우 비고란에 "임차"표시 요망

6. 경제사업관련 자금운용 현황

가. 촉발기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용도	차입액	상환액	잔 액	사용기간

나. 외부자금(정부, 중앙회차입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용 도	차입액	상환액	잔 액	사용기간
계						

대상조합 선정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기준	배점	특점	비고
조합의 경영상태	1.조합의 자본금현황	○ 0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이상	-50 6 8 10		
	2.최근 3년간 결산현황	○ 2개년 연속적자 ○ 1개년 적자 ○ 2년 연속 흑자 ○ 3년 이상 연속 흑자	-50 0 10 20		
	3.경제사업규모	○ 100억원 이하 ○ 200억원 이하 ○ 300억원 이하 ○ 300억원 초과	4 12 16 20		
산지유통 기능	4.유통시설 보유 등 유통 거점으로 사업수행조합	○ 유가공공장 운영 ○ 축산물공판장 운영 ○ 도축장(LPC), 도계장 운영 ○ 배합사료공장 운영	10		
	5.조합원 편의사업 등 수 행	○ 한우계열화, 전문판매점, TMR 사료공장 운영 ○ 농가생산 축산물을 조합을 통 해 출하 ○ 자체축산물브랜드 보유 ○ 수매비축사업추진 ○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수행 ○ 집유일원화사업 참여조합	10		
	6.조합원 경제사업참여도 -구· 판매사업이용조합 원/총 조합원	○ 30% 이하 ○ 50% 이하 ○ 75% 이하 ○ 75% 이상	3 6 8 10		
	7.사업계획의 타당성	○ 미 흡(하) ○ 보 통(중) ○ 적 정(상)	0 10 20		
	계		100		

〈 대상조합 선정기준표 기준실적 산출방법 〉

평가항목	산출방법	실적(현황)
1. 조합의 자본금현황	○ 2000기준 자본계정 대변-차변	()백만원
2. 최근 3년간 결산현황	○ '98, '99, 2000년 결산손익	'98년, (백만원) '99년, (백만원) 2000년(백만원)
3. 경제사업규모	구매, 판매, 생축, 가공, 생활물자 판매 대금+가축시장, 가축개량, 운송, 이용, 창고수익+수탁구·판매가수금누계	()백만원
4. 유통시설보유등 유통 거점으로 사업수행조합	○ 해당되는 기준을 기재 - 생산능력 : 일/톤 - 투자금액 : 백만원 - 종사인원 : 명	○○ 시설 보유운영
5. 조합원 편의사업 등 수행	○ 해당되는 기준을 기재 - 투자금액 : - 사업실적 : - 브랜드명 등 :	○○ 사업수행
6. 조합원 경제사업 참여도	○ 경제사업이용조합원/총조합원 - 구매, 판매, 가공사업 등 이용 조합원(생활물자 이용조합원은 제외) - 구판매가공사업 등 중복이용조 합원은 1명으로 계상 - 이용금액은 연간 100만원 초과 자료 한정 - 이용자별 이용 실적을 첨부	%
7.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을 다음 항목으로 세분 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총 합계를 3으로 나누 어 해당점수에 의거 배점 적용 -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자금운용)의 현실성 - 사업효과(사업확대 등)적 측면	

<붙임3-사업추진실적보고서식>

축협조합경제사업활성화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사업명 :)

200 .(6,12)

○ ○축산업협동조합

1. 사업 추진성과(내용)

○ ※ 상세하게 작성

2. 자금운용 실적

사업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금액			비 고
	축발기금	자부담	계	
사업금액				차입일자:
년간평균	(가)			차입금리: %

자금운용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출하 선급금누계	매취자금 누계	운영자금 평잔	기타 (개보수등)	합계
운용계획 (A)					
운용실적 (B)					(나)
달성율 (B/A)					

- 운용계획(A)은 조합이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운용 계획임
- 선급금 및 매취자금 누계는 전기 이월액 차감
- 자금운용 항목별 실적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 (보조부원장 B/S 등)를 반드시 첨부
- 항목별 운용실적이 사업계획대비 20% 초과 달성의 경우 20%까지만 인정
(단, 사업계획의 자금운용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자금운용실적 산출근거

- 해당근거를 상세히 작성

자금운용실적 달성여부

(단위 : 천원)

축발기금차입액 평잔 (가)	자금운용실적 (나)	자금운용실적 미달액(가-나)	조합의 위약금 해당액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 × (연체금리-정상금리) × 사용일수/365

농가에 선급금 운용에 따른 위약금 징수내역

(단위 : 원)

운용처	지원금액 (A)	운용기간	출하금액 (B)	실적율 (B/A)	위약금 징수액	비고

- 위약금 징수 내역이 과다시 칸을 늘려 작성

2. 사업실적

사업계획(매출)대비 실적

(단위 : 톤,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비 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 계획은 조합에서 기 제출한 “경제사업활성화 사업계획서” 기준임
- 판매, 구매, 가공 등 사업부문에 대하여 부문별로 작성하되 세분화가 필요한경우는 세분화하여 작성

조합의 총 경제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0년말	200 년 (6,12월)	성장율	비 고
합 계				

- 조합의 모든 경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판매 등 사업별로 나누어 작성
- 합계는 조합의 총 경제사업 실적임(B/S, P/L 등 재무제표와 반드시 일치)

4. 기타 의견 및 문제점

축협조합경제사업활성화사업 중간 지도·점검표

점검대상조합	○○축산업협동조합(직인)	
점검일자	2000. . . .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인)

농 협 중 앙 회
(○○지역본부)

I. 자금운용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출하 선급금누계	매취자금 누계	운용자금 평균	기타 (개보수등)	합계
사업계획 (A)					
운용실적 (B)					(나)
달성율 (B/A)					

- 사업계획(A)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운용 계획임
- 선급금 및 매취자금 누계는 전기 이월액 차감
- 자금운용 항목별 실적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 (보조부원장 B/S 등)를 반드시 첨부
- 항목별 운용실적이 사업계획대비 20% 초과 달성의 경우 20%까지만 인정
(단,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I-1. 선급금운용 내역

(단위 : 원)

운용처	지원금액 (A)	운용기간	출하금액 (B)	실적율 (B/A)	운용(금액) 누계	비고
						위약금 징수액 은 별도 첨부

주) 운용처 과다시 칸을 늘려 작성

I-2. 매취자금 운용 내역

(단위 : 원)

운용형태	품목	금액	사용기간	사용일수	금액누계	비고

주) 운용처 과다시 칸을 늘려 작성

I-3. 미수금 등 운영자금 운용 내역

(단위 : 원)

운용형태	금액(A)	사용기간	사용일수 (B)	적수 (A*B=C)	년간평균 (C/365)	비고

주) 운용처 과다시 칸을 늘려 작성

I-4. 기타 운용내역

(단위 : 원)

운용처	금액(A)	운용기간	운용일수 (B)	적수(A*B=C)	년간평균 (C/365)	비고

주) 운용처 과다시 칸을 늘려 작성

II. 자금운용실적 달성여부

(단위 : 천원)

축발기금차입액 평균 (가)	자금운용실적 (나)	달성여부 (가-나)	비고

※ 연도말 평가시 미달시는 위약금 징구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 / 365

Ⅲ. 사업계획(매출)대비 실적

(단위 : 톤,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달성율	비 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 계획은 조합에서 기 제출한 “경제사업활성화 사업계획서” 기준임
- 판매, 구매, 가공 등 사업부문에 대하여 부문별로 작성하되 세분화가 필요한경우는 세분화하여 작성

Ⅳ. 조합의 총 경제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0년말	200. . (점검일 전월)	성장을	비 고
합 계				

- 조합의 모든 경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판매 등 사업별로 나누어 작성
- 합계는 조합의 총 경제사업 실적임(B/S, P/L 등 재무제표와 일치)

V. 자금운용실적 관리대장 작성실태

- 별도 보조부 작성 비치 여부 등

VI. 사업성과 및 사업체계 효율화 방안 지도 내역

- 사업성과

사업추진실적 평가표

항 목	산출식	실적 (A)	기준치 (B)	배점 (C)	평점 (A/B×C=D)	비 고
자금운용 실적	$[(\quad)\text{천원} / (\quad)\text{천원}] \times 100\%$		100%	50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경제사업 실적성장치	$[(\quad)\text{천원} / (\quad)\text{천원} \times 100] - 100$		20%	30		"
사업계획 대비추진 실적	$[(\quad)\text{천원} / (\quad)\text{천원}] \times 100$		100%	20		"
평점계				100		
가점	지도·점검 결과 이행도		양호 불량	10 0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
총 점						

[사업추진실적 평가표 산출방법]

항 목	산 출 방 법	비 고
자금운용 실적	$(\text{선금금누계} + \text{매취자금누계} + \text{미수금평잔} + \text{시설개보수}10\% + \text{고정투자}) / \text{사업금액평잔}(\text{차입금} + \text{자부담}) \times 100\%$	누계는 이월액 차감
경제사업 실적성장치	$(\text{당년경제사업 실적} / \text{전년경제사업 실적} \times 100) - 100$ - 경제사업실적 = 구매, 판매, 생축, 가공, 생활물자 판매대금 + 가축시장, 가축개량, 운송, 이용, 창고수익 + 수탁구·판매가수금누계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text{실적} / \text{계획}) \times 100$ - 사업계획은 대상자 선정 신청시 제출한 계획으로 사업실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함	
지도·점검결과	지도 점검 결과 이행정도에 따라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	중앙회서 산정

주) 실적 및 평점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과장 이주호, 서기관 이승원, 사무관 김창섭) 및 축산물유통과(과장 심상인, 사무관 김정욱)입니다.

I. 축산물안전성 강화

1. 목 적

- 돼지콜레라, 구제역, 닭뉴캐슬병 등 주요 악성 가축질병 근절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의 위하여 민간 방역기능 강화를 지원, 민·관 공동방역체계 구축
- 양축농가에게 품질이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공급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①가축질병 근절대책

-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목표 달성을 위하여 강도높은 근절대책 지속 추진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농장채혈, 교육 홍보, 소독약품 공급, 신고포상금 등
- 주요 가축전염병 5종(구제역 등)의 근절을 위한 민간차원의 방역활동 지원
 -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
 - 근절대상 : 구제역,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가금인플루엔자

②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시설개선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설치 및 구입비 지원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비용의 부담)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99	'00	'01	2002~2004
가축질병 근절대책	사업량	1,875	1,880	1,940	6,000
	예산	7,625	7,278	9,853	30,000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체 시설개선	사업량	-	-	14개소	-
	예산	-	-	4,900	-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가축질병 근절대책

< 사업개요 >

(1) 사업종류

- 100두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원사업
-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 사업
-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사업
- 농가 방역교육 및 홍보사업
- 전염병 발생 신고 및 방역관리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
-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2) 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세부 사업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 접종요원 : 접종시술비, 차량운영비, 식비 ○ 예방접종기자재(방역복, 주사기 등) 공급	보조 100%
○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	○ 방역본부 시군요원의 채혈비 및 기자재 지원 ○ 검사대상 :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	보조 100%
○ 소독약 공급	○ 구제역 전국 일제소독을 위한 소독약 공급 ○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약 공급	보조 100%
○ 교육 홍보	○ 순회교육, 리후렛, 답화문, 전문지 광고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 지원	보조 50~100%
○ 신고포상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신고 포상금 ○ 이동제한 위반, 예방접종 미 실시 등 방역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당 10~100만원 지급
○ 방역지원본부 운영 및 장비	○ 사무국·도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 시군 지부의 운영비 지원	총사업비의 일부 정액보조

(3) 2001년 가축질병 근절대책 예산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지원사업비			비고
		계	기금보조	기금용자	
○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1,580천두	2,756	2,756		
○ 농장채혈 및 기자재 공급	360천두	2,420	2,420		
○ 소독약품 공급	450천호	2,988	2,988		
○ 교육 홍보		424	424		
○ 신고포상금	250건	50	50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1,215	1,215		
- 운영비	129개소	900	900		
- 장비구입비	중	315	315		
계		9,853	9,853		

* 사업별 세부실시요령은 추후 별도 송부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세부사업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협조기관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 기자재 등 구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술비 등 지급 : 시도지사	농협
○ 농장채혈 및 실태조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도, 농협
○ 소독약 공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도, 농협
○ 교육 홍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회, 시도, 농협
○ 신고포상금	○ 시도지사	시도, 농협
○ 방역지원본부 운영 및 장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2) 사업시행절차

세 부 사 업	사 업 시 행 절 차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 시도지사가 예방접종요원을 동원, 예방접종 및 시술비 등 지급 - 사업(접종)기간 : '01.1~2 (2개월), 01.3부터 예방접종 중지 ○ 방역본부는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공급
○ 농장채혈 및 기자재 공급	○ 방역본부는 시군 방역요원을 동원, 농장 사육가축의 채혈을 실시하여 혈청검사(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 구제역) 의뢰 - 검사물량 : 구제역 60천건, 돼지콜레라·오제스키 300천건 ○ 방역본부에서 이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 및 기자재 공급
○ 소독약 공급	○ 방역본부는 구제역 일제소독, 돼지콜레라·닭뉴캐슬병 발생 지역 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구매 공급
○ 교육 홍보	○ 방역본부 주관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교육 및 홍보 실시 ○ 방역본부는 축종별 단체와 협조, 축종별 방역 순회교육
○ 신고포상금	○ 시도지사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발생 신고자 및 이동제한,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유형별 1건당 10~100만원)
○ 방역지원본부 - 운영비 - 장비구입비	○ 운영비 : 연간 사무국 및 도본부 인건비·운영비, 군지부 운영비중 일부(정액) 지원(부족분은 자체 충당) ○ 장비 구입 : 컴퓨터, 방역차량, 휴대용 냉장고 등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사후관리 주관기관

세 부 사 업	사 후 관 리 주 관 기 관	비 고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 기자재 등 구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술비 등 지급 : 시도지사, 시장군수	
○ 농장채혈 및 실태조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소독약 공급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교육 홍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신고포상금	○ 시도지사	
○ 방역지원본부 운영 및 장비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방역지원본부 방역장비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27조 별표에 의한 기 준 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 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 사용불가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 등으로 사 용불가시는 자담으 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 기등으로 재산의 용 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및 회수처분할 수 있음

(2) 사업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기한 및 보고서식 등은 추후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시달시
별도 송부 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은 2002. 2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시설개선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시설·장비 개선 및 확충 소요자금 지원
-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는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및품목허가지침』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2) 사업지원대상 :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14개소)

(3) 2001년 사업비 내용

- 사업비내용 : 개소당 700백만원(축발기금 용자 350, 자담 350)
- 지원조건 : 축발기금 용자 50%, 자부담 50%
 - 용자조건 : 연리 8%, 5년거치후 5년 균분상환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자 담
		계	용자	
14개소	9,800	4,900	4,900	4,900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031-467-1959)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02-500-269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031-467-1959)
- (사)한국동물약품협회(031-707-2470)

(3) 사업시행기간 : 2001. 1.1부터 2001.12.31까지(1년간)

(4) 사업시행절차

- 사업대상자는 별표1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01.1.15일까지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제출
-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01.1.2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사업별로 '01.2.10일까지 최종 확정하여 시달

(5) 사업시행 세부요령

- 토목·건축공사 등 시설개선은 경쟁입찰에 의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시공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1억이상 공사·장비 입찰시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반드시 입회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실시
 - 단, 토지구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지원금은 기성고에 의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일지를 작성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록유지
- 기계·장비 구입비 등 사업비 집행시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축발기금운영규정 제14조제7항에 의함)
 - 불가피하게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와 시공자(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첨부할 것
 - 특히 장비의 경우 A/S기간이 2년이상인 기종 선종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시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여부를 승인토록 할 것
- 사업변경의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업주관기관에서 결정·추진하고, 중요 변경사항은 농림부에 보고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의함
 - 사업완료후 사업의 실적과 집행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 농림사업시설·장비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도말(회계연도말) 또는 사업완료보고 접수후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별표2 서식에 의거 매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5일까지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 보고
 - (사)한국동물약품협회는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등에 대한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후 1개월이내
 - 사업정산보고서 (사진 첨부 등)

<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사후관리담당기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장비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 사용불가	사후관리기간중에 재산파손 등으로 사용불가하는 자담 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 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 관리자는 관리전환 및 회수처분할 수 있음

[별표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시설개선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 업체명 :
- 대표자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FAX :

2. 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비 (천원)		
	합계	용자	자담
합계			
○ 시설			
○ 장비			

* 구분란의 시설 및 장비내역은 사업추진계획서에 의거 세분화하여 기재

3. 월별추진계획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시설												
○ 장비												

[별표 2]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시설개선사업 추진상황(정산) 보고

1. 일반현황

- 업체명 :
- 대표자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 FAX :

2. 사업추진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용 자	자 담
합 계						
○ 시설						
○ 장비						

* 구분란의 시설 및 장비내역은 세분화하여 기재
 ** 사진첨부

II. 가축공제

1. 목적

-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폐사 가축의 불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 질병 조기발견 및 축사시설등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화재등 재해예방

2. 추진방향

- 소, 돼지, 말의 전국확대에 이은 안정적인 공제사업 추진
- 공제대상 축종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 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료의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	2001(예산안)	2002
사 업 량	소	98	124	130	
	돼지		750	1,500	
	말		2	1	
	계	98	876	1,631	
사 업 비	계	3,182	8,284	9,185	
	보조 융자	1,641	4,344	4,833	
	지방비			-	
	자부담	1,541	3,941	4,352	

※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대상가축 : 소(생후 6개월령 이상), 말(경주용 중빈말), 돼지
- ※ 공제대상 가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 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단위도 가능)
- 공제금 지급 범위

공 통	소	말	돼 지
-전염병을 제외한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 -재해(수해, 풍해, 낙뢰)로 인한 폐사 ※ 정부의 재해대책 보상을 받은 경우 손실액의 차액 지급 -화재로 인한 폐사	-부상, 난산, 산욕 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부상범위: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정액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사업주관 기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종모우)	-2년 연속 불임 되어 사업주관 기관이 지정한 수의사로부터 불임판정을 받은 경우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에 의한 부상	-화재, 풍수재로 인한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내용 및 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 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관리비(소) : 축발기금 보조 3,700원/두(이표 700, 이표관리 3,000)
- 2001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1,631천두	9,185	4,833			4,352
○ 납입공제료		8,704	4,352			4,352
- 소	130	5,610	2,805			2,805
- 말	1	420	210			210
- 돼지	1,500	2,674	1,337			1,337
○ 관리비(소)		481	481			-

※ 사업비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 사업주관 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사업시행절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실시 요령에 의한 세부시행 계획과 약관등을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하고 지역조합(업종조합)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지역조합(업종조합)에서는 공제가입 대상자로부터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권을 발급한다.
 - 농협중앙회는 월별자금 계획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한다.
- 교육 및 홍보
 - 사업주관 기관은 공제사업 대상 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입대상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한다.

< 행정사항 >

- 농협중앙회는 선진국의 가축공제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가축공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한다.
- 시·도(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가축공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 농협중앙회는 가축공제사업 매월 추진실적을 농림부에 보고한다.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협중앙회에서 2002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위생과(과장 이주호, 사무관 김창섭, 사무관 장기윤)입니다.

I. 축산물검사

1. 목 적

- 축산물(식육 및 우유 등)의 위생검사 및 안전성확보로 국민위생 수준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의 차별 없는 검사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처리를 위한 위생검사 및 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5조(수입 축산물의 신고 등) 및 제19조(출입·수거·검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업량	-	-	200점	160점	417점	
사 업 비	계	16,607	7,276	7,246	6,890	26,160
	보 조	-	3,788	3,788	3,750	13,080
	용 자	-	-	-	-	-
	지방비	-	3,488	3,458	3,140	13,080
	자부담	-	-	-	-	-

※ 2002년 이후 매년 4,360(검사장비 3,140, 재료비 1,220) 백만원 년차적 지원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축산물검사 장비 지원(26종 160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축산물검사장비 구매 예산지원
- 장비내역(세부내역 별표 1.)
 - 잔류물질검사기 등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장비 7종 29점 455.5 백만원
 - 가공품성분검사기 등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6종 57점 1,145.5 백만원
 - 체세포수 검사기 등 원유검사 장비 5종 17점 661 백만원
 - 미생물분리동정기 등 식육중 미생물검사 장비 4종 24점 546 백만원
 - 냉동조직절편기 등 기타 검사장비 4종 33점 333 백만원

(2) 검사재료비 지원(610백만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 및 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등
 - 사업량 : 소 1백만두, 돼지 12백만두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원유검사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및 검사장비 검증
 - 검사대상 : 원유중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유지방)
 - 사업량 : 약 1,56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원유검사 :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 참조
 - 검사장비 검증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원유검사장비 보정용 표준용액을 생산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에 제공하고 원유검사실시기관은 주기적으로 자체장비 및 집유업체 장비 보정 실시
 - 검사기관
 - 원유검사 : 시·도지사 소속 원유검사실시기관
 - 검사장비 검증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 사업량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약 10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요령(농림부 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1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식육중 미생물 검사 요령(농림부 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가공장에서 생산 또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6,000건
- 검사내용 : 검사기준은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 규정에 따르며, 2001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검사 재료비 】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도축검사	13,000 천두	25,000	시·도별 사업물량 확정 후 배정
원유검사	1,560 천건	410,640	
식육중 미생물검사	110 천건	75,000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100 천건	80,175	
축산물가공품검사 (수거검사)	6 천건	19,185	
계		610,000	

표 1. 2001년 축산물검사 장비 구입 예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 비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계	국 비	지 방 비
가공품검사	가공품성분검사기	9	216	108	108
	저온저장고	15	480	240	240
	항온항습기	15	300	150	150
	자동초자세척기	8	245	122.5	122.5
	미량성분분석기	7	690	345	345
	이온크로마토그래피	3	360	180	180
	소 계	6종	57	2,291	1,145.5
잔류물질검사	GC	2	120	60	60
	GC/MS	2	125	62.5	62.5
	잔류물질검사기	5	226	113	113
	유해가스배출장치	8	100	50	50
	시료전처리기	6	240	120	120
	가스발생기	1	20	10	10
	무정전장치	5	80	40	40
소 계	7종	29	911	455.5	455.5
원유검사	가수검사기	6	210	105	105
	체세포수검사기	1	180	90	90
	세균수검사기	3	372	186	186
	유성분분석기	3	480	240	240
	초순수제조기	4	80	40	40
소 계	5종	17	1,322	661	661
미생물검사	미생물분리동정기	7	640	320	320
	현미경	9	300	150	150
	ELISA(효소면역판독기)	3	52	26	26
	유전자분석기	5	100	50	50
소 계	4종	24	1,092	546	546
기 타	냉동조직절편기	7	192	96	96
	자동조직처리기	9	200	100	100
	혈액분석기	5	120	60	60
	LCD프로젝터	12	154	77	77
소 계	4종	33	666	333	333
합 계	26종	160	6,280	3,140	3,140

표 2. 2000년 시·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장비명	필요 대수	단 가	총 액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가공품 검사	가공품성분검사기	9	24					1			1	2		1			1	1		2
	저온저장고	15	24								1	2	2	3		2		2	3	
	향온항습기	15	20				1	1	1	1		3		3		2		2	1	
	자동초차세척기	8	35			1	1				1					2	1	1		1
	미량성분분석기	7	115			1	1	1			1		2		1		1			
	이온크로마토그래피	3	120		1															1
잔류물 질	GC	2	60								1	1			1					
	GC/MS	2	125								1									1
	잔류물질검사기	5	45.2					1			1		1			1			1	
	유해가스배출장치	8	10								4			1		1		2		
	시료전처리기	6	80								1				2		1			2
	가스발생기	1	20								1									
	무정전장치	5	10								1	1		1			1	1		
원유 검사	가수검사기	6	14				1	1			1	2				1				
	체세포수검사기	1	180													1				
	세균수검사기	3	124										1				1		1	
	유성분분석기	3	160													1	1		1	
	초순수제조기	4	20								1	1	1			1				
미생물 검사	미생물분리동정기	7	80		1				1		1	1		1	1			1		
	현미경	9	30			1	1		1		1	1		1		1	1	1		
	HISA(효소반향판독기)	3	26				1	1					1							
	유전자분석기	5	20								1	1		1		1		1		
기타	냉동조직절편기	7	24					1			1		1	1	1	2				
	자동조직처리기	9	20			1	1				1	2	1		1			1	1	
	혈액분석기	5	30					1	1					1				2		
	LCD 프로젝터	12	14								1	4	1			1	2	1	1	1
총 계		160		6,280	2	4	7	8	4	1	22	21	10	14	7	17	10	16	11	6
					200	200	260	300	160	20	800	560	436	360	460	700	470	400	700	254

※ 축산물검사장비 :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60점	6,890	6,890	3,750	-	3,140	-
축산물검사장비(1737-412)	160점	6,280	6,280	3,140	-	3,140	-
축산물검사재료비(1737-201)	-	610	610	61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및 가축위생시험소 등)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전화 : 02-500-2693 사무관 장기윤, 주사 조현호)
- 시·도 농수산유통과, 농업행정과, 근교농업과, 농정과, 농축산과, 축산과, 축정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전화 : 031-467-1961~1973)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나. 사업실적 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시·도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도지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나. 사업내용 : 축산물검사장비 및 재료비 지원

II. 가축방역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로 축산물 수출 재개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구제역 재발방지 및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추진 강화
- 전염병 조기 검색과 발생시 신속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시군별 예찰협의회·공동방역협의회 운영, 민간 병성감정기관 지정 확대 등
 - 발생시 조기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시점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 일선 가축방역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 전국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에 기동방역차량 및 방역·검사시설 등 장비 확충
 - 방역보조원(시험소별 3~4명씩 총 176명) 및 병성감정, 혈청검사 소요비용 지원
- 정부·민간 방역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지역 공동방역사업단 운영활성화 지원
-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등 제도 개선 추진
 - 방역관리 위반농가 조치 강화, 이동제한 강화,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 외래성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강화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보상금) 및 제35조(비용의 부담)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90~'97	'98	'99	'00	'01	2002~2004
가축	사업량	52,645	286,784	326,789	342,210	853,491	3,500,000
방역	예산	75,857	14,347	13,850	17,168	23,289	92,916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긴급 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소독약 및 일제 소독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 등
-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진단키트 등 약품 공급
- 수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 정부 지원예방약의 접종시술비 지원
- 살처분보상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11종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지원
- 수의과학검역원의 방역재료비, 진단액 생산, 활동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나.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수의과학검역원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 (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등, 수의사교육, 혈청검사 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다. 2001년 가축방역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예산		2001조정		증(△)감	
	사업량	금액(A)	사업량	금액(B)	(B-A)	%
○ 가축방역(1731)	342,210	17,168	853,491	23,289	6,121	35.7
- 시·도	339,543	15,034	847,491	19,962	4,928	32.8
· 관서운영비(201)	50천호	362	105	616	254	70.2
· 보상금(301)	235	3,552	265	4,550	998	28.1
· 민간보조(304)	700명	40	1	40	0	0
· 경상이전(305)	339,257	10,997	946,867	14,226	3,229	29.4
· 자본이전(412)	11대	83	62	530	447	538.6
--수의과학검역원	2,867	2,134	6,000	3,327	1,193	55.9
· 관서운영비(201)	2,867	1,965	6,000	2,767	802	40.8
· 여 비 (202)		169		252	83	49.1
· 특정입부비(204)		-		60	-	순증
· 자산취득비(407)		-	2대	248	248	순증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수의과학검역원

나.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자치구), 가축위생시험소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 시장·군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검진·혈청검사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진단액 생산 공급 및 중앙단위 방역활동 : 수의과학검역원장

다. 사업시행절차

(1) 예방약 지원

- 정부지원 예방약의 종류 : 12종
 - 소 :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 돼지 :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오제스키병
 - 개(소) : 광견병, 진도견 디스토프 등(DHPPL)
 - 닭 : 뉴캐슬병, 마이코플라스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약품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 예방접종요원 등을 동원, 예방주사 실시
 -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시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예방접종 실시
 - 돼지콜레라 예방약은 '01.2월까지 예방접종 실시(3월부터 접종중단)
 - 100두미만 양돈농가는 예방약 + 예방접종 실시
 - 100두이상 양돈농가는 예방약만 공급

(2) 검진

- 정부지원 검진약품 : 5개종
 - 우결핵, 부루세라(MRT), 부루세라(Rose-Bengal), 추백리
-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검진 실시
 - 채혈후 실험실 검사 또는 진단액 접종, 결과에 대하여는 농가 통보 등

(3) 기생충 구제

- 구제사업 내역 : 4종(소진드기, 소간질충,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 꿀벌 구제약품은 시·도지사가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와 협의하여 구제 약품을 구매, 대상 농가에 지원하여 전국 일제 구제 실시

(4)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지급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지급대상 가축에 지급

(5)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소, 돼지 예방약에 대한 접종시술비 지원
 - 돼지콜레라는 제외 : 100두미만 사육농가 시술비는 축발기금에서 지원
- 접종시술비 단가
 - 소 : 두당 1,000원 (국비 600, 지방비 400)
 - 돼지 : 두당 500원 (국비 250, 지방비 250)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시군별 예방접종 요원을 지정 운영
 - 동 접종요원은 정부 지원 예방약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실시

(6)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시도지사는 가축위생시험소(본·지소)별 4인씩 운영 지원
 - 시험소별 사업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동 방역보조원은 돼지콜레라, 구제역 근절대책 추진 업무만 담당
 - 담당업무 :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농가 채혈검사, 농가 감시 지도 등

(7)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 지원

- 지원 장비종류 : 기동방역차량(찌프형 차량), 방제차량, 고온·고압세척기 등
 - 기동방역차량 : 8대×15백만원×50% = 60백만원
 - 방 제 차 량 : 시험소 본소 9개소×30백만원×50% = 135백만원
 - 고온고압 세척·소독장비 : 44개소×5백만원×50% = 110백만원
 - 광주시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에 따른 소각시설 : 450백만원×50% = 225백만원

(8)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대한수의사회
- 교육 인원 : 1,000명
- 교육 대상 : 공·개업 및 임상 수의사 등
- 교육 내용 : 최신 대·소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보급 등

※ 세부사업별 사업실시요령은 추후 별도 송부

<행정 사항>

가. 사후관리

- 1차 책임 : 시장·군수, 가축위생시험소, 2차 책임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시행기관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방역 지원 본부 방역장비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27조 별표에 의한 기 준 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 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 사용불가	사후관기간중에 재 산파손 등으로 사용 불가하는 자담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폐 기등으로 재산의 용 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및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사업실적 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보고서식 별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수의과학검역원장은 동 실적을 집계하여 분기별 익월 25일까지 농림부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2002. 1. 30까지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수의과학검역원장은 2002.2.15까지 농림부에 보고

< 참고 >

2001년 가축방역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두수·건, 천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2000 국비	2001 사업비		
			'00	'01		계	국비	지방비
예방주사	소	탈저·기종지(혼합)	661	500	69,405	100,000	52,500	47,500
		진염성비기관염	200	300	210,000	465,000	315,000	150,000
		유행열	400	500	560,000	1,025,000	700,000	325,000
		아까바네병	124	140	303,800	497,000	343,000	154,000
	돼지	콜레라 - 시도 본부유보	23,500	26,000	1,645,000	3,640,000	1,820,000	1,820,000
		일본뇌염	1,300	1,500	273,000	525,000	315,000	210,000
		진염성위장염	1,700	1,700	476,000	765,000	476,000	289,000
		오제스키병	600	700	210,000	385,000	245,000	140,000
	개	광견병	1,400	1,400	539,000	840,000	539,000	301,000
		진도건디스토퍼 등	20	20	35,000	51,000	35,000	16,000
	닭	뉴캐슬병 - 부화장 농가	300,000	400,000	1,500,000	2,000,000	2,000,000	0
		마이코플라즈마	0	400,000	0	2,000,000	1,000,000	1,000,000
	기타	0	5,000	0	550,000	550,000	550,000	-
		야생동물 광견병	20	20	50,000	50,000	50,000	-
소 계			329,925	837,780	5,871,205	13,268,000	8,815,500	4,452,500
검진등	소	우결핵	409.66	409.66	286,763	327,729	286,763	40,966
		부루세라	160.64	160.64	105,584	326,642	105,584	221,058
		유방염 방제	62.46	62.46	156,150	156,150	156,150	-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300	300	510,000	570,000	510,000	60,000
	닭	추백리	128.6	128.6	16,718	23,148	16,718	6,430
소 계			1,061.36	1,061.36	1,075,215	1,403,669	1,075,215	328,454
기생충구제	소	진드기	1,000	1,000	22,500	75,000	22,500	52,500
	꿀벌	응애류	721	735	807,520	1,176,000	823,200	352,800
		노제마병	721	735	807,520	1,176,000	823,200	352,800
소 계			2,442	2,470	1,637,540	2,427,000	1,668,900	758,100
가축혈청검사 사업			608.6	469.5	242,040	263,040	242,040	21,000
예방접종 시술비			4,985	5,340	1,731,000	3,390,000	1,839,000	1,551,000
긴급방역비			50	105	362,000	616,000	616,000	-
수의사 연수교육			700명	700명	40,000	40,000	40,000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235	265	3,552,000	4,550,000	4,550,000	-
시험소 방역검사보조원			176명	176명	440,000	1,170,000	585,000	585,000
시험소 방역장비 지원			11대	62대	82,000	1,060,000	530,000	530,000
합 계			339,307	847,491	17,167,500	28,187,709	19,961,655	8,226,054

※ 검역원의 가축방역예산 3,327백만원은 미포함

< 별첨 >

2002년 시도별 가축방역사업 세부내역

(1) 사업량 총괄표

(단위: 천두·천수)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가종지(혼합)	소 전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까 바네	돼지 콜 레 라	돼지 일본 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오제 스키 병	광견 병	진도 견디 스템 퍼	닭뉴캐슬병		닭마 이코 플라 즈마	야 생 동 물 광 견 병
													부화장	농 가		
서울	111.1	77.6	0.2	-	-	-	4.4	1	-	-	70	-	-	2	-	-
부산	1,332.1	1,255.6	0.3	-	1.2	0.6	117.5	46	7	-	30	-	300	750	3	-
대구	1,048.4	995.6	1.5	1.5	2.5	1.1	125.0	11	7	-	20	-	-	795	31	-
인천	5,480.1	5,399.9	5.3	2.3	3.7	1.1	317.5	23	8	-	50	-	-	4965	24	-
광주	4,900.6	4,861.3	0.3	2.3	1.2	0.6	42.9	8	2	-	4	-	3,900	900	-	-
대전	2,156.1	2,125.3	0.3	1.5	1.2	0.6	24.7	6	2	-	3	-	600	1,460	26	-
울산	1,272.2	1,217.2	0.4	2.3	1.2	2.8	125.5	14	4	-	8	-	-	1,045	14	-
경기	225,339.4	223,635.1	151	54.6	56.4	31.6	6,571.5	260	460	250	585	-	121,200	92,378	1,627	10
강원	17,198.7	16,781.1	38	22.5	25	5.6	1,186.0	35	75	-	320	-	-	15,030	34	10
충북	54,830.8	54,377.2	26.5	22.5	43.8	12.4	1,294.0	63	84	-	70	-	20,000	32,500	261	-
충남	147,168.3	145,603.1	60.5	30	56.3	11.3	4,345.0	320	250	450	50	-	80,000	58,460	1,570	-
전북	233,100.6	232,478.8	34.2	45	45	5.6	3,041.0	93	165	-	50	-	149,000	79,180	820	-
전남	69,142.2	68,322.5	37.8	22.5	62.5	13.7	2,571.0	185	170	-	50	20	6,000	59,090	100	-
경북	48,062.1	46,981.8	90.8	48	75	13.5	3,189.5	140	200	-	35	-	10,000	32,890	300	-
경남	30,838.5	29,784.3	52.9	40.5	87.5	33.9	3,044.5	250	200	-	45	-	8,000	17,870	160	-
제주	5,139.7	3,883.6	-	4.5	37.5	5.6	-	45	66	-	10	-	1,000	2,685	30	-
본부																
계	847,121	837,780	500	300	500	140	26,000	1,500	1,700	700	1,400	20	400,000	400,000	5,000	20

(단위: 천두·수)

구분	검진					구제				혈청 검사 · 병성 감정 두(수)	유방염 방제	오제 스키병 근절
	소계	우 결 핵	부루 세라 (MRT)	부루세라 (Rose- Bengal)	추 백 리	소 계	진 드 기	꿀벌 응애	꿀벌 노제 마병			
서울	1.3	0.2	1	0.1	-	29.4	-	14.7	14.7	1,250	-	0.3
부산	4.2	2	2	0.2	-	10.6	-	5.3	5.3	4,830	-	1.8
대구	7.7	4	2	0.2	1.5	13.4	-	6.7	6.7	4,830	0.5	1.8
인천	10.6	7	3	0.3	0.3	6.6	-	3.3	3.3	11,280	0.5	7.8
광주	3.6	1.5	2	0.1	-	16.6	-	8.3	8.3	3,530	0.5	0.6
대전	3.9	0.6	2	0.1	1.2	11.8	-	5.9	5.9	3,230	-	0.3
울산	2.64	1.8	0.72	0.12	-	21.4	-	10.7	10.7	4,080	0.96	1.2
경기	234.9	162.5	24	6.4	42	82	-	41.0	41.0	64,870	16	42.9
강원	32.5	20	8	3	1.5	140.4	-	70.2	70.2	26,820	6	10.8
충북	32.8	20	6	3	3.8	130.8	-	65.4	65.4	24,420	5	8.4
충남	125.96	62.56	15	4.2	44.2	118.4	-	59.2	59.2	77,400	8	57.3
전북	52.7	25.5	4	4.5	18.7	78	-	39.0	39.0	60,120	5	38.2
전남	32.7	23	2	2	5.7	164.4	-	82.2	82.2	70,040	5	56.1
경북	61.2	40	12	4.5	4.7	372.6	-	186.3	186.3	43,820	9	26.4
경남	48.2	36	5.2	3	4	237.2	-	118.6	118.6	57,920	5	41.1
제주	44	3	-	40	1	1036.4	1,000	18.2	18.2	11,060	1	5
본부												
계	698.9	406	88.92	71.72	128.6	2,470	1,000	735	735	469,500	62.46	300

(단위: 천두·수)

구분	예 방 접 중 시 술 비 지 원										가 축 위 생 시 험 소				
	소					돼 지				계	방역 보조원	방역 차량	방제 차량	소독 장비	소각 시설
	탄저· 기종저 (혼합)	전염성 비 기관염	유행열	아까 바네	소 계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	오제 스카병	소 계						
서울	0.2	-	-	-	0.2	1	-	-	1	1.2	3	-	-	1	-
부산	0.3	-	1.2	0.6	2.1	46	7	-	53	55.1	4	-	-	1	-
대구	1.5	1.5	2.5	1.1	6.6	11	7	-	18	24.6	3	-	-	1	-
인천	5.3	2.3	3.7	1.1	12.4	23	8	-	31	43.4	4	-	-	1	-
광주	0.3	2.3	1.2	0.6	4.4	8	2	-	10	14.4	3	-	-	1	1
대전	0.3	1.5	1.2	0.6	3.6	6	2	-	8	11.6	3	-	-	1	-
울산	0.4	2.3	1.2	2.8	6.7	14	4	-	18	24.7	3	1	-	1	-
경기	151	54.6	56.4	31.6	293.6	260	460	250	970	1,263.6	25	1	1	6	-
강원	38	22.5	25	5.6	91.1	35	75	-	110	201.1	20	-	1	5	-
충북	26.5	22.5	43.8	12.4	105.2	63	84	-	147	252.2	16	-	1	4	-
충남	60.5	30	56.3	11.3	158.1	320	250	450	1,020	1,178.1	20	1	1	5	-
전북	34.2	45	45	5.6	129.8	93	165	-	258	387.8	20	2	1	5	-
전남	37.8	22.5	62.5	13.7	136.5	185	170	-	355	491.5	15	2	1	3	-
경북	90.8	48	75	13.5	227.3	140	200	-	340	567.3	16	-	1	4	-
경남	52.9	40.5	87.5	33.9	214.8	250	200	-	450	664.8	16	1	1	4	-
제주	-	4.5	37.5	5.6	47.6	45	66	-	111	158.6	5	-	1	1	-
본부															
계	500	300	500	140	1,440	1,500	1,700	700	3,900	5,340	176	8	9	44	1

(2) 국비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 · 기종지 (혼합)	소 신업성 비기 관업	소 유 행 열	소 아 까 바 네	폐지 콜 레 라	폐지 일 본 너 염	폐지 전 업 성 위 장 업	폐지 오 제 스 키 빙	광 견 빙	진도 견디 스 탐 퍼	담 늪 갯 슬 병		담 마 이 코 플 라 즈 마	야 생 동 물 광 견 빙
													부 화 장	농 가		
서울	74,754	27,494	21	-	-	-	308	210	-	-	26,950	-	-	5	-	-
부산	89,328.5	38,281.5	31.5	-	1,680	1,470	8,225	9,660	1,960	-	11,550	-	1,500	1,875	330	-
대구	81,698	34,045	157.5	1,575	3,500	2,695	8,750	2,310	1,960	-	7,700	-	-	1,987.5	3,410	-
인천	138,351	74,444	556.5	2,415	5,180	2,695	22,225	4,830	2,240	-	19,250	-	-	12,412.5	2,640	-
광주	302,763.5	34,129.5	31.5	2,415	1,680	1,470	3,003	1,680	560	-	1,540	-	19,500	2,250	-	-
대전	53,957.5	18,970.5	31.5	1,575	1,680	1,470	1,729	1,260	560	-	1,155	-	3,000	3,650	2,860	-
울산	93,017.5	31,074.5	42	2,415	1,680	6,860	8,785	2,940	1,120	-	3,080	-	-	2,612.5	1,540	-
경기	3,129,217	2,226,610	15,855	57,330	78,960	77,420	460,005	54,600	128,800	87,500	225,225	-	606,000	230,945	178,970	25,000
강원	780,579	377,220	3,990	23,625	35,000	13,720	83,020	7,350	21,000	-	12,300	-	-	37,575	3,740	25,000
충북	839,464.5	42,347.5	2,782.5	23,625	61,320	30,380	90,580	13,230	23,520	-	26,950	-	100,000	81,250	28,710	-
충남	2,270,277.5	1,481,307.5	6,352.5	31,500	78,820	27,685	304,150	67,200	70,000	157,500	19,250	-	400,000	146,150	172,000	-
전북	1,923,298	1,458,561	3,591	47,250	63,000	13,720	212,870	19,530	46,200	-	19,250	-	745,000	197,950	90,200	-
전남	1,251,001	658,054	3,969	23,625	87,500	33,565	179,970	38,850	47,600	-	19,250	35,000	30,000	147,725	11,000	-
경북	1,526,327	685,374	9,534	50,400	105,000	33,075	223,235	29,400	56,000	-	13,475	-	50,000	82,225	33,000	-
경남	1,423,482.5	694,840.5	5,554.5	42,525	122,500	83,055	213,115	52,500	56,000	-	17,325	-	40,000	44,675	17,600	-
제주	373,135.5	117,737.5	-	4,725	52,500	13,720	-	9,450	18,480	-	3,850	-	5,000	6,712.5	3,300	-
본부	375,000	375,000					375,000									
계	14,755,655	8,815,500	52,500	315,000	700,000	343,000	2,195,000	315,000	476,000	245,000	539,000	35,000	2,000,000	1,000,000	530,000	50,000

(단위: 천원)

구분	집진					구체				현장 검사 · 병성 감정	유망업 방제	오제 스키명근 질
	소계	우 진 핵	부루 세라 (MRI)	부루세라 (Rose- Irgl)	추 백 리	소계	진 보 기	꽃 별 용 애	꽃 별 노 제 마 병			
서울	525	140	350	35	-	32,928	-	16,464	16,464	452	-	510
부산	2,170	1,400	700	70	-	11,872	-	5,936	5,936	3,635.1	-	3,060
대구	3,765	2,800	700	70	195	15,008	-	7,504	7,504	3,635.1	1,250	3,060
인천	6,094	4,900	1,050	105	39	7,392	-	3,696	3,696	4,920.4	1,250	13,260
광주	1,785	1,050	700	35	-	18,592	-	9,296	9,296	3,375.1	1,250	1,020
대전	1,311	420	700	35	156	13,216	-	6,608	6,608	3,315.1	-	510
울산	1,554	1,260	252	42	-	23,968	-	11,984	11,984	3,486.1	2,400	2,040
경기	129,850	113,750	8,400	220	5,460	91,840	-	45,920	45,920	28,901.3	40,000	72,880
강원	18,045	14,000	2,800	1,000	195	157,248	-	78,624	78,624	18,545.8	15,000	18,360
충북	17,644	14,000	2,100	1,000	494	146,496	-	73,248	73,248	18,127.2	12,500	14,280
충남	56,259	43,793	5,250	1,400	5,746	132,608	-	66,304	66,304	31,333.2	20,000	97,410
전북	23,256	17,850	1,400	1,500	2,431	87,360	-	43,680	43,680	25,301.2	12,500	64,940
전남	18,241	16,100	700	700	741	184,128	-	92,064	92,064	24,683	12,500	95,370
경북	34,386	28,000	4,200	1,500	611	417,312	-	208,656	208,656	22,295.2	22,500	44,880
경남	28,590	25,200	1,820	1,000	520	265,664	-	132,832	132,832	24,929.2	12,500	69,870
제주	65,590	2,100	-	63,300	130	63,268	22,500	20,384	20,384	25,105	2,500	8,500
본부												
계	409,065	286,763	31,122	74,462	16,718	1,668,900	22,500	823,200	823,200	242,040	156,150	510,000

(단위: 천원)

구분	예방접종시설비지원										가축위생시험소					
	소					돼지					계	방역 보조원	방역 차량	방제 차량	소독 장비	소각 시설
	탄저· 기종저 (혼합)	전염성 비 기관염	유행열	아까 바네	소계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	오제 스키 병	소계	계						
서울	120	-	-	-	120	250	-	-	250	370	9,975	-	-	2,500	-	
부산	180	-	720	360	1,260	11,500	1,750	-	13,250	14,510	13,300	-	-	2,500	-	
대구	900	900	1,500	660	3,960	2,750	1,750	-	4,500	8,460	9,975	-	-	2,500	-	
인천	3,180	1,380	2,220	660	7,440	5,750	2,000	-	7,750	15,190	13,300	-	-	2,500	-	
광주	180	1,380	720	360	2,640	2,000	500	-	2,500	5,140	9,975	-	-	2,500	225,000	
대전	180	900	720	360	2,160	1,500	500	-	2,000	4,160	9,975	-	-	2,500	-	
울산	240	1,380	720	1,680	4,020	3,500	1,000	-	4,500	8,520	9,975	7,500	-	2,500	-	
경기	90,600	32,760	33,840	18,960	176,160	65,000	115,000	62,500	242,500	418,660	82,925	7,500	15,000	15,000	-	
강원	22,800	13,500	15,000	3,360	54,660	8,750	18,750	-	27,500	82,160	66,500	-	15,000	12,500	-	
충북	15,900	13,500	26,280	7,440	63,120	15,750	21,000	-	36,750	99,870	53,200	-	15,000	10,000	-	
충남	36,300	18,000	33,780	6,780	94,860	80,000	62,500	112,500	255,000	349,860	66,500	7,500	15,000	12,500	-	
전북	20,520	27,000	27,000	3,360	77,880	23,250	41,250	-	64,500	142,380	66,500	15,000	15,000	12,500	-	
전남	22,680	13,500	37,500	8,220	81,900	46,250	42,500	-	88,750	170,650	49,875	15,000	15,000	7,500	-	
경북	54,480	28,800	45,000	8,100	136,380	35,000	50,000	-	85,000	221,380	53,200	-	15,000	10,000	-	
경남	31,740	24,300	52,500	20,340	128,880	62,500	50,000	-	112,500	241,380	53,200	7,500	15,000	10,000	-	
제주	-	2,700	22,500	3,360	28,560	11,250	16,500	-	27,750	56,310	16,625	-	15,000	2,500	-	
본부																
계	300,000	180,000	300,000	84,000	864,000	375,000	425,000	175,000	975,000	1,839,000	585,000	60,000	135,000	110,000	225,000	

(3) 지방비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 · 기중저 (혼합)	소 진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 까 바 네	폐지 콜 레 라	폐지 일 본 뇌 염	폐지 진 염 성 위 장 염	폐지 오 제 스 키 병	광 견 병	진도 견디 스텝 퍼	닭뉴켓슬병		닭 마 이 코 플 라 즈 마	야 생 동 물 광 견 병
													부화장	농가		
서울	42,579	15,522	19	-	-	-	308	140	-	-	15,050	-	-	5	-	-
부산	61,306.5	25,648.5	28.5	-	780	660	8,225	6,440	1,190	-	6,450	-	-	1,875	-	-
대구	48,497	21,495	142.5	750	1,625	1,210	8,750	1,540	1,190	-	4,300	-	-	1,987.5	-	-
인천	89,369	55,236	503.5	1,150	2,405	1,210	22,225	3,220	1,360	-	10,750	-	-	12,412.5	-	-
광주	260,274.5	10,191.5	28.5	1,150	780	660	3,003	1,120	340	-	860	-	-	2,250	-	-
대전	31,291.5	9,422.5	28.5	750	780	660	1,729	840	340	-	645	-	-	3,650	-	-
울산	58,700.5	20,805.5	38	1,150	780	3,080	8,785	1,960	680	-	1,720	-	-	2,612.5	-	-
경기	1,642,885	1,094,390	14,345	27,300	36,660	34,760	400,000	36,400	78,200	50,000	125,700	-	-	230,940	-	-
강원	474,582	244,315	3,610	11,250	16,250	6,160	83,020	4,900	12,750	-	68,800	-	-	37,575	-	-
충북	490,141.5	255,857.5	2,517.5	11,250	28,470	13,640	90,580	8,820	14,280	-	15,050	-	-	81,250	-	-
충남	1,205,790.5	708,122.5	5,747.5	15,000	36,595	12,430	304,150	44,800	42,500	90,000	10,750	-	-	146,150	-	-
전북	798,434	523,799	3,249	22,500	29,250	6,160	212,870	13,020	28,050	-	10,750	-	-	197,950	-	-
전남	803,523	479,781	3,591	11,250	40,625	15,070	179,970	25,900	28,900	-	10,750	16,000	-	147,725	-	-
경북	906,374	462,841	8,626	24,000	48,750	14,850	223,255	19,600	34,000	-	7,525	-	-	82,225	-	-
경남	866,461.5	459,065.5	5,025.5	20,250	56,875	37,290	213,115	35,000	34,000	-	9,675	-	-	44,675	-	-
제주	445,845	59,167.5	-	2,250	24,375	6,160	-	6,300	11,220	-	2,150	-	-	6,712.5	-	-
본부																
계	8,226,054	4,452,500	47,500	150,000	325,000	154,000	1,800,000	210,000	289,000	140,000	301,000	16,000	0	1,000,000	0	0

(단위: 천원)

구분	집진					구제				혈청 검사 · 병상 감정	유방염 방제	오제 스키병균 질
	소계	우 결 핵	부루 세라 (MFC)	부루세라 (Rose- Berg)	추 백 리	소계	진 드 기	꿀벌 응애	꿀벌 노제 마병			
서울	80	20	50	10	-	14,112	-	7,056	7,056	-	-	60
부산	320	200	100	20	-	5,088	-	2,544	2,544	-	-	360
대구	595	400	100	20	75	6,432	-	3,216	3,216	-	-	360
인천	895	700	150	30	15	3,168	-	1,584	1,584	-	-	1,560
광주	260	150	100	10	-	7,968	-	3,984	3,984	-	-	120
대전	230	60	100	10	60	5,664	-	2,832	2,832	-	-	60
울산	228	180	36	12	-	10,272	-	5,136	5,136	-	-	240
경기	20,190	16,250	1,200	640	2,100	39,360	-	19,680	19,680	-	-	8,580
강원	2,775	2,000	400	300	75	67,392	-	33,696	33,696	-	-	2,160
충북	2,790	2,000	300	300	190	62,784	-	31,392	31,392	-	-	1,680
충남	9,636	6,256	750	400	2,210	56,832	-	28,416	28,416	-	-	11,400
전북	4,135	2,550	200	400	935	37,440	-	18,720	18,720	-	-	7,640
전남	2,885	2,300	100	200	285	78,912	-	39,456	39,456	-	-	11,220
경북	5,285	4,000	600	400	235	178,848	-	89,424	89,424	-	-	5,280
경남	4,360	3,600	260	300	200	113,856	-	56,928	56,928	-	-	8,220
제주	213,790	300	-	213,440	50	69,972	52,500	8,736	8,736	21,000	-	1,000
본부												
계	268,454	40,966	4,446	21,612	6,430	758,100	52,500	352,800	352,800	21,000	0	60,000

(단위: 천원)

구분	에 방 집 중 시 술 미 지 원										가 축 위 생 시 험 소					
	소					데 지					계	방 익 보조원	방 익 차량	방 제 차량	소 독 장비	소 각 시설
	탄저· 기종저 (혼합)	전염성 비. 기관업	유행열	아까 바네	소개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	오세 스키 병	소개	계						
서울	80	-	-	-	80	250	-	-	250	330	9,975	-	-	2,500	-	
부산	120	-	480	240	840	11,500	1,750	-	13,250	14,090	13,300	-	-	2,500	-	
대구	600	600	1,000	440	2,640	2,750	1,750	-	4,500	7,140	9,975	-	-	2,500	-	
인천	2,120	920	1,480	440	4,960	5,750	2,000	-	7,750	12,710	13,300	-	-	2,500	-	
광주	120	920	480	240	1,760	2,000	500	-	2,500	4,260	9,975	-	-	2,500	225,000	
대전	120	600	480	240	1,440	1,500	500	-	2,000	3,440	9,975	-	-	2,500	-	
울산	160	920	480	1,120	2,680	3,500	1,000	-	4,500	7,180	9,975	7,500	-	2,500	-	
경기	60,400	21,840	22,560	12,640	117,440	65,000	115,000	62,500	242,500	359,940	82,925	7,500	15,000	15,000	-	
강원	15,200	9,000	10,000	2,240	36,440	8,750	18,750	-	27,500	63,940	66,500	-	15,000	12,500	-	
충북	10,600	9,000	17,520	4,960	42,080	15,750	21,000	-	36,750	78,830	53,200	-	15,000	10,000	-	
충남	24,200	12,000	22,520	4,520	63,240	80,000	62,500	112,500	255,000	318,240	66,500	7,500	15,000	12,500	-	
전북	13,680	18,000	18,000	2,240	51,920	23,250	41,250	-	64,500	116,420	66,500	15,000	15,000	12,500	-	
전남	15,120	9,000	25,000	5,480	54,600	46,250	42,500	-	88,750	143,350	49,875	15,000	15,000	7,500	-	
경북	36,320	19,200	30,000	5,400	90,920	35,000	50,000	-	85,000	175,920	53,200	-	15,000	10,000	-	
경남	21,160	16,200	35,000	13,560	85,920	62,500	50,000	-	112,500	198,420	53,200	7,500	15,000	10,000	-	
제주	-	1,800	15,000	2,240	19,040	11,250	16,500	-	27,750	46,790	16,625	-	15,000	2,500	-	
본부																
계	200,000	120,000	200,000	56,000	576,000	375,000	425,000	175,000	975,000	1,551,000	585,000	60,000	135,000	110,000	225,000	

가축방역비 산출단가

(단위 : 원)

구 분	축종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1두당 단가(재료비 포함)		
				계	국 비	지 방 비
예 방 주 사	소	탄저·기종저(혼합)	500	200	105	95
		진염성비기관염	300	1,550	1,050	500
		유행열	500	2,050	1,400	650
		아까바네병	200	3,550	2,450	1,100
	돼지	돼지콜레라	26,000	140	70	70
		일본뇌염	1,500	350	210	140
		돼지 진염성위장염	1,700	450	280	170
		돼지 오제스키병	700	550	350	200
	개	광견병	1,400	600	385	215
		진도견 디스토펜 등	20	2,550	1,750	800
	닭	뉴캐슬병 - 부화장	400,000	5	5	0
		농가	400,000	5	2.5	2.5
		마이코프라즈마	5,000	110	110	0
	기타	야생동물 광견병	20			
소 계			837,840			
검진등	소	우 결 핵	409.66	800	700	100
		부루세라	160.64	2,030	660	1,370
		유방염 방제	62.46	2,500	2,500	-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300	1,900	1,700	200
	닭	추 백 리	128.6	180	130	50
소 계			1,061.36			
기생충 구 제	소	진 드 기	1,000	75	22.5	52.5
		꿀벌	옹 애 류	735	1,600	1,120
	노제마병		735	1,600	1,120	480
	소 계			2,470		
가축혈청검사 사업			469.5			
예방접종 시술비			5,340			
	- 소		1,440	1,000	600	400
	- 돼지		3,900	500	250	250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검사보조원			176명	6,650천원	3,325천원	3,325천원
방제차량			9대	30,000천원	15,000천원	15,000천원
방역차량			8대	15,000천원	7,500천원	7,500천원
소독장비(고온 고압)			44대	5,000천원	2,500천원	2,500천원
합 계			847,491			

< 서 식 >

심사제외

'01.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1. 예방약·검진·구제약품 공급 실적

○ 예방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 검진 진단액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 구제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 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종					

2. 가축 혈청검사

(시)
(도)

축종	병류별	년간 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양성판정 항체가
			검사 건수	검사 두수	양성	음성	계		
○○	○○ (농장)	○○ ()	()	()	()	()	()		
	(도축장)	()	()	()	()	()	()		
계									

3. 도축장 출하돈 일제 검사결과

(시)
(도)

검사기관 (시험소별)	출하지역 (시·군별)	검사두수	검 사 결 과			비 고
			양성	음성	계	

※ 양성축에 대하여 농장명, 사육명, 소재지, 사육두수, 양성두수를 별도 명기할 것

4. 종돈장·양돈장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시)
(도)

종돈장 (양돈장)	성명	주소	사육 두수	검사 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5. 유방염 방제사업

(도)

(단위 : 두)

시험소별	연간계획 두수	검사결과				감염율(%)		비고
		검사목장수 (등의판정)	검사 두수	양성 두수	양성분방수	임상 (두수)	준임상 (두수)	
계								

6.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지급

지급자	주소	전염병명	살처분 및 도태 보상			비고
			축종	두수	금액	
				두	천원	살처분· 도태 기재
계						

7.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종류	연간 계획		접종 두수			시술비(국비) 지급		
	두수 (A)	국비 (B)	당분기	누계 (C)	접종율 (C/A)	당분기	누계 (D)	지급율 (D/B)
	두	천원			%			
계								

38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축산경영과장 정동홍, 사무관 송인근) 입니다.

1. 목적

- 우유 소비기반을 저변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극빈·불우 초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비 전액 보조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극빈·불우 초등학생에 대해 우유급식비 전액 보조
-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학교우유급식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사업량		천명/일 176	185	185	210	210
사업비	계	백만원 44,067	7,043	8,695	9,870	29,610
	보조	44,067	7,043	8,695	9,870	29,61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 경
 - 성장기의 어린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개선, 체위향상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생 등)
-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교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초등학교생을 추가 선정 가능(초등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학교 불우학생의 경우 포함가능)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생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학교우유 급식	천명/일 210	백만원 9,870	9,870	9,87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 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 시 군 : 축산과(산업과)

다. 급식기간 : 2000.11~2001.10월 기준(개학기간중에 급식)

라. 보조급식계획(일평균) : 210천명/일

마. 사업실시방법

- 보조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하고, 급식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자부담으로 급식
 - 초등학교 : 보조급식과 같은 용량 및 가격으로 급식
 -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용량 및 가격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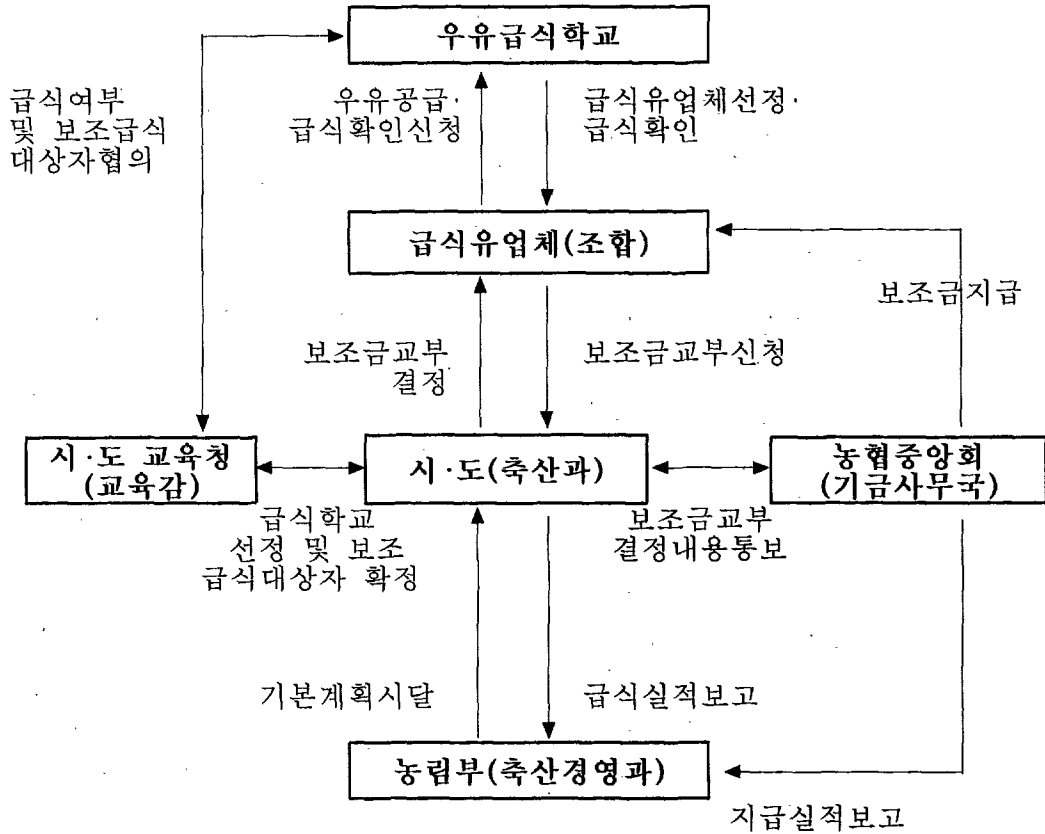
바. 2001 지원계획 : 9,870백만원(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 <별표1> 참조

사. 보조급식 우유용량 및 가격기준 : 235원이하/200ml. 단, 도서벽지는 밀균유 공급하되 불가피한 경우 분유급식가능(분유 : 22g 120원)

- ※ 급식우유의 용량(200ml)은 변동 할 수 없음. 다만, 공급가격은 235원 이하로 조정 가능

아. 사업추진체계도



자. 급식학교 및 급식유업체 선정

- 급식학교 :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선정
- 급식유업체 : 보조우유급식의 경우 집유일원화사업참여 유업체중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유상급식은 자율적으로 추진(시·도에서는 급식 유업체등 안내)

차. 보조금 교부등 절차

- 보조신청(보조사업자) : 급식유업체(대표)
- 보조금 교부결정자 : 시·도지사
- 보조금 지급기관 : 농협중앙회장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보조우유급식사업분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된 집유일원화사업 참여 유업체중에서 우유급식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시·도지사는 급식우유가 백색시유만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유업체가 급식 중단 및 급식품목 변경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확인 실시
 - 급식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가공유·발효유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급식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급식유업체 변경등 시정조치
- 시·도지사는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류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장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보조금교부결정내역에 의하여 급식 유업체의 제출서류에 대한 허위·오류·착오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

나. 보고·기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고사항	보고기관	보고일	서식
대상자선정결과보고	시·도	2001.3월말	가 26 - 60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분기보)	시·도	매분기익월20일한	가 26 - 60
학교우유급식보조금지급실적 보고(월보)	축협중앙회	매익월 20일한	가 26 - 60

6. 200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교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 등)

나.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 초등학교를 추가 선정(초등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학교 불우학생의 경우 포함가능)
 - * 급식보조금 지급대상 : 2001.11~2002.10 기간중 급식대상 선정 학생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등

다. 기타사항

- 급식품목 : 백색시유
- 급식규격 및 가격
 - 초등학교 : 200ml를 기준으로 235원 이하
 - 중·고등학교 :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 단, 도서벽지는 멸균유를 공급하되 불가피한 경우 분유급식 가능(분유 : 22g 120원)

(별표 1)

2001 학교우유 보조급식 시·도 지원계획

(단위 : 명/일, 천원)

구 분	보조 급식대상 인원	보 조 금
서 울	16,600	780,200
부 산	4,500	211,500
대 구	10,200	479,400
인 천	2,000	94,000
광 주	5,500	258,500
대 전	3,000	141,000
울 산	1,200	56,400
경 기	17,000	799,000
강 원	16,000	752,000
충 북	16,500	775,500
충 남	19,100	897,700
전 북	35,200	1,654,400
전 남	29,000	1,363,000
경 북	20,000	940,000
경 남	11,200	526,400
제 주	3,000	141,000
합 계	210,000	9,870,000

※ 연간 200일(2000.11~2001.10까지) 급식 기준

(별표 2) : 시·도지사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대상자선정결과보고

○○시·도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개소	명/일				
	합 계						

※ 구분의 공란은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불우학생, 특수학교 학생, 도서벽지 또는 오지로서 급식대상 물량이 적어 유업체에서 급식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은 초등학생, 일시적 자연재해(준재해 포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 지사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보조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등학생 등으로 구분

참여유업체 현황

유업체명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개소	명/일				

(별표 3) : 시·도지사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실적보고(분기)

○○시·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월	초등학생	개소	명	원				
	중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누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 ※ 보조금액은 교부결정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방비 보조등은 일반급식란에 기재
- ※ 학생수는 당월 및 누계 인원을 해당기간중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되, 학교수는 누계 개념으로 작성하지 말것

(별표 4) : 농협중앙회의 농림부 보고서식

학교우유급식 보조금실적보고(월)

1. 시·도별 보조금 지급실적

시도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명	원				

2.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유업체별	당 월			누 계			비 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개교	천명	천원				

※ 보조금액 = 학생수 × 급식단가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 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1/2이하 사용 재배

일반재배



농약·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